

협동연구총서 24-44-02

연구보고24-일반02-01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김승경 · 김지연 · 백혜정 · 전현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협동연구총서 24-44-02

연구보고24-일반02-01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저 자 김승경, 김지연, 백혜정, 전현정

연구진 연구책임자_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전현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_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청년종합연구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4-44-01	청년종합연구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4-44-02	2024년 시설퇴소청년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협력 연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승경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승경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보고서를
펴내며

지난 '23년 3월, 청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가 포함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취약계층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정책에도 포함되지 않는 ‘정책소외계층 청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년들은 취약계층 유형별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 제도의 지원대 상에서 벗어나 있어 실질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어 '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에 걸쳐 협동연구로 추진되었다. 주관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생활실태와 자립과정을 3개년 간 분석하였고, 협동연구기관에서는 청소년부모, 북한배경청년, 경계선지능청년, 금융취약청년, 발달장애청년 등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소외계층 청년과 비취약청년 간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격차를 완화하고 소외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전히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소외계층 청년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정책소외계층 청년들이 다른 비취약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개인이 지닌 취약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받고 안정적인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

연구요약

■ 연구목적

- 성인기로의 이행은 청년이 당면하는 보편적인 발달과업이지만,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은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 및 아동·청소년기부터 반복적으로 노출된 상황적 위기 등으로 인해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일반청년에 비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환경적인 대처 기제가 매우 취약하여 이들을 성인기 이후의 삶에서도 만성적인 취약계층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3개년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다양한 삶의 궤적과 불안정한 자립과정에 대한 실태 진단을 통해 안정적인 성인기 이행과 사회적 정착을 위한 면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내용

- 3차년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성별, 퇴소시설 유형별, 지역별 차이 등을 분석하여 집단 간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3개년간의 생활 변화를 비교하여 생활 실태의 추이 확인
- 조사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간 결합을 통해 공적 지원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 지원수급의 정합성, 공적 지원의 자격취득 및 재취득 비율, 공적 지원 수혜가 자립에 미치는 영향, 자립기술평가와 자립 간의 관계 등 분석
- 3개년 간 수행된 조사데이터에 대한 종단분석을 통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시설 거주 경험이 성인기 이행에 미친 영향, 자립지원수당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성이 자립수준 및 심리·정서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 확인

■ 연구방법

-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조사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간 가명정보 결합 및 분석, 전문가 자문, 정책실무협의회, 콜로키움, 정책포럼 등 다각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함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간 주당 근로시간 및 상용 근로자 비율이 증가함. 시설퇴소청년의 약 3%는 1년 이상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냈다고 응답. 주당 근로시간이 적절한 경우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또는 50시간 이상인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음
 - 대학 재학 중인 청년의 경우 기초생활급여 수급률이 2배 이상 높음. 채무가 있는 청년의 비율 및 채무액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 범죄피해 및 생활비로 인한 채무는 다소 감소, 학자금, 주거비, 가족의 빚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생활했던 시설의 수가 많은 경우 우울 및 고립감이 높음. 비적정 주거시설 거주 중인 청년은 4%가량 존재
 - 자해 경험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진료비 부담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받지 못하는 청년이 약 10% 수준에 달함. 신체·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중 진료를 받지 않거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청년이 1/3을 상회. 의료비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률이 높음
 - 지난 1년간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못한 청년이 50% 이상 이었는데,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도, 자신이 바라는 미래 실현 정도가 높고, 기초생활수급 청년들은 비수급 청년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 미래 실현 가능 정도가 높음. 다만 시설퇴소청년들은 건강 문제, 가사 및 돌봄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당면했을 때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음

주요 연구결과

- 자립성취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립수당은 시설퇴소청년의 저축 증가, 부채 감소, 개인 시간 확보 및 사회적 교류 증가, 우울 감소, 행복도 및 삶의 만족도 증가와 관련 있음
- 본 연구의 조사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간 가명정보 결합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인지-수급 여부 간 정합성은 약 86~90% 수준
 - 기초생활급여의 탈수급-재취득 비율은 50% 이상으로 타 공적 지원에 비해 높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청년은 건강 및 심리·정서 상태가 취약할 가능성이 높긴 하나, 비수급 청년에 비해 긍정적인 미래인식을 보임. 디딤씨앗통장 이용 청년은 건강 및 심리·정서, 사회에 대한 신뢰, 생계복지에 대한 개인의 책임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고, 자립수당 수혜 청년은 개인의 취업에 대한 노력, 건강 및 심리·정서, 참여 및 미래인식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음
 - 아동양육시설에서 실시한 자립기술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참여 효능감, 사회에 대한 신뢰, 바라는 미래실현 정도 등이 높아지고, 고립 및 우울 정도가 낮아짐
- 1~3차 년도 조사데이터 종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다중시설 거주 청년들의 경우 건강 및 심리·정서수준이 더 낮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시설 거주기간이 길수록 건강 및 심리·정서 유지 수준이 높아짐
 - 자립지원수당은 시설퇴소청년의 단기적인 변화지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식비부족으로 인한 결식경험, 우울이 유의미하게 감소함
 - 생활안정 유형(안정고용, 채무 없음) 청년들은 자립수준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불안정 유형의 청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립수준과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고 고립감과 우울감이 높아짐
 - 자립연차가 증가할수록 일하는 청년의 비율이 상승하고 전문가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청년의 비율은 상승하는 반면, 자립연차가 증가할수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청년의 비율이 감소함. 자립 초기에는 자립수당의 절반 이상을 식비로 지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식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감소하고 주거비 혹은 저축, 보험료, 대출 상환을 위한 지출이 증가함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1차년에 제시한 ‘모든 청년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비전하에 ‘청년정책으로서의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정책의 수립’이라는 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의 추진과제를 제시함
 - 시설퇴소청년의 특성에 따른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개인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 아동-청소년-성인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연속성 있는 지원정책 수립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대상(집중사례관리 대상)의 성인기로의 이행 지원 강화
- 각 영역별 세부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영역	세부추진과제
고용·근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 및 근로기초훈련 마련 및 제공
경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반의 금융모델 보급 •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제도 모색
주거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삶의 형태와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지원 방안 모색 • 관계기반의 주거지원통합서비스 확충
심리·정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지원 확대 • 자조모임 및 멘토링을 통한 사회 지지망 구축 • 자해와 자살 예방을 위한 연계기관 간 핫라인 설치 •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상호부조 사업 모형 개발
여가·문화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문화생활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연계
자립생활 지원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지원 대상의 확대 및 지자체 자립지원 대상 심의제도의 개선 • 자립수준 향상을 위한 자립수준 평가 및 단계적 자립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시설퇴소청년의 지원제도 정보접근성 강화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협동연구총서 24-44-02

연구보고24-일반02-01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2. 연구추진체계 6
- 3. 연구내용 7
- 4. 연구방법 9

II.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 1. 자립준비청년 현황 17
- 2. 지원정책 현황 25

III.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

: 3차 년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1. 조사개요 49
- 2. 3차 년도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 분석 60
- 3. 소결 및 시사점 148

IV.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

: 공공데이터 결합을 중심으로

1. 가명정보 결합 목적 및 방법 159
2. 가명정보를 활용한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 분석 166
3. 소결 194

V.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자립과정 분석

: 1~3차 년도 종단분석

1. 조사참여자 특성 및 연구방법 201
2. 시설 거주 경험이 성인기 이행에 미친 영향 분석 204
3. 자립지원수당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223
4.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종단적 생활안정성 집단에 따른 자립수준 및 심리·정서수준 비교 229
5. 자립연차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 및 지원효과 분석 241
6. 소결 251

VI. 정책제언

1. 정책의 기본방향 262
2. 영역별 추진과제 270

참고문헌 295

부 록

- 조사지 305

Abstract 335

표 목차

표 Ⅰ-1. 조사대상 및 결합 대상 데이터	8
표 Ⅰ-2. 2024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개요	10
표 Ⅱ-1.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입퇴소자 수(순 인원)	19
표 Ⅱ-2. 자립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 연도별 입주 및 입교 현황	22
표 Ⅱ-3. 각 시설퇴소청년 유형별 타 시설 이용률	23
표 Ⅱ-4. 아동복지법('24.2.9. 시행)	26
표 Ⅱ-5. 청소년복지 지원법('24.2.9. 시행)	27
표 Ⅱ-6.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비교	28
표 Ⅲ-1. 조사 대상 선정 기준	50
표 Ⅲ-2. 연도별 응답자 구성 및 패널유지율	51
표 Ⅲ-3. 각 연도별 조사 영역의 구성	53
표 Ⅲ-4. '24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	54
표 Ⅲ-5. '24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고용)	54
표 Ⅲ-6. '24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경제)	56
표 Ⅲ-7. '24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주거)	56
표 Ⅲ-8. '24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건강 및 심리·정서)	57
표 Ⅲ-9. '24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여가, 문화)	58
표 Ⅲ-10. '24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가치관 및 미래인식)	59
표 Ⅲ-11. '24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자립역량)	59
표 Ⅲ-12. 조사참여자 특성: 일반	61
표 Ⅲ-13. 조사참여자 특성: 동거가족 여부	62
표 Ⅲ-14. 동거인 중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 및 돌봄 대상	64
표 Ⅲ-15.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	65
표 Ⅲ-16. 학력(상세)별 기초생활급여 수급 여부	67
표 Ⅲ-17. 일 경험률(지난 1주일간)	68
표 Ⅲ-18. 동시에 2개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한 경험(지난 1년간)	70
표 Ⅲ-19. 고용 형태(지난 1주일간)	71
표 Ⅲ-20. 주된 근로 형태(지난 1년간)	71
표 Ⅲ-21. 근로시간 형태(지난 1주일간)	72

표 III-22. 주된 일자리 유형(지난 1주일간)	73
표 III-23. 주당 총 근로 시간(지난 1주일간)	74
표 III-24.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년의 주당 근로 시간(지난 1주일간)	75
표 III-25. 지난 주 평균 근로 시간과 우울·행복도·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76
표 III-26. 이직 경험(지난 1년간)	76
표 III-27.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경험 및 기간	77
표 III-28. 가족 내 수입이 있는 구성원	79
표 III-29. 한 달 평균 소득(세전)	80
표 III-30. (수급자 한정) 월 평균 이전소득②	82
표 III-31. 학력(세부)별 소득 차이	83
표 III-32. 한 달 평균 지출(생활비)	85
표 III-33. 비동거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여부	86
표 III-34. 채무 여부	87
표 III-35. 채무 발생 이유별 갚아야 할 금액	88
표 III-36. 돈을 빌린 곳	90
표 III-37. 금융채무불이행자 해당 여부 및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 경험	92
표 III-38. 매달 저축, 보험, 연금 등에 지출하는 금액	93
표 III-39. 가구 소득수준	95
표 III-40. 생활했던 기관 수 및 기관에서 생활했던 기간	96
표 III-41. 생활했던 기관 수에 따른 우울 및 고립감의 차이	97
표 III-42. 살고 있는 집의 주거비 마련 방법	98
표 III-43. 살고 있는 집의 유형	99
표 III-44. 비적정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청년 비율	100
표 III-45. (고시원, 비거주용 건물 및 임시구조물 한정) 현재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	100
표 III-46.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냉난방 못한 경험	101
표 III-47. 최근 1년간 주거빈곤 경험	103
표 III-48.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최근 1년간 구강검진 경험(연도별)	104
표 III-49. 우울증상 경험	105
표 III-50. 우울증상 여부에 따른 우울점수 및 우울 경험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	107
표 III-51. 고립감 및 고립감을 느낀 기간	108

표 Ⅲ-52.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감을 느낀 기간	109
표 Ⅲ-53.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 없이 6개월 이상 생활한 경험	110
표 Ⅲ-54. 은둔 기간 및 은둔 이유(신규 패널)	111
표 Ⅲ-55. 최근 1년간 자해 경험	112
표 Ⅲ-56.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진료)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	113
표 Ⅲ-57.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주된 이유	115
표 Ⅲ-58. 최근 1년간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약물 사용 경험	116
표 Ⅲ-59. 신체·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여부	117
표 Ⅲ-60. 건강 문제로 치료받은 경험	118
표 Ⅲ-61. 최근 1년 건강 문제로 인한 치료 경험(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응답자)	119
표 Ⅲ-62.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의료급여 수급 여부)	121
표 Ⅲ-63. 지난 1년간 의료비 지출 금액	122
표 Ⅲ-64. 건강보험료 미납 또는 연체 경험 및 건강보험료 체납이유	123
표 Ⅲ-65. 건강상태	124
표 Ⅲ-66. 지난 1년간의 여가·문화 경험률	126
표 Ⅲ-67. 지난 1년간의 여가·문화 경험을 하지 않은 이유	127
표 Ⅲ-68. 여가·문화 경험 정도와 우울·행복도·삶의 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128
표 Ⅲ-69. 일(학업)과 여가 간 균형	129
표 Ⅲ-70. 여유시간 사용 희망 방법	130
표 Ⅲ-71. 삶의 만족도	131
표 Ⅲ-72. 어제의 행복도	132
표 Ⅲ-73.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실현 가능 정도	133
표 Ⅲ-74.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서의 결혼 및 자녀 출산·양육의 중요도	134
표 Ⅲ-75.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와 삶의 만족도·행복도·미래실현 가능 정도·자립수준 간의 관련	136
표 Ⅲ-76. 자립수당 수령 여부	139
표 Ⅲ-77. 자립수당을 주로 지출한 항목	140
표 Ⅲ-78. 자립수당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	141

표 Ⅲ-79. 자립수당 수령 여부와 우울·행복도·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142
표 Ⅲ-80. 어려운 상황에 도움 요청 가능한 사람	143
표 Ⅲ-81. 자립수준에 대한 인식	144
표 Ⅲ-82. 자립 성취 정도	145
표 Ⅲ-83. 자립수당과 자립성취도 간의 관계	147
표 Ⅲ-84.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자립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148
표 Ⅳ-1. 가명정보 처리 데이터 특징	164
표 Ⅳ-2. 가명정보 결함을 위한 추출 데이터 목록	165
표 Ⅳ-3. 가명정보 처리 자료 대상 특성	167
표 Ⅳ-4. 공적 지원 수혜 현황	168
표 Ⅳ-5.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의 정합성	170
표 Ⅳ-6. 공적 지원의 수급 및 탈수급 비율	172
표 Ⅳ-7. 시설외소청년 자립 분석 변인	174
표 Ⅳ-8.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에 따른 취업 노력	176
표 Ⅳ-9.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에 따른 건강 및 심리·정서 ..	177
표 Ⅳ-10. 기초생활보장제도 여부에 따른 참여 및 미래인식	178
표 Ⅳ-11. 디딤씨앗통장 지원 여부에 따른 취업 노력	180
표 Ⅳ-12. 디딤씨앗통장 지원 여부에 따른 건강 및 심리·정서	181
표 Ⅳ-13. 디딤씨앗통장 지원 여부에 따른 참여 및 미래인식	182
표 Ⅳ-14. 자산형성 여부에 따른 취업 노력	183
표 Ⅳ-15. 자산형성 여부에 따른 건강 및 심리·정서	183
표 Ⅳ-16. 자산형성 여부에 따른 참여 및 미래인식	184
표 Ⅳ-17.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여부에 따른 취업 노력	185
표 Ⅳ-18.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여부에 따른 건강 및 심리·정서	185
표 Ⅳ-1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여부에 따른 참여 및 미래인식	187
표 Ⅳ-20. 자립기술평가 영역별 평가 점수가 자립에 미치는 영향 (취업, 자해)	189
표 Ⅳ-21. 자립기술평가 영역별 평가 점수가 자립에 미치는 영향 (심리·정서, 참여)	190
표 Ⅳ-22. 아동장래취업평가 점수 범주 분포	192
표 Ⅳ-23. 아동장래취업평가 점수 범주별 취업 형태	192

표 IV-24. 자립기술평가 집계 점수가 자립에 미치는 영향(취업, 자해)	193
표 IV-25. 자립기술평가 집계 점수가 자립에 미치는 영향 (심리·정서, 참여)	194
표 V-1. 조사참여자 특성	202
표 V-2. 종단분석 주제별 주요 분석변수 및 분석방법	203
표 V-3. 잠재프로파일의 모형적합도(주관적 건강상태)	206
표 V-4. 시설퇴소청년의 주관적 건강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별 특징	206
표 V-5.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208
표 V-6. 잠재프로파일의 모형 적합도(우울)	209
표 V-7. 시설퇴소청년의 우울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별 특징	210
표 V-8. 우울 변화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212
표 V-9. 잠재프로파일의 모형적합도(삶의 만족도)	213
표 V-10. 시설퇴소청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별 특징	213
표 V-11.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216
표 V-12. 잠재프로파일의 모형적합도(사회적 고립)	217
표 V-13. 시설퇴소청년의 사회적 고립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별 특징	218
표 V-14. 사회적 고립감 변화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220
표 V-15. 사회적 고립감의 변화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계속)	221
표 V-16. 자립지원수당 수급에 대한 경향점수 추정 결과	224
표 V-17. 가중치 적용 전후 자립지원수당 수급 여부에 따른 특성 비교	225
표 V-18. 자립지원수당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227
표 V-19. 고용 안정 변수 설명	230
표 V-20. 연도별 취업 및 근로 형태에 따른 빈도 분석 결과	231
표 V-21. 취업 및 근로 형태 변화에 따른 빈도 분석 결과	232
표 V-22. 연도별 채무 유무에 따른 빈도 분석 결과	233
표 V-23. 채무 유무 변화에 따른 빈도 분석 결과	233
표 V-24. 생활안정성 집단에 따른 자립수준 차이 분석	234
표 V-25. 생활안정성 집단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236

표 V-26. 생활안정성 집단에 따른 우울감 차이 분석	237
표 V-27. 생활안정성 집단에 따른 고립감 차이 분석	239
표 V-28. 생활안정성에 따른 자립수준 및 심리·정서수준 결과 비교	240
표 V-29. 분석 대상 특성	242
표 V-30. 분석 영역	243
표 VI-1. 경계선지능 청년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안)	269
표 VI-2.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추진과제(안)	293

그림 목차

그림 Ⅰ-1. 2024년 주관연구기관 연구추진체계	6
그림 Ⅰ-2. 연차별 조사 표본 규모	11
그림 Ⅱ-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개념 및 유형	17
그림 Ⅱ-2. 자립준비청년 현황('18~'22년)	18
그림 Ⅱ-3.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입퇴소자 수(순 인원)	20
그림 Ⅱ-4. 최근 5년간 보호소년, 위탁소년 신수용 인원	21
그림 Ⅱ-5. 자립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 연도별 입주 및 입교 현황	22
그림 Ⅱ-6. 각 시설퇴소청년 유형별 타 시설 이용률	24
그림 Ⅱ-7. 시설퇴소청년의 시설 이동 경로	24
그림 Ⅲ-1. 조사지 개발 과정	52
그림 Ⅲ-2. 동거가족 구성	62
그림 Ⅲ-3. 동거가족 수	63
그림 Ⅲ-4. 동거인 중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 여부 및 본인의 돌봄 비중	64
그림 Ⅲ-5. 사회보장급여 수급 비율: 연도별	66
그림 Ⅲ-6. 기초생활급여 수급 비율: 학력(상세)별	67
그림 Ⅲ-7. 일 경험률	69
그림 Ⅲ-8. 주당 근로시간	74
그림 Ⅲ-9.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험	78
그림 Ⅲ-10.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간	78
그림 Ⅲ-11. 가족 내 수입이 있는 구성원	79
그림 Ⅲ-12. 한 달 평균 소득(세전)	81
그림 Ⅲ-13. 한 달 평균 소득(세전) 구성	81
그림 Ⅲ-14. 학력(세부)별 소득 차이	84
그림 Ⅲ-15. 한 달 평균 지출(생활비)	85
그림 Ⅲ-16. 영역별 생활비	86
그림 Ⅲ-17. 채무 있음 비율(연도별)	87
그림 Ⅲ-18. 채무액(연도별)	88
그림 Ⅲ-19. 채무 발생 이유별 갚아야 할 금액	89

그림 Ⅲ-20.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	91
그림 Ⅲ-21.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경험	92
그림 Ⅲ-22. 매달 저축, 보험, 연금 등에 지출하는 금액	94
그림 Ⅲ-23. 퇴소시설별 매달 저축, 보험, 연금 등에 지출하는 금액	94
그림 Ⅲ-24. 가구 소득수준(연도별)	95
그림 Ⅲ-25. 최근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냉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	102
그림 Ⅲ-26. 최근 1년간 주거빈곤 경험	104
그림 Ⅲ-27.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최근 1년간 구강검진 경험 (연도별)	105
그림 Ⅲ-28. 우울증상 경험 여부 (연도별)	106
그림 Ⅲ-29. 우울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	107
그림 Ⅲ-30. 고립감 점수(고립감을 느낀 기간별)	108
그림 Ⅲ-31. 고립감을 느낀 기간	109
그림 Ⅲ-32. 자해 경험	112
그림 Ⅲ-33.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진료)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	114
그림 Ⅲ-34.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주된 이유	115
그림 Ⅲ-35. 신체·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여부 및 건강 문제로 치료받은 경험	118
그림 Ⅲ-36. 최근 1년 건강 문제가 있으나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응답자)	120
그림 Ⅲ-37.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의료급여 수급 여부)	121
그림 Ⅲ-38. 지난 1년간 의료비 지출 금액	122
그림 Ⅲ-39. 건강보험료 체납 이유(복수응답)	123
그림 Ⅲ-40. 건강상태	125
그림 Ⅲ-41. 여유시간 사용 희망 방법	130
그림 Ⅲ-42.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137
그림 Ⅲ-43.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에 따른 행복도	137
그림 Ⅲ-44.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에 따른 미래실현 가능 정도	138
그림 Ⅲ-45.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에 따른 자립수준	138
그림 Ⅲ-46. 자립수당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	141
그림 Ⅲ-47. 자립수준에 대한 인식	144

그림 III-48. 자립 성취 정도	146
그림 IV-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	160
그림 IV-2. 본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게시 내용	161
그림 IV-3. 가명처리 대상 정보	163
그림 IV-4. 기초생활보장제도 여부에 따른 참여 및 미래인식	179
그림 IV-5. 디딤씨앗통장 지원 여부에 따른 건강 및 심리·정서	181
그림 IV-6.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여부에 따른 건강 및 심리·정서/참여 및 미래인식	187
그림 V-1. 잠재프로파일별 시설퇴소청년의 건강상태 변화	207
그림 V-2. 잠재프로파일별 시설퇴소청년의 우울 변화	211
그림 V-3. 잠재프로파일별 시설퇴소청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214
그림 V-4. 잠재프로파일별 시설퇴소청년의 사회적 고립 변화	219
그림 V-5. 자립수준 변화 양상	235
그림 V-6.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	236
그림 V-7. 우울감 변화 양상	238
그림 V-8. 고립감 변화 양상	239
그림 V-9.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244
그림 V-10. 지난 일주일 주된 일자리 유형	245
그림 V-11. 주관적 가구 소득 수준	246
그림 V-12. 삶의 만족도	247
그림 V-13. 자립수당으로 주로 지출하는 항목	248
그림 V-14. 본인이 인지하는 자립수준	249
그림 VI-1. 시설퇴소청년 정책 추진과제	263
그림 VI-2. 단계별 맞춤형 고용·근로 지원 서비스(안)	276
그림 VI-3. 시설퇴소청년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절차 개선(안)	291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수차례에 걸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2019년에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보호종료 아동(현,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였다. 이후 '22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공제 확대,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교육·취업·멘토링 등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 걸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18세 이전에 보호가 조기종료된 아동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지자체·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표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확대하고, 주거·취업·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민간과의 연계를 통해 자산형성, 맞춤형 일 경험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였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지나 자원이 매우 부족하여 다양한 체험이나 활동 등의 사회참여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자신에 대해 성찰하기 위한 경험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설퇴소와 동시에 자립이라는 상황을 갑작스레 맞이하고 혼자서 힘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더구나 시설퇴소 이후 경험하게 되는 빈약한 사회적 지지체계와 취약한 경제 상황, 학업 지속이나 구직의 어려움 등의 현실은 이들의 심리적·정서적 취약성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 이행기에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사회적 안전망 내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1) 본 장은 김승경 선임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온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퇴소청년에 대한 지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일부 청년들에 국한되어 있으며 부모의 보호력이 부재한 가정의 청소년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유사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은 대부분 지원에서 배제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소관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²⁾의 생활 실태에 대한 3개년간 추적 조사를 기획·추진하였다.

1, 2차년도 연구를 통해 시설퇴소청년들의 삶을 살펴본 결과 시설퇴소청년들이 일반청년들에 비해 고용, 경제, 주거, 심리·정서 등 전반적인 생활 영역에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시설퇴소 후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은 73.7%(일반청년 21.4%)였으며,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가구 내 신체·정신적 문제나 노령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도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퇴소청년들은 일반청년에 비해 학력이 낮고,³⁾ 대부분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4%), 일을 해본 청년 중 11.7%는 2개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일반청년(월 365만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170만원)이었다. 이들은 학업보다는 생계를 위해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불안정하거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들은 일반청년에 비해 우울이나 고립감, 자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설퇴소청년들 내에서도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들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이 아동·청소년기 동안 더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⁴⁾ 퇴소 후에 자립지원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백혜정, 김지연, 김승경, 노혜진, 2023).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시설퇴소청년들의 경우 자립을 처음 시작한 초기에 비해 자립연차가 높아질수록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립

2)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으로 명명하였으나, 편의상 '시설퇴소청년'이라는 용어도 혼용하였다.

3) 일반청년의 대학진학률은 88%인데 비해 시설퇴소청년의 대학진학률은 65.3% 수준임.

4) 1차년도 조사 결과, 청소년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의 경우 18세 이전 아동·청소년기 동안 급격히 어려워진 가정환경, 경제적 문제로 인한 학업중단, 보호자(부모)로부터의 폭력/방임, 가까운 사람의 죽음, 배신·사기 등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2022).

초기에는 자립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자립연차가 높아질수록 대인관계나 사회적응 등과 같이 자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우울이나 고립 경향이 높아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등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들의 자립과정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세심한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차 년도인 올해 연구에서는 1, 2차 년도에 이어 시설퇴소청년들의 영역별 생활 실태를 분석하고, 3개년간의 자립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자립과정에 따른 지원 필요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나아가 공공데이터 결합을 통해 공적 서비스 이용이 시설퇴소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자립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퇴소청년들이 경험하는 취약성을 보완하고 일반청년과의 삶의 격차를 줄여갈 수 있는, 건강한 청년기 이행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및 정책과제 도출의 실증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추진체계

올해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3개년 연구의 마지막 해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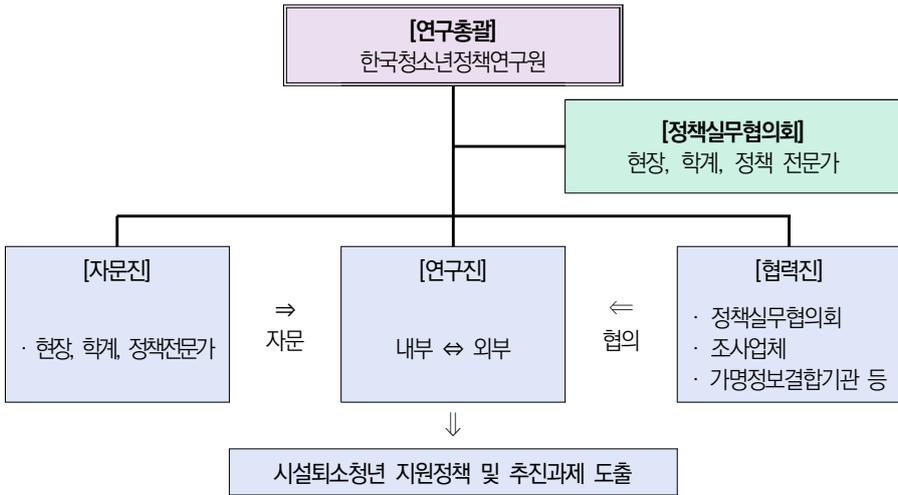


그림 1-1. 2024년 주관연구기관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1) 2024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올해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의 3차 년도 조사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과 지원 수혜율, 지원효과, 취약성의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인 자립준비청소년, 「소년법」상 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원하는 기관의 자립지원을 받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19세 이상 청년으로 1, 2차 년도 대상과 동일하다.

조사 영역은 1, 2차 년도에 조사하였던 일반사항, 고용, 경제, 주거, 건강 및 심리·정서 영역에 여가와 문화, 자립역량, 가치관 영역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각 영역별로 청년들의 생활 실태, 경험, 인식 정도 등을 살피고, 일반청년과의 비교, 자립준비청년 하위집단(퇴소시설별) 간 비교 분석, 자립과정에서의 삶의 변화 분석 등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조사대상 내 다층성, 하위집단 및 영역별 취약성, 자립연차별 적응 및 취약성의 변화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각 전담기관별로 지원기관 실무자 집단을 구성하여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1, 2차 년도에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과정에서의 경험, 성공적 자립에 이르게 된 요인 등을 확인하였으며, 올해는 지원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과정에서 지원서비스 연계 경험 및 지원서비스 연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 한계 등을 공유하고, 시설퇴소 자립준비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용 경험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 제안 시 참고하고자 하였다.

2) 가명정보를 활용한 실태조사-공공데이터 결합 분석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결합은 퇴소시설에 따른 분절적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원배제 및 불평등, 신청주위의 한계로 발생하는 지원 누락 등으로 인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올해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조사데이터(2차 년도)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서비스 수급 여부, 지원의 정합성, 공적 지원 수혜 여부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년도 연구에서도 공공데이터 결합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공공데이터 결합 가능성을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추진 초기단계에 있던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계좌 등 일부 결합이 불가한 일부 불충분한 데이터를 파악하였다. 또한 본원 1차 년도 실태조사 데이터 중에서도 지원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항들을 발견하여 2차 년도 실태조사 시 보다 면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였다.

공공데이터와의 가명정보 결합은 설문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참여자들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유리하고 공적 지원제도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기반의 정책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안하고 복지 사각지대 청년 발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대상 및 결합대상 데이터는 <표 I-1>과 같다.

표 I-1. 조사대상 및 결합 대상 데이터

	1차 년도 ('22)	2차 년도 ('23)	3차 년도 ('24)
조사대상	약 2,500명	1차 년도 코호트 + 신규 표본(총 2,500명)	2차 년도 코호트 + 신규 표본(총 2,661명)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의 의미 · 교육 및 훈련 · 경제와 고용 · 주거 · 건강 및 심리·정서 · 관계 및 참여 · 서비스 이용 및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 고용 · 경제 · 주거 · 건강 및 심리·정서 · 관계 및 참여 · 사회인식·미래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문항 + 문화여가활동 + 자립역량 + 가치관
결합대상 공공 데이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년도 데이터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아동복지시설 보호정보, 자립준비현황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자활사업,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등록,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년도 데이터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아동복지시설 보호정보, 자립준비현황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자활사업,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등록,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등)

출처: 백해정 외 (2023). 2023년 시설외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연구. 일부 수정.

3) 1~3차 년도 데이터 중단분석

3개년간 수행된 조사데이터를 근거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단분석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시설 거주 경험이 성인기 이행에 미친 영향, 자립지원수당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성이 자립수준 및 심리·정서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의 주제로 수행되었다.

4) 현안별 정책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퇴소청년들의 생활 실태 및 욕구를 반영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정책 수립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영역별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시설퇴소청년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동향 파악을 위해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정책자료, 행정자료 등에 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시설퇴소청년과 일반청년 간의 생활 실태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의 일부 문항에 대한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 본원 2차 년도 실태조사 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결합을 통해 개인별 위기도 및 취약성의 정도,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서비스 수급에 따른 생활 실태 차이 등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실태조사

2023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표본 선정 방법은 다음 <표 I-2>와 같다. 실태조사 참여자들은 지난 1, 2차 년도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년들과 신규로 참여한 청년들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1, 2차 년도 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3차 년도 설문 참여를 요청하되, 주거지와 연락처를 수시로 변경하는 이들의 특성 및 2차

년도 패널유지 수준을 반영하여 패널유지율은 60% 수준으로 정하였다. 기존 표본 유지 후, 총 조사대상 규모인 2,500명을 기준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신규 표본을 충원하도록 하였다. 1~3월에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개발 및 검토를 위한 연구진 회의를 실시하였고, 4월에 웹조사 시스템을 구축, 연구진과 조사업체에서 로직을 확인하여 실사에 착수하였다. 실사는 5월 둘째 주부터 7월 첫째 주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고, 설문완료 패널은 총 2,674명으로 목표대비 107%, 기존 패널유지율은 68%였다. 다만, 중복 및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최종 표본 수는 2,661명이었다.

표 1-2. 2024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약 2,500명 내외(최종 2,661명) ※ '24년 현재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500명 이상 포함 ※ 각 유형별 모집단 규모와 조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규모 할당 - 「아동복지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약 1,95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 약 400명 - 「소년법」상 소년원 출원 청년 약 150명
대상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차년도 조사표본 가운데 3차년도 조사참여 동의자 선정 - 자립지원전담기관,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생활관, 소년보호교육기관 담당자의 추천을 통해 2차년도 표본 유실분 충원
3차년도 조사 영역	① 일반사항, ② 고용, ③ 경제, ④ 주거, ⑤ 건강 및 심리·정서, ⑥ 여가, 문화, ⑦ 가치관 및 미래인식, ⑧ 자립역량
조사방법	웹조사
조사시기	'24년 5~7월
비 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승인) (202404-HR-고유-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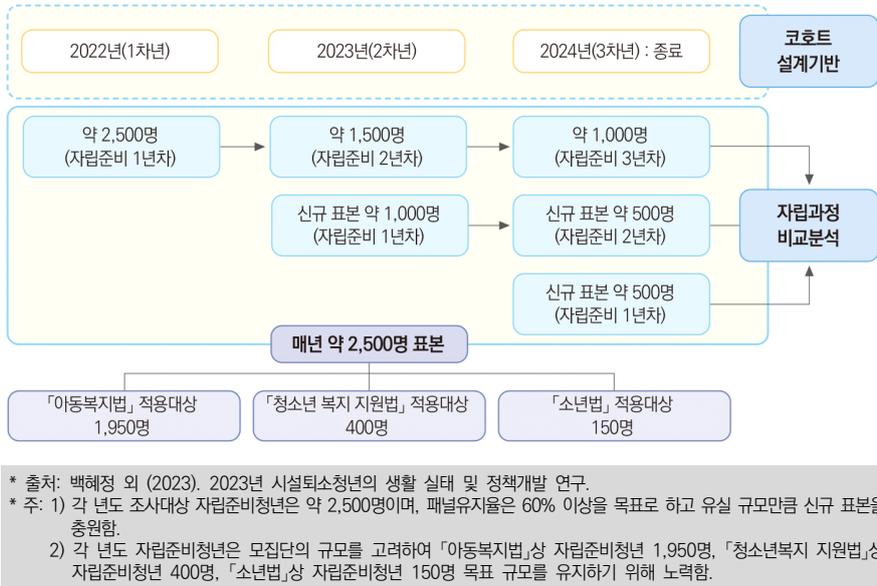


그림 1-2. 연차별 조사 표본 규모

3)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 설계와 방향을 설정하고, 시설외소청년에 관한 현안을 진단하며, 조사표 개발 및 검토,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 도출, 정책 추진과제 검토 등 연구 추진과정의 각 단계에서 상시적으로 현장, 학계, 정책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특히 정책제언 도출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소관 시설외소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관(자립지원전담기관,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생활관, 소년보호교육기관 등)별로 현장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자문회의(4회)를 실시하였다. 회의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발굴 및 지원 사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용 경험 및 개선방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 및 기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4) 기타 연구방법

(1) 정책실무협의회

연구 설계과정에서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도출된 세부추진과제를 검토·확정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협동연구기관, 유관기관과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횟수	주요 내용	참석자	개최시기
1회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업무협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 5명	3월 12일
2회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업무 협의	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등 3개 부처 8개 부서 담당자	4월 중 수시 (유선, 개별)
3회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논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5월 20일
4회	가명정보 추가가명처리를 위한 업무 협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 5명	8월 23일
5회	자립준비청(소)년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논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11월 12일

(2) 콜로키움·정책포럼

연구 추진과정에서 연구내용 및 결과 활용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탐색을 위해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횟수	주요 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 발표회」 발표 · 발표: 백해정(본원 선임연구위원) 	정부부처, 가명정보 결합기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	3월 8일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명정보 활용절차의 이해 · 발제: 김윤중(유티에스데이터 수석) 	원내외 연구자	4월 24일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 발제: 양대회(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장) 한은희(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 토론: 류정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 	원내외 연구자	8월 20일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외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종단분석 세미나 · 발제: 김나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손윤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진실(고려대학교 통계학과 박사과정), 전현정(본원 부연구위원) 	원내외 연구자	9월 9일

○———— 제2장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 1. 자립준비청년 현황
- 2. 지원정책 현황

1. 자립준비청년 현황⁶⁾

본 연구의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은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둘째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에서 자립지원 중인 청년(자립준비청소년), 셋째 「소년법」상 소년보호시설 출원 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다(그림 II-1).⁷⁾ 이들의 현황을 퇴소시설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출처: 김지연 외(2022). p.79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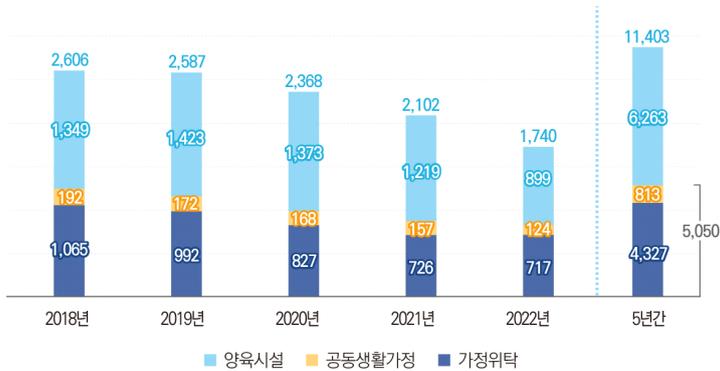
그림 II-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개념 및 유형

- 5) 본 장은 백해정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 6) 이 절은 전년도 연구인 「2023년도 청년종합연구 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백해정 외, 2023)의 세부 보고서 중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에서 제2장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현황과 특성의 내용 일부를 요약·보완한 것임.
- 7) 이들을 전체적으로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또는 '시설퇴소청년'으로 지칭하였고 필요에 따라 '○○시설 퇴소청년'이란 용어도 사용하였음.

1)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시작한 청년들은 2018년부터 그 수가 점차 감소하여 2022년에는 1,740명으로 집계되었다⁸⁾[그림 II-2]. 2022년을 기준으로 보호종료⁹⁾ 후 시설퇴소 후 5년간 자립지원을 제공받는 청년은 모두 11,403명이다. 이 중 가정위탁을 제외하고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퇴소 자립준비청년은 약 5,000명,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양육시설을 퇴소 한 자립준비청년은 4,000여 명이다. 아동시설은 「아동복지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의2, 제40조 등에 의거하여 시설퇴소 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단위: 명)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2022년 자립준비청년 현황.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469&bbsId=1127&nttSn=6529&cataGori=all&tabName=all>에서 2024년 4월 25일 검색.

그림 II-2. 자립준비청년 현황('18~'22년)

8)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469&bbsId=1127&nttSn=6529&cataGori=all&tabName=all>에서 2024년 4월 25일 검색.

9)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르면 아동은 25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¹⁰⁾

청소년쉼터는 2023년 12월 기준 전국 138개소(일시 33개소, 단기 66개소, 중장기 39개소)가 운영 중이다(여성가족부, 2024). 최근 3년간 단기 및 중장기쉼터 입소자는 중복대상자를 제외하고 순인원으로 매년 4,000명 대를 유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총 4,973명에 이르러 5,000명에 가까워졌고(표 II-1) 그중 18세 이상은 약 1,500~2,000명 정도이다. 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23년 12월 기준 전국 13개소가 운영 중이며(여성가족부, 2024) 2023년에는 582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 이들을 모두 합산하면 2023년 기준 5,500여 명 선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쉼터는 이용자들의 특성이나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부족 등 여러 여건상 퇴소자들에 대한 자립지원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자립지원관의 경우는 아동양육시설과 달리 시설퇴소 후를 자립준비청년으로 보기보다는 시설 이용 당시부터 자립준비청년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

표 II-1.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입퇴소자 수(순 인원)

(단위: 명)

구분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²⁾	합계	
		단기		중장기			전체	18세 이상
		전체	18세 이상	전체	18세 이상			
입소 순인원 ¹⁾	'20년	3,997	1,727	585	339	320	4,902	2,386
	'21년	3,779	1,293	581	294	464	4,824	2,051
	'22년	3,655	1,354	554	278	515	4,724	2,147
	'23년	4,382	1,785	591	305	582	5,555	2,672
퇴소 순인원 ¹⁾	'20년	3,442	1,307	341	192	320	3,885	1,819
	'21년	3,322	962	345	165	464	3,856	1,591
	'22년	3,239	994	323	163	515	3,780	1,672
	'23년	3,745	1,500	346	185	272	4,363	1,957

* 출처: 여성가족부 (2024). 내부자료.

* 주: 1) 순인원: 연간 이용 및 입소 인원에서 중복 대상자를 제외한 인원

2) 청소년자립지원관은 19~24세 우선 지원

10) 편의상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으로 명명하였고 여기에는 청소년쉼터 퇴소청년과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사례관리를 받는 청년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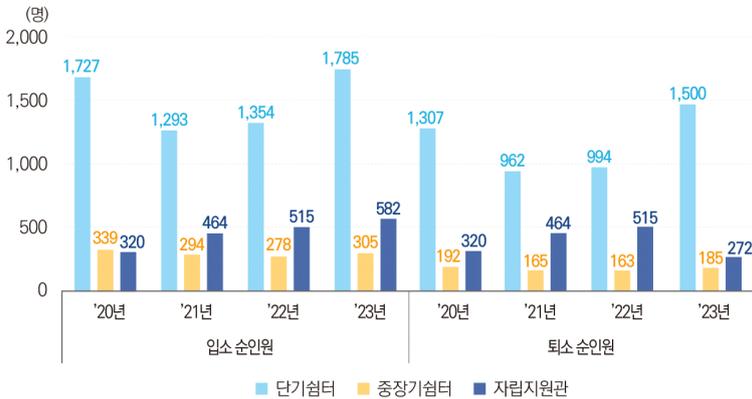


그림 II-3.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입퇴소자 수(순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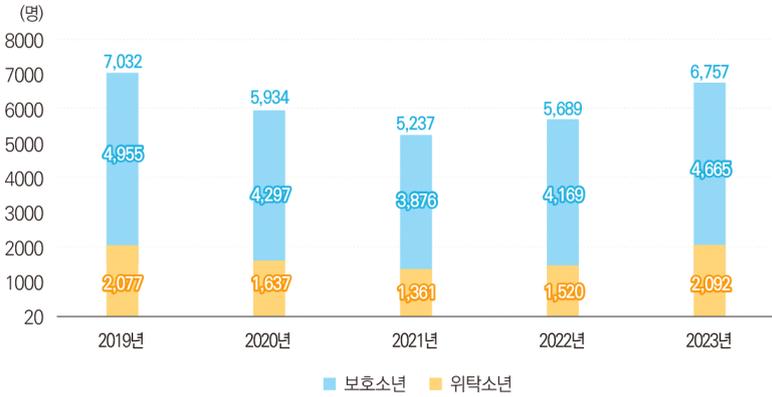
3) 소년원 퇴소청년

최근 5년간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¹¹⁾에 매년 새롭게 수용된 23세 이하 소년의 규모는 [그림 II-3]과 같다. 2019년 약 7,000명 선이었으나 코로나19 시기에 잠시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는 6,700명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소년원 퇴소청년들 중에는 무의탁, 양육불량, 극빈가정 등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부모의 부재, 열악한 생활정도, 민간위탁 처분¹²⁾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19세 미만 범죄소년 54,329명 중 부모가 없는 경우는 1.7%, 생활정도가 하루인 경우는 46.8%로 보고되었다(법무연수원, 2024). 또한 2022년 기준 보호처분을 받은 24,933명 중 민간위탁처분(6호 처분)을 받은 이들은 약 6.1%에 해당하는 1,519명이다(법무연수원, 2024).

11) 보호소년은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위탁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을 의미함.

12) 민간위탁처분은 보호처분 중 6호 처분으로 대개 가정의 보호력이 낮은 경우에 내려짐.



* 출처: e-나라지표 홈페이지,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0에서 2024년 4월 26일 검색.
 * 주: 1) 신수용인원: 당해연도 법원 소년부 결정에 따라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송치/위탁된 인원과 새로 입소한 인원.
 2) 보호소년: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3) 위탁소년: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행 원인과 자질 규명을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그림 II-4. 최근 5년간 보호소년, 위탁소년 신수용 인원

시설퇴소 후 가정에서의 보호 및 지원이 어려워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자립생활관(전국 8개소, 총 130명 정원)과 청소년창업비전센터(전국 8개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다.¹³⁾ 자립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에 입주(입교)한 청소년은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총 579명(연평균 약 115.8명), 퇴거(퇴교) 청소년은 총 584명(연평균 약 116.8명)이다<표 II-2>.

13)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청소년자립생활관. <https://www.kjpa-e.or.kr/530>에서 2024년 4월 26일 검색.

표 II-2. 자립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 연도별 입주 및 입교 현황

(단위: 명, 월)

연도	입주(입교) 현황		퇴거(퇴교) 현황	
	입주 및 입교	입주 및 입교 월 평균	퇴거 및 퇴교	퇴거 및 퇴교 월 평균
'19년	127	10.6	131	10.9
'20년	147	12.3	134	11.2
'21년	127	10.6	129	10.8
'22년	81	6.8	85	7.1
'23년	97	8.0	105	8.8
합계	579	48.3	584	48.8

* 출처: 한국소년보호협회 (2024). 2023년 협회 월간현황 통계(내부자료, 법무부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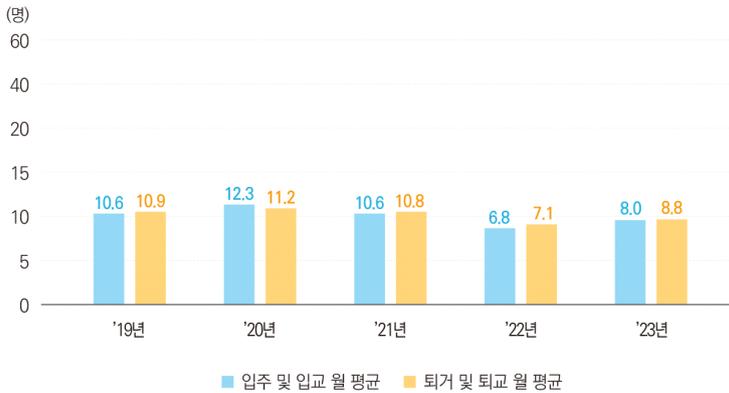


그림 II-5. 자립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 연도별 입주 및 입교 현황

4) 복수시설 경험 청년

시설퇴소청년들 중에는 2가지 이상의 보호체계를 넘나들며 생활했던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동보호시설 생활 중에 통고제도¹⁴⁾로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등 소년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되는 경우이다. 통고를 받은 청소년들은 시설퇴소 이후 자립지원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¹⁵⁾ 지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렇게 소년원에 입소하였다가 퇴소 후에는 청소년복지시설이나 법무부 산하 자립생활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김지연 외, 2022). 또한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중 18.8%,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중 28.2%의 청년들은 이전에 아동양육시설에 생활한 경험이 있었다(김지연 외, 2022)(표 II-3). 반면 아동시설 퇴소청년 중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소년원 경험이 있는 경우는 각각 7.4%와 1.2%이다. [그림 II-7]은 시설퇴소청년들의 시설 이동 경로를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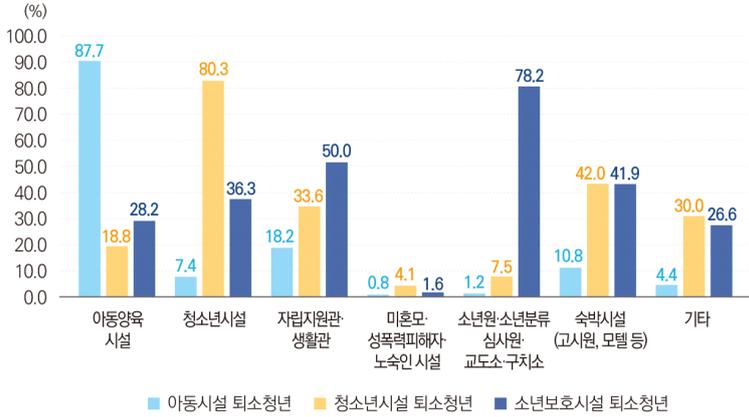
표 II-3. 각 시설퇴소청년 유형별 타 시설 이용률

(단위: %)

유형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아동양육시설	87.7	18.8	28.2
청소년시설(쉼터, 회복지원시설)	7.4	80.3	36.3
자립지원관·생활관	18.2	33.6	50.0
미혼모·성폭력피해자·노숙인 시설	0.8	4.1	1.6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교도소·구치소	1.2	7.5	78.2
숙박시설(고시원, 모텔 등)	10.8	42.0	41.9
기타	4.4	30.0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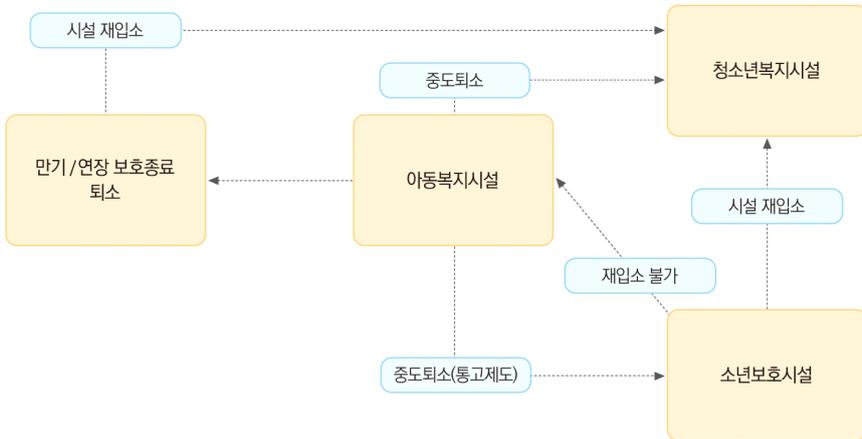
* 출처: 김지연 외 (2022), p.106의 내용을 재구성함.

- 14) 통고제도란 보호자나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을 직접 범원에 접수시키는 제도로 2022년 통고를 받은 청소년은 502명(전체 소년보호사건의 1.2%)임(법무연수원, 2024). 통고제도는 객관적인 범죄 사실 없이 '우범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나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들 중 일부는 이를 통해 시설에서 퇴소 조치되고 있는 실정임.
- 15) 최근 통고제도 등으로 인하여 15세에서 18세 이전에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월 50만원 지원 받는다'. <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925672>에서 2024년 4월 26일 검색).



* 출처: 김지연 외 (2022). p.106의 내용에 따라 연구진 재구성.

그림 II-6. 각 시설퇴소청년 유형별 타 시설 이용률



* 출처: 김지연 외 (2022). p.116

그림 II-7. 시설퇴소청년의 시설 이동 경로

한 개인이 아동기에서 청년기까지 여러 시설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 뿐 아니라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시설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현행과 같이 최종 퇴소시설에 따라 제각각의 법령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은 역시 지원에서의 차별이나 배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2. 지원정책 현황¹⁶⁾

1) 자립지원 정책 현황

그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하는 청년에게만 보호종료 후 5년 간 지원이 제공되어 18세가 되기 전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상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방지법」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던 자립준비청년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시행(24.2.9.)됨에 따라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보호종료)하는 15세 이후의 보호종료자들도 18세가 된 때부터 5년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기존의 조항에 ‘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여기에는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 대학진학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24.9.30. 검색).

나아가 원가정 복귀는 기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다만, 보호종료가 15세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지원이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앞둔 18세 이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기취업이나 대학진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대한민

16) 이 절은 전년도 연구인 「2023년도 청년종합연구Ⅱ: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백해정 외, 2023)의 세부 보고서 중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에서 제3장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정책 현황의 내용 일부를 요약·보완한 것임.

표 II-4. 아동복지법(24.2.9. 시행)

현 행	개 정
(제3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여야 하며, 자립지원 대상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1호. 가정위탁 보호 중인 사람 2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호.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연장 후 보호종료된 지 5년 이내의 사람	(좌동) 4호. 18세에 달하기 전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이러한 변화는 아동양육시설에서 18세 이후에 만기 퇴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년원이 나 치료시설 등 타 시설로의 전원이거나 원가정 복귀 등을 이유로 양육시설에서 중간 퇴소한 청년, 아동양육시설 이외에 청소년복지시설을 비롯한 여타 복지시설에서 일정기간 이상 머물거나 지원을 받은 경력이 있는 청년 등을 자립지원의 “유자격자”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백혜정 외, 2023)는 본 연구 2차년도 보고서의 제안과 맥을 같이한다. 다만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는 18세에 달하기 전 보호종료된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대상이 확대된 점은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기본 전제가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보건복지부 외 다양한 복지시설에서의 보호이력을 가진 청년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자립준비청년 대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24년 1월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하여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하도록 하였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의 권고 기준인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3년 12월 의료비 지원을 신설하여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4년 2분기부터는 보호종료 이후 전담인력과 연락이 두절되지 않도록 담당 전담인력이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아동과 미리 만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립준비 상황을 함께 점검하도록 하였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24.9.30. 검색).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4.4.25. 시행)됨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을 지원하고,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조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항'에 근거하여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해왔으나,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세부적인 지원 및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함과 동시에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다양한 영역의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터나는 미래 홈페이지, 2024.9.30. 검색).

표 II-5. 청소년복지 지원법('24.2.9. 시행)

현행	개정
〈산설〉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체 청년 및 퇴소시설 유형별 청년 자립지원 제도들을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표 II-6>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II-6.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비교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등)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 (자립지원)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5.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수당 및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자립수당 <input type="radio"/> 지원 대상: 보호종료 5년 이내 - 18세 이후 보호종료자 -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18세부터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받은 자 <input type="radio"/> 월 50만원(최대 5년)	<input type="checkbox"/> 자립지원수당 <input type="radio"/> 지원 대상: 쉼터, 자립지원관* 퇴소 일로부터 5년 이내 * 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지급 가능 - '21년 1월 이후 만 18세 이후 퇴소자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재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 받은 자) <input type="radio"/> 월 40만원(최대 60개월) <input type="radio"/> 수급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으로 부터 월 1회 이상 사례관리 받음	-	-
	<input type="checkbox"/> 자립정착금 <input type="radio"/> 1,000만원 이상 지급 * (24년 기준) 서울 2000만원, 대전·경기·제주 1500만원, 경남 1200만원 외 1000만원 <input type="radio"/> 행복지킴이 통장 (압류방전용 통장) 활용 가능 <input type="radio"/> 금융교육 또는 재무상담 이수 확인 후 분할 지급(권고)	<input type="checkbox"/> 자립정착금 <input type="radio"/> 일부 광역 지자체(부산 1,000만원, 울산 500만원, 제주(주거정착금) 1,500만원)만 지급	<input type="checkbox"/> 협회 자립정착금(민간) <input type="radio"/> 지원 대상: 소년보호협회 입주생 퇴소 시, 대상자 상황에 따라 협회 본부 또는 소속 생활관에서 교통비 (약20만원) 지급	-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등)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형성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후원 등을 통해 일정금액 저축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적립금은 만 18세부터 특정 자립 용도로 사용 가능, 만 24세부터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만 24세가 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인출되도록 개선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형성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가구(중위소득 50% 이하) 아동일 경우 지원 가능하며 18세 이후 인출방법은 보호대상아동과 동일 ○ 청년희망키움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근로 청년에게 근로소득공제금(매월 10만원)+일정 비율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 - 3년 후 평균 1,500만원 적립 - 2024년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기존 가입자만 만기 시까지 지원) ○ 희망저축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는 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수급가구원이 적립금(10만원) 저축 시 월 30만원 지원 - 차상위계층 가구원이 월 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월 10~50만원 자율 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39세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이 월 10만원 저축 시 30만원 지원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등)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한은행 연계 자립준비청년·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적금' (3년 만기) 지원 (규모: 2억 7천만원) - 납입액(월 최대 15만원) 기준 1:1매칭 			- 중위소득 50~100% 이하 가구 청년이 월 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보호연장 기간부터 보호종료 후 5년간 근로·사업소득 공제(60만원+30% 추가), 금융재산 공제 대상에 자립 정착금 포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후 5년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부담 *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 긴급 의료비 지원(민간) ○ 소년보호협회 입주생 중 자해, 사고 등 긴급의료지원 필요시 후원금으로 의료실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검사 및 치료 비용 지원(본인 일부 부담) □ 재난적의료비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0% 이상인 가구에게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본인부담금 50 ~ 80% 차등 적용으로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 경감 ○ 만21세 미만 소년소녀 가정 대상 소득·재산 수준별 건강보험료 경감 (10~30%)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등)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input type="checkbox"/>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input type="checkbox"/> 9~24세 위기청소년 <input type="checkbox"/> 건강지원(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연 200만원 이하), 생활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등
주거지원	<input type="checkbox"/> LH 공공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건설·전세·매입임대) 지원 - (건설임대주택) 보증금 100만원(계약금 5만원), 시세의 30~80% 임대료, 최초 임대기간은 2년+갱신조건 충족 시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1순위, 만 22세 이하는 임대보증금(100만원), 전세지원금 무이자 지원, 만 23세 이상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전세지원금에 대한 이자(연 1~2%) 부담, 거주 5년 이내는 대출 이자 50% 감면	<input type="checkbox"/> LH 공공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 지원 대상: 2년 이상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이용한 청소년으로 퇴소 예정 또는 퇴소 후 5년 이내 무주택자 <input type="checkbox"/> 지원내용: 매입·전세·건설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우선 공급 - (건설임대주택) 보증금 100만원(계약금 5만원), 시세의 30~80% 임대료, 최초 임대기간은 2년+갱신조건 충족 시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1순위, 만 22세 이하는 임대보증금(100만원), 전세지원금 무이자 지원, 만 23세 이상은 임대보증금 100	<input type="checkbox"/> 협회 LH임대주택(민간) <input type="checkbox"/> 지원 대상: 소년원 출원생 및 소년보호협회 퇴소생 최장 6년(만 29세까지) <input type="checkbox"/> 단 이 경우 입주자 개인이 아닌 소년보호협회 차원에서 계약·운영	<input type="checkbox"/> 행복주택(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 시세의 60~80% 임대료로 6년(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 거주 <input type="checkbox"/> 청년 전세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 100~200만원 임대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input type="checkbox"/>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거주 가능 <input type="checkbox"/> 청년 매입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 보증금 100~200만원,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 <input type="checkbox"/>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등)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 중 무주택자로 20세 이하는 무이자 지원, 21세 이상은 이자(연 1~2%) 부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는 대출이자 50% 감면, 20세 이후는 기본 6년(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가능,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시 계속 거주 가능 - (청년 매입임대주택) 시세의 40~50%로 임대, 최장 10년 거주 가능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 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 임대 보증금 100만원, 기본 10년(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영구임대주택) 지원 대상 1순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 최대 50년 거주 가능 <input type="checkbox"/> SH 청년매입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 대상, 임대보증금 100만원, 시세의 30% 수준, 기본 6년(최장 20년) 거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원, 전세지원금에 대한 이자(연 1~2%) 부담, 거주 5년 이내는 대출이자 50% 감면 - (청년 매입임대주택) 시세의 40~50%로 임대, 최장 10년 거주 가능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22세 이전까지 무상지원,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한지 5년(군복무 기간 제외) 이내는 대출이자 50% 감면, 무주택 구성원이면 연령이 20세를 초과하여도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재계약 체결 가능 <input type="checkbox"/> SH 청년매입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 쉼터 퇴소 5년 이내 청년 대상, 시세의 30% 수준(대학생·취업준비생은 임대보증금 100~200만원으로 별도 적용), 최초계약기간 2년(최장 6년 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가능 <input type="checkbox"/> 가족사형 청년주택 <input type="checkbox"/> 19~39세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보증금 60만원, 시세의 40% 임대료, 최장 10년 거주 가능 <input type="checkbox"/> 청년월세 특별지원 <input type="checkbox"/>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년간 매월 최대 20만원 지원 <input type="checkbox"/>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input type="checkbox"/> 무주택이면서 가구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34세 세대주에게 보증금 5천만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장기(최장 10년) 저리 대출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input type="checkbox"/>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3년 기준 순자산가액 3.61억 원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등)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p>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증금 2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경우 최대 1억원 이내 연 1.5% 장기(최장 10년) 대출</p> <p><input type="checkbox"/>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p> <p><input type="checkbox"/> 만 19~34세 무주택 단독세대주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4년 기준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증금 6.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경우 최장 10년 5개월 동안 보증금 최대 3.5천만원, 월세 최대 1.2백만원(2년 기준 월 50만원 이내) 대출</p>
	<input type="checkbox"/>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input type="checkbox"/> 만 18~2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생활시설 <input type="checkbox"/> 기본 1년, 필요 시 연장 가능	<input type="checkbox"/> 자립지원시설(청소년자립지원관)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쉼터 등 퇴소(예정) 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19~24세 우선 지원) <input type="checkbox"/> 사례관리는 최장 2년 원칙	<input type="checkbox"/> 자립지원시설(청소년자립생활관) <input type="checkbox"/> 만 12~22세 이하의 청소년(보호 처분 대상자) 자립지원 생활시설 <input type="checkbox"/> 최장 2년 원칙	-
	<input type="checkbox"/> 희망디딤돌센터(삼성전자 기부금) <input type="checkbox"/> 최대 2년간 1인실 원룸 형태의	-	-	-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등)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개별 주거공간 지원+1:1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교육지원	<input type="checkbox"/> 신입생 모집 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의무 모집에 자립준비 청년 포함	-	-	-
	<input type="checkbox"/> 국가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은 청소년쉼터만 해당)		-	<input type="checkbox"/> 국가근로장학금 <input type="checkbox"/> 지급금액: (시급단가) - 교내근로 9,860원/교외 12,220원 <input type="checkbox"/> 학기당 520시간 근로 가능
	<input type="checkbox"/> 국가장학금 <input type="checkbox"/> I 유형: 자립준비청년 성적 기준 미적용 <input type="checkbox"/> II 유형: 우선 지원	<input type="checkbox"/> 국가장학금 <input type="checkbox"/> II 유형: 우선 지원	<input type="checkbox"/> 협회 장학사업(민간) <input type="checkbox"/> 상·하반기 민간사업비 및 후원금으로 소년원 재·출원생 및 협회 입소생 중 선정하여 생활장학금 지급 <input type="checkbox"/> 중·고교생(50만원), 대학생(100만원), 취업준비생(학원실비), 검정고시 합격 격려금(30만원), 각종 자격증 취득 시 격려금(10~20만원)	<input type="checkbox"/> 국가장학금 <input type="checkbox"/> I유형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국내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 지급금액: 지원구간에 따라 연간 최대 350만원~전액 <input type="checkbox"/> II유형 - 국가장학금 II유형 대학 참여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대학별 선발기준 충족자 또는 입학금 폐지 완료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자 - 지급금액: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등)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성적요건 등 완화 가능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학금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아름다운 재단): 연 420만원 <input type="checkbox"/> 희망다솜 장학사업(교보생명): 학점 평균이 4.5만점 기준 3.0점 이상인 경우 학기당 200만원씩 8학기 지원 <input type="checkbox"/> 푸른등대 기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인 경우 학기당 200만원씩 2학기 지원	-	-	-
	<input type="checkbox"/> 행복기숙사 및 각 대학 기숙사 <input type="checkbox"/> 우선 입주 및 기숙사비 일부 지원		-	<input type="checkbox"/> 행복기숙사 <input type="checkbox"/>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 제공
	<input type="checkbox"/> 학자금 대출 <input type="checkbox"/>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생활비(연 400만 원) 무이자 지원 - 학부생의 경우 지원구간에 관계 없이 이용 가능	-	-	<input type="checkbox"/> 학자금 대출 <input type="checkbox"/>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일반 상황 학자금(생활비 대출) - 직전 학기 C학점 이상(신입생은 제한 없음)인 경우 생활비(연 400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등)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만 원 및 등록금 대출연 1.7% 고정 금리)
	□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포함		-	<input type="checkbox"/> 파란사다리 사업 <input type="checkbox"/> 국내 대학 재학생 중 경제적·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해외연수 제공
일자리, 취업지원	<input type="checkbox"/> 국민취업지원제도 <input type="checkbox"/> II유형에 포함 <input type="checkbox"/>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자립지원 전담기관 간 협업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input type="checkbox"/> 국민취업지원제도 <input type="checkbox"/> II유형에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포함	<input type="checkbox"/> 협회 상상드림카페(민간) <input type="checkbox"/> 지원내용: 보호처분 대상자 중 바리스타 현장 경험이 필요한 사람 <input type="checkbox"/> 훈련비, 교통비, 학습교재 및 바리스타 시험 응시료 등 지원	<input type="checkbox"/> 국민취업지원제도 <input type="checkbox"/> 지원내용: 일 경험·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참여 시 구직 촉진수당(I유형)이나 취업활동비용(II유형) 지급 - (구직촉진수당)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지급 - (취업활동비용) 최대 200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50만원) 또는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지급 <input type="checkbox"/> 지원 대상 - (I유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중 취업경험이 있는 자(요건 심사형), 청년(18~34세) 중 요건 심사형 미해당자이며 가구 기준 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로 취업 경험 무관(선발형)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등)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자립준비청년, 위기 청소년), 청년 지원
	-	-	-	<input type="checkbox"/> 창업성공패키지 ○ 만 39세 이하이면서 (예비) 창업 3년 이하 기업 대표자에게 청년 기술창업 원스톱 패키지 지원
<input type="checkbox"/> 국민내일배움카드 ○ 3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는 현행 훈련비 지원 비용에 200만원 추가지원 가능 ○ 훈련비 중 일부 자부담비 없음	-	-	-	<input type="checkbox"/>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희망자에게 훈련비 1인당 3백~5백만원까지, 훈련비의 45 ~ 85% 지원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 훈련장려금(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월 최대 11.6만원) 지급
<input type="checkbox"/> 청년도전지원사업 ○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또는 보호연장 청년 포함	<input type="checkbox"/> 청년도전지원사업 ○ 지원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포함	<input type="checkbox"/> 청년도전지원사업 ○ 지원 대상에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포함	<input type="checkbox"/> 청년도전지원사업 ○ 지원 대상에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포함	<input type="checkbox"/> 청년도전지원사업 ○ 지원내용: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참여 시 참여기간에 따라 참여 수당 최대 300만원 지급 → (아수 시)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등)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 지원 대상: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등이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자
	<input type="checkbox"/>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자립준비청년은 실업기간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input type="checkbox"/>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은 실업기간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	<input type="checkbox"/>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내용: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최초 1년은 월 60만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지원 대상: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 우대 선발		-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10.1.~2024.9.30. 기간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등)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중 정규직으로 취업,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급
	<input type="checkbox"/> 미래내일 일 경험 사업 <input type="checkbox"/>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기업 탐방 등 특화과정 설계·운영	<input type="checkbox"/> 미래내일 일 경험 사업 <input type="checkbox"/> 기업탐방형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포함 <input type="checkbox"/> 참여자 1인당 5만원 수당 지급 가 능(여기부 사업비로 별도 지원)	-	<input type="checkbox"/> 미래내일 일 경험 사업 <input type="checkbox"/>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일 경험 프로그램(프로젝트형(2개 월 이내 월 30만원 참여수당), 인 턴형(1~5개월 주 35만원 지원), ESG지원형(6개월 이내), 기업탐 방형(5일 내외)) 제공
	-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취업 우선지원 <input type="checkbox"/> 지원 대상: 청소년복지시설 입· 퇴소 청소년(1년 이상) 중 만 34세 이하인 자 <input type="checkbox"/> 지원내용: 취약계층에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취업 기회 및 사회서비스 제공	-	<input type="checkbox"/> 대학일자리센터 <input type="checkbox"/> 본교가 아니더라도 61개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서비스(진로· 취업·창업 상담, 취업박람회·취업 컨설팅 등 프로그램 참여) 이용 가능
	-	-	-	<input type="checkbox"/> CAP@(케파)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만 34세 이하 취업준비생을 대상 으로 구직기술 강화 및 취업준비계 획 수립 지원 프로그램
	-	-	-	<input type="checkbox"/>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input type="checkbox"/> 구직자에게 직무 역량 진단, 경력 설계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등)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	<input type="checkbox"/> 이디야커피 6개월 유급 인턴(인턴 급여 70%는 SK, 30%는 이디야 부담) <input type="checkbox"/> 시설인근기업 인턴(SK가 인턴십 급여 70% 지원) <input type="checkbox"/> 삼성희망디딤돌 2.0 교육 참여 <input type="checkbox"/> 제과/제빵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금형기능사 등 무료 교육 <input type="checkbox"/> 교육훈련 지원금 월 60만원 지급, 무료 숙식 제공 <input type="checkbox"/> 수료 후 삼성 관계사 및 협력사 채용 연계	-	-
자립지원 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통합적 자립지원 정보안내체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플랫폼(자립정보 on) 운영 - 자립지원제도 및 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카카오톡 채널 운영 - 자립정보 제공, 신규정보 알림 등	<input type="checkbox"/> 내 손안의 자립지원 정보 <input type="checkbox"/> '자립해냄' 모바일 앱 운영 - 이용자의 현재 위치에 기반하여 청소년쉼터를 검색하고 해당 청소년 쉼터의 상세정보와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 자립 및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11개* 유형으로 제공하고 자립준비 수준 자가 진단 가능 * 11개 요인: 자립의지, 주거관리, 일상생활기술, 음식관리, 직업준비, 직장적응, 경제관리, 사회기술,	<input type="checkbox"/>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자립 안내 <input type="checkbox"/> 전국 소년원, 보호관찰소를 통한 자립지원 정보 제공	-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등)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자원활동, 건강관리, 성보호 - 온라인 채팅, 전화, 문자, 카카오톡 채팅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실시간으로 전문가 상담 가능		
상담지원	<input type="checkbox"/>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우선지원 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input type="checkbox"/> 본인 부담금 면제	-	-	<input type="checkbox"/>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대상: 만 19세~34세 청년, 소득 기준 없음 <input type="checkbox"/> 심리 서비스(총 10회: 사전·사후 검사, 상담서비스 8회, 종결상담 1회) 제공, 본인부담금 10%(6~7만원) <input type="checkbox"/> '24년 7월부터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지원사업으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지원사업('24년 7월부터 시행) <input type="checkbox"/> 대상: 기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 <input type="checkbox"/> 지원내용: 심리상담 제공 <input type="checkbox"/> 자살예방 지원 <input type="checkbox"/> 전 국민 대상 치료, 재활서비스 제공,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심리·정서 지지 상담 등 제공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 지원 <input type="checkbox"/>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상담, 정보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등)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제공 등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input type="checkbox"/>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 <input type="checkbox"/>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23년 180명→'24년 230명) 및 차우개선 (1인당 담당 청년 수 약 43명)	-	-	-
	<input type="checkbox"/>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input type="checkbox"/> 전화(1588-2455)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으로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고민상담, 자립 정보, 노하우 등 제공	-	-	-
	<input type="checkbox"/> 자조모임 및 멘토링 활동 <input type="checkbox"/> 각 시·도 전담기관에서 '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23년 신규 위촉 107명) 및 활동비(월 10만원) 제공	-	<input type="checkbox"/> 협회 소속기관(민간) <input type="checkbox"/> 소속기관별 자원봉사자 연계 또는 멘토링 운영으로 입주생 대인관계 기술 지원 및 사회화 지원	-
기타	-	-	-	<input type="checkbox"/> 문화누리카드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연간 개인당 11만원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 지원 <input type="checkbox"/> 긴급복지 지원제도 <input type="checkbox"/>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 복지 서비스를 72시간 내에 신속 지원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등) 퇴소청년	소년원 출원 청년	청년 전체
	<input type="checkbox"/> 병역 감면 <input type="radio"/> 아동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5년 이상 보호한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	-	-
	-	<input type="checkbox"/> 행복도시락(현재 종료) <input type="radio"/> 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 250명 대상 주 3식 도시락 주 1회 배송 (SK 후원)	-	-

* 주: 운영처리 부분은 국비 및 지자체 지원 없이 민간 후원금을 바탕으로 한 지원내용임.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년기본법. <https://www.law.go.kr/> 2024년 10월 10일 검색.

교육부 홈페이지. 2024 파란사다리 사업 참여대학 모집 공고.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61&boardSeq=9817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502&opType=N>에서 2024년 5월 2일 검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24학년도부터 대학 모집인원 10% 이상 사회적배려 대상자 선발'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7486>에서 2024년 5월 2일 검색.

보건복지부(2024).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211&tag=&nPage=1에서 2024년 4월 29일 검색.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결과 공고.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200&bid=0003&act=view&list_no=1481293에서 2024년 5월 7일 검색.

아동권리보장원(2024). 2024 자립정보북- 같이 서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여성가족부(2024).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II).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온통청년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에서 2024년 5월 2일 검색.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s://www.lh.or.kr/main/>에서 2024년 5월 3일 검색.

한국소년보호협회(2024). 보호사업팀 장학사업 결과보고서(내부자료).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https://www.kjpa.or.kr/>에서 2024년 5월 8일 검색.

2) 자립지원 정책의 쟁점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제도 중 최근에 개선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모두 지원 대상의 확대에 관련된 것이다. 첫째는 아동보호에서 18세 이후에 종료되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자립수당을 15세에서 18세 이전에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¹⁷⁾ 즉, 아동보호를 받았으나 전원 등으로 인해 청소년쉼터나 소년원에서 아동기를 마쳤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둘째는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에게만 적용되던 자립지원 역시 자립지원관과 회복지원시설과 같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에게도 확대 적용된 점이다(여성가족부, 2024). 이 역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일부 시설퇴소청년들에게 자립지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럼에도 시설퇴소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퇴소시설 유형에 따라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이는 각 시설들의 유형에 따라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소년법」 등 제각각의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며 소관부처들도 복지부, 여가부, 법무부 등으로 각각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소시설에 상관없이 상당수의 시설퇴소청년들은 자립기반이 매우 빈약하여 정부의 자립지원이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립지원이 개인의 자립기반 수준이 아니라 퇴소시설 유형에 기초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시설 유형에 따른 격차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자립수당이다.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들은 월 50만원이 지급되지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들은 그보다 10만원 적은 월 40만원이 지급되며 소년원 퇴소청년들은 가정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국가가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그 외에도 주거지원이나 의료·심리지원, 교육지원 등의 영역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경우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제도가 거의 없다시피 하며 그나마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민간 후원을 받아 자립이 필요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시설퇴소청년들에게 대한 지원은 민간 지원에서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퇴소시설 유형에 따라 생기는 사회적 편견이나 홍보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경우는 비행이나 범죄이력 등으로 인해 자립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도 공적 지원뿐 아니라

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월 50만원 지원 받는다'.
<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925672>에서 2024년 4월 26일 검색.

민간 후원에서도 부정적 시각을 받거나 실제 후원 모금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재범 예방 및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지원이 절실하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지원은 시설 유형별 격차 외에도 대부분의 지원이 신청 주위에 기반하여 제공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 중에는 낮은 문해력이나 의욕 저하, 정보활용 능력 부족, 사회적 관계 단절 등과 같이 다양한 문제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보거나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시설퇴소청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청년들일수록 제도에 대한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등의 부족으로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지원내용에 대한 쉬운 안내 및 절차의 간소화 등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종사자나 지역사회 내 복지사의 신청 안내 및 대행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현재는 이와 같은 서비스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지원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정보접근성이 부족하여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미처 포함되지 못한 청년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3장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 : 3차 년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1. 조사개요
- 2. 3차 년도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 분석
- 3. 소결 및 시사점

3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 : 3차 년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¹⁸⁾

1. 조사개요

1) 조사개요

본 조사는 지난 1, 2차 년도 조사와 같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설퇴소 후 자립과정에서의 경험 및 삶의 변화, 지원에 대한 요구, 지원제도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고, 시설퇴소청년들의 건강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3개년간의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자립준비청년의 각 영역별 생활 실태, 자립연차에 따른 자립과정 및 생활 실태 변화, 지원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개선 및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총 3개년 조사로 설계되었으며, '22년 1차 년도 조사에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2,457명을 대상으로 '자립준비청년 1차 년도 코호트'를 구성하였다. 각 년도별 목표 표본 수는 2,500명으로 설정하였으며, 표본이 유실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2차 년도부터는 유실인원을 신규 표본으로 표본을 대체하여 각 년도별 표본이 동일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본유지율은 기관적격대상자 조사성공률, 기관별 조사협조를 위한 접촉빈도, 향후 조사참여 희망 여부, 기존 표본의 군입대 가능성, 유사 기관조사 협조율 등을 반영하여 60% 수준을 목표로 하였다. '23년 2차 년도 조사에는 1차 년도 표본 1,565명과 2차 년도 신규 표본 933명 등 총 2,498명이 조사에 참여하였고(표본유지율 62.7%), '24년 3차 년도 조사는 1, 2차 년도 코호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실된 인원은 신규 표본으로 대체하였다.

18) 본 장은 김승경 선임연구위원과 백혜정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2) 조사참여자

조사에 참여한 대상은 '시설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19~34세 청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들은 퇴소시설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보호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자립지원의 대상인 자립준비청소년
- 「소년법」상 소년보호시설 퇴소 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시설 및 기관 (예: 자립생활관)에서 자립을 지원받는 만 19세 이상 자립준비청년

이들은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연령 범주(19~34세) 내에 있으면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을 이용한 후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로, 각 집단별 조사참여자 선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은 <표 III-1>과 같다. 이들은 부모의 보호력 부재로 인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사회·심리적 특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성을 나타내어 공적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라는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근거법령이나 소관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립과정에 필요한 지원체제와 지원 내용이 상이하게 제공되어 실질적인 자립지원 수혜 효과 및 자립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 집단 청년들의 생활 실태 및 자립과정을 조사하여 유사취약청년 간 차이를 규명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표 III-1. 조사대상 선정 기준

관련 법령	담당 기관	조사대상
아동복지법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양육시설 등	해당 기관에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보호종료 5년차 이내 자립준비청년 - 우선순위: 보호종료 연차가 적은 청년, 자립수당 수급 청년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 등	해당 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자립준비청년 - 사례/사후관리 청년, 자립지원수당 수급 청년 포함
소년법	청소년자립생활관, 창업비전센터 등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출원한 경험이 있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생활관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자립준비청년

* 출처: 김지연, 백해정, 김미향 (2022).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다만 조사대상의 특성상 모집단의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표집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차년도 표본 선정 과정에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협의한 의견에 따라 목표 표본 수를 2,500명으로 유지하였다. 하위집단별로는 「아동복지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은 1,950명,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자립준비청년은 400명, 「소년법」상 자립준비청년은 150명으로 목표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2022). 표본유지율은 60%를 목표로 하였으며, 1, 2차년도 연구참여자를 먼저 접촉하고, 부족분에 대해 신규 표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각년도 자립준비청년은 모집단의 규모를 고려하여 「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 1,950명,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자립준비청년 400명, 「소년법」상 자립준비청년 150명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다만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성이 낮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패널 유지 및 조사대상자 섭외가 쉽지 않았으나 최대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차년도 조사 완료 시 설문 완료 청년은 2,674명으로, 목표(2,500명) 대비 107% 수준이었으며 기존패널 유지율은 68%였다. 이 중 불성실 및 중복 응답을 제외한 최종 응답자는 총 2,661명이었으며, 「아동복지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1,984명,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자립준비청년 554명, 「소년법」상 자립준비청년은 123명이었으며, 최종 패널 유지율은 63.7%였다.

표 III-2. 연도별 응답자 구성 및 패널유지율

년도	「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자립준비청년	「소년법」상 자립준비청년	총인원	패널유지율
1차년도	1,866	467	124	2,457	-
2차년도	1,827	554	117	2,498	62.7
3차년도	1,984	554	123	2,661	63.7

3) 조사지 개발 및 문항

(1) 조사지 개발 과정

조사지 개발 과정은 [그림 III -1]과 같다. 연구진 회의를 통해 1, 2차년도 조사문항 및 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조사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문항 추가 및 수정을

위해 청년 관련 조사지들을 검토하였으며, 1차 년도에 계획한 바와 같이 자립준비청년의 여가, 문화 및 가치관과 미래인식 영역의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청년 삶 실태조사와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2) 등의 조사지도 함께 검토하였다.

조사지는 1, 2차 년도와 마찬가지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실태 및 자립과정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진 회의를 통해 1, 2차 년도 조사 문항 중 반복조사가 필요한 문항을 검토하여 3차 년도 조사문항에 포함하였고, 각 퇴소시설별 청년들 간의 생활 실태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청년 삶 실태조사,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등의 문항을 활용하여 일반청년의 생활 실태와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조사지 초안은 수차례에 걸친 연구진 회의 및 조사업체의 검토를 통해 수정되었으며, 연구원 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조사계획 및 내용에 생명윤리 관련 문제가 없음을 승인받아 최종 조사지를 확정하였다(승인번호 202404-HR-고유-005). 또한 최종 조사지는 조사대상의 응답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조사(CAMI/CAWI)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수차례의 연구진 회의 및 조사업체의 검토를 통해 로직 확인을 완료한 후 5월 둘째 주부터 7월 첫째 주까지 2개월 간 실사를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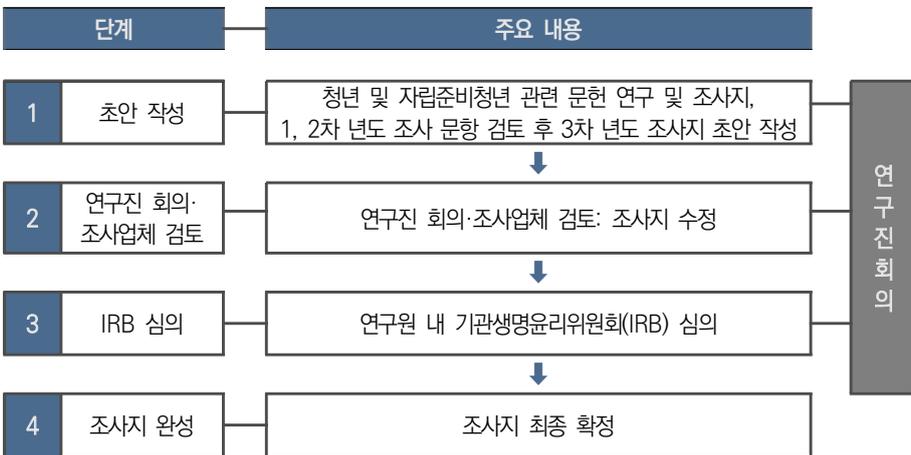


그림 III-1. 조사지 개발 과정

(2) 조사 영역 및 문항

3차 년도 조사는 총 7개 영역, 5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1차 년도 조사가 7개 영역 총 68문항, 2차 년도 조사가 7개 영역 총 70문항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영역 수는 동일하지만 문항 수가 다소 축소되었다. 각 년도별 조사 영역은 아래 <표 III-3>과 같다.

1차 년도 조사에서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교육과 훈련 경험, 경제 상태 및 근로 현황, 신체·정신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관계, 청년 대상 정책지원 수혜 경험 및 요구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특히 교육 및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영역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 정도와 참여 의향을, 심리·정서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기 동안의 부정적 생활사 경험, 스트레스 및 코로나19 상황 등에 대한 경험을, 서비스 이용 및 요구 영역에서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용 여부 및 지원요구 등을 중점적으로 질문하였다(김지연 외, 2022).¹⁹⁾

2차 년도 조사에서는 1차 년도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다양한 청년활동 참여 및 사회·미래에 대한 인식 영역이 추가되었다. 또한 가족돌봄 정도, 식생활 건강 등 생활 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이 추가되었다(백혜정 외, 2023).

표 III-3. 각 년도별 조사 영역의 구성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성인의 의미	일반사항*	일반사항*
교육 및 훈련	교육·훈련	고용
경제와 고용	고용	경제
주거	경제	주거
건강 및 심리·정서	주거	건강 및 심리·정서
관계 및 참여	건강 및 심리·정서	여가, 문화
서비스 이용 및 요구	관계 및 참여	가치관 및 미래인식
일반사항*	사회인식·미래설계	자립역량

* 일반사항은 영역 수에서 제외함.

19) 이와 같은 내용은 2차 년도 조사에서는 제외되었음.

3차 년도 조사에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여가 및 문화 활동을 향유하는 경험에 있어 일반청년들과 차이가 있는지, 자립수당 수급 및 각종 공적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가 및 문화 활동 영역을 추가하였고, 자립역량 영역을 추가하였다. 또한 다중취약청년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청년, 가족돌봄청년, 빈곤청년, 열악한 근로환경청년, 불안정고용청년, 구직단념청년, 과채무부담청년, 신용불량청년 등 다양한 취약청년 식별문항을 추가하였다.

표 III-4. '24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I. 일반 사항	인적 사항	• 이름	• 문1 (문1-1)	
		• 생년월일	• 문1-2 (문1-2-1)	기존 선문1 수정
		• 성별	• 문2 (문2-1)	기존 배문1
		• 거주 지역	• 문3 (문3-1)	기존 배문2
	동거가족	• 현재 동거가족 및 지인	• 문4~문4-2	기존 문22~문22-1 수정
		• 맞벌이 여부	• 문4-3	첫출발 문6 수정
	돌봄가족	• 돌봄 필요 가구원 여부	• 문5~문5-1	청년 삶 문A11~ 문A12 수정
		• 돌봄 필요 가구원에 대한 책임 정도	• 문5-2	연구진 개발
	이주배경	• 이주배경 여부	• 문6	연구진 개발
	교육수준	• 최종학력	• 문7 (문7-1)	기존 문2 수정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	•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 문8, 문8-1	청년 삶 문A-9, 문A9-1 수정	

* ()로 표시한 문항번호는 1,2차 년도 참여 패널 대상 문항임.

* 출처:

1. 건강관: 임희진, 황여정, 유성렬 (202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I: 후기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기존: 김지연 외 (2022). 청년종합연구 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첫출발: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 (2023).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청년 삶: 정세정 외 (202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II-5. '24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고용)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II. 고용	지난 주 근로 경험	•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 문9	첫출발 문28 수정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 지난 주 일자리 개수	• 문10	기존 문24-3 수정	
		• 지난 주 주된 일자리 상세	• 문11	기존 문25 수정	
		• 고용 형태	• 문12	기존 문25-3 첫출발 문29(5)	수정
		• 근로시간 형태	• 문12-1	기존 문25-3 첫출발 문29(5)	수정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문12-2	청년 삶 문E3-2 수정	
		• 주휴수당 수령 여부	• 문12-3	청년 삶 문E4 수정	
		•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 문13	기존 문28-1	
지난 1년 근로 경험		• (신규) 지난 1년간 일한 경험	• 문14	연구진 개발	
		• (신규) 지난 1년간 주된 근로 형태	• 문14-1	기존 문25-3 첫출발 문29(5)	수정
		• (신규) 지난 1년간 이직경험	• 문14-2	연구진 개발	
		• (신규) 지난 1년간 2개 이상 일자리 개수	• 문14-3	연구진 개발	
구직		• 지금까지 일자리를 가져 본 경험	• 문5	기존 문29 수정	
		• 일을 그만둔 시기 및 그 이유	• 문15-1, 15-2	청년 삶 문E18-1, 문E18-2 수정	
		• 한 달간 구직 경험 여부	• 문16	기존 문29-1	
		•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 문16-1	기존 문30-1 수정	
직장 내 경험		• 직장 내 산업안전 경험	• 문17	기존 문32 수정	
NEET 경험		• NEET 경험 여부	• 문18 (문18-1, 문18-2)	기존 문31 수정	
		• NEET 경험 기간	• 문18-3 (문18-4, 문18-5)	기존 문31-1 수정	
무소득 실직		• 소득 없이 쉬 경험 여부	• 문19	청년 삶 문E20	

* ()로 표시한 문항번호는 1,2차년도 참여 패널 대상 문항임.

* 출처:

1. 건강권 침해진 외 (202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I: 후기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기존: 김지연 외 (2022). 청년종합연구 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 외 (2022). 2023년 시설청소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첫출발: 김기현 외 (2023).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청년 삶: 정세정 외 (202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II-6. '24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경제)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III. 경제	소득	• 현재 소득이 있는 가구원	• 문20	연구진 개발	
		• 개인(가구) 월평균 소득	• 문21	청년 삶 문H2 수정	
		• 한 달 평균 항목별 지출액	• 문22	기존 문13-2, 청년 삶 문H1	수정
		• (신규)가족구성원 돌봄을 위한 정가적 생활비 지급 여부	• 문22-1	연구진 개발	
	채무	• 현재 갚아야 할 채무 여부	• 문23 (문23-1)	기존 문14 수정	
		• 채무 발생 이유 및 금액	• 문23-2	기존 문14-1 수정	
		• (신규) 돈을 빌린 기관 수	• 문23-3	연구진 개발	
		•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 문23-4	청년 삶 문H3-1-1	
		•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 여부	• 문23-4-1	기존 문16	
	저축	• 월평균 저축 금액	• 문24	연구진 개발	
소득수준	• 가구 소득수준	• 문25	기존 배문3		
경제적 어려움	•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출 못한 경험	• 문26	기존(22) 문17		

* ()로 표시한 문항번호는 1,2차 년도 참여 패널 대상 문항임.

* 출처:

1. 건강권: 임희진 외 (202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I: 후기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기존: 김지연 외 (2022). 청년중합연구 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해정 외 (2022). 2023년 시설외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첫출발: 김기현 외 (2023).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청년 삶: 정세정 외 (202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II-7. '24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주거)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IV. 주거	기관생활 경험	• (신규) 항목별 장소에서 생활 여부 및 기관 수, 총 생활 기간	• 문27, 문27-1, 문27-1	연구진 개발, 청년 삶 문B17 수정(생활 여부)
		• 가장 최근까지 생활했던 기관	• 문27-3	연구진개발
	현재 주거 여건	• 현재 주택 점유 형태	• 문28	청년 삶 문B4 수정
		• 현재 주거비용 마련 방법	• 문28-1	기존 문37-6
		• 현재 주거 유형	• 문29	청년 삶 문B6 수정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 현재 주거지에서서의 거주기간	• 문29-1	건강권 문39 청년 삶 문B16 수정
		• 경제적 이유로 냉난방 어려움 경험 여부	• 문30	
		• 경제적 이유로 임대 관련 어려움 경험 여부	• 문31	
	주거지원 제도	• 현재 주거상항지원 사업 참여 여부 및 미이용 이유	• 문32, 문32-1	연구진 개발 기존 문38-1 수정

* () 로 표시한 문항번호는 1,2차년도 참여 패널 대상 문항임.

* 출처:

1. 건강권: 임희진 외 (202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I: 후기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기존: 김지연 외 (2022). 청년종합연구 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해정 외 (2022). 2023년 시설청소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첫출발: 김기현 외 (2023).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청년 삶: 정세경 외 (202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II-8. '24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건강 및 심리·정서)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V. 건강 및 심리·정서	건강검진	•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 수검 여부	• 문33	기존 문41
		• 최근 1년 동안 구강검진 수검 여부	• 문34	기존 문42
	식생활	• 하루 평균 식사 횟수	• 문35	연구진 개발
	우울	• 우울	• 문36	기존 문47
		• 우울로 인한 어려움 정도	• 문36-1	기존 문47-1
	고립	• 고립감 정도	• 문37	첫출발 문71
		• 고립감을 느낀 기간	• 문37-1	첫출발 문72
	은둔	• 은둔 경험 여부 및 기간, 은둔 이유	• 문38, 38-1, 38-2	첫출발 문74 수정 첫출발 문74-1 기존 문52-2 수정
	자해	• 자해 시도 여부	• 문39	연구진 개발
	정신 건강 상담·치료	• 정신건강 상담(진료) 여부 및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	• 문40, 40-1	청년 삶 문C12 청년 삶 문C12-1 수정
		• 심리·정서 문제 약물 복용 여부 및 의사처방 여부	• 문41, 41-1	청년 삶 문C13 수정 청년 삶 문C13-1
	장애	• 장애 여부	• 문42 (문42-1)	기존 문44 수정
		•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 문42-2	기존 문44-1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질병치료	• 최근 1년 동안 신체·정신건강 문제 여부	• 문43	청년 삶 문C15 수정
		• 최근 1년 동안 건강 문제 치료 유무	• 문43-1	기존 문43-1
		•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 문43-1-1	기존 문43-2 수정
		• (신규) 지난 1년간 의료비	• 문43-2	연구진 개발
		• 건강보험료 미납·연체 여부 및 이유	• 문44, 문44-1	연구진 개발
	주관적 건강	•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 문45	기존 문46

* ()로 표시한 문항번호는 1,2차년도 참여 패널 대상 문항임.

* 출처:

1. 건강관: 임희진 외(202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I: 후기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기존: 김지연 외(2022). 청년종합연구 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 외(2022). 2023년 시설청소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첫출발: 김기현 외(2023).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청년 삶: 정세정 외(202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II-9. '24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여가, 문화)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VI. 여가, 문화	여가활동	• (신규) 최근 1년간 여가활동 경험, 활동 안(못)한 이유	• 문46, 문46-1~46-4	청년 삶 F5-1~ F5-3
		• (신규) 일(학업)과 여가생활 간 균형	• 문47	가치관 문13
		• 여가 활용 희망 방법	• 문48	가치관 문14

* ()로 표시한 문항번호는 1,2차년도 참여 패널 대상 문항임.

* 출처:

1. 건강관: 임희진 외 (202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I: 후기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기존: 김지연 외 (2022). 청년종합연구 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 외 (2022). 2023년 시설청소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첫출발: 김기현 외 (2023).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청년 삶: 정세정 외 (202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II-10. '24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가치관 및 미래인식)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Ⅶ. 가치관 및 미래인식	만족도	• 삶 만족도	• 문49	기존 문49 수정
		• (신규) 행복도	• 문50	청년 삶 G2
	미래계획	• 바라는 미래의 실현 정도	• 문51	청년 삶 문G15 수정
		• 항목별 미래를 위한 중요도 정도	• 문52	청년 삶 문G16 수정

* ()로 표시한 문항번호는 1,2차년도 참여 패널 대상 문항임.

* 출처:

1. 건강관: 임희진 외(202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Ⅲ: 후기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기존: 김지연 외(2022). 청년종합연구 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 외(2022).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첫출발: 김기현 외(2023).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청년 삶: 정세정 외(202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II-11. '24년도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자립역량)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번호	출처
Ⅷ. 자립 역량	자립지원 기간 및 급여 수급 여부	• 자립지원 기간	• 문53 (문53-1)	기존 문65-1 수정
		• 시설퇴소 이후 자립지원 총 기간	• 문53-2	연구진 개발
		• 자립수당 수급 여부, 수급 기간, 생활변화, 주 지출항목	• 문54	연구진 개발
		• 자립수당 수급기간	• 문54-1	연구진 개발
		• 자립수당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	• 문54-2	연구진 개발
		• 자립수당 주 지출항목	• 문54-3	연구진 개발
	자립수준	• (신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 요청 가능한 사람	• 문55	가치관 문18
		• 자립수준	• 문56	연구진 개발

* ()로 표시한 문항번호는 1,2차년도 참여 패널 대상 문항임.

* 출처:

1. 건강관: 임희진 외(202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Ⅲ: 후기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기존: 김지연 외(2022). 청년종합연구 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 외(2022).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첫출발: 김기현 외(2023).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청년 삶: 정세정 외(202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분석방법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실태를 영역별로 파악하고 실태조사와 공공데이터의 가명정보 결합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기본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χ^2 검증), 평균비교분석(t-test, ANOVA),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일부 항목의 경우 일반청년들과의 비교를 위해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에 참여한 청년 자료 중 29세 이하 청년의 응답값을 활용하였다.

2. 3차 년도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 분석

1) 일반사항

(1) 일반적인 특성

3차 년도 조사참여자로 확정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은 총 2,661명이고, 이 중 1, 2차 년도 조사에 참여하였던 청년은 1,696명으로 표본유지율은 63.7%였다. 퇴소시설 유형별 규모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이 1,984명(74.6%),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이 554명(20.8%), 「소년법」상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이 123명(4.6%)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은 중앙지원기관 및 지원전담기관, 자립준비청년 단체, 지원기관 및 시설 등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조사 시작 전 조사 참여에 스스로 동의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3.0세였고 성별은 남성 1,273명(47.8%), 여자 1,388명(52.2%)이었다. 학력은 대학 재학 이상인 경우가 66.6%였고, 자립지원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가 78.5%였다. 퇴소시설은 아동복지시설(74.6%)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청소년복지시설(20.8%), 소년보호시설(4.6%)의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대도시인 경우가 49.1%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가 47.3%로 전체의 96% 이상이 도시지역 거주자였다.

자신의 주관적 경제수준에 대해서는 '하'로 인식하는 참여자가 60.1%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중(33.9%)이었으며, '상'으로 인식한 경우는 6.0%에 불과하였다. 이주배경 여부에 대해서는 이주배경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2,481명(93.2%)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모르겠다는 응답이 115명(4.3%), 이주배경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5명(2.4%)의 순이었다.

표 Ⅲ-12. 조사참여자 특성: 일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명)	비율	구분		사례 수(명)	비율
패널 유형	기존 패널	1,696	63.7	성별	남성	1,273	47.8
	신규 패널	965	36.3		여성	1,388	52.2
학력	고졸 이하	890	33.4	자립지원 기간	3년 미만	2,079	78.5
	대재 이상	1,771	66.6		3년 이상	568	21.3
퇴소시설	이동복지시설	1,984	74.6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1,306	49.1
	청년복지시설	554	20.8		중소도시	1,259	47.3
	소년보호시설	123	4.6		읍면지역	96	3.6
주관적 경제 수준	상	160	6.0	이주배경	예	65	2.4
	중	902	33.9		아니오	2,481	93.2
	하	1,599	60.1		모르겠음	115	4.3

(2) 동거가족

가족과의 동거 여부를 살펴본 결과 청년 혼자 살고 있는 경우(1인 가구)가 1,917명(72.0%)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미혼이면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169명(6.4%), 청년 부부 72명(2.7%), 청년 부부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가 39명(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는 1인 가구 1,917명(72.0%)에 이어 2인 가구 367명(13.8%), 3인 가구 150명(5.6%) 등의 순이었으며 6인 가구 이상인 경우가 113명(4.2%)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조사참여자 특성: 동거가족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명)	비율	구분		사례 수 (명)	비율
동거 가족 구성	혼자 살고 있음 (청년 1인 가구)	1,917	72.0	가족 수	1인 가구	1,917	72.0
	청년 부부	72	2.7		2인 가구	367	13.8
	청년 부부+자녀	39	1.5		3인 가구	150	5.6
	청년(한부모)+자녀	5	0.2		4인 가구	74	2.8
	미혼+부모 동거	169	6.4		5인 가구	40	1.5
	청년+자녀+부모 동거	2	0.1		6인 가구 이상	113	4.2
	기타	457	17.2				



그림 III-2. 동거가족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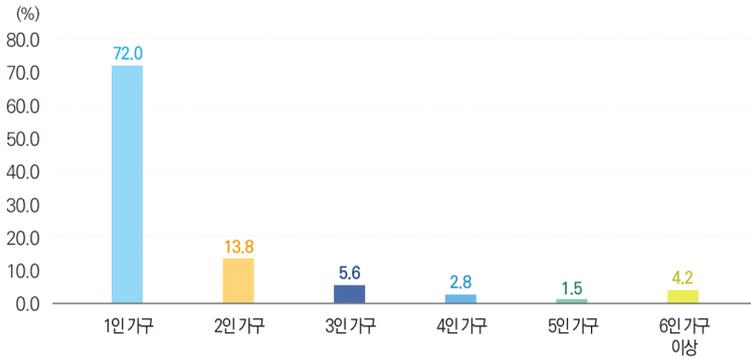


그림 III-3. 동거가족 수

(3)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 함께 사는 사람 중에 신체적·정신적·노령으로 계속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대상자의 7.1%였다. 이들 중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을 주로 자신이 돌본다고 응답한 경우는 33.9%로 동거인 중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는 경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은 친인척 및 조부모가 28.6%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부모(24.3%), 배우자(10.1%) 등의 순이었다.

표 III-14. 동거인 중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 및 돌봄 대상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명)	비율	구분	사례 수(명)	비율	
계속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	있음	189	7.1	돌봄 대상	부모	46	24.3
	없음	555	20.9		친인척, 조부모	54	28.6
본인의 돌봄 비중	주로 내가 돌봄	64	33.9		배우자	19	10.1
	필요한 경우에만 돌봄	62	32.8		친구, 선후배 등	15	7.9
	거의 돌보지 않음	63	33.3		기타	55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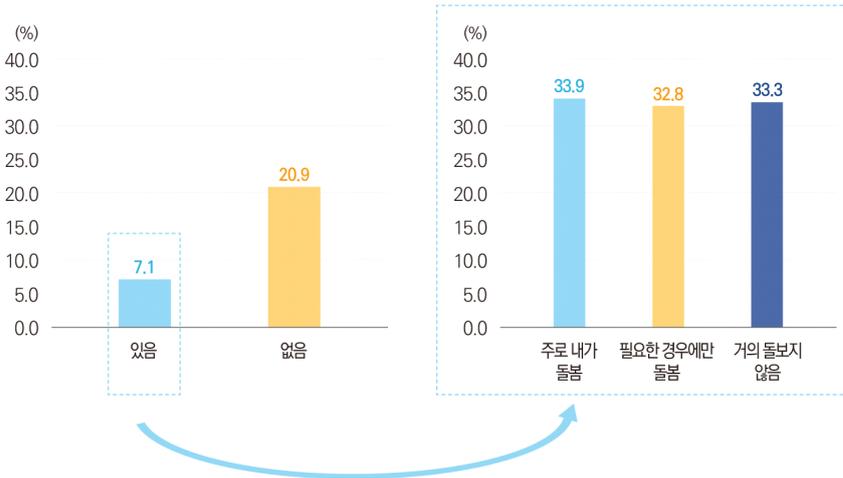


그림 III-4. 동거인 중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 여부 및 본인의 돌봄 비중

(4) 사회보장급여 수급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생계급여는 39.0%에서 38.5%로 0.5%p 감소했고, 의료급여는 31.2%에서 30.1%로 1.1%p, 주거급여는 32.7%에서 30.5%로 2.2%p 감소하였다.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는 학력, 퇴소시설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 비수도권 거주 청년, 아동시설 퇴소청년에게서 유의미하게 수급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15.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비수급	χ^2 검증	수급	비수급	χ^2 검증	수급	비수급	χ^2 검증	
'23 시설 퇴소청년	2,498	39.0	61.0	-	31.2	68.8	-	32.7	67.3	-	
'24 시설 퇴소청년	2,661	38.5	61.5	-	30.1	69.9	-	30.5	69.5	-	
학력	고졸 이하	890	29.9	70.1	42.072 ***	20.9	79.1	53.825 ***	21.6	78.4	50.039 ***
	대재 이상	1,771	42.9	57.1		34.7	65.3		35.0	65.0	
퇴소 시설	아동 시설	1,984	44.6	55.4	122.041 ***	34.3	65.7	64.533 ***	34.0	66.0	46.594 ***
	청소년 시설	554	20.6	79.4		17.9	82.1		20.6	79.4	
	보호 시설	123	21.1	78.9		17.9	82.1		17.9	82.1	

* α .05, ** α .01, *** α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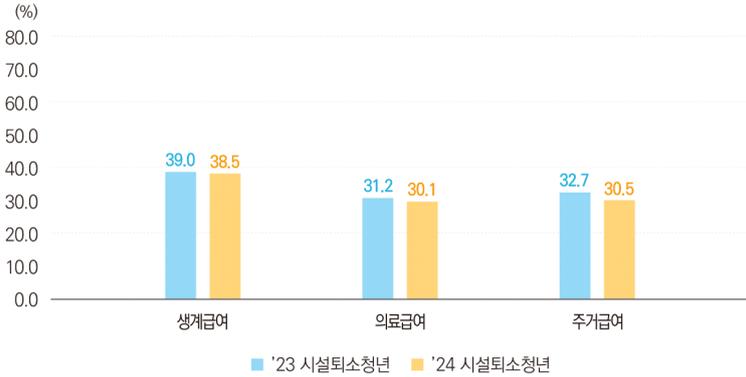


그림 III-5. 사회보장급여 수급 비율: 연도별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의 기초생활급여 수급 비율이 높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대학 재학과 대학 휴학 및 졸업 이상으로 구분한 결과는 <표 III-16>와 같다. 대학에 재학 중인 시설퇴소청년들의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이나 대학 휴학 및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에 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수급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의 학력이나 대학 휴학 및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의 경우 학업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거나 전일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반면,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은 학업을 유지하고 있어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생활급여에 보다 의존하고 있는 상황일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전체 시설퇴소청년들 중 대학에 재학 중인 시설퇴소청년들의 비수도권 거주 비율(수도권 거주 17.1%, 비수도권 23.7%)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수도권 청년들의 기초생활급여 수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아래의 상세 학력별 기초생활급여 수급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졸 이하 및 대학 휴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은 생계급여 수급률이 30% 내외인 것에 비해 대학(이상) 재학 중인 청년들의 3분의 2가 생계급여 수급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급여나 주거급여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학(이상) 재학 중인 청년의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률은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청년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기초생활급여 수급률이 일반청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를 필요로 하더라도 많은 청년들이 휴학이나 졸업을 하게 될 경우 취업을 통해 탈수급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16. 학력(상세)별 기초생활급여 수급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비수급	수급	비수급	수급	비수급	
학력	고졸 이하	890	29.9	70.1	20.9	79.1	21.6	78.4
	대학(원) 재학 중	562	66.2	33.8	52.3	47.7	51.2	48.8
	대학 휴학 및 졸업	1,209	32.0	68.0	26.6	73.4	27.4	72.6
	χ^2 검증	2,661	231.362***		174.845***		153.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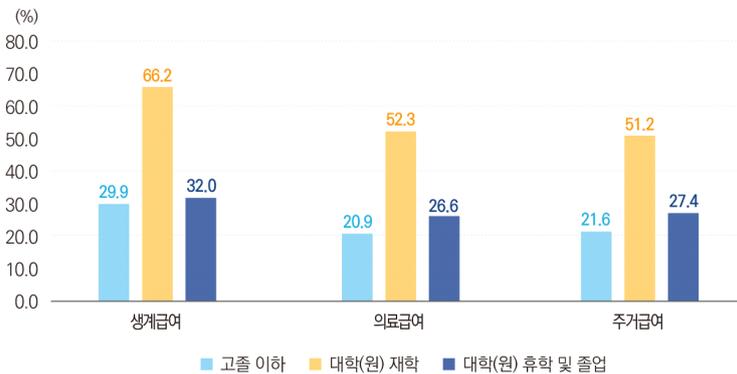


그림 III-6. 기초생활급여 수급 비율: 학력(상세)별

2) 고용 영역

(1) 근로 여부

지난 일주일 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6%는 일을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일자리가 있었으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4%로 총 68%는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있었다(표 III-17). 최근 3년간의 경험률을 보면 지난 일주일을 기준으로 일하였다는 응답은 근소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지난 일 년간 일을 한 경험은 79.1%, 지난 일주일의 일 경험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2.9%이다. 즉 대부분의 시설퇴소 청소년들은 일한 경험이 있었고 이 경우 최근 3년간의 경험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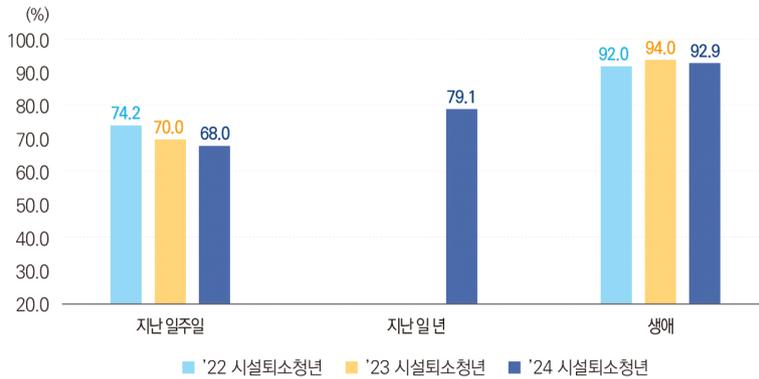
표 III-17. 일 경험률(지난 1주일간)

(단위: %)

구분	지난 일주일		지난 일 년		생애	
	경험 있음	χ^2 검증	경험 있음	χ^2 검증	경험 있음	χ^2 검증
'22 시설퇴소청년	74.2	-	-	-	92.0	-
'23 시설퇴소청년	70.0	-	-	-	94.0	-
'24 시설퇴소청년	68.0	-	79.1	-	92.9	-
학력	고졸 이하	8.607 **	79.4	0.090	93.1	.165
	대재 이상		78.9		92.7	
퇴소 시설	아동시설	4.619	77.2	33.669 ***	91.6	33.638 ***
	청소년시설		87.7		98.4	
	보호시설		71.5		88.6	
경제 수준	상	55.149 ***	76.3	5.835	90.6	4.513
	중		81.7		94.2	
	하		77.9		92.3	

* 주: 1) * p .05, ** p .01, *** p .001

2) 지난 일주일간 일 경험은 휴가 등으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자리가 있었던 경우도 포함한 비율임.



* 주: '22년, '23년은 지난 일 년간 일 경험을 데이터 없음

그림 III-7. 일 경험률

(2) 일자리 수

지난 주 일자리가 있었던 이들(1,811명) 중 92.3%는 한 가지 일에 종사하였으나 7.7%는 2개 이상의 일을 하였으며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가진 경우는 최대 5개(0.2%)였다(표 III-18). 또한 지난 일 년간 일 경험이 있던 이들 (2,105명) 중 동시에 2개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한 경우는 13.3%이며 이들의 평균 일자리 개수는 2.22개이다. 하위집단별 차이를 보면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의 2개 이상의 일자리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아동시설 퇴소청년에게서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에도 경제수준 중 이상인 경우보다 그 경험률이 높았다. 2개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한 비율이 비록 높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그리고 청소년 퇴소시설 청소년들에게서 그 비율이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자리 개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집단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18. 동시에 2개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한 경험(지난 1년간)

(단위: %, 개)

구분	사례 수 (명)	없음	있음	χ^2 검증	일자리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105	86.7	13.3	-	2.22	0.593	
퇴소 시설	아동시설	1,531	91.1	8.9	102.880***	2.28	0.706
	청소년시설	486	73.3	26.7		2.18	0.474
	보호시설	88	83.0	17.0		2.07	0.258
경제 수준	상	122	91.0	9.0	16.064***	2.18	0.603
	중	737	90.1	9.9		2.18	0.536
	하	1,246	84.2	15.8		2.24	0.614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χ^2 검증은 2개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한 경험 여부에 대한 검증임.

(3) 근로 유형 및 근로시간 형태

지난 일주일간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들의 고용 형태를 보면 근로자의 절반 이상(55.2%)이 상용근로자였다. 임시근로자는 22.6%, 일용근로자는 16.5%,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각각 4.8%와 0.8%였다.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보면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년에 비해 '24년에는 7.9%p 증가하였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22년 31.1%에서 '23년 28.2%, '24년 22.6%로 점차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비율이 '22년 25.7%, '23년 22.9%, '24년 21.4%로 점차 감소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안정적인 고용형태가 증가하였다는 점은 이들의 자립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할 수 있다.

퇴소시설 및 경제수준별 고용형태에 차이를 보였는데 아동시설 퇴소청년들은 타 시설 퇴소청년들에 비해 전체 고용형태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타 시설 퇴소청년들은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표 III-19).

표 III-19. 고용 형태(지난 1주일간)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χ^2 검증	
'22 시설퇴소청년	1,824	47.3	31.1	14.9	5.8	1.0	-	
'23 시설퇴소청년	1,750	53.1	28.2	13.5	4.6	0.6	-	
'24 시설퇴소청년	1,811	55.2	22.6	16.5	4.8	0.8	-	
퇴소 시설	아동시설	1,330	59.2	20.9	14.7	4.4	0.8	37.157 ***
	청소년시설	398	44.5	28.6	20.9	5.0	1.0	
	소년보호시설	83	43.4	21.7	24.1	9.6	1.2	
경제 수준	상	125	76.8	16.0	4.8	1.6	0.8	96.328 ***
	중	685	65.0	16.2	12.6	5.5	0.7	
	하	1,001	45.9	27.9	20.7	4.7	0.9	

* α .05, ** α .01, *** α .001

지난 일 년간 주로 어떤 형태의 일자리에 종사했는지 살펴보면 정규직에 종사한 경우가 44.5%로 가장 많았고 시간제 근로가 25%로 그 뒤를 이었다. 하위집단별 차이를 보면 타 시설퇴소청년에 비해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이, 그리고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에 정규직보다는 기간제나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III-20).

표 III-20. 주된 근로 형태(지난 1년간)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χ^2 검증	
전체	44.5	18.6	25.0	3.1	5.7	3.2	-	
퇴소 시설	아동시설	48.1	17.6	22.7	3.1	5.4	3.1	59.327***
	청소년시설	31.7	22.8	33.5	2.3	6.4	3.3	
	소년보호시설	52.3	12.5	17.0	8.0	5.7	4.5	
경제 수준	상	61.5	18.9	15.6	1.6	0.8	1.6	104.919***
	중	56.3	13.3	19.8	3.0	4.1	3.5	
	하	35.8	21.7	29.0	3.4	7.1	3.1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 2) ① 정규직 근로자(1개 직장에서 종일 근로), ② 기간제 근로자(고용기간을 정하고 1개월 이상 근로),
 ③ 시간제 근로자(오전, 오후 등 파트타임으로 근로), ④ 비전형 근로자(일이 있을 때 며칠/몇 주일씩 근로),
 ⑤ 초단기 근로자(일거리가 있을 때 몇 시간씩 근로), ⑥ 기타(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

또한 근로시간 형태에서는 전일제 근로제와 시간제 근로자가 각각 50%로 동일하였다. 다만 하위집단별 차이를 보았을 때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보다는 타 시설퇴소청년의 경우, 자립지원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보다는 3년 미만인 경우에,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 수록 시간제 근로의 비율이 높았다(표 III-21).

표 III-21. 근로시간 형태(지난 1주일간)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전일제	시간제	χ^2 검증
전체		1,709	50.0	50.0	-
퇴소 시설	아동시설	1,261	53.6	46.4	24.668 ***
	청소년시설	374	40.1	59.9	
	소년보호시설	74	39.2	60.8	
자립지원 기간	3년 미만	1,312	48.2	51.8	7.694 **
	3년 이상	388	56.2	43.8	
경제 수준	상	122	61.5	38.5	28.510 ***
	중	642	56.2	43.8	
	하	945	44.3	55.7	

* $p < .05$, ** $p < .01$, *** $p < .001$

(4) 일자리 유형

지난 일주일 동안 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주 일자리 하나를 기준으로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표 III-22>와 같다. 이들이 가장 많이 종사한 일자리 유형은 서비스직(29.8%)이며 전문가 및 관련 일 종사(20.1%), 사무직(13.8%), 단순 노무직(11.8%) 판매직(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별 차이를 보면 성별, 학력, 퇴소시설, 경제수준 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표 III-22. 주된 일자리 유형(지난 1주일간)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χ^2 검증 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22 시설퇴소청년	1,755	0.9	16.3	11.2	30.6	11.3	0.5	5.8	4.2	16.9	1.3	1.0	-	
'23 시설퇴소청년	1,728	0.6	16.9	14.9	31.9	9.5	0.2	5.0	4.1	14.5	1.4	1.0	-	
'24 시설퇴소청년	1,779	0.5	20.1	13.8	29.8	9.7	0.2	5.6	6.3	11.8	1.6	0.6	-	
성별	남자	873	0.8	14.8	7.7	26.1	9.7	0.3	9.9	9.0	17.8	3.0	0.9	234.158
	여자	906	0.2	25.2	19.6	33.4	9.7	0.1	1.5	3.6	6.1	0.2	0.2	***
학력	고졸 이하	627	0.6	6.1	11.8	32.5	11.5	0.5	7.5	9.1	18.3	0.8	0.3	160.258
	대재 이상	1,152	0.4	27.7	14.8	28.4	8.8	0.1	4.6	4.8	8.2	1.5	0.7	***
퇴소 시설	아동시설	1,305	0.5	23.1	14.7	27.2	8.4	0.2	5.7	7.5	10.5	1.5	0.5	89.935 ***
	청소년시설	393	0.8	12.2	12.0	37.7	14.8	0.3	4.1	2.3	13.5	2.0	0.5	
	소년보호시설	81	0.0	8.6	7.4	34.6	6.2	0.0	11.1	6.2	24.7	0.0	1.2	
경제 수준	상	122	1.6	15.6	10.7	30.3	8.2	0.0	9.8	14.8	7.4	0.8	0.8	64.274 ***
	중	676	0.7	25.1	11.8	29.0	6.7	0.1	5.8	7.0	11.5	1.5	0.7	
	하	981	0.2	17.1	15.5	30.4	12.0	0.3	5.0	4.8	12.5	1.7	0.4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 2)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직업군인, ⑪ 기타

(5) 주당 근로시간

지난 주 일자리가 있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총 근로시간, 즉 모든 일자리에 종사한 시간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I-23>과 같다. 최근 3년간 시설퇴소청년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꾸준히 증가하여 '22년보다 '24년에는 3시간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아마도 상용근로자의 비율('22년 47.3%, '23년 53.1%, '24년 55.2%)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일제 근로자는 주당 평균 39.05시간의 일을 하여 시간제 근로자(주당 평균 근로시간 24.82시간)보다 주당 약 14시간 정도 더 일을 하였다(<표 III-23>).

표 III-23. 주당 총 근로 시간(지난 1주일간)

(단위: 시간)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t 검증
'22 시설퇴소청년	1,787	28.85	18.753	-
'23 시설퇴소청년	1,747	30.63	18.364	
'24 시설퇴소청년	1,703	31.93	16.792	
전일제	851	39.05	13.445	19.301***
시간제	852	24.82	16.796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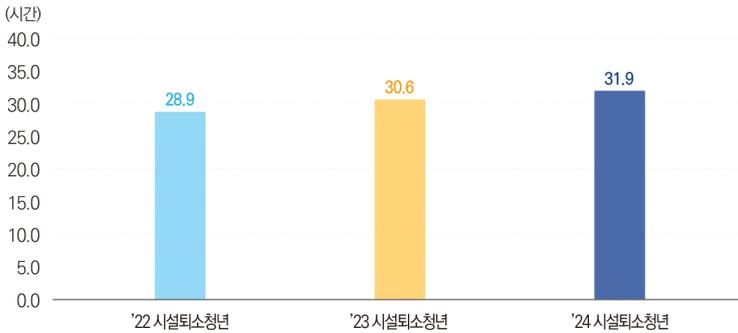


그림 III-8. 주당 근로시간

한편 주당 36시간 이하 또는 5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를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청년으로 가정했을 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은 전일제 근로가 어렵다는 가정 아래 이들을 제외하고 휴학을 포함하여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으며 지난주에 일자리가 있었다고 응답한 이들 총 1,431명의 근로시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근로시간은 33.91시간이었으며 그중 36시간 미만 근로를 한 경우는 36.3%, 50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는 14.6%였다(표 III-24).

표 III-24.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년의 주당 근로시간(지난 1주일간)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36시간 미만	36~49시간	50시간 이상	χ^2 검증	
전체	1,431	36.3	49.1	14.6		
성별	남자	702	34.8	46.6	18.7	18.204***
	여자	729	37.7	51.6	10.7	
학력	고졸 이하	590	40.5	43.2	16.3	14.103**
	대재 이상	841	33.3	53.3	13.4	
퇴소 시설	아동시설	1,079	33.3	52.6	14.1	25.348***
	청소년시설	291	47.1	37.8	15.1	
	소년보호시설	61	37.7	41.0	21.3	
경제 수준	상	107	23.4	59.8	16.8	26.692***
	중	571	30.8	53.4	15.8	
	하	753	42.2	44.4	13.4	

* $\rho < .05$, ** $\rho < .01$, *** $\rho < .001$

근로시간과 개인의 심리·정서 상태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휴학을 포함하여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으며 지난주에 일자리가 있었다고 응답한 이들 총 1,431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우울·행복도·삶의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ANOVA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의 우울·행복도·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즉 근로시간이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는 중간 정도인 경우보다 우울·행복도·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그러나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 간 차이를 보인 항목은 삶의 만족도뿐이었다(표 III-25).

표 III-25. 지난주 평균 근로시간과 우울·행복도·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단위: 점)

근로시간	사례 수 (명)	우울*			행복도			삶의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F 검증	평균	표준 편차	F 검증	평균	표준 편차	F 검증
전체	1,431	1.72	0.766	-	5.34	2.518	-	4.99	2.427	-
36시간 미만 ^a	519	1.79	0.803	4.343 *	5.18	2.601	3.920 *	4.72	2.506	8.025 ***
36~49시간 ^b	703	1.66	0.712		5.53	2.428		5.25	2.319	
50시간 이상 ^c	209	1.76	0.833		5.11	2.569		4.80	2.499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6) 이직 경험

지난 일 년간 응답자들의 이직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일 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2,105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시설퇴소청년 중 지난 일 년간 이직 경험이 있는 경우는 25.3%였으며 이직 경험자의 65.2%는 1회의 이직을 경험하였다. 퇴소시설별 차이를 보면 이직 경험 여부는 아동시설에 비해 청소년시설이나 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chi^2=39.930, p < .001$) 이직 횟수는 아동시설 퇴소청년에 비해 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이 더 높았다(표 III-26).

표 III-26. 이직 경험(지난 1년간)

(단위: %, 회)

구분	사례 수 (명)	없음	있음	이직 횟수		F 검증	
				평균(회)	표준편차		
전체	2,105	74.7	25.3	1.61	1.307	-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531	78.2	21.8	1.44	0.842	9.924*** a<c
	청소년시설 ^b	486	65.0	35.0	1.84	1.295	
	보호시설 ^c	88	68.2	31.8	2.32	3.621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t/F 검증은 집단별 이직 횟수에 대한 검증임.

(7) NEET 경험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연도별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14~18% 정도는 일주일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²⁰⁾ 그중에서 일 년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약 2.8~3.6% 정도로 이들이 실질적 NEET 상태를 경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결과에서도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 일 년 이상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표 III-27.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경험 및 기간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있다	사례 수 (명)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간				χ^2 검증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22 시설퇴소청년	2,457	14.2	349	30.4	49.9	11.2	8.6	-	
'23 시설퇴소청년	2,498	16.7	418	27.0	51.4	12.4	9.1	-	
'24 시설퇴소청년	2,661	18.2	485	27.4	53.4	11.3	7.8	-	
학력	고졸 이하	890	890	142	19.7	51.4	16.9	12.0	14.357 **
	대재 이상	1,771	1,771	343	30.6	54.2	9.0	6.1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χ^2 검증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검증임.

20) 본 연구에서 조사한 NEET경험률(일주일 이상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낸 적이 있다)은 생애 경험률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험률이 증가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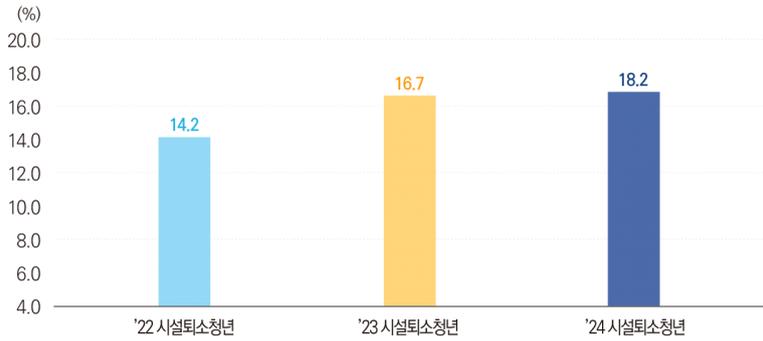


그림 III-9.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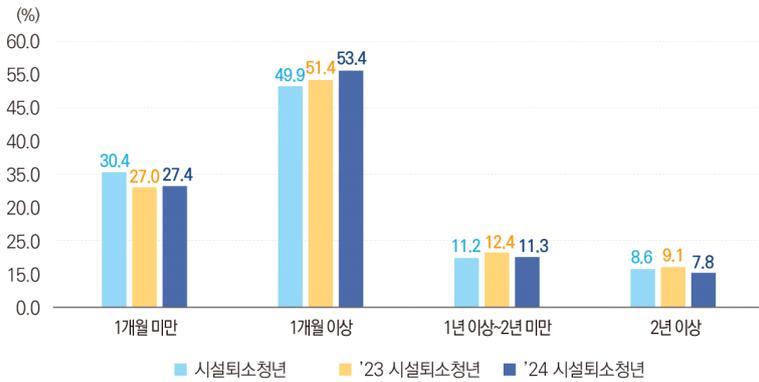


그림 III-10.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간

3) 경제 영역

(1) 가족 내 수입이 있는 구성원

가족 내 수입이 있는 사람은, 본인인 경우가 66.4%로 가장 많고 부모(31.0%), 배우자(19.3%), 형제(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8. 가족 내 수입이 있는 구성원

(중복응답) /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수입이 있는 가족원	본인	306	66.4
	부모	143	31.0
	형제	84	18.2
	친인척, 조부모	48	10.4
	배우자	89	19.3
	기타	37	8.0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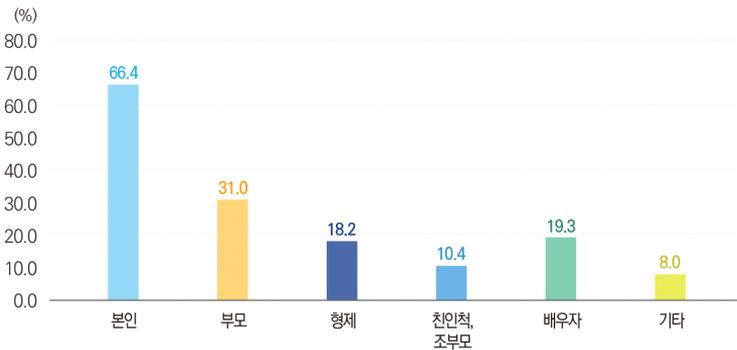


그림 Ⅲ-11. 가족 내 수입이 있는 구성원 (중복응답)

(2) 본인 및 배우자의 수입

① 월평균 수입

본인(및 배우자)의 월평균 수입은 191.85만원이었고,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약 69% 이상을, 국가 지자체 등의 공적 이전소득이 전체의 약 26%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퇴소청년들의 월평균 소득은 일반 청년 월평균 소득(365.10만원)의 52.5% 수준이었다. 시설퇴소청년들의 한 달 평균 소득은 전년도에 비해 21.65만원 상승하였다. 이들(또는 부부)의 한 달 평균 소득은 총 191.85만원이었으며, 이 중 근로소득이 69.0%(132.46만원)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국가나 지자체, 각종 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공적 이전소득이 26%(49.82만원)였으며, 재산소득은 4.7%(9.07만원)이었다.

표 Ⅲ-29. 한 달 평균 소득(세전)

(단위: 만원, %)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비율	
'22년 청년(29세 이하) 월평균 총소득	385,070	365.10	237.024		
'23 시설퇴소청년	2,413	170.20	121.763	-	
'24 시설퇴소청년	2,581	191.85	122.968	-	
영역별 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	2,644	132.46	125.050	69.0
	재산소득	2,597	9.07	36.445	4.7
	이전소득①	2,656	3.05	15.166	1.6
	이전소득②	2,659	49.82	49.313	26.0
	총소득	2,581	191.85	122.968	100.0

* α .05, ** α .01, *** α .001

* 주: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 기준.

2)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자영업자가 벌어들인 소득 중 순소득.

3) 재산소득: 재산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에서 대출이자, 관리비 등을 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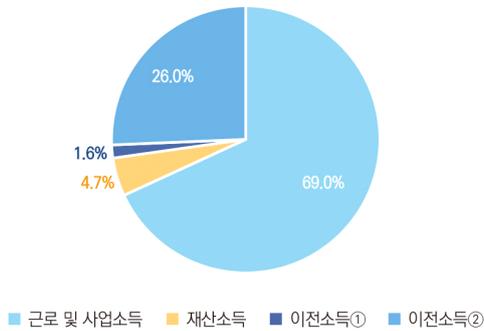
4) 이전소득①: 함께 살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매달 평균적으로 받는 현금이나 물품.

5) 이전소득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이나 시설로부터 매달 평균적으로 받는 현금이나 물품.



* 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 기준

그림 III-12. 한 달 평균 소득(세전)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 기준

2)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자영업자가 벌어들인 소득 중 순소득

3) 재산소득: 재산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에서 대출이자, 관리비 등을 뺀 금액

4) 이전소득①: 함께 살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매달 평균적으로 받는 현금이나 물품

5) 이전소득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이나 시설로부터 매달 평균적으로 받는 현금이나 물품

그림 III-13. 한 달 평균 소득(세전) 구성

② 국가, 지자체, 기관 등에서 받는 이전소득

전체 조사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는 응답자는 48.3% 수준이었고,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를 포함하여 국가나 지자체, 각종 기관이나 시설로부터 매달 평균적으로 받는 현금이나 물품의 금액은 평균 82.99만원이었다. 이러한 금액은 전체 시설퇴소 청년들이 받는 금액인 49.82만원의 1.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금액은 학력과 퇴소시설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이 고졸 이하의 청년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시설 퇴소청년들이 청소년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에 비해 국가나 지자체, 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원 지원금(및 물품)액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II-30. (수급자 한정) 월평균 이전소득②

(단위: 만원)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검증
'24 시설퇴소청년	1,285	82.99	43.915	-
학력	고졸 이하	347	74.43	-4.276***
	대재 이상	938	86.15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080	87.98	48.028*** b,c/a
	청소년시설 ^b	169	54.65	
	보호시설 ^c	36	66.31	

* α .05, ** α .01, *** α .001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이 고졸 이하의 청년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은 지원을 받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세부 학력별 소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III-31>과 같다.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의 경우 고졸 이하, 대학 휴학 및 졸업 이상의 청년들과는 달리 학업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유의미하게 적고, 국가나 지자체, 기관 등에서 받는 이전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력에 따른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퇴소시설별로 국가 및 지자체, 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동시설 퇴소청년들의 경우 퇴소와 동시에 대부분 자립지원수당을 받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도 자립지원수당을 수급하기는 하나, 자립수당을 수급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직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청년의 비율이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기준은 '23년 10월에 공표된 것으로 그 이전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년의 경우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비율이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의 경우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청소년시설이나 보호시설 퇴소청년의 경우 부모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소득이 낮더라도 본인의 소득 기준만으로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할 수 없어 국가 및 지자체, 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전소득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III-31. 학력(세부)별 소득 차이

(단위: 만원)

구분	근로 및 사업소득				이전소득①			
	사례 수 (명)	평균	표준 편차	F 검증	사례 수 (명)	평균	표준 편차	F 검증
고졸 이하 ^a	883	147.90	126.920	148.947 *** a,c>b	347	74.43	47.719	21.921 *** b>a,c
대학 재학 ^b	557	55.77	92.207		415	94.11	39.844	
대학 휴학 및 졸업 ^c	1,204	156.62	123.018		523	79.84	42.644	
전체	2,644	132.46	125.050		1,285	82.99	43.915	

* $p < .05$, ** $p < .01$, *** $p < .001$

* 주: 1) 이전소득①은 기초생활급여를 포함, 국가, 지자체, 기관 등에서 받는 지원금을 의미함.

2)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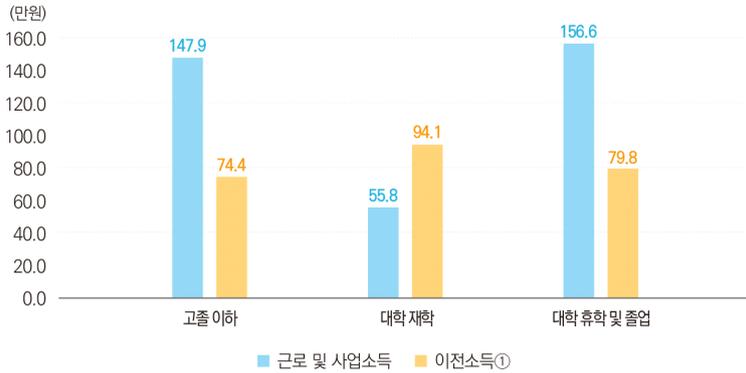


그림 III-14. 학력(세부)별 소득 차이

(3) 월평균 지출

① 월평균 생활비

시설퇴소청년들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123.5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58만원 상승하였다. 이들의 생활비는 매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생활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식비가 전체의 33.7%(41.67만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생활용품 구매비용 및 각종 세금 등을 포함하는 기타 생활비가 15.8%(9.48만원)였으며, 주거비 12.3%(15.25만원), 문화오락비 10.2%(12.55만원), 통신비 8.1%(10.02만원), 주거관리비 7.7%(9.53만원), 교통비 7.0%(8.7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한 달 평균 지출(생활비)

(단위: 만원, %)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비율	
'22 시설퇴소청년	2,448	115.43	73.127	-	
'23 시설퇴소청년	2,486	115.99	70.187	-	
'24 시설퇴소청년	2,623	123.57	66.641	-	
영역별 생활비	식비	2,660	41.67	29.799	33.7
	주거비	2,658	15.25	18.094	12.3
	주거관리비	2,652	9.53	9.218	7.7
	교육비	2,651	5.11	15.967	4.1
	통신비	2,657	10.02	9.731	8.1
	교통비	2,647	8.70	10.425	7.0
	문화오락비	2,656	12.55	14.946	10.2
	비동거 가족 지원비	2,658	2.95	10.739	2.4
	기타 생활비	2,656	19.48	23.263	15.8
	총 생활비	2,623	123.57	66.64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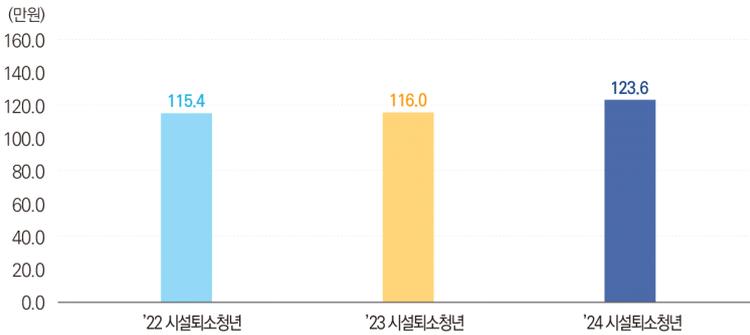


그림 III-15. 한 달 평균 지출(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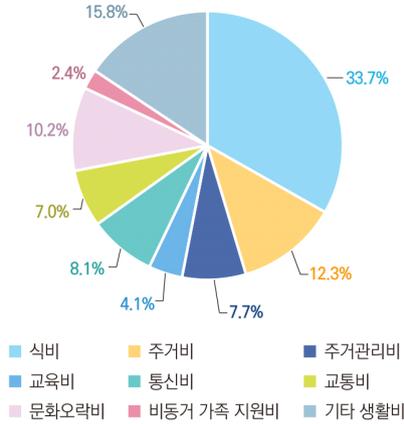


그림 III-16. 영역별 생활비

② 비동거 가족을 위한 정기적인 생활비 지급 여부

비동거 가족을 위해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은 30.5%였으며, 자립지원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들의 경우 3년 미만인 청년들에 비해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들이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지급하는 생활비는 평균 29.16만원이었는데, 자립지원기간이 3년 미만인 청년들은 월평균 26.78만원을, 3년 이상인 청년들은 34.94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표 III-33. 비동거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여부

(단위: %, 만원)

구분	사례 수 (명)	생활비 지급 여부			월평균 생활비		
		지급	비지급	χ^2 검증	평균	표준편차	t 검증
'24년 시설퇴소청년	397	30.5	69.5	-	29.16	29.910	
자립지원 기간	3년 미만	28.3	71.7	3.935*	26.78	26.262	-1.185*
	3년 이상	39.3	60.7		34.94	37.129	

* $p < .05$, ** $p < .01$, *** $p < .001$

(4) 채무

① 채무 여부

본인이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는 응답률은 40.7%로 1차 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들의 채무액은 1655.94만원으로 1차 년도 1188.85만원에 비해 467만원가량 증가하였다.

표 III-34. 채무 여부

(단위: %, 만원)

구분	사례 수(명)	채무 여부		채무액	
		채무 있음	채무 없음	평균	표준편차
'22 시설퇴소청년	2,457	36.2	63.8	1188.85	2193.921
'23 시설퇴소청년	2,498	36.4	63.6	1366.31	2504.220
'24 시설퇴소청년	2,661	40.7	59.3	1655.94	3138.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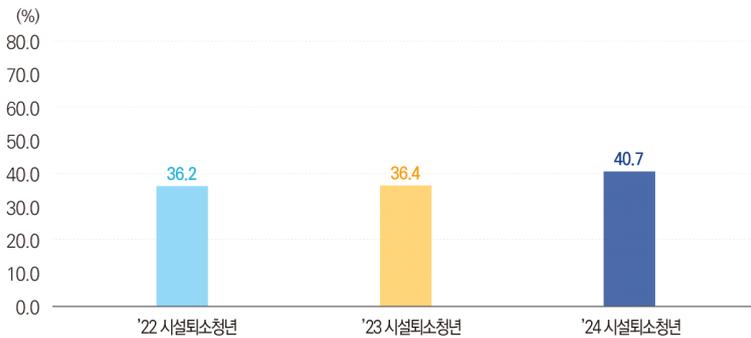


그림 III-17. 채무 있음 비율(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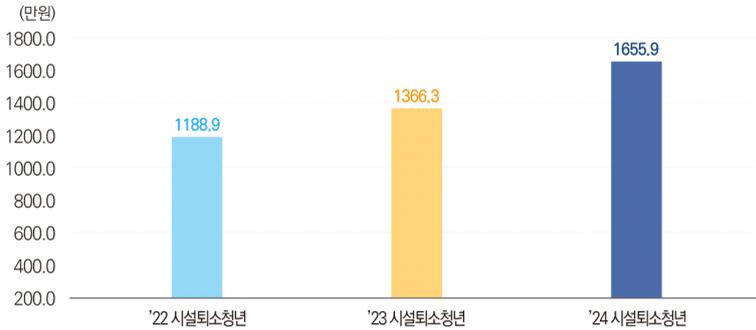


그림 III-18. 채무액(연도별)

② 채무 발생 이유 및 갚아야 할 금액 규모

채무 발생 이유별로 갚아야 할 금액의 규모를 살펴본 결과 학자금(171.14만원)과 전·월세 및 관리비 등의 주거비(843.02만원), 창업자금(43.72만원), 가족의 빚을 넘겨받거나 가족이 내 명의로 진 빚(128.73만원)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II-35. 채무 발생 이유별 갚아야 할 금액

(단위: 만원)

구분	학자금		주거비		생활비		창업자금		가족의 빚		범죄피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22 시설 퇴소 청년	111.56	331.022	479.99	1866.761	145.06	369.201	22.42	318.530	92.82	565.224	69.99	376.741
'23 시설 퇴소 청년	162.94	403.858	631.03	2701.984	246.27	508.464	31.70	586.589	85.39	492.196	93.97	543.318
'24 시설 퇴소 청년	171.14	382.173	843.02	2906.114	238.58	528.099	43.72	647.806	128.73	662.565	74.06	500.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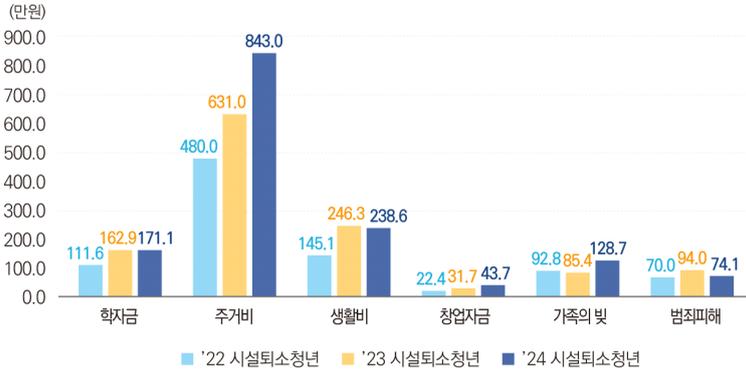


그림 III-19. 채무 발생 이유별 갚아야 할 금액

돈을 빌린 곳은 평균 1.8명(개소)이었으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평균 1.3개소 이용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지인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에 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으나, 학력이 낮은 청년들의 경우 사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수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볼 수 있었다.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의 경우는 돈을 빌리기 위해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수뿐만 아니라 사금융기관의 수도 타 시설퇴소청년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6. 돈을 빌린 곳

(단위: 명, 개)

구분	지인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사금융(대부업체, 전당포, 사채, 소액결제 등)			총 개(명)수			
	평균	표준 편차	t/F 검증	평균	표준 편차	t/F 검증	평균	표준 편차	t/F 검증	평균	표준 편차	t/F 검증	
'24 시설퇴소청년	0.32	0.885	-	1.30	1.051	-	0.18	0.581	-	1.80	1.495	-	
학력	고졸 이하	0.41	1.054	2.134	1.35	1.275	0.904	0.30	0.773	4.046	2.06	1.813	3.556
	대재 이상	0.27	0.787	*	1.28	0.923		0.12	0.449	***	1.68	1.297	***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0.29	0.850		1.25	0.908	5.641	0.14	0.502	8.117	1.68	1.344	13.801
	청소년시설 ^b	0.35	0.840	2.427	1.36	1.314	**	0.24	0.609	***	1.95	1.556	***
	보호시설 ^c	0.53	1.371		1.70	1.183	a,b<c	0.42	1.078	a,b<c	2.65	2.392	a,b<c

* $p < .05$, ** $p < .01$, *** $p < .001$

③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시설퇴소청년은 채무가 있는 청년의 13.2%로 전년에 비해 3.0%p 감소하였다. 고졸 이하인 경우, 청소년시설 및 보호시설 퇴소청년인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표III-37) 참조).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에게서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은 이유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전 제공하고 있는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²¹⁾의 효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은 미취학부터 보호종결 전까지 기초학습 및 독서지도, 진로지도 외에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자기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자산관리기술, 진로탐색기술, 직업생활기술, 사회진출기술 등 8개 영역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호종결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상태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이다.

21)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아동자립지원. <https://www.nrc.or.kr/nrc/cm/cntnts/cntntsView.do?mi=1034&cntntslid=1083>에서 2024년 9월 27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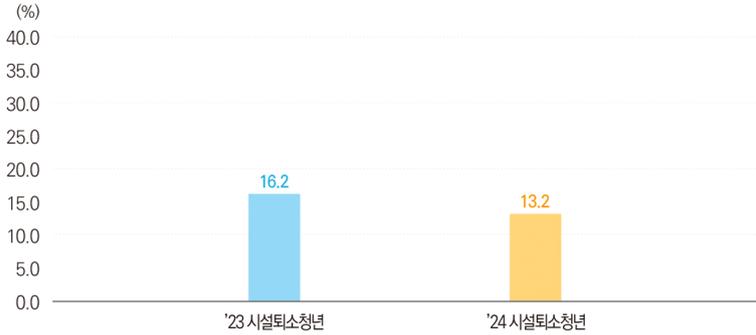


그림 III-20.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

④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 경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청년들 중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과거에 이용한 적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다’+‘현재 이용하고 있다’)이 있는 청년은 36.4%로 전년(34.3%)에 비해 2.1%p 증가하여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청년 중 과반이 넘는 63.6%의 청년들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 상태로 남아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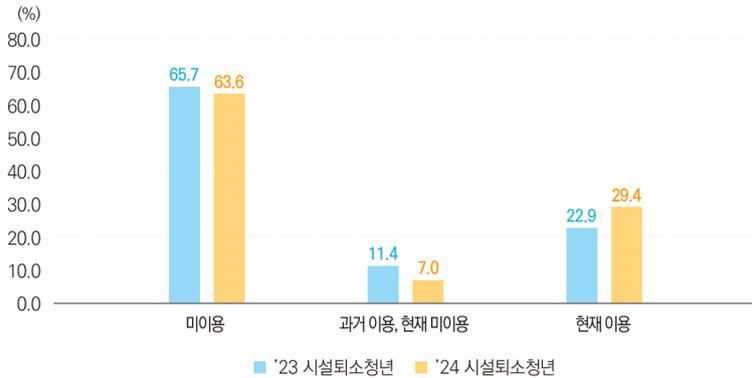


그림 III-21.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경험

표 III-37. 금융채무불이행자 해당 여부 및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 경험

(2023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

구분	금융채무불이행자 해당 여부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 경험					
	사례 수 (명)	해당함	해당 없음	χ^2 검증	사례 수 (명)	이용 경험 없음	과거 이용, 현재 비이용	현재 이용	χ^2 검증	
'23 시설퇴소청년	650	16.2	83.8	-	105	65.7	11.4	22.9	-	
'24 시설퇴소청년	1,082	13.2	86.8	-	143	63.6	7.0	29.4	-	
학력	고졸 이하	353	28.0	72.0	100.451 ***	99	65.7	6.1	28.3	0.736
	대재 이상	729	6.0	94.0		44	59.1	9.1	31.8	
퇴소 시설	아동시설	736	8.0	92.0	54.622 ***	59	64.4	8.5	27.1	0.502
	청소년시설	286	23.8	76.2		68	63.2	5.9	30.9	
	보호시설	60	26.7	73.3		16	62.5	6.3	31.3	

* α .05, ** α .01, *** α .001

⑤ 저축, 보험, 연금 등에 지출하는 금액

매달 저축, 보험, 연금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평균 31.70만원으로 전년의 28.57만원에 비해 3.13만원 증가하였다. 저축이나 보험, 연금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대학 재학 이상인 청년, 아동시설 퇴소청년, 자립지원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에게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38. 매달 저축, 보험, 연금 등에 지출하는 금액

(단위: 만원)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검증
'23 시설퇴소청년		2,476	28.57	42.875	-
'24 시설퇴소청년		2,656	31.70	47.982	-
학력	고졸 이하	888	28.20	47.222	-2.667**
	대재 이상	1,768	33.45	48.276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982	35.16	50.414	20.747*** b,c<a
	청소년시설 ^b	552	21.18	35.518	
	보호시설 ^c	122	22.98	48.806	
자립지원 기간	3년 미만	2,075	30.67	47.055	-2.143*
	3년 이상	567	35.55	51.417	

* α .05, ** α .01, *** α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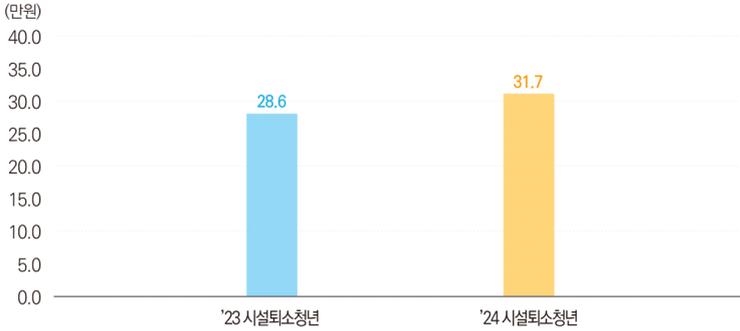


그림 III-22. 매달 저축, 보험, 연금 등에 지출하는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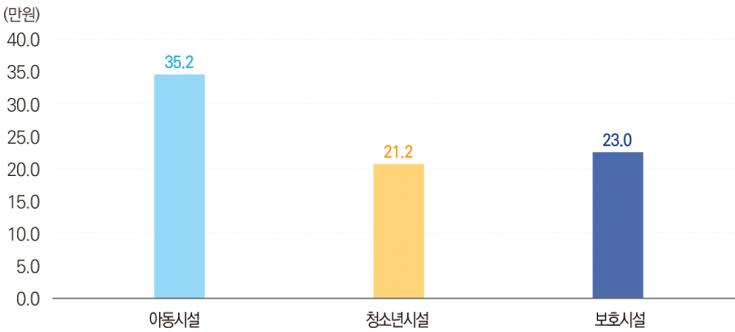


그림 III-23. 퇴소시설별 매달 저축, 보험, 연금 등에 지출하는 금액

(5) 가구 소득수준

시설퇴소청년들은 본인의 평균 가구 소득수준을 평균 3.91점(10점 만점)으로 평균 수준인 5점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차 년도의 4.17점에 비해 2차년도 이후 낮아진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 소득수준을 상(8~10점),

중(4~7점), 하(1~3점)로 나누어 보았을 때 '중'에 속한다는 응답이 57.9%로 가장 많았고, '하'에 속한다는 응답도 38.1%로 전체의 3분의 1이 넘었다. 특히 대학 재학 이상의 청년들과 아동 및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이 가구 소득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39. 가구 소득수준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명)	하 (1~3점)	중 (4~7점)	상 (8~10점)	평균	표준편차	t/F 검증	
'22 시설퇴소청년	2,457	38.3	61.7	3.3	4.17	1.957	-	
'23 시설퇴소청년	2,498	41.2	57.0	1.9	3.85	1.821	-	
'24 시설퇴소청년	2,661	38.1	57.9	2.3	3.91	1.826	-	
학력	고졸 이하	890	38.0	60.3	4.3	4.12	1.905	4.242***
	대재 이상	1,771	40.6	56.5	1.2	3.80	1.776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984	42.1	59.4	2.2	3.96	1.811	12.627*** c)b,a
	청소년시설 ^b	554	44.1	50.9	1.8	3.61	1.814	
	보호시설 ^c	123	13.8	63.4	5.7	4.40	1.94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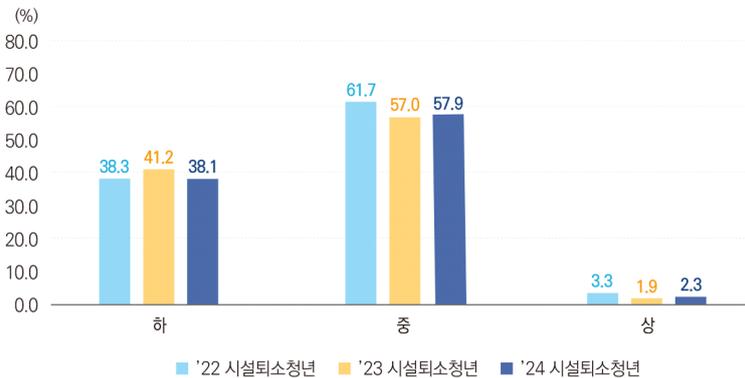


그림 III-24. 가구 소득수준(연도별)

4) 주거 영역

(1) 기관 생활 경험

① 생활했던 기관 수 및 기관에서 생활했던 기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생활했던 기관 수 및 기관에서 생활했던 기간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설퇴소청년들은 평균 1.6개의 시설에서 생활하였는데, 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의 경우 평균 2.7개의 시설에서,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은 평균 2.4개의 시설에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은 평균 1.3개의 시설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거주했던 기간을 살펴보면 시설퇴소청년들은 평균 106.76개월(8.90년)을 시설에서 거주하였는데, 아동시설 퇴소청년들은 평균 129.4개월(10.7년)을 시설에서 거주하였으며,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은 54.6개월(4.5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들은 37.5개월(3.1년) 정도를 시설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은 1개 시설에서 평균 약 99.5개월(8.3년)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오랜 기간 시설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은 1개 시설에서 약 20.1개월(1.7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은 15.7개월(1.3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1~2년 간격으로 거주지를 변경했던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표 III-40. 생활했던 기관 수 및 기관에서 생활했던 기간

(단위: 개소, 개월)

구분	생활했던 기관 수			생활했던 기간			1개소당 평균 생활 기간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전체	1.60	1.265	-	106.76	84.608	-	66.7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32	0.694	129.35	82.075	354.205*** a)c>b	98.0
	청소년시설 ^b	2.38	1.938	37.47	44.380		15.7
	소년보호시설 ^c	2.72	2.152	54.59	69.381		20.1

* α .05, ** α .01, *** α .001

② 생활했던 기관 수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시설퇴소청년들이 생활했던 기관 수에 따라 우울이나 고립감 등의 심리·정서 상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했던 기관 수가 많아질수록 우울이나 고립감의 점수가 높아졌으며, 특히 6개 이상의 기관을 옮겨다니며 생활한 청년들은 우울이나 고립감과 같은 심리·정서적 상태가 유의미하게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 이상의 기관을 옮겨다니며 생활한 청년들의 경우 1개소에서 생활한 청년들에 비해 자립수준도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 생활했던 기관 수에 따른 우울 및 고립감의 차이

(단위: 점)

구분		우울			고립감			자립수준		
		평균	표준 편차	F 검증	평균	표준 편차	F 검증	평균	표준 편차	F 검증
생활했던 기관 수	1개소 ^a	1.65	.718	27.790	1.75	.880	29.667	2.93	.626	7.722
	2~5개소	1.81	.801	***	1.96	1.001	***	2.85	.633	***
	6개소 이상 ^c	2.26	.928	c>a,b	2.53	1.037	c>a,b	2.70	.599	a>c

* α .05, ** α .01, *** α .001

(2) 살고 있는 집의 주거비 마련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비를 마련한 방법은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학력이 높은 경우, 대도시의 경우, 아동시설 퇴소청년의 경우, 경제수준이 중, 하에 속하는 경우 LH로부터 지원받은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규모를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은 LH 지원을 받은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H의 지원이 주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 주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퇴소시설에 따라서는 아동시설 퇴소청년은 LH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은 반면 청소년시설과 보호시설 퇴소청년은 저축이나 근로소득을 통해 주거비를 마련한 비율이 현저히 높았는데, 이는 청소년시설과 보호시설 청년들이 LH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비율이 아동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III-42. 살고 있는 집의 주거비 마련 방법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χ^2 검증	
전체	2,124	56.5	7.0	1.4	4.0	4.6	2.9	3.3	4.9	0.4	13.4	1.6	-	
성별	남자	977	58.3	5.7	1.3	3.6	4.5	1.9	2.5	5.1	0.5	14.3	2.1	22.292*
	여자	1,147	54.9	8.0	1.4	4.4	4.7	3.7	4.1	4.8	0.3	12.6	1.0	
학력	고졸 이하	664	45.2	10.1	1.1	3.6	6.2	3.0	3.9	6.8	0.3	18.1	1.8	65.246***
	대재 이상	1,460	61.6	5.5	1.5	4.2	3.9	2.9	3.1	4.1	0.4	11.3	1.4	
지역 규모	대도시	1,083	58.1	7.8	1.1	4.2	5.3	3.3	3.0	4.2	0.6	11.5	1.0	62.225***
	중소도시	989	55.9	5.5	1.3	3.7	3.9	2.6	3.7	5.5	0.2	15.6	2.0	
	읍면지역	52	34.6	19.2	7.7	5.8	3.8	0.0	1.9	11.5	0.0	11.5	3.8	
퇴소 시설	아동시설	1,638	61.8	8.6	1.6	4.8	4.1	1.5	3.1	3.3	0.1	9.7	1.3	278.640***
	청소년시설	409	40.3	1.5	0.2	1.7	6.1	8.6	4.2	9.8	1.2	24.4	2.0	
	보호시설	77	28.6	1.3	1.3	0.0	7.8	2.6	5.2	14.3	1.3	33.8	3.9	
경제 수준	상	114	45.6	11.4	0.9	2.6	13.2	2.6	2.6	3.5	0.0	14.0	3.5	50.216***
	중	696	58.8	6.5	1.7	3.3	2.3	2.6	4.3	4.6	0.0	14.7	1.3	
	하	1,314	56.2	6.8	1.2	4.5	5.1	3.1	2.9	5.3	0.6	12.7	1.5	

* $p < .05$, ** $p < .01$, *** $p < .001$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 2) ① LH 등의 지원(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② 자립정착금, ③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CDA), ④ 자립수당/자립지원수당, ⑤ 주거급여, ⑥ 자립지원관/자립생활관에서 지원, ⑦ 금융기관에서 대출, ⑧ 부모/가족/친척에게 빌려서, ⑨ 민간단체에서 지원, ⑩ 저축 또는 근로소득, ⑪ 기타

(3)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유형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유형은 2차 년도에 비해 비거주용 건물이 0.3%p, 고시원이 1.3%p 증가하는 등 비적정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청년의 비율이 조사대상 청년의 약 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거주 환경이 일부 열악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생활비 중 주거비와 주거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이며, 채무가 있는 청년들 중에서 주거비로 인한 채무 발생액(843만원)이 가장 크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비적정 거주시설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I-43. 살고 있는 집의 유형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비거주용 건물	고시원	비거주용 임시 구조물	기숙사, 향토학사	기타
'23 시설퇴소청년	2,498	89.6	0.6	1.7	0.1	3.7	4.4
'24 시설퇴소청년	2,661	88.9	0.9	3.0	0.0	2.9	4.3

비적정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청년은 비거주용 건물에, 여자 청년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거주 청년들은 고시원에, 읍면지역 거주 청년들은 비거주용 건물에 거주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이는 지역의 특성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퇴소시설별로는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의 고시원 거주 비율이 높고, 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의 경우에는 비거주용 건물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퇴소시설별로는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의 고시원 거주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에게서 고시원 거주 비율이 높게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611호, 2023.4.7. 일부개정) 제3조에서 비적정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나 사업시행자가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일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I-44. 비적정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청년 비율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비거주용 건물	고시원	비거주용 임시 구조물	χ^2 검증
성별	남자	58	31.0	67.2	1.7	7.388*
	여자	47	10.6	89.4	0.0	
지역규모	대도시	63	14.3	85.7	0.0	9.788*
	중소도시	37	29.7	67.6	2.7	
	읍면지역	5	60.0	40.0	0.0	
퇴소시설	아동시설	50	24.0	76.0	0.0	21.818***
	청소년시설	48	14.6	85.4	0.0	
	보호시설	7	57.1	28.6	14.3	

* $p < .05$, ** $p < .01$, *** $p < .001$

그러나 이들은 평균 비적정 주거시설에서 25.15개월, 즉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으며, 비적정 주거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은 자립지원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들에게서 43.04개월(약 3년 7개월)로 유의미하게 길다는 결과는 주거취약계층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 비적정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청년보다는 주거비 부담 등과 같은 다른 이유로 인해 비적정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표 III-45. (고시원, 비거주용 건물 및 임시구조물 한정) 현재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

(단위: 개월)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t 검증
'24 시설퇴소청년		105	25.15	35.522	-
자립지원 기간	3년 미만	79	19.27	36.635	-3.078**
	3년 이상	26	43.04	24.891	

* $p < .05$, ** $p < .01$, *** $p < .001$

(4) 경제적 어려움으로 냉난방하지 못한 경험

최근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냉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은 3.8%p, 여름에 냉방을 하지 못한 경험은 전년에 비해 2.6%p 낮아졌다.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냉난방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률은 약 20%에 달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에게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46.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냉난방 못한 경험

(단위: %)

구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 여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름에 냉방을 하지 못한 경험 여부				
	사례 수 (명)	거의 없었음	있었음	χ^2 검증	사례 수 (명)	거의 없었음	있었음	χ^2 검증	
'23 시설퇴소청년	2,498	77.5	22.5	-	2,498	78.1	22.0	-	
'24 시설퇴소청년	2,661	81.3	18.7	-	2,661	80.6	19.4	-	
거주 지역	수도권	1,050	79.2	20.9	11.585 **	1,050	77.6	22.5	13.458 **
	비수도권	1,611	82.7	17.3		1,611	82.7	17.3	
퇴소 시설	아동시설	1,984	83.3	16.6	51.447 ***	1,984	83.2	16.7	46.505 ***
	청소년시설	554	74.4	25.6		554	72.7	27.2	
	보호시설	123	79.7	20.3		123	74	26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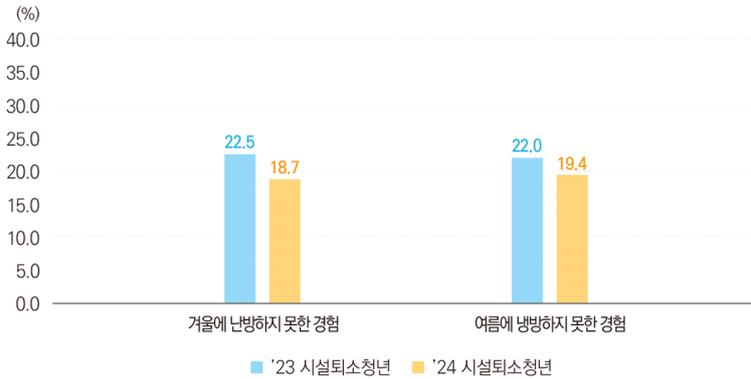


그림 Ⅲ-25. 최근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냉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

(5) 최근 1년간 주거빈곤 경험

최근 1년간 주거빈곤 경험 역시 '2개월 이상 월세 연체'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이사 또는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청년은 전년에 비해 3.3%p, '집주인과 수리,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은 청년들은 전년에 비해 3.0%p 증가하였다.

특히 과도한 보증금, 월세 인상 요구 및 재계약 요구 거절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아동시설 퇴소청년들에 비해 청소년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에게서의 경험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47. 최근 1년간 주거빈곤 경험

(단위: %)

구분	2개월 이상 월세 연체			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연체			이사 또는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경험 있음	경험 없음	χ^2 검증	경험 있음	경험 없음	χ^2 검증	경험 있음	경험 없음	χ^2 검증	경험 있음	경험 없음	χ^2 검증	
'23 시설 퇴소청년	12.2	87.8	-	13.5	86.5	-	4.5	95.5	-	9.1	90.9	-	
'24 시설 퇴소청년	12.2	87.8	-	13.6	86.4	-	5.9	94.1	-	12.4	87.6	-	
퇴소 시설	아동 시설	9.7	90.3	43.838 ***	11.6	88.4	27.844 ***	4.9	95.1	13.196 **	11.2	88.8	11.894 **
	청소년 시설	19.1	80.9		19.5	80.5		9.0	91.0		16.6	83.4	
	보호 시설	20.3	79.7		20.3	79.7		6.5	93.5		13.8	86.2	

구분	가구원 중 아동, 장애인 등이 있어 집을 구하기 어려움			주택 압류, 재개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등으로 집에서 쫓겨나거나 쫓겨날 위기에 처함			집주인과 수리,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음			보증금이나 월세 5% 이상 인상 요구, 재계약 요구 거절당함			
	경험 있음	경험 없음	χ^2 검증	경험 있음	경험 없음	χ^2 검증	경험 있음	경험 없음	χ^2 검증	경험 있음	경험 없음	χ^2 검증	
'23 시설 퇴소청년	1.5	98.5	-	1.7	98.3	-	7.7	92.3	-	3.4	96.6	-	
'24 시설 퇴소청년	2.8	97.2	-	2.1	97.9	-	10.7	89.3	-	4.3	95.7	-	
퇴소 시설	아동 시설	2.3	97.7	7.310 *	1.9	98.1	27.844 ***	9.7	80.3	9.571 **	4.7	95.3	3.256
	청소년 시설	4.2	95.8		2.7	97.3		14.3	85.7		3.2	96.8	
	보호 시설	4.9	95.1		4.1	95.9		11.4	88.6		2.4	97.6	

* α .05, ** α .01, *** α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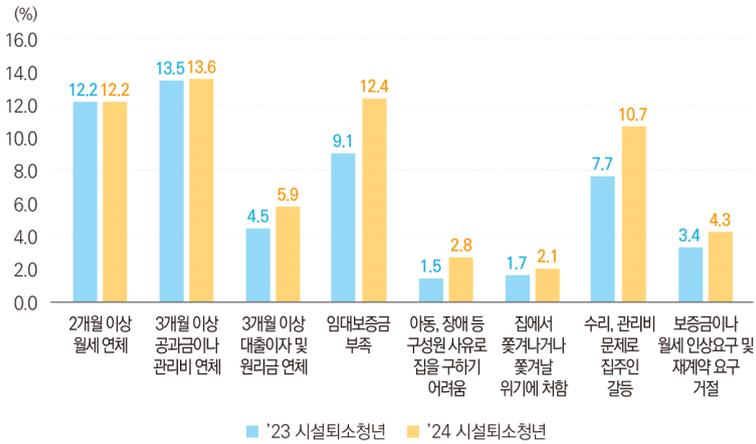


그림 III-26. 최근 1년간 주거빈곤 경험

5) 건강 및 심리·정서 영역

(1) 건강검진, 구강검진 경험 여부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과 최근 1년간 구강검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개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시설퇴소청년들의 질병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48.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최근 1년간 구강검진 경험(연도별)

(단위: %)

구분	최근 2년간 건강검진 경험			최근 1년간 구강검진 경험		
	사례 수(명)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사례 수(명)	경험 있음	경험 없음
'22 시설퇴소청년	2,456	50.9	49.1	2,457	49.9	50.1
'23 시설퇴소청년	2,498	56.4	43.6	2,498	53.0	47.0
'24 시설퇴소청년	2,661	59.4	40.6	2,661	57.2	42.8

* $\rho < .05$, ** $\rho < .01$, *** $\rho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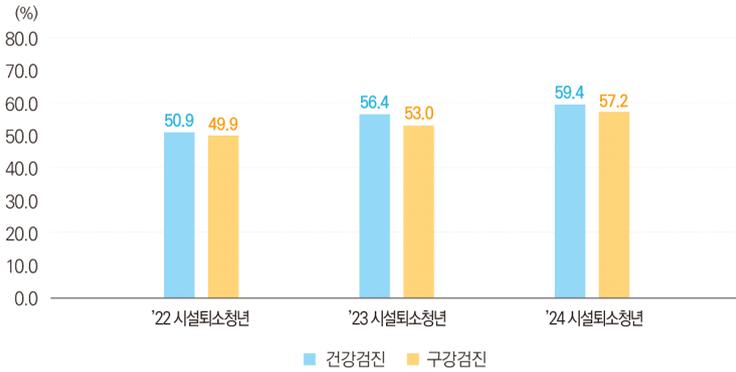


그림 III-27.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최근 1년간 구강검진 경험 (연도별)

(2) 우울증상

우울증상을 가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은 최근 3년간 24% 내외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여성, 고졸 이하의 학력, 수도권 거주, 청소년시설 퇴소, 낮은 경제수준의 청년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우울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49. 우울증상 경험

(단위: %, 점)

구분	우울증상 여부				우울경험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				
	사례 수(명)	증상 있음	증상 없음	t 검증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t 검증	
'22 시설퇴소청년	2,457	23.1	76.9	-	1,967	1.56	0.735	-	
'23 시설퇴소청년	2,498	24.5	75.5	-	2,044	1.62	0.774	-	
'24 시설퇴소청년	2,661	24.1	75.9	-	2,076	1.67	0.819	-	
성별	남자	1,273	19.8	80.2	24,193 ***	904	1.65	0.828	-0.708
	여자	1,388	28.0	72.0		1,172	1.68	0.812	
학력	고졸 이하	890	29.8	70.2	23,988 ***	698	1.76	0.874	3.646 ***
	대재 이상	1,771	21.2	78.8		1,378	1.62	0.785	

구분		우울증상 여부				우울경험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			
		사례 수(명)	증상 있음	증상 없음	t 검증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t 검증
거주 지역	수도권	1,050	28.5	71.5	18.592 ***	865	1.75	0.845	4.034 ***
	비수도권	1,611	21.2	78.8		1,211	1.61	0.794	
퇴소 시설	아동 시설 ^a	1,984	18.8	81.2	134.375 ***	1,499	1.58	0.770	32.341 ***
	청소년 시설 ^b	554	42.6	57.4		485	1.92	0.897	
	보호 시설 ^c	123	25.2	74.8		92	1.70	0.886	
경제 수준	상 ^a	160	17.5	82.5	114.155 ***	103	1.50	0.739	46.966 ***
	중 ^b	902	12.5	87.5		619	1.42	0.655	
	하 ^c	1,599	31.2	68.8		1,354	1.79	0.864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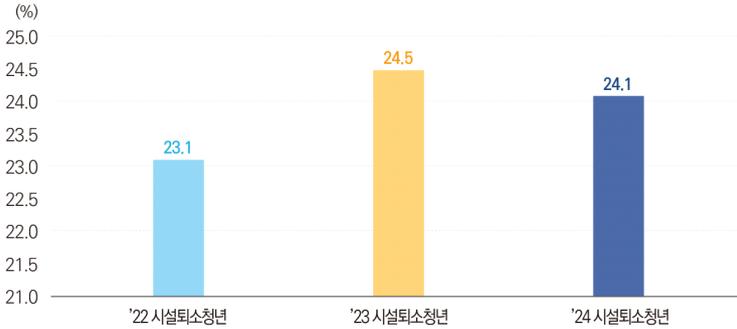


그림 III-28. 우울증상 경험 여부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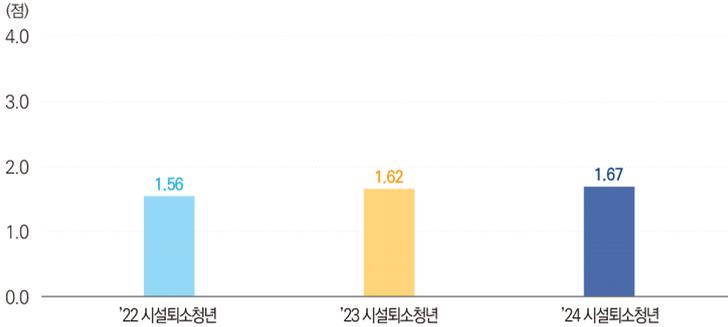


그림 III-29. 우울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

우울증상이 있는 청년들의 우울점수 평균은 2.84점으로 증상이 없는 청년들(평균 1.35 점)에 비해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았다. 이들의 우울 경험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 역시 증상이 없는 청년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0. 우울증상 여부에 따른 우울점수 및 우울 경험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

(단위: %, 점)

사례 수 (명)	우울증상		우울점수*				우울 경험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					
	증상 있음	증상 없음	증상 있음		증상 없음		t/F 검증	증상 있음		증상 없음		t/F 검증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2,661	24.1	75.9	2.84	.597	1.35	.324	60.524 ***	2.33	.913	1.37	.562	24.480 ***

* $p < .05$, ** $p < .01$, *** $p < .001$

(3) 고립감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 지에 대해 중간보다 낮은 수준의 고립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년들은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 기간에 따라 고립감의 점수도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51. 고립감 및 고립감을 느낀 기간

구분	고립감 경험 및 고립감을 느낀 기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전체	2,661	1.83	.932		
고립감을 느낀 기간	6개월 미만 ^a	370	2.43	.635	64.053*** b,c,d,e)a, d,e)b)a, e)c)a, d)a,b, e)a,b,c
	6개월~1년 ^b	163	2.78	.699	
	1년~2년 ^c	128	2.92	.685	
	2년~3년 ^d	71	3.14	.664	
	3년 이상 ^e	253	3.25	.679	
	(고립감 경험)	985	2.81	.74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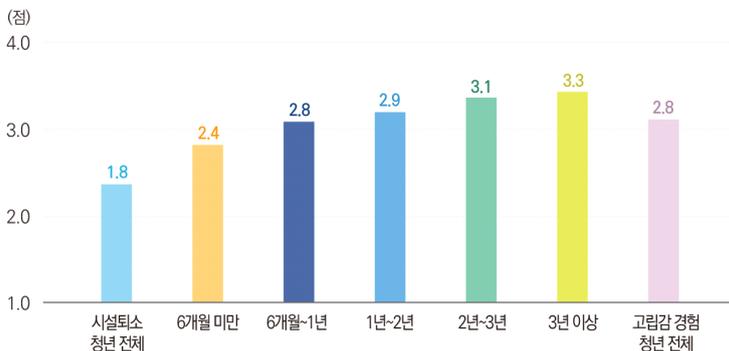


그림 III-30. 고립감 점수(고립감을 느낀 기간별)

이러한 고립감을 1년 이상 느낀 청년들은 최근 3년간 평균 44%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3년에 비해 ’24년에 6.0%p 이상 비율이 높아진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고립감을 느낀 기간은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수준이 낮다고 인식한 청년들의 경우 2년 이상 고립감에 빠져 있다는 응답률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립감을 지속시키는 이유 중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52.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감을 느낀 기간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χ^2 검증	
'22 시설퇴소청년	788	40.9	12.2	9.4	7.4	30.2	-	
'23 시설퇴소청년	1,016	46.0	14.9	12.2	6.7	20.3	-	
'24 시설퇴소청년	985	37.6	16.5	13.0	7.2	25.7	-	
경제 수준	상	39	28.2	15.4	33.3	7.7	15.4	42.209 ***
	중	211	51.2	17.1	11.4	4.3	16.1	
	하	735	34.1	16.5	12.4	8.0	29.0	

* $\rho < .05$, ** $\rho < .01$, *** $\rho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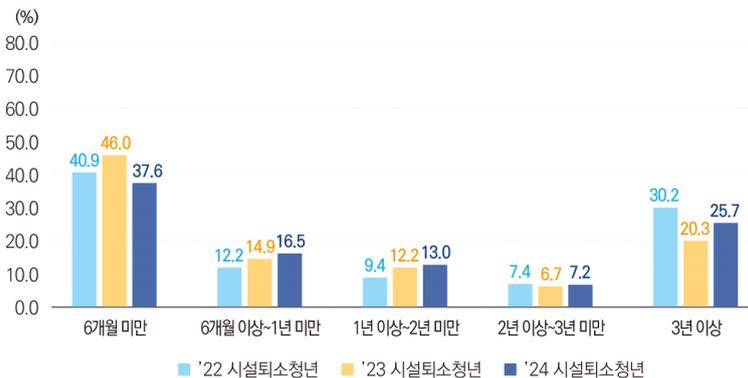


그림 III-31. 고립감을 느낀 기간

다만, 앞서 고립감을 느낀 기간과는 별개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거의 맺지 않은 채 생활한 경험은 신규 패널만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다만, 여자 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경제수준이 '하'에 속하는 청년에게서 유의미하게 현재 은둔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립과 은둔의 이유 중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와 관련이 있음을 추측하게 해준다.

표 III-53.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 없이 6개월 이상 생활한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명)	없음	과거에는 경험 있으나, 현재는		χ^2 검증	
			그렇지 않음	현재 하고 있음		
'24 시설퇴소청년	965	75.5	19.2	5.3	-	
성별	남자	476	80.7	14.5	4.8	14.345**
	여자	489	70.6	23.7	5.7	
퇴소 시설	아동시설	698	79.2	16.3	4.4	26.962***
	청소년시설	197	61.4	30.5	8.1	
	보호시설	70	78.6	15.7	5.7	
경제 수준	상	70	91.4	7.1	1.4	25.757***
	중	324	81.8	14.2	4.0	
	하	571	70.1	23.5	6.5	

* $p < .05$, ** $p < .01$, *** $p < .001$

(4) 은둔

은둔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5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24.1%) 등의 순이었으나, 7년 이상인 경우도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 이유는 인간관계 문제가 35.3%로 가장 많고 경제적 문제 29.4% 등의 순이었으나, 취업에서의 문제, 학업중단 및 대학진학 실패 등 일과 학업에서의 실패 등도 은둔의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표 III-54. 은둔 기간 및 은둔 이유(신규 패널)

중복응답 / (단위: %)

구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은둔 기간	51.9	24.1	11.1	3.7	9.3
구분	학업중단, 대학진학 실패	취업문제	인간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게임, 인터넷 몰입
은둔 이유	7.8	11.8	35.3	29.4	5.9

* $p < .05$, ** $p < .01$, *** $p < .001$

(5) 자해 경험

최근 1년간 자해 경험은 전년에 비해 1.2%p로 낮아진 9.0%로, 시설퇴소청년들의 자해 경험이 다소 낮아지고 있음은 이들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자해 경험이 여성 시설퇴소청년, 고졸 이하, 낮은 경제수준의 청년들에게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청소년시설 및 보호시설 퇴소청년 5명 중 1명에게서 자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나온 점은 이들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정신·심리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55. 최근 1년간 자해 경험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있음	없음	χ^2 검증
'23 시설퇴소청년		2,498	10.2	89.8	-
'24 시설퇴소청년		2,661	9.0	91.0	-
성별	남자	1,273	7.5	92.5	6.887**
	여자	1,388	10.4	89.6	
학력	고졸 이하	890	10.8	89.2	5.329*
	대재 이상	1,771	8.1	91.9	
퇴소 시설	아동시설	1,984	5.4	94.6	119.415***
	청소년시설	554	19.3	80.7	
	보호시설	123	19.5	80.5	
경제 수준	상	160	4.4	95.6	18.399***
	중	902	6.4	93.6	
	하	1,599	10.9	89.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32. 자해 경험

(6)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상담 필요하나 상담받지 못한 경험

① 상담이 필요하지만 상담받지 못한 경험 여부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진료)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11.0%는 상담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률이 전년에 비해 2.1%p 감소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10명 중 1명 이상의 시설퇴소청년, 특히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의 경우는 5명 중 1명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이 필요함에도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56.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진료)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있음	없음	필요하지 않았음	χ^2 검증	
'23 시설퇴소청년	2,498	13.1	70.8	16.1	-	
'24 시설퇴소청년	2,661	11.0	71.1	17.9	-	
성별	남자	1,273	7.7	74.7	17.6	29.339***
	여자	1,388	14.1	67.8	18.1	
거주 지역	수도권	1,050	13.4	70.3	16.3	11.434**
	비수도권	1,611	9.5	71.6	18.9	
퇴소 시설	아동시설	1,984	7.5	72.4	20.2	126.171***
	청소년시설	554	23.1	65.0	11.9	
	보호시설	123	14.6	78.0	7.3	
경제 수준	상	160	5.0	72.5	22.5	34.803***
	중	902	7.1	74.6	18.3	
	하	1,599	13.9	69.0	17.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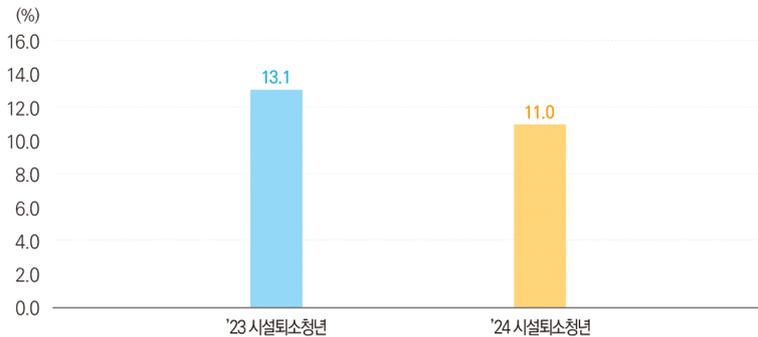


그림 Ⅲ-33.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진료)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

② 전문가의 상담을 받지 못한 이유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상담(진료) 비용이 부담돼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비용 부담 외에도 ‘상담받을 시간이 없어서’(14.6%),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9.9%) 상담을 받지 못한 것도 주요 이유로 볼 수 있다. 시설퇴소청년들 중 대다수가 일을 하거나 학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상담을 받는 것이 부담될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가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지 진심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에게 신뢰가 가지 않아서’, ‘체계적으로 진료 또는 상담해주는 곳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곳이라면 비용이 비쌀 것 같아서’ 등과 같이 상담자 및 상담의 효과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경우가 있었고, ‘외출이 어려움’,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안 씻어서’, ‘귀찮아서’ 등과 같이 은둔, 고립의 상태에 놓인 경우도 있었다. 또한 ‘예약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상담지원 신청이 까다롭기 때문에’와 같이 상담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 외에도 ‘진료기록이 남아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걱정으로 상담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III-57.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정보 부족)	27	9.2
주변에 상담(진료)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5	1.7
혼자 가기 어려워서	14	4.8
상담(진료) 비용이 부담돼서	142	48.3
상담받을 시간이 없어서	43	14.6
정신의료기관(정신과, 상담기관) 등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	29	9.9
주위의 시선이나 반대 때문에	11	3.7
기타	23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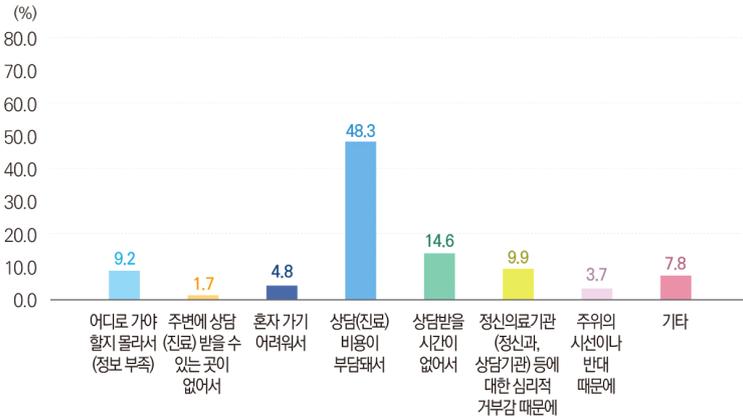


그림 III-34.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주된 이유

(7)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약물 사용 경험

최근 1년간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퇴소청년은 14.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우울이나 고립감, 자해 경험 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여성 청년, 청소년시설 퇴소, 낮은 경제수준의 청년들에게서 유의미하게 높게 발생하는 특성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약물 사용 경험도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1년간 기분을 좋게 하거나 긴장을 풀기 위해, 혹은 더 활동적이 되거나 정신을 차리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청년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1.4%p 증가한 14.9%로 나타났다. 의사의 처방 없이 약물을 사용하는 비율은 성별이나 학력, 퇴소시설 등이 집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 하위집단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약물을 사용한 경험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에게서, 의사의 처방 없이 약물을 사용한 경험은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 마련과 더불어 안전한 약물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58. 최근 1년간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약물 사용 경험

(단위: %)

구분	약물 사용 경험				의사의 처방 없이 약물 사용 경험				
	사례 수 (명)	있음	없음	χ^2 검증	사례 수 (명)	있음	없음	χ^2 검증	
'23 시설퇴소청년	2,498	14.9	85.1	-	371	13.5	86.5	-	
'24 시설퇴소청년	2,661	14.9	85.1	-	397	14.9	85.1	-	
성별	남자	1,273	10.5	89.5	37.103 ***	134	12.7	87.3	0.756
	여자	1,388	18.9	81.1		263	16.0	84.0	
거주지역	수도권	1,050	17.2	82.8	7.347 **	181	14.4	85.6	0.065
	비수도권	1,611	13.4	86.6		216	15.3	84.7	
퇴소시설	아동시설	1,984	9.4	90.6	205.848 ***	187	11.8	88.2	4.489
	청소년시설	554	33.9	66.1		188	16.5	83.5	
	보호시설	123	17.9	82.1		22	27.3	72.7	
경제수준	상	160	9.4	90.6	34.006 ***	15	20.0	80.0	0.950
	중	902	10.1	89.9		91	12.1	87.9	
	하	1,599	18.2	81.8		291	15.5	84.5	

* $p < .05$, ** $p < .01$, *** $p < .001$

신체·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퇴소청년들은 12.6%로 전년에 비해 0.4%p 감소하였다. 신체·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퇴소청년은 전체 응답자의 12.6%(334명)였는데, 여성 청년, 수도권 거주, 경제수준이 낮은

청년들에게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특히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의 경우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청년이 신체·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앞서 논한 심리·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볼 수 있다.

표 III-59. 신체·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여부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명)	있음	없음	χ^2 검증
'23 시설퇴소청년		2,498	13.0	87.0	-
'24 시설퇴소청년		2,661	12.6	87.4	-
성별	남자	1,273	10.2	89.8	12.170***
	여자	1,388	14.7	85.3	
거주지역	수도권	1,050	15.5	84.5	13.958***
	비수도권	1,611	10.6	89.4	
퇴소시설	아동시설	1,984	8.8	91.2	104.537***
	청소년시설	554	24.9	75.1	
	보호시설	123	17.1	82.9	
경제수준	상	160	6.9	93.1	76.961***
	중	902	5.4	94.6	
	하	1,599	17.1	82.9	

* $p < .05$, ** $p < .01$, *** $p < .001$

신체·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최근 1년간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 후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2.3%였고, 37.7%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병원 진료 없이 약만 복용하고 있거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0. 건강 문제로 치료받은 경험

(단위: %)

건강 문제로 치료받은 경험					
병원 진료 후 치료		병원 미진료, 약물 복용		아무 조치 없음	
사례 수(명)	비율	사례 수(명)	비율	사례 수(명)	비율
208	62.3	33	9.9	93	27.8



그림 III-35. 신체·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여부 및 건강 문제로 치료받은 경험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병원비가 없어서(경제적 문제) 병원을 가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응답자들에 비해 시간이 없고(36.4%), 병원에 가기 멀어서(21.2%)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에 비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22.6%)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년들의 기타 의견으로는 ‘(병원에) 가도 정신적 장애라 이젠 소용이 없어서’,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고 치료 기간을 예상할 수 없고, 완치가 확실치 않아서’, ‘치료 불가’ 등 본인의 질병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프다 표현력이 부족해서’, ‘약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의사 파업 문제로 관련 질환 전문의가 없음’ 등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표 Ⅲ-61. 최근 1년 건강 문제로 인한 치료 경험 (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응답자)

중복응답 / (단위: %)

구분	병원 미진료, 약물 복용		아무 조치 없음		합계
	사례 수(명)	비율	사례 수(명)	비율	
병원비가 없어서(경제적 문제)	17	51.5	55	59.1	72
시간이 없어서	12	36.4	23	24.7	35
병원이 멀어서	7	21.2	6	6.5	13
많이 아프지 않아서	9	27.3	25	26.9	34
건강보험이 없어서(보험료 체납 등)	3	9.1	7	7.5	10
병원에 가기가 두려워서	9	27.3	24	25.8	33
몸이 불편해서(아동 문제)	0	0	2	2.2	2
귀찮아서	12	36.4	29	31.2	41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정보 부족)	5	15.2	21	22.6	26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5	15.2	10	10.8	15
기타	2	6.1	9	9.7	11
합계	33		93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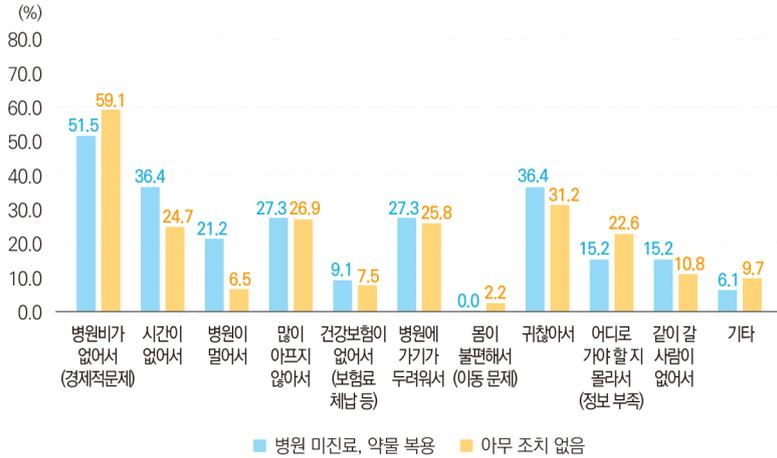


그림 III-36. 최근 1년 건강 문제가 있으나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응답자)

병원 진료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르고 있는 청년들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청년 (126명)이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를 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62>와 같다. 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고, 대부분의 응답 분포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병원비가 없어서 혹은 건강보험이 없거나 보험료가 체납되어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11.8%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이유는 의료급여 수급의 경우, 1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1,000원이고 약국은 500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한 걱정과 건강보험이 없어서(또는 체납으로) 병원에 가지 못했다는 경우는 이들이 의료급여의 지원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62.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의료급여 수급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병원비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	많이 아프지 않아서	건강 보험이 없어서 (체납 등)	병원에 가기 두려워서	몸이 불편해서 (이동 문제)	귀찮아서	정보 부족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기타
전체	126	57.1	27.8	10.3	27.0	7.9	26.2	1.6	32.5	20.6	11.9	8.7
의료 급여	수급	34	50.0	23.5	17.6	20.6	11.8	26.5	5.9	32.4	20.6	14.7
	미수급	92	59.8	29.3	7.6	29.3	6.5	26.1	0.0	32.6	20.7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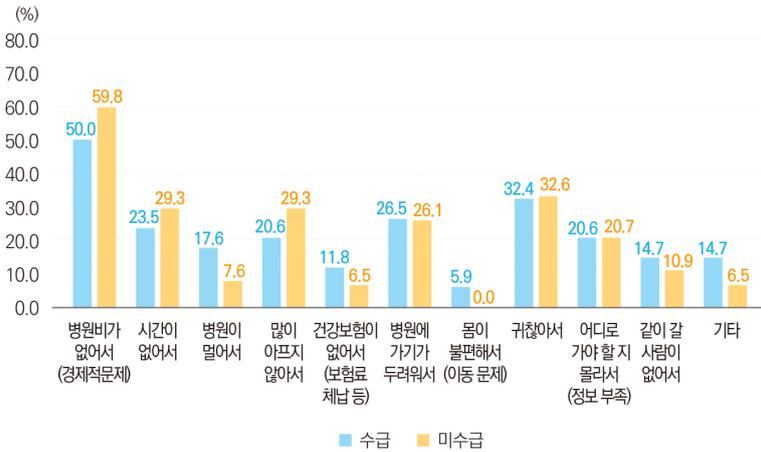


그림 III-37.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의료급여 수급 여부)

최근 1년간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지난 1년간 의료비 지출 금액은 평균 82.10만원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의료비 지출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의료급여 수급 청년들은 1년간 평균 40.76만원을 지출하는 데 비해 미수급 청년들은 102.6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 청년들에 비해 미수급 청년들이 약 2.5배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3. 지난 1년간 의료비 지출 금액

(단위: 만원)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t 검증	
지난 1년간 평균 의료비	334	82.10	199.587	-	
의료비	의료급여 수급	111	40.76	110.21	-3.330**
	의료급여 미수급	223	102.67	228.858	

* $\rho < .05$, ** $\rho < .01$, *** $\rho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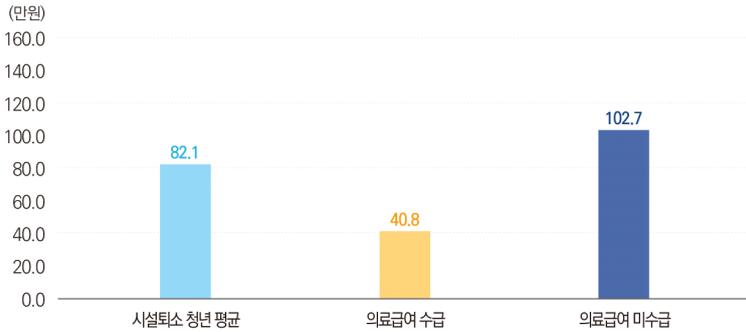


그림 III-38. 지난 1년간 의료비 지출 금액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주된 이유로는 ‘돈이 없어서’가 64.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건강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23.0%)’, ‘귀찮아서(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청년들은 ‘돈이 없어서’ 체납했다는 이유 외에 ‘귀찮아서(25.0%)’ 체납했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중’에 속하는 청년들은 ‘돈이 없어서’ 체납한 경우와 ‘건강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체납했다는 이유가 모두 40%대로 나타났고, ‘하’에 속하는 청년들은 ‘돈이 없어서’ 체납했다는 이유가 약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4. 건강보험료 미납 또는 연체 경험 및 건강보험료 체납 이유

복수응답 /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없다	있다	χ^2 검증	사례 수 (명)	체납이유					χ^2 검증	
						돈이 없어서	건강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귀찮 아서	기타		
'23년 자립	2,498	90.1	9.9	-	-	-	-	-	-	-	-	
'24년 자립	2,661	90.8	9.2	-	244	64.3	23.0	2.5	6.6	3.7	-	
학력	고졸 이하	890	87.1	12.9	22,601 ***	115	65.2	23.5	0.9	7.0	3.5	2.366
	대재 이상	1,771	92.7	7.3		129	63.6	22.5	3.9	6.2	3.9	
퇴소 시설	아동시설	1,984	93.1	6.9	53,934 ***	136	64.0	21.3	2.9	8.1	3.7	7.568
	청소년시설	554	83.0	17.0		94	62.8	27.7	2.1	3.2	4.3	
	보호시설	123	88.6	11.4		14	78.6	7.1	0.0	14.3	0.0	
경제 수준	상	160	95.0	95.0	29,225 ***	8	62.5	12.5	0.0	25.0	0.0	19.018
	중	902	94.5	94.5		50	48.0	40.0	4.0	8.0	0.0	
	하	1,599	88.4	88.4		186	68.8	18.8	2.2	5.4	4.8	

* α .05, ** α .01, *** α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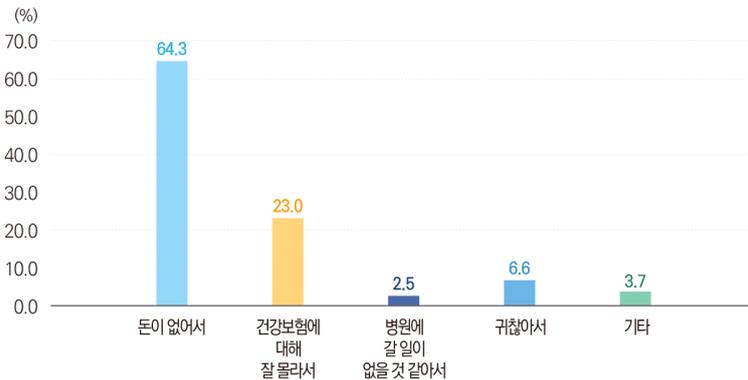


그림 III-39. 건강보험료 체납 이유(복수응답)

(8) 주관적 건강상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지난 조사에 비해 좋아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청년에 비해 남성 청년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청년들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들에 비해 아동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이, 경제수준이 '하'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청년들에 비해 '중' 또는 '상'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 좋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5. 건강상태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명)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평균	표준편차	t/F 검증	
'22 시설퇴소청년	2,457	3.1	18.1	50.4	18.8	9.5	3.14	0.925	-	
'23 시설퇴소청년	2,498	2.6	17.3	54.5	18.5	7.1	3.10	0.857	-	
'24 시설퇴소청년	2,661	1.8	15.0	53.5	20.3	9.5	3.21	0.872	-	
성별	남자	1,273	1.2	13.1	50.4	22.2	13.2	3.33	0.905	7.083***
	여자	1,388	2.4	16.6	56.4	18.5	6.1	3.09	0.825	
거주지역	수도권	1,050	2.8	16.5	53.7	19.0	8.0	3.13	0.877	-3.619***
	비수도권	1,611	1.2	14.0	53.4	21.0	10.4	3.26	0.866	
퇴소시설	아동시설 ^a	1,984	1.1	12.0	54.1	22.6	10.2	3.29	0.846	47.164*** b<a,c
	청소년시설 ^b	554	4.3	25.6	52.0	12.6	5.4	2.89	0.873	
	보호시설 ^c	123	1.6	14.6	50.4	17.1	16.3	3.32	0.969	
경제수준	상 ^a	160	0.0	10.6	41.9	31.3	16.3	3.53	0.890	64.878*** c<b,a
	중 ^b	902	1.0	6.4	55.5	23.8	13.2	3.42	0.834	
	하 ^c	1,599	2.4	20.2	53.5	17.1	6.7	3.05	0.858	

* α .05, ** α .01, *** α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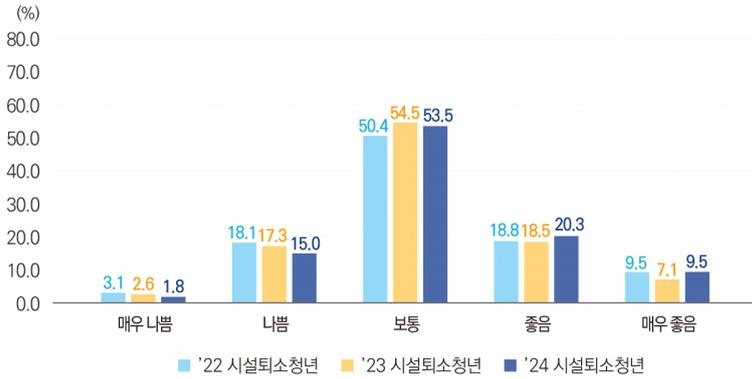


그림 III-40. 건강상태

6) 여가·문화 영역

(1) 여가·문화 경험률

3차년도 조사참여자들의 지난 일년간 여가·문화 경험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66>과 같다. 시설퇴소청년들은 2~3일 정도의 여행을 한 비율이 타 활동 경험률에 비해 제일 높았고 단체·동호회 활동 경험률이 가장 낮았다. 하위집단별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모든 활동에서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경험률이 높았다. 또한 스포츠 활동이나 여행은 고졸 이하보다는 대학 재학 이상인 경우에 높았고 청소년퇴소시설 청년들은 스포츠 활동에서 가장 낮은 경험률을 보였으며 아동시설 퇴소청년은 타 시설퇴소청년에 비해 여행 경험률이 높았다.

표 III-66. 지난 1년간 여가·문화 경험률

(단위: %)

구분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			정기적인 스포츠 활동			2~3일 정도의 여행			정기적인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경험 있음	경험 없음	χ^2 검증	경험 있음	경험 없음	χ^2 검증	경험 있음	경험 없음	χ^2 검증	경험 있음	경험 없음	χ^2 검증				
시설퇴소청년	43.7	56.3	-	42.2	57.8	-	61.8	38.2	-	27.8	72.2	-				
성별	남	45.9	54.1	4.837	52.0	48.0	96.111	58.4	41.6	12.327	32.8	67.2	29.765			
	여	41.6	58.4	*	33.2	66.8	***	65.0	35.0	***	23.3	76.7	***			
학력	고졸 이하	41.5	58.5	2.648	38.1	61.9	9.271	52.2	47.8	51.907	27.2	72.8	.254			
	대재 이상	44.8	55.2		44.3	55.7	**	66.6	33.4	***	28.1	71.9				
퇴소 시설	아동 시설	44.7	55.3	4.488	44.6	55.4	34.967	64.7	35.3	27.130	28.0	72.0	.507			
	청소년 시설	39.7	60.3		31.6	68.4		***	54.0		46.0	***		26.7	73.3	
	보호 시설	45.5	54.5		52.0	48.0			51.2		48.8			29.3	70.7	
경제 수준	상	62.5	37.5	49.907	60.6	39.4	59.491	71.2	28.8	48.667	50.6	49.4	61.115			
	중	49.1	50.9		48.9	51.1		***	69.6		30.4	***		31.3	68.7	***
	하	38.7	61.3		36.6	63.4			56.5		43.5			23.6	76.4	

* $p < .05$, ** $p < .01$, *** $p < .001$

여가·문화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그 주된 이유를 살펴본 결과(표 III-67), 정기적인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률(32.6~50.8%)이 가장 많았다. 시간 부족(19.7~22.3%)이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15.4~24.3%)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고 함께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9.6~12.9%)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정기적인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에서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 경제적 부담(24.6%), 시간 부족(20.0%), 함께할 사람이 없기 때문(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퇴소청년 중 상당수는 필요성을 느낌에도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관계 부족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67. 지난 1년간 여가·문화 경험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함께 할 사람 부재	공간, 지리적 문제	관련 경험, 자식 정보 부족	필요 없음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	1,499	37.4	19.7	10.7	1.1	6.7	24.3
정기적인 스포츠 활동	1,538	32.6	22.3	12.9	1.4	6.6	24.3
2~3일 정도의 여행	1,016	50.8	20.9	9.6	1.4	2.0	15.4
정기적인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1,921	24.6	20.0	13.2	1.1	7.5	33.6

한편 시설퇴소청년들의 여가·문화 경험 정도와 심리·정서 상태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가·문화 경험 정도는 각 활동에 대한 경험 정도를 모두 합친 값을 사용하였고 심리·정서 상태는 우울, 행복도, 삶의 만족도를 각각의 변수로 활용하였다. 변수 간 관련성 분석에 앞서 성별, 재학 여부, 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가·문화 경험 정도는 개인의 우울·행복도·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여가·문화 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였으나 특이하게도 우울 정도 역시 여가·문화 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우울과 여가·문화 경험 정도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여가·문화 경험 정도의 설명량은 우울의 경우 6.5%, 행복도의 경우 7.9%, 삶의 만족도의 경우 7%이다.

표 III-68. 여가·문화 경험 정도와 우울·행복도·삶의 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N=2,661

우울	상관계수					모형			
	1	2	3	4	5	S.E	β	<i>t</i>	VIF
상수						-10.456		-10.969***	
1. 성별						1.200	.088	4.877***	1.011
2. 재학 여부	-.039					.764	.046	2.551*	1.027
3. 경제수준	.027	-.123**				2.232	.199	10.678***	1.059
4. 여가·문화 경험	.093***	.071***	.192***			1.278	.262	14.195***	1.057
5. 우울	.116***	.037*	.246***	.312***					
평균	1.52	1.78	2.54	6.24	1.71	R^2 (수정된 R^2) .143(.141)/ R^2 변화량 .065			
표준편차	.500	.414	.607	1.397	.756	F 201.487***			

행복도	상관계수					모형			
	1	2	3	4	5	S.E	β	<i>t</i>	VIF
상수						-11.294		-31.747***	
1. 성별						-.084	-.017	-.918	1.011
2. 재학 여부	-.039					-.169	-.027	-1.516	1.027
3. 경제수준	.027	-.123**				-.861	-.205	-11.131***	1.059
4. 여가·문화 경험	.093***	.071***	.192***			-.592	-.290	-15.757***	1.057
5. 행복도	-.048*	-.022	-.258**	-.333**					
평균	1.52	1.78	2.54	6.25	5.37	R^2 (수정된 R^2) .151(.149)/ R^2 변화량 .079			
표준편차	.500	.414	.607	1.397	2.552	F 248.280***			

삶의 만족도	상관계수					모형			
	1	2	3	4	5	S.E	β	<i>t</i>	VIF
상수						-12.156		-31.747***	
1. 성별						-.192	-.039	-.918*	1.011
2. 재학 여부	-.039					-.437	-.073	-1.516***	1.027
3. 경제수준	.027	-.123**				-1.186	-.291	-11.131***	1.059
4. 여가·문화 경험	.093***	.071***	.192***			-.482	-.272	-15.757***	1.057
5. 삶의 만족도	-.069**	-.055*	-.336**	-.337**					
평균	1.52	1.78	2.54	6.24	5.06	R^2 (수정된 R^2) .196(.195)/ R^2 변화량 .070			
표준편차	.500	.414	.607	1.397	2.474	F 231.565***			

* $p < .05$, ** $p < .01$, *** $p < .001$

(2) 일과 여가 간 균형

현재 삶에서 일과 여가 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시설퇴소청년들의 경우 '일에 비중을 둔다(1-4점)'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5-6점)'(35.9%), '여가에 비중을 둔다(7-10점)'(21.7%)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69>. 이에 비해 일반청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1.2%로 가장 많고, '여가에 비중을 둔다'(34.7%), '일에 비중을 둔다'(24.0%)의 순으로 응답하여 시설퇴소청년들이 일반청년에 비해 여가보다는 일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II-69. 일(학업)과 여가 간 균형

(단위: %, 점)

구분	1 (일에 비중)	2	3	4	5	6	7	8	9	10 (여가에 비중)	평균
일반청년	0.4	2.0	8.7	13.0	21.8	19.5	24.1	9.0	1.5	0.0	5.6
시설퇴소청년	9.9	8.9	13.0	10.7	18.8	17.1	7.7	6.8	3.6	3.6	4.8

* 주: 일반청년 자료는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2) 결과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는 19~79세를 대상으로 하나, 본 실태조사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19~29세(862명)의 응답과 비교함.

(3) 희망하는 여유시간 사용 방법

희망하는 여유시간 사용 방법에 대해 일반청년들과 시설퇴소청년들은 비율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여가활동,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70>. 다만 시설퇴소청년들은 일반청년들에 비해 추가적인 경제활동이나 개인휴식을 희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시설퇴소청년들이 일반청년들에 비해 여가보다는 일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은 것과 더불어 가족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시설퇴소청년들의 고단한 삶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III-70. 여유시간 사용 희망 방법

(단위: %)

구분	추가적인 경제활동	자기 계발	봉사 활동	건강 관리	여가 활동	개인 휴식	가족과의 시간	친구/ 지인과 놀이	기타	합계
일반청년	7.1	19.1	3.4	20.8	34.1	3.5	3.2	8.8	0.1	100.0
시설퇴소청년	11.9	22.3	2.1	18.3	22.6	12.6	1.8	7.3	1.0	100.0

* 주: 일반청년 자료는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2) 결과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는 19~79세를 대상으로 하나, 본 실태조사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19~29세(862명)의 응답과 비교함.



그림 III-41. 여유시간 사용 희망 방법

7) 가치관 및 미래인식 영역

(1) 삶의 만족도

시설퇴소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71>과 같다. 이들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06점으로 보통에 머물러 있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0~4점)은 전체 응답자의 34.8%이며 0점(전혀 만족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자도 5.6%에 달한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삶의 만족도는 하위집단별

로 차이를 보이는데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학력이 높은 경우, 비수도권에서 사는 경우 삶의 만족도 평균이 다소 높았다. 또한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이 타 시설퇴소청년에 비해, 그리고 자립지원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3년 미만인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이다.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는 삶의 만족도가 평균 7점대로 상당히 높았던 반면 '하'인 경우는 4점대로 낮아 집단 간 차이가 매우 컸다. 즉 경제적 상황이 시설퇴소청년들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71. 삶의 만족도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검증
전체	5.06	2.474	-
성별	남	5.24	3.516***
	여	4.90	
학력	고졸 이하	4.90	-2.299*
	대재 이상	5.14	
거주 지역	수도권	4.82	-4.144***
	비수도권	5.22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5.25	25.976*** a,c>b
	청소년시설 ^b	4.40	
	소년보호시설 ^c	5.08	
자립지원 기관	3년 미만	5.11	1.997*
	3년 이상	4.88	
경제 수준	상 ^a	7.11	168.669*** a>b>c
	중 ^b	5.82	
	하 ^c	4.43	

* α .05, ** α .01, *** α .001

(2) 행복도

시설퇴소청년들이 응답한 어제의 행복한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72>와 같다. 이들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37점으로 2022년 일반청년들의 행복도 평균 점수 6.86과 비교해보면 낮은 점수이다.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률(0~4점)은 전체 응답자의 29%이며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비율(0점)은 전체 응답자의 5.3%로 이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위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거주자에게서,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보다 타 시설 퇴소청년에게서 행복도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수준은 행복도와 밀접한 관련을 보였는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는 크게 상승하였다.

표 III-72. 어제의 행복도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검증
일반 청년	6.86	1.992	-
시설퇴소청년	5.37	2.552	-
성별	남	5.50	2.463*
	여	5.25	
거주 지역	수도권	5.13	-3.997***
	비수도권	5.53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5.55	22.084*** a,c>b
	청소년시설 ^b	4.74	
	소년보호시설 ^c	5.38	
경제 수준	상 ^a	6.96	94.579*** a>b>c
	중 ^b	5.98	
	하 ^c	4.87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일반청년 자료는 청년 삶 실태조사(경제정 외, 2022) 결과임. 청년 삶 실태조사는 19-34세를 대상으로 하나, 본 실태조사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29세 이하의 응답만을 선택하여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하여 비교함.

(3)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실현 정도

시설퇴소청년들 10명 중 7명은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응답(14%)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응답(15%)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표 III-73). 응답률은 성별, 학력, 퇴소시설,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학력이 높을수록, 타 시설퇴소청년보다는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이,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미래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73.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실현 가능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실현 불가능	어느 정도 실현 가능	완벽하게 실현 가능	χ^2 검증	
시설퇴소청년	14.0	71.0	15.0	-	
성별	남	13.5	68.6	17.9	16.740***
	여	14.5	73.3	12.2	
학력	고졸 이하	19.3	65.8	14.8	31.957***
	대재 이상	11.3	73.6	15.0	
퇴소 시설	아동시설	13.6	72.2	14.2	13.588**
	청소년시설	15.9	68.6	15.5	
	보호시설	12.2	62.6	25.2	
경제 수준	상	12.5	60.6	26.9	68.668***
	중	7.8	75.5	16.7	
	하	17.7	69.5	12.8	

* α .05, ** α .01, *** α .001

(4) 결혼 및 자녀출산·양육의 중요도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서 결혼과 자녀출산·양육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III-74>와 같다.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이들, 즉 40.5%는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출산 및 양육이 자신이 바라는 미래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그보다 다소 높은 46.9%였다. 결혼이나 자녀출산 및 양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더 높았다. 이는 여자들의 경우 결혼 및 자녀출산 이후의 생활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동시설이나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이 보호시설 퇴소청년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중' 이하인 경우에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았다. 즉 이들의 생활이 여유롭지 못한 경우 결혼이나 자녀출산·양육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74.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서의 결혼 및 자녀출산·양육의 중요도

(단위: %, 점)

결혼의 중요도		1	2	3	4	평균	표준편차	t/F 검증
시설퇴소청년		17.9	22.6	37.4	22.1	2.64	1.016	-
성별	남	16.3	20.0	39.0	24.7	2.72	1.010	4.161***
	여	19.5	25.0	35.9	19.7	2.56	1.015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6.7	22.5	39.2	21.6	2.66	.996	10.612
	청소년시설 ^b	22.9	25.3	30.9	20.9	2.50	1.063	***
	소년보호시설 ^c	14.6	13.0	37.4	35.0	2.93	1.034	c>a,b
경제 수준	상 ^a	11.9	15.0	43.8	29.4	2.91	.957	19.880
	중 ^b	12.7	22.0	41.9	23.4	2.76	.952	***
	하 ^c	21.5	23.8	34.2	20.6	2.54	1.044	a,b>c

자녀출산·양육의 중요도		1	2	3	4	평균	표준편차	t/F 검증
시설퇴소청년		21.9	25.0	31.8	21.3	2.52	1.056	-
성별	남	19.4	22.9	33.9	23.8	2.62	1.049	4.561***
	여	24.3	26.9	29.8	19.0	2.44	1.055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20.8	25.4	33.0	20.9	2.54	1.040	10.538
	청소년시설 ^b	27.1	26.2	27.1	19.7	2.39	1.084	***
	소년보호시설 ^c	17.9	13.8	33.3	35.0	2.85	1.092	c>a,b
경제 수준	상 ^a	14.4	23.1	36.2	26.2	2.74	1.005	17.611
	중 ^b	16.3	24.3	36.8	22.6	2.66	1.002	***
	하 ^c	25.9	25.6	28.5	20.1	2.43	1.079	a,b>c

* 주: 1)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중요하다, 4. 매우 중요하다
 2) *p <.05, **p <.01, ***p <.001

(5) 기초생활급여 수급 여부에 따른 가치관 및 미래인식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행복도, 미래실현 가능 정도, 자립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청년들은 비수급 청년들에 비해 자립수준은 다소 낮지만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 미래실현 가능 정도, 자립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거급여 수급 청년은 비수급 청년에 비해 자립수준은 유의미하게 낮지만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 미래실현 가능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립수준이 비수급 청년들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수급 여부가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쳐 현재 및 미래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나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표 III-75.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와 삶의 만족도·행복도·미래실현 가능 정도·자립수준 간의 관련
(단위: 점)

구분	사례 수 (명)	삶의 만족도			행복도			
		평균	표준편차	t 검증	평균	표준편차	t 검증	
시설퇴소청년	2,661	5.06	2.474	-	5.37	2.552	-	
생계급여	수급	1,025	5.21	2.473	2.527*	5.53	2.523	2.569*
	비수급	1,636	4.97	2.470		5.27	2.566	
의료급여	수급	801	5.22	2.529	2.120*	5.54	2.557	3.932***
	비수급	1,860	4.99	2.447		5.30	2.547	
주거급여	수급	811	5.13	2.535	.941	5.48	2.527	1.480
	비수급	1,850	5.03	2.447		5.32	2.562	

구분	사례 수 (명)	미래실현 가능 정도			자립수준			
		평균	표준편차	t 검증	평균	표준편차	t 검증	
시설퇴소청년	2,661	2.01	.538	-	2.90	.629	-	
생계급여	수급	1,025	2.05	.541	2.985**	2.82	.613	-5.267***
	비수급	1,636	1.98	.535		2.95	.634	
의료급여	수급	801	2.07	.528	3.932***	2.84	.602	-3.731***
	비수급	1,860	1.98	.541		2.93	.638	
주거급여	수급	811	2.03	.545	1.040	2.84	.604	-3.550***
	비수급	1,850	2.00	.535		2.93	.638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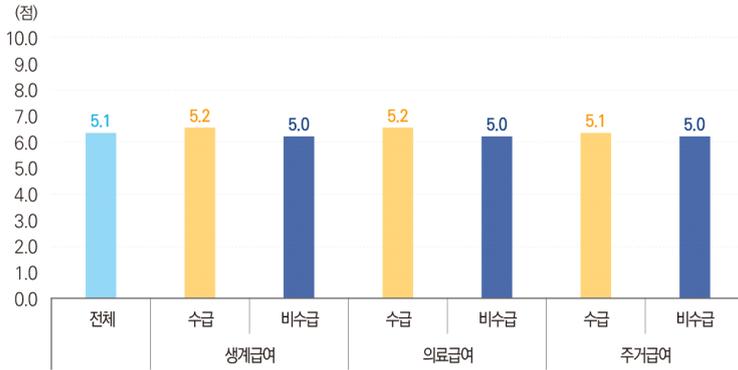


그림 III-42.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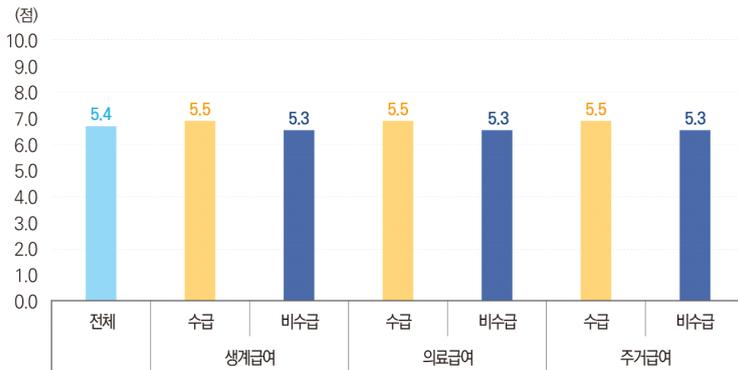


그림 III-43.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에 따른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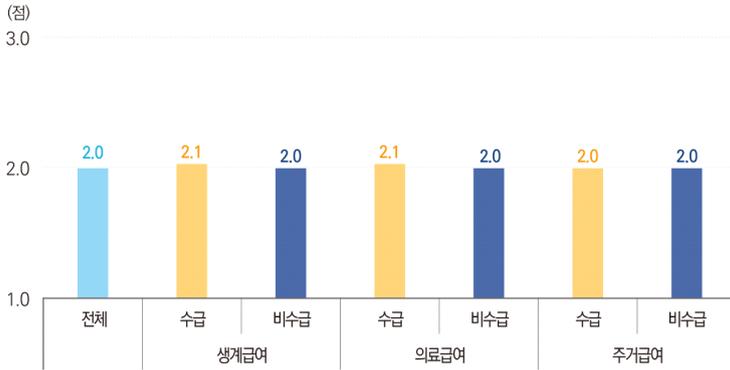


그림 III-44.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에 따른 미래실현 가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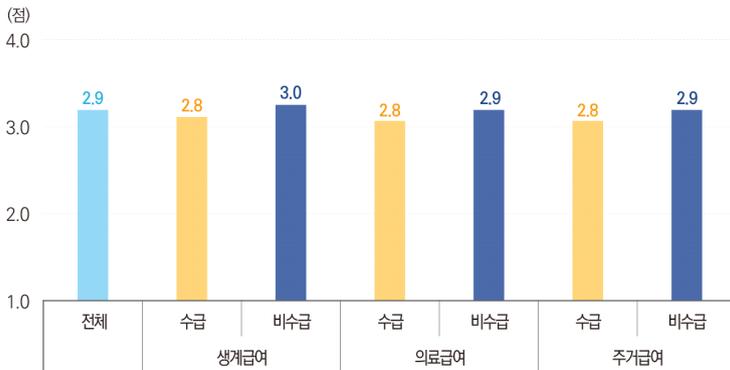


그림 III-45.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에 따른 자립수준

8) 자립역량 영역

(1) 자립수당 수령 여부 및 사용처

자립수당 수령 여부를 살펴본 결과 현재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56.3%, 현재 받고 있지는 않으나 과거에 받았던 경우는 22.1%,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21.6%였다. 퇴소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시설 퇴소청년의 93.1%는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은 36.8%,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은 28.5%만이 수령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III-76).

표 III-76. 자립수당 수령 여부

(단위: %)

구분	현재 받고 있다	과거에는 받았으나 현재는 받지 않는다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χ^2 검증	
전체	56.3	22.1	21.6	-	
퇴소 시설	아동시설	68.0	25.1	6.9	1,005.313***
	청소년시설	23.3	13.5	63.2	
	보호시설	17.1	11.4	71.5	
자립지원 기간	3년 미만	55.5	19.4	25.1	90.423***
	3년 이상	59.2	32.2	8.6	

* $p < .05$, ** $p < .01$, *** $p < .001$

자립수당을 어디에 주로 지출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식비가 40.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주거비(23.5%), 저축·보험료·대출 상환(15.6%), 문화·여가 생활비(7%), 교통·통신비(6.5%), 교육비(4.3%)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77). 하위집단별 차이를 보면 퇴소시설이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은 타 시설퇴소청년에 비해 주거비에 주로 지출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경제수준이 '중' 이하인 경우에는 식비와 주거비, 즉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자립수당이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표 III-77. 자립수당을 주로 지출한 항목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식비	교육비	교통· 통신비	저축, 보험료, 대출 상환	의료비	주거비	문화· 여가 생활비	기타	χ^2 검증
시설퇴소청년	2,086	40.9	4.3	6.5	15.6	1.2	23.5	7.0	1.0	-
퇴소 시설	아동시설	1,847	42.1	4.5	6.4	15.6	1.0	22.3	7.0	97.009 ***
	청소년시설	204	30.9	2.0	4.9	16.7	1.0	37.7	5.9	
	보호시설	35	34.3	5.7	20.0	8.6	14.3	5.7	11.4	
경제 수준	상	116	27.6	8.6	11.2	26.7	3.4	10.3	11.2	56.164 ***
	중	738	40.1	3.0	6.9	17.2	1.6	22.9	7.5	
	하	1,232	42.6	4.7	5.8	13.6	0.7	25.2	6.2	

* $p < .05$, ** $p < .01$, *** $p < .001$

(2) 자립수당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 여부

자립수당 수령 경험이 있는 이들(2,086명)을 대상으로 자립수당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78>과 같다.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약 32%였으며, 그 외에 저축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했다는 응답(26.2%), 공부·독서·취미생활 등 개인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18.6%), 친구 등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증가했다는 응답(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보다 중이하인 경우에 자립수당으로 사회적 교류가 증가하였다는 응답률이 다소 높았다($\chi^2 = 23.969$, $df=10$, $p < .001$).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이들 51명을 대상으로 주된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돈이 없어서라는 응답(29.4%)이 인간관계가 힘들어서라는 응답(35.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는 사실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표 III-78. 자립수당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큰 변화 없음	저축 증가/ 부채 감소	근로시간 감소	개인 시간 증가	사회적 교류 증가	기타	χ^2 검증
전체	2,086	32.1	26.2	6.9	18.6	14.4	1.8	-
경제 수준	상	116	31.0	35.3	7.8	18.1	7.8	23.969 **
	중	738	30.2	27.1	4.9	19.6	16.7	
	하	1,232	33.4	24.8	8.0	17.9	13.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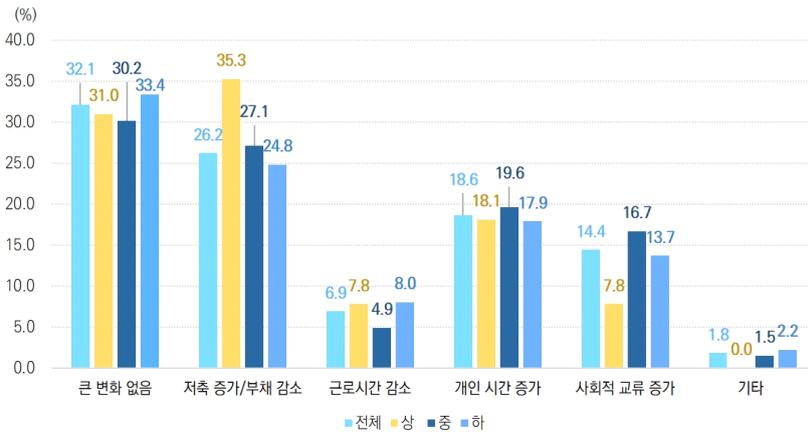


그림 III-46. 자립수당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

(3) 자립수당 수령 여부와 개인의 심리·정서 상태 간의 관련성

자립수당 수령 여부와 개인의 심리·정서 상태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ANOVA 분석 결과 개인의 우울·행복도·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립수당 수령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즉 우울의 경우는 자립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던 경우가 가장 높았고, 현재 자립수당을 받는 경우가 가장 낮았다. <표 III-7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행복도나 삶의 만족도의 경우는 현재 자립수당을 받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립수당이 이들의 생활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심리·정서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79. 자립수당 수령 여부와 우울·행복도·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단위: 점)

자립수당 수령 여부	사례 수 (명)	우울*			행복도*			삶의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F 검증	평균	표준 편차	F 검증	평균	표준 편차	F 검증
전체	2,661	1.71	0.756	-	5.06	2.474	-	5.37	2.552	-
현재 받고 있음 ^a	1,499	1.60	0.678	50.613	5.33	2.396	21.878	5.71	2.454	30.375
과거에 받았음 ^b	587	1.75	0.775	***	4.83	2.344	***	4.98	2.429	***
받은 적 없음 ^c	575	1.96	0.860	a<b<c	4.60	2.704	a>b,c	4.90	2.787	a>b,c

* $p<.05$, ** $p<.01$, *** $p<.001$

(4) 도움 요청 대상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III-80>과 같다. 감정적·심리적 문제의 경우 일반청년과 시설퇴소청년 모두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건강 문제, 가사 및 돌봄 문제, 금전 문제 등에 대해 일반청년들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시설퇴소청년들은 혼자 해결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시설퇴소청년들의 경우 도움을 청할 곳이 있으나 혼자 해결하는 경우와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나, 건강 문제 및 진로·미래에 대한 문제의 경우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혼자 해결한다는 응답이 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I-80. 어려운 상황에 도움 요청 가능한 사람

(단위: %)

구분	감정적·심리적 문제		건강 문제			가사 및 돌봄 문제			
	일반청년	시설퇴소청년	일반청년	시설퇴소청년	일반청년	시설퇴소청년			
가족	22.9	14.7	48.3	23.3	60.8	18.0			
친척	1.0	1.0	0.5	1.4	1.0	1.5			
연인	4.0	12.4	0.7	9.5	1.1	6.6			
친구	54.8	31.2	6.3	16.5	2.6	13.0			
직장동료	1.4	1.2	0.2	0.9	0.3	0.6			
이웃	0.2	0.6	0.2	0.5	0.5	0.5			
전문기관, 전문가	공공기관	7.3	0.6	23.1	8.3	0.9	1.1	5.8	0.9
	민간기관				7.4				
혼자 해결	도움 요청 가능	22.2	10.6	3.4	25.3	10.7	3.3	20.6	10.7
	도움 요청 불가능								
해당 문제 경험 없음	6.4	9.3	17.3	14.1	29.4	33.3			
합계	93.8	100.0	82.7.0	100.0	70.7	100.0			

구분	금전적 문제		긴급 혹은 재해상황		진로·미래에 대한 문제				
	일반청년	시설퇴소청년	일반청년	시설퇴소청년	일반청년	시설퇴소청년			
가족	67.2	22.3	36.2	20.4	-	14.1			
친척	0.8	1.5	0.8	1.8	-	1.2			
연인	0.8	6.0	0.4	6.1	-	8.6			
친구	11.3	17.2	2.8	11.9	-	24.5			
직장동료	0.4	0.6	0.8	0.5	-	2.4			
이웃	0.1	0.5	1.1	0.6	-	0.9			
전문기관, 전문가	공공기관	8.4	1.9	14.0	9.0	2.4	-	12.1	0.9
	민간기관				6.5				
혼자 해결	도움 요청 가능	26.2	15.0	1.6	14.8	8.3	-	24.6	11.9
	도움 요청 불가능								
해당 문제 경험 없음	13.1	17.3	42.3	34.9	-	11.6			
합계	100.0	100.0	82.7	100.0	-	100.0			

* 주: 일반청년 자료는 한국인의 인식 및 가치관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2) 결과임. 한국인의 인식 및 가치관 조사는 19~79세를 대상으로 하나, 본 실태조사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19~29세(862명)의 응답과 비교함.

(5) 자립수준

시설퇴소청소년들의 자립수준에 대한 인식을 총 5문항(경제적 독립, 일자리 얻기, 독립 생활, 스스로 문제 해결,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으로 나누어 4점(1점: 전혀 성취 못함~4점: 완전히 성취함) 척도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값은 <표 III-81>과 같다. 항목별 점수를 보면 경제적 독립에 대한 성취 정도가 가장 낮게 인식되었고 집(시설)에서 독립하기를 성취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III-81. 자립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구분	전혀 성취 못함	성취 못함	성취함	완전히 성취함	평균	표준편차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10.8	33.4	43.9	11.9	2.57	0.836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얻기	8.9	20.7	48.7	21.6	2.83	0.868
부모님 집(시설)에서 나와 따로 생활하기	7.4	9.8	45.3	37.6	3.13	0.867
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기	4.6	13.3	56.0	26.2	3.04	0.760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기	6.1	16.0	54.5	23.3	2.95	0.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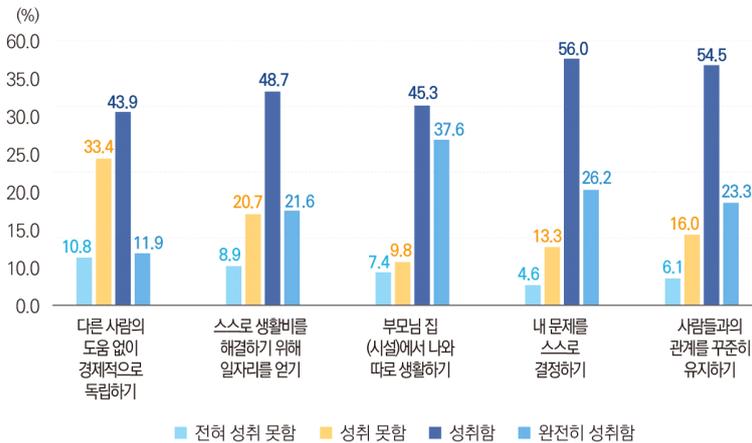


그림 III-47. 자립수준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자립수준 관련 5문항에 대한 응답값 평균을 바탕으로 이들의 자립수준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립 성취도 평균값은 2.90점으로 응답자들은 비교적 자립을 성취한 것으로 인식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하위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82>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좀 더 주목할 점은 퇴소 시설 유형과 자립지원기간 및 자립지원수당 수령 여부이다. 아동시설은 대부분이 장기 입소자들로 퇴소 이전부터 자립 계획에 따라 청소년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비해 보다 장기적으로 입소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자립지원수당 역시 이러한 자립지원의 한 영역으로 본다면 일정 기간 이상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자립지원은 청년들의 자립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82. 자립 성취 정도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검증
전체		2.90	.629	-
성별	남	2.87	.658	-2.463*
	여	2.93	.601	
학력	고졸 이하	2.82	.650	-4.839***
	대재 이상	2.95	.615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2.94	.608	17.334*** a)b,c
	청소년시설 ^b	2.80	.656	
	소년보호시설 ^c	2.71	.752	
자립지원 기간	3년 미만	2.88	.631	-2.875**
	3년 이상	2.97	.619	
경제 수준	상 ^a	3.12	.659	57.628*** a,b)c
	중 ^b	3.05	.602	
	하 ^c	2.80	.620	
자립지원 수당 수령 여부	현재 받는 중 ^a	2.95	.598	25.642*** a,b)c
	과거 받은 적 있음 ^b	2.95	.621	
	받은 적 없음 ^c	2.74	.687	

* α .05, ** α .01, *** α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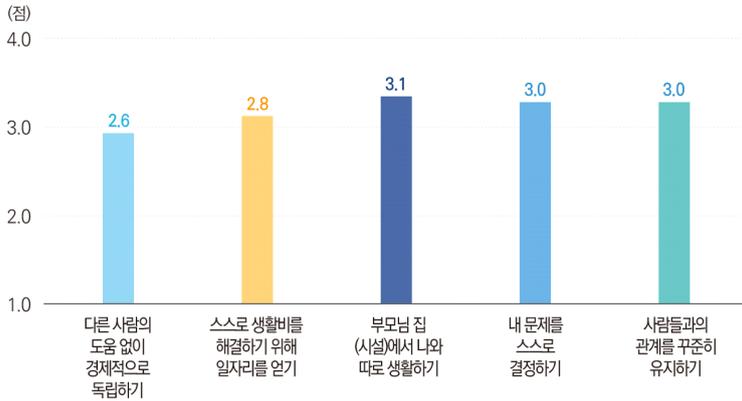


그림 III-48. 자립 성취 정도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들의 수령 비율이 타 시설 퇴소청년들에 비해 높음을 감안하여 ANCOVA 분석을 활용하여 퇴소시설 변수 및 경제수준을 통제한 후에 자립수당과 자립성취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표 III-83). 그 결과 퇴소시설과 경제수준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립수당과 자립성취도 간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즉 자립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청년들보다는 자립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자립성취도가 높았다. 다만 자립성취도에 대한 자립수당 수령 여부의 효과 크기(부분 ϵ^2)는 0.008로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연구에서 자립수당 그 자체보다는 자립수당과 함께 제공되는 사례관리의 효과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83. 자립수당과 자립성취도 간의 관계

소스	SS	df	MS	F	부분 ϵ^2
수정 모형	61.593 ^a	4	15.398	41.260***	.059
절편	1125.460	1	1125.460	3015.690***	.532
자립수당	7.925	2	3.963	10.618***	.008
퇴소시설	1.535	1	1.535	4.113*	.002
경제수준	39.962	1	39.962	107.078***	.039
오차	991.223	2656	.373		
합계	23486.960	2661			
수정 합계	1052.816	2660			

* 주: 1) *p <.05, **p <.01, ***p <.001

2) a: $R^2=.059$ (수정된 $R^2=.057$)

이와 더불어 회귀분석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학력, 거주지역, 퇴소시설, 자립지원기간, 경제수준)를 통제한 상황에서 자립성취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퇴소시설은 아동시설, 청소년 시설, 보호시설, 학력은 고졸 이하, 대재 이상으로 나누었고, 거주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립지원기간은 3년 미만과 3년 이상, 경제수준은 상, 중, 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다회귀분석결과는 <표 III-84>과 같다. 자립수준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립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준화 계수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립수준의 영향력은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설명량은 약 14%이며 자립수준 변수의 설명량은 약 8.8%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총 설명량은 약 22.6%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립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설 퇴소 이전부터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84.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자립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N=2,661

독립 변수	모형1				모형2				
	B	S.E	β	t	B	S.E	β	t	VIF
상수	8.579	.334		25.649***	4.850	.383		12.657***	
더미_퇴소시설(청소년)	-.615	.116	-.101	-5.320***	-.519	.110	-.085	-4.737***	1.114
더미_퇴소시설(보호시설)	-.270	.218	-.023	-1.240	-.034	.207	-.003	-.166	1.063
성별	-.285	.090	-.058	-3.168**	-.350	.085	-.071	-4.103***	1.020
학력	.299	.099	.057	3.030**	.163	.094	.031	1.736	1.097
거주지역	.275	.093	.055	2.954**	.260	.088	.052	2.942**	1.048
자립지원기간	-.346	.110	-.058	-3.140**	-.414	.105	-.069	-3.957***	1.034
경제수준	-1.364	.074	-.336	-18.451***	-1.107	.072	-.273	-15.465***	1.063
자립수준					1.198	.069	.306	17.315***	1.066
R^2 (수정된 R^2)	.141(.139)				.229(.226)				
F	61.810***				97.684***				

* α .05, ** α .01, *** α .001

3. 소결 및 시사점

3차년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각 조사 영역 별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용 영역

고용 영역에 대한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및 생활을 위해서는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올해 주당 근로시간은 약 32시간으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는 상용근로자의 비율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 등에 비해 평균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자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시설퇴소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취업포기나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퇴소청년의 약 3% 정도는 일 년 이상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냈다고 응답하여 NEET의 가능성을 보였다. 최근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15~29세 청년이 40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되었고 이는 전체 청년 인구의 약 4.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연합뉴스, 2024.6.23). 이처럼 구직 단념 청년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들 수 있다.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시설퇴소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므로 이들이 구직 단념이나 은둔·고립으로 빠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NEET 청년들은 NEET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포기나 고립·은둔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들이 사회 안전망 밖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기 발굴 및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성과위주의 단기적인 지원책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개인 맞춤형 사례관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지역기반 진로탐색-직업훈련-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및 제공, 기초근로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이들을 위한 맞춤형 근로 지원 서비스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설퇴소청년들의 근로 권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퇴소청년들의 근로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적정한 경우, 즉 36시간 이상~50시간 미만 근로를 한 경우에 36시간 미만 또는 5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별한 이유 없는 단시간의 근로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장기간의 근로는 건강 악화 및 일상생활 영위를 어렵게 하므로 적정 시간의 근로로 건강한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로의 내실있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시설퇴소청년들이 부적절한 근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 권익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한편 이들이 많이 종사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퇴소청년들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필요시 근로권익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설퇴소청년들의 근로실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

는 시설외소청년들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실태에 대한 조사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들의 근로는 경제적 자립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보다 세세한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제 영역

경제 영역 관련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이 고졸 이하의 청년들에 비해 국가 및 지자체, 기관으로부터 유의미하게 많은 지원을 받아 이전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 중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이 고졸 이하, 대학 휴학 및 졸업 이상의 청년들과는 달리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유의미하게 적고, 국가나 지자체, 기관 등에서 받는 이전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력에 따른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실제 현재 대학(이상) 재학 중인 청년들의 경우 고졸 이하 및 대학 휴학·졸업 이상인 청년들에 비해 생계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급여 수급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점은 학업을 마치게 되는 경우 근로를 통해 탈수급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대학 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수급자로 남아 있는 청년들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대학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학업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업 유지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과 채무액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범죄피해나 생활비로 인한 채무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학자금과 주거비, 가족의 빚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교육 및 주거지원의 필요성과 가족 채무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청년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금융채무불이행자 청년 중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 경험도 감소하고 있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주거 영역

주거 영역 관련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아동·청소년기 동안의 불안정한 주거가 개인의 심리·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생활했던 기관 수는 평균 1.6개소였으며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들의 생활 기관 수가 가장 적고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의 생활 기관 수가 가장 많았다. 1개 기관당 평균 생활 기간은 66.7개월이었으며,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들의 생활기간이 가장 길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들의 생활 기간이 가장 짧았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들의 경우 1개 기관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들의 기간은 기관에서 짧은 기간 생활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더 많음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청년들이 생활했던 기관 수는 우울이나 고립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활했던 기관의 수가 많아질수록 우울 및 고립감의 점수가 높아짐을 볼 수 있어 안정적이지 않은 잦은 주거 이동이 청년들의 심리·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잦은 주거 이동은 퇴소 이후 자립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기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시설 거주 시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시설퇴소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청년, 특히 시설퇴소청년들에 대한 주거지원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시설퇴소 후 비거주용 건물, 고시원, 비거주용 임시구조물 등 비적정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4%가량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비적정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가 채무나 주거비 부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으로의 편입을 위한 사유일 것으로 짐작해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유를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채무액이나 소득수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거주기간 등 다양한 변인을 분석해본 결과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안정적인 주거여건 마련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나 보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이 주거취약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유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건강 및 심리·정서 영역

건강 및 심리·정서 영역 관련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이 고립감을 느낀 기간은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수준이 낮다고 인식한 청년들의 경우 2년 이상 고립감에 빠져 있다는 응답률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립감을 지속시키는 이유 중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특성은 고립감이라는 감정을 넘어 은둔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여자 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경제수준이 '하'에 속하는 청년에게서 유의미하게 현재 은둔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은둔의 이유가 인간관계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것임을 볼 때 경제적인 지원과 사회적 관계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1년간 자해 경험은 작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나, 진료비용 부담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지 못한 청년이 10명당 1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은 여전히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일부 청년들의 경우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심리적 거부감으로 인해 상담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담전문가를 통한 양질의 상담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의사의 처방 없이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 마련 외에도 안전한 약물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셋째, 신체·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진료를 받지 않거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청년이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의료급여 수급과 관계없이 병원비가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실제로 지난 1년간 의료비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비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의 2.5배 이상(102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응답이 50% 정도였는데, 의료급여 수급에도 불구하고 의료비가 부담될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있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의료급여의 지원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하였는지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데이터 결합 결과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경우도 10%를 상회하기 때문에 공적 지원 수급 여부 및 지원 내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5) 여가·문화 영역

여가·문화 관련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퇴소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2)에서 나타난 일반청년들의 응답률과 비교해볼 때 일과 여가 간 균형 정도에서 시설 퇴소청년들은 일반청년들에 비해 여가보다는 일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여유시간 사용에서도 일반청년들에 비해 추가적인 경제활동이나 개인휴식을 희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주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설퇴소청년들의 고단한 삶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에 시설퇴소청년들에게 삶의 여유와 휴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 자산형성지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들은 시설퇴소청년들에게 삶의 여유와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자립수당을 받은 시설퇴소청년들은 자립수당으로 공부·독서·취미생활 등의 개인 시간 증가, 사회적 교류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기도 하였고 우울 감소나 행복도, 삶의 만족도 증가와 관련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들이 퇴소시설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범위, 액수 등에서 편차를 보임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이에 퇴소시설이 아닌 개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앞서 언급한 시설퇴소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들의 여가·문화 활동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시설퇴소청년의 절반 이상은 지난 1년간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을 하지 못하였으며 그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일반청년들의 경우 경제적 부담보다는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정세정 외, 2022)이 우세하여 시설퇴소청년들과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내세운 비율을 보면 일반청년들의 경우 16~18% 내외인데 비해(정세정 외, 2022) 시설퇴소청년들의 경우는 32~37% 내외로 2배 정도 높았다. 또한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도 일반청년들의 응답률(5~9%; 정세정 외, 2022)에 비해 시설퇴소청년들의 응답률(10~13%)이 다소 높았다. 여가·문화 활동은 일상생활의 활력소로 본 연구결과에서 시설퇴소청년들의 정신건강 및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바, 이들의 여가·문화 활동의 진작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시설퇴소청년들의 여가·문화생활의 진작을 위해서는 이들이 활동을 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를 반영

하여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 배우처 제공, 지역 기반 소집단 여가·문화 활동 지원 등을 제안할 수 있다.

6) 가치관 및 미래인식 영역

가치관 영역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도, 자신이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정도는 대체로 시설퇴소청년들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 및 자녀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역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중요도를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거나 안정적이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이나 가족생활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에 따른 가치관 및 미래인식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청년들이 비수급 청년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 미래실현 가능 정도 등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특성을 보이는 점은 현재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은 좋지 않으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와 같은 사회보장급여가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쳐 현재 및 미래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나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시설퇴소청년들의 가치관이나 미래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주거급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생계유지 및 건강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국가의 지원이 개인의 가치관이나 미래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7) 자립역량 영역

자립역량 관련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연구결과는 자립 성취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시설퇴소청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립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설퇴소 이전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여가·문화 영역에서 언급했듯이 자립수당 지급제도는 시설퇴소청년들의 저축 증가 및 부채 감소, 개인 시간 및 사회적 교류 증가를 가져오고 우울 감소나 행복도, 삶의 만족도 증가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단지 퇴소시설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이 필요함에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이에 개개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제도의 개선은 자립수당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자립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시설유형별 편차가 발생하는 영역 모두에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퇴소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서는 특히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 문제, 가사 및 돌봄 문제, 금전 문제 등에 대해 일반청년들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시설퇴소청년들은 혼자 해결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감정적·심리적 문제나 진로·미래 문제 역시 혼자 해결한다는 응답이 4~5명 중 1명꼴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긴급이나 재해상황도 혼자 해결한다는 응답이 14.8%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를 혼자 해결한다는 일반청년들의 응답률은 모두 1~4%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그만큼 시설퇴소청년들은 가족은 물론 사회적 관계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부족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색함을 반영하는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알리고 이러한 역량 계발을 위한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자립수당 지급 시 정기적인 사례관리가 필수 사항으로 포함되는 것은 좋은 예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다만 내실 있는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립지원 전담요원 등 사례관리를 하는 직원 한 명당 배정되는 사례관리 대상자의 적정 수를 산출하고 직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역량 있는 직원 유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제4장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 : 공공데이터 결합을 중심으로

- 1. 가명정보 결합 목적 및 방법
- 2. 가명정보를 활용한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 분석
- 3. 소결

1. 가명정보 결합 목적 및 방법²²⁾

1) 결합 목적 및 절차

본원에서 수행한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수혜 가능한 각종 지원이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수혜자격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지원에서 누락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에 시설퇴소청년 생활 실태 조사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위기도 및 취약성의 정도,²³⁾ 복지지원 이력, 자립수준과 삶의 질 실태 등의 관계와 영향력을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사회보장 공공데이터 정보 분석을 통한 공적 지원 수급의 정합성 및 공적 지원 수혜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적 지원 수혜 여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차 년도에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1차 년도 데이터와 사회보장 공공데이터 간 가명정보 결합을 실시하여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의 정합성 및 디딤씨앗통장, 국가장학금 등 공적 지원 수혜 인지 여부, 맞춤형 급여 수급 경험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 등을 확인한 바 있다. 2차 년도에 수행한 가명정보 데이터 결합 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4년 3월 8일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발표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하였으며, 그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3 가명정보 활용

22) 본 절은 김승경 선임연구원이 작성하였음.

23) 시설퇴소청년의 위기도 및 취약성의 정도는 총괄보고서 'II장.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과 다중성' 중 '2절. 취약계층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과 다중성' 부분에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다종다양한 취약유형을 식별하고 다중·복합적 취약유형에 높은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우수사례집'에도 게재되었다.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2024).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 22-23쪽 발췌.

그림 IV-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2차 년도에 가명정보 결합 방식을 확인하고 본원과 사회보장 공공데이터 간의 결합 가능성을 확인한 바, 2024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2차 년도 데이터와 사회보장 공공데이터 간 결합²⁴⁾을 적극 추진하였다. 가명정보 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유피에스데이터와 가명정보 처리 컨설팅 계약을 체결(2024.2.1.)하고,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데이터 결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를 실시(3.12.)하여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필요 데이터의 범위 설정과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조율하였다. 동시에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8개 부서 간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업무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자료 제공 승인요청 공문을 발송(3.18.)하여 총 3개 부처 8개 부서(보건복지부 6개 부서, 교육부 및 국토교통부 각 1개 부서)로부터 자료 제공을 모두 승인(4.24.)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개정(2024.2.)됨에 따라 원내 연구진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절차의 이해’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실시(4.24.)하였고, 개정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

24) 올해 가명정보 결합은 강원테크노파크의 ‘2024년 가명정보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을 개정(5.27.시행)하였다. 데이터 가명처리를 위해 전년도 개인정보처리 위탁업체인 유플에스테이터와 개인정보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고(5.9.),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를 실시하였으며(5.16.),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명처리 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분	처리 목적	처리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청년총합연구·정책소외계층 청년실태 및 정책개발	과학적 연구	(삼분 응답 항목) 자립지원 기간, 개인 월평균 소득, 현 년 평균지출액, 재무액, 월평균 지출 금액 등	결합데이터 분석 완료 시까지 (~2024. 12. 31.)

II.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원활한 가명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유플에스테이터	(청년총합연구) 가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저장성 검토 지원, 결합신청 및 반출 지원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연구원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수행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부여·말소), 접근동세, 접속기록 등의 관리, 침입사건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검증·점검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등의 보안 프로그램 상시 운영
3. 물리적 조치 : 문서고 및 전산실 등 비인가 공간의 접근동세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1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https://www.nypi.re.kr/modedgy/contentsView.do?ucont_id=CTX030018&menu_nix=g1XP6VLx#personal-link12
 에서 2024년 9월 2일 검색.

그림 IV-2. 본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게시 내용

가명처리한 본원의 2차 년도 실태조사 데이터에 대한 적정성 검토회의(6.4.)에서 ‘적정(승인)’ 의견을 받았으며, 데이터 결합률 확인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에 가명정보 결합 신청을 완료(6.10.)하였다.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업로드한 본원 데이터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중 이름, 생년월일, 성별을 결합키로 활용하여 결합용 키파일과 결합 대상 파일을 생성하여 확대 단일 결합을 수행(7.11.)한 결과 본원 기준 결합률은 88.5%였다.

결합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도 가명정보 데이터에 대한 적정성 검토회의(8.2.) 결과 ‘적정(승인)’ 의견을 받았다. 가명정보 결합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회의(8.13.)에서는 ‘적정(승인)’ 의견을 받았으나, 본원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조항에 대한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라는 보완 의견에 따라 위탁기관인 유플에스테이

터와의 위탁계약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하였다.

이후 결합 대상 데이터의 송수신을 위해 송수신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 및 파일 송수신 프로그램을 설치할 PC의 고정 IP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회신하고, 파일 송수신 프로그램의 암호키를 수신하여 계정을 ID와 패스워드를 복호화한 후 송수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결합 대상 파일을 송신하였다(8.19.). 데이터는 결합전문기관의 데이터 반출과 관련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 1회성으로 제공하였다. 본원에서 송신한 데이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명정보와 결합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의 검토를 거쳤으며, 본원과 유피에스테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담당자가 참석한 추가 가명처리 검토회의(8.23.)에서 데이터 결합의 정확성, 추가 가명처리 항목 및 통계 프로그램 변환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논의 결과 추가가명처리가 필요한 항목이 부재하여 결합된 정보의 수정 없이 반출 심사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반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점검·제출하여 반출심사위원회(8.29.)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 다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조항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본원 가명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서식을 현행화하도록 보완 의견을 받아 8월 30일에 본원의 가명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일부 개정(9.2. 시행)하여 보완사항을 보고하였다. 반출이 허용된 데이터는 외부 데이터의 반입이 제한되고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으며 출입이 통제된 폐쇄환경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가명정보결합분석센터에서 본 연구의 연구진 중 일부 제한된 인원만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2)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데이터 내역

(1) 활용 데이터의 특징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활용 데이터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보유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의 일부 데이터와 본원이 보유한 시설특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2차 코호트 데이터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별 새울행정시스템의 31개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 분야를 분리하여 개인별·가구별 DB로 중앙에 통합 구축한 정보시스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2024.9.6.검색)이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표준화·투명화 및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구축된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다.

이 두 시스템은 '22년 9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합·개편될 예정이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본원의 2차 년도 조사 시점인 '23년 6월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22년 8월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의 데이터 이관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중단되었으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다소 차질이 생겨 '22년 6월 이후 데이터를 추출·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최종 데이터 입력 시기인 '22년 8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다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데이터는 기존 시스템에 축적되고 있어 2차 년도 데이터 수집 시점인 '23년 6월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가명처리 시 이름, 생년월일, 성별을 결합키로 활용한 본원 데이터 2,498건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1,078,983건의 확대 단일 결합 결과 2,211건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본원 기준 결합률은 88.5%,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 0.21%였다.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부자료 (2024).

그림 IV-3. 가명처리 대상 정보

본 연구에 활용된 가명처리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본원의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 조사 데이터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청년 데이터 2,498건이고, 총 컬럼 수는 118개(결합키 포함)였다.

표 IV-1. 가명정보 처리 데이터 특징

데이터 보유기관	구분	내용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데이터명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2차 코호트
	데이터 특징	(레코드 수) 2,498건 (컬럼 수) 118개
	데이터 생성방법	-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받은 만 19세 이상 청년에 대한 자기기입식 조사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데이터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3년 6월 말 기준)
	데이터 특징	(레코드 수) 5,000건 (컬럼 수) 80개
	데이터 생성방법	- 복지부(교육부, 국토부) 담당사업과의 자료 활용 승인을 득하여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중 기초생활보장급여(맞춤형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록 여부, 긴급복지지원 등 수급대상자의 일반정보, 소득정보 등에 대한 사회복지정보 추출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선정, 가명처리 후 결합
	데이터명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22년 8월 말 기준)
	데이터 특징	(레코드 수) 5,000건 (시설보호정보 등) (컬럼 수) 61개 (레코드 수) 5,869건 (자립기술평가) (컬럼 수) 9개
	데이터 생성방법	- 복지부 담당사업과의 자료 활용 승인을 득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시설보호 정보, 자립준비 현황, 자립지원 현황, 자립기술평가 등 퇴소청년 관련 정보 추출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선정, 가명처리 후 결합

(2) 활용 변수

가명정보 결합에 활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는 아동복지 시설에서의 시설보호 정보, 자립준비 현황, 자립지원 현황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는 아동발달지원계좌와 자산형성지원계좌의 가입 여부, 자립수당 및 자립 정착금 수급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수당 수급 여부 및 자격취득·중지일 등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가명처리 과정에서 데이터 식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원의 실태조사 데이터 중 분석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변수는 삭제하였으며, 개인 식별 위험성이 있는 자립지원기간, 월평균 소득, 월평균 지출액, 채무액, 월평균 저축금액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데이터 분포를 확인하여 상단 코딩을 적용하였다.

표 IV-2.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추출 데이터 목록

시스템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아동복지시설	시설보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시설 유형 · 입퇴소 일자 · (주/부)발생 유형 등
		자립준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자립기술 평가점수 · 자립기술 평가일자
		자립지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종료 사유 · 최종학력 · 주거형태 · 자립정착금 · 취업 여부 · 중간종료 형태 · 퇴소 후 연락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여부, 가입기간 · 수급 여부(자격취득·중지일자 등)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생계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주거급여 · 긴급복지지원 · 자활사업 · 차상위계층 · 장애인 등록 · 자산형성지원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 여부(자격취득·중지일자 등) · 소득 	
기타	인구학적 특성		성별, 생년월일 등

3) 분석 방법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간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추출한 데이터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보장 공공데이터 정보 분석을 통해 공적 지원 수급의 적합성 및 자립준비청년의 공적 지원 수혜 인지 여부를 분석하고, 공적 지원 수혜 여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 항목의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χ^2 검증), 평균비교 분석(t-test, ANOVA),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여 집단 간 차이 및 변인의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2. 가명정보를 활용한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 분석²⁵⁾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공적 지원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 지원 수급의 정합성, 지원 자격취득 및 재취득 비율, 공적 지원 수혜가 자립에 미치는 영향, 자립기술평가와 자립 간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자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와 공공데이터 간 결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²⁶⁾

1) 공적 지원 수혜 현황 분석²⁷⁾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공적 지원 수혜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가명정보가 결합된 분석 자료의 형태를 파악하고자 자료의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자료와 공공데이터가 결합된 자료는 2,211명으로 20~24세 청년이 전체 대상의 68.1%로 가장 많았다. 경제수준에 대해서는 ‘하’ 집단에 속한 청년이 61.9%에 달했으며 경제수준이 ‘상’인 청년은 5.2%에 불과했다. 퇴소시설은 아동시설이 8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소년시설 15.6%, 소년보호시설 3.6%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사유는 만기종료가 32.2%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 유무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의 8.2% 청년이 장애가 있다고 응답했다. 주 발생 유형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방임이 전체 응답자의 1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 별거 및 부모 가출이 11.0%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부 지원으로 주거비용을 마련했다는 시설퇴소청년은 전체 대상의 34.0%이고 정부지원 외의 방법으로 주거비용을 마련했다는 응답도 17.5%에 달했다. 주거 유형은 LH 지원(전세주택 및 영구 임대 등)이 25.2%로 가장 많았으며, 자립지원시설 6.7%, 기숙사 5.6%, 월세 4.2% 순으로 나타났다(표 IV-3).

25) 본 절은 전현정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26)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조사 시점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자료 기준일은 2023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데이터는 2022년 기준 자료로 결합 자료 간 조사 시점이 상이하여 분석 결과 해석에 한계가 존재하나, 공공데이터와 조사데이터 간 결합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자립지원 효과 및 지원의 적절성 등을 개괄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27)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자료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자료가 결합된 2,21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표 IV-3. 가명정보 처리 자료 대상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2211	100.0	전체	2211	100.0			
성별	남자	1081	48.9	장애 유무	없음	993	44.9	
	여자	1130	51.1		있음	181	8.2	
연령 (만 나이)	19세 이하	282	12.8		결측	1037	46.9	
	20~24세	1506	68.1	주 발생 유형	가정폭력/ 아동학대/방임	284	12.8	
	25~29세	413	18.7		경제난 (빈곤, 실직 등)	195	8.8	
	30세 이상	10	0.5		미아/기아	153	6.9	
학력	고졸 이하	732	33.1		미혼모/ 혼외출산	100	4.5	
	대재 이상	1478	66.8		부모 별거/ 부모 가출	244	11.0	
	결측	1	0.0		부모 사망	42	1.9	
거주 지역	수도권	889	40.2		아동 문제 (비행, 가출 등)	8	0.4	
	비수도권	1322	59.8	결측	1037	46.9		
지역 규모	대도시	1017	46.0	주거 비용 마련 방법	정부지원	752	34.0	
	중소도시	1122	50.7		정부지원 외	386	17.5	
	읍면지역	72	3.3		결측	1073	48.5	
경제 수준	상	114	5.2	주거 유형	고시원	6	0.3	
	중	729	33.0		공동생활가정	10	0.5	
	하	1368	61.9		귀가	79	3.6	
퇴소 시설	아동시설	1785	80.7		기숙사	124	5.6	
	청소년시설	346	15.6		월세	92	4.2	
	소년보호시설	80	3.6		자립지원시설	148	6.7	
자립 지원 기간	3년 미만	1790	81.0		전세	6	0.3	
	3년 이상	408	18.5		친구집	21	0.9	
	결측	13	0.6		친인척	30	1.4	
보호 종료 사유	만기종료	711	32.2		LH 지원 (전세주택, 영구임대 등)	LH 지원 (전세주택, 영구임대 등)	558	25.2
	연장종료	413	18.7			기타	64	2.9
	중간종료	50	2.3			결측	1073	48.5
	결측	1037	46.9					

다음으로 시설퇴소청년의 공적 지원 수혜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각 공적 지원의 수혜 비율을 산출하였다.²⁸⁾ <표 IV-4>에서 볼 수 있듯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는 교육급여를 제외하고 약 38~40%의 시설퇴소청년들이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형성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제도 중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지원받는 시설퇴소청년이 전체 대상의 54.2%로 비교적 많은 이들이 지원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66.2%)과 자립지원정착금(48.6%)도 많은 시설퇴소청년들이 지원받고 있는 국가지원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급여, 긴급복지사업,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차상위 자활 지원의 수혜 빈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사업들 대부분의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며 요건이 엄격한 데에 기인한 결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해당 공적 지원 사업들은 수혜 비율이 너무 낮아 이후 공적 지원 수혜가 시설퇴소청년의 자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제외한 '자산형성지원' 사업들은 수혜 빈도는 낮지만 7개 공적 지원²⁹⁾ 수혜 중 한 개 이상 지원받고 있는 경우를 자산형성지원을 수혜 받고 있다고 간주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4. 공적 지원 수혜 현황

(단위: 명(%))

구분	사례 수(비율)	구분	사례 수(비율)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 비율			
생계급여	847(38.3)	주거급여	898(40.6)
의료급여	896(40.5)	교육급여	26(1.2)
긴급복지지원 및 차상위 지원 수혜 비율			
긴급복지지원사업	63(2.8)	차상위 자활(일자리)	1(0.0)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17(0.8)		
자산형성지원 수혜/적립 비율			
디딤씨앗통장	1199(54.2)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7(0.3)

28) 공적 지원 수혜 현황은 데이터 추출 시점의 '자격취득'을 기준으로 수혜 비율을 산출. 즉 해당 시점 자격 중지는 비 수혜로 간주하여 분석함.

29) 자산형성지원사업,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청년자축계좌, 청년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7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포함함.

구분	사례 수(비율)	구분	사례 수(비율)
자산형성지원사업	37(1.7)	청년저축계좌	3(0.1)
내일키움통장	4(0.2)	청년자산형성지원	63(2.8)
청년희망키움통장	12(0.5)	청년내일저축계좌	50(2.3)
자립지원금 및 자립정착금 수혜 비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464(66.2)	자립지원정착금	1074(48.6)

* 주: 공적 지원 수혜/적립 비율은 공공데이터 추출 시점 '자격취득', '적립여부 있음' 사례 수의 2,211명(실태조사와 공공데이터 결합 자료) 대비 비율을 의미함.

2) 공적 지원 수급의 정합성 분석³⁰⁾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 간 공통되게 조사된 항목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에 대한 정합성 정도를 살펴보았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 시설퇴소청년이 인지하고 있는 수급 여부와 공공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실제 수급 여부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시설퇴소청년의 공적 지원 수급 여부의 인지도 정도를 확인하였다.³¹⁾

그 결과, 청년의 응답과 공공데이터 간 생계급여 수급 여부가 일치하는 경우는 약 86.9%(둘 다 수급 34.3%+둘 다 비수급 52.6%)였다. 반면에 전체 대상의 8.4%는 생계급여 수급을 받고 있지 않지만 수급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7%는 수급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생계급여 수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대상의 13.1%가 자신의 생계급여 수급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주거급여 수급 여부 확인 결과, 전체 대상의 15.6%가 수급 여부를 잘못 인지하고 있었던 반면, 전체 대상의 84.4%(둘 다 수급 30.6%+둘 다 비수급 53.8%)는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공데이터 간의 정합성 분석 결과, 전체 대상의 89.5%(둘 다 수급 32.6%+둘 다 비수급 56.9%)가 수급 경험 여부가 일치하였다. 다만 의료급여에 대해 수급 여부를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10.5%에 달했으며 이

30)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자료와 결합된 행복e음(급여 정보) 데이터 2,1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는 데이터 추출 시점의 수급, 비수급을 구분하였음. 즉 해당 시점 자격증지는 비수급으로 분석하였으며, 자격상태가 '자격취득'인 아닌 사례는 모두 비수급으로 간주하여 분석함.

중 8.7%의 청년은 수급을 받고 있으나 수급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청년의 응답과 공공데이터 간의 수급 여부가 일치하는 경우가 90.1%(둘 다 수급 0.3%+ 둘 다 비수급 89.8%)이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9.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에 대해 시설퇴소청년이 인지한 수급 여부와 공공데이터 간 약 86~90%의 정합성을 보였다. 다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13~15%의 시설퇴소청년들이,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10% 내외의 시설퇴소청년이 수급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의 정합성

(단위: 명(%))

생계급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비수급	수급	전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비수급	1,140(52.6)	102(4.7)	1,242(57.3)
	수급	182(8.4)	745(34.3)	927(42.7)
	전체	1,322(60.9)	847(39.1)	2,169(100.0)
의료급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비수급	수급	전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비수급	1,234(56.9)	189(8.7)	1,423(65.6)
	수급	39(1.8)	707(32.6)	746(34.4)
	전체	1,273(58.7)	896(41.3)	2,169(100.0)
주거급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비수급	수급	전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비수급	1,166(53.8)	234(10.8)	1,400(64.5)
	수급	105(4.8)	664(30.6)	769(35.5)
	전체	1,271(58.6)	898(41.4)	2,169(100.0)
교육급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비수급	수급	전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비수급	1,948(89.8)	19(0.9)	1,967(90.7)
	수급	195(9.0)	7(0.3)	202(9.3)
	전체	2,143(98.8)	26(1.2)	2,169(100.0)

* 주: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응답을 수급으로 변환하여 분석.

3) 공적 지원의 자격취득 및 재취득 비율³²⁾

시설퇴소청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다양한 국가지원제도에 대한 자격취득 및 재취득 비율을 살펴보았다. 가명정보처리 분석 자료의 가용한 범위 내에서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자격취득 후의 재취득 여부, 자격유지 여부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료 추출 시점을 기준으로 ① 자격취득 후 재취득 없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 ② 자격취득 후 재취득 없이 자격이 중지된 비율, ③ 자격취득 후 재취득한 뒤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 ④ 자격취득 후 재취득한 뒤 자격이 중지된 비율을 산출³³⁾하였다.

그 결과, 분석한 공적 지원들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취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에서 자격취득 후 탈수급하고 재취득한 뒤 자격을 유지 및 중지한 비율이 전체의 약 50% 이상에 달하였다.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격취득 경험이 있는 시설퇴소청년 중 절반 이상의 청년이 해당 지원을 탈수급한 뒤 자격을 재취득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다른 공적 지원에서는 지원 자격을 상실한 후 재취득한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6).

32) 자격중지 후 재취득 시 자격취득일자는 하나의 자료만 존재하므로 재취득이 2회 이상 존재하는 경우는 비율 산출에 고려되지 못함. 또한 결합데이터의 자격취득 혹은 중지일자는 '연도, 월' 정보까지만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취득 혹은 중지 일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취득일자와 중지일자가 모두 동일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함.

3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의 다음 기준으로 비율 산출, ① 자격취득 후 재취득 없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 $\text{최초자격취득일자}=\text{자격취득일자}$ 이며 자격상태가 '자격취득'인 비율, ② 자격취득 후 재취득 없이 자격이 중지된 비율: $\text{최초자격취득일자}=\text{자격취득일자}$ 이며 자격상태가 '자격중지'인 비율(단, $\text{자격취득일자} \neq \text{자격중지일자}$), ③ 자격취득 후 재취득한 뒤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 $\text{최초자격취득일자} \neq \text{자격취득일자}$ 이며 자격상태가 '자격취득'인 비율, ④ 자격취득 후 재취득한 뒤 자격이 중지된 비율: $\text{최초자격취득일자} \neq \text{자격취득일자}$ 이며 자격상태가 '자격중지'인 비율.

표 IV-6. 공적 지원의 수급 및 탈수급 비율

(단위: 명(%), %)

공적 지원 구분	재취득 여부	자격유지 여부	사례 수(비율)	재취득 여부에 따른 비율
생계급여	① 재취득X	유지	375(18.7)	48.0
	② 재취득X	중지	589(29.3)	
	③ 재취득O	유지	472(23.5)	51.7
	④ 재취득O	중지	567(28.2)	
의료급여	① 재취득X	유지	419(20.7)	49.8
	② 재취득X	중지	589(29.1)	
	③ 재취득O	유지	477(23.6)	50.1
	④ 재취득O	중지	537(26.5)	
주거급여	① 재취득X	유지	356(17.8)	43.2
	② 재취득X	중지	506(25.4)	
	③ 재취득O	유지	542(27.2)	56.8
	④ 재취득O	중지	591(29.6)	
교육급여	① 재취득X	유지	17(0.9)	68.3
	② 재취득X	중지	1,316(67.4)	
	③ 재취득O	유지	9(0.5)	31.7
	④ 재취득O	중지	609(31.2)	
긴급복지지원 ²⁾	① 재취득X	유지	58(38.4)	94.7
	② 재취득X	중지	85(56.3)	
	③ 재취득O	유지	-	-
	④ 재취득O	중지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① 재취득X	유지	15(28.3)	94.3
	② 재취득X	중지	35(66.0)	
	③ 재취득O	유지	2(3.8)	5.7
	④ 재취득O	중지	1(1.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① 재취득X	유지	1,464(88.2)	100.0
	② 재취득X	중지	195(11.8)	
	③ 재취득O	유지	-	-
	④ 재취득O	중지	-	
디딤씨앗통장	① 재취득X	유지	1,192(68.7)	99.5
	② 재취득X	중지	534(30.8)	
	③ 재취득O	유지	7(0.4)	0.5
	④ 재취득O	중지	1(0.1)	
차상위 자활	① 재취득X	유지	1(25.0)	100.0
	② 재취득X	중지	3(75.0)	
	③ 재취득O	유지	-	-
	④ 재취득O	중지	-	
장애인 ³⁾	① 재취득X	유지	113(75.8)	91.3
	② 재취득X	중지	23(15.4)	

공적 지원 구분	재취득 여부	자격유지 여부	사례 수(비율)	재취득 여부에 따른 비율
	③ 재취득O	유지	9(6.0)	8.7
	④ 재취득O	중지	4(2.7)	
자산형성 지원 ⁴⁾	① 재취득X	유지	37(44.0)	63.1
	② 재취득X	중지	16(19.0)	
	③ 재취득O	유지	-	-
	④ 재취득O	중지	-	
차상위자산 형성지원	① 재취득X	유지	7(41.2)	64.7
	② 재취득X	중지	4(23.5)	
	③ 재취득O	유지	-	-
	④ 재취득O	중지	-	
청년자산 형성지원	① 재취득X	유지	63(88.7)	90.1
	② 재취득X	중지	1(1.4)	
	③ 재취득O	유지	-	-
	④ 재취득O	중지	-	

* 주: 1) 각 유형별 비율은 자격상태 데이터가 있는 개별 공적 지원의 유효 사례 수(결측 제외) 대비 비율을 의미하며, 자격취득 일자과 중지일자가 모두 동일한 사례 수는 제외하였기 때문에 공적 지원별 비율의 합이 100%가 안 됨.
2) 긴급복지지원의 자격상태가 '자격취득'인 사례 수 중 자격중지일자가 존재하며 자격취득일자와 중지일자가 모두 동일한 5명은 제외하고 산출함.
3) 장애인의 자격상태가 '자격상실(자격중지)'이지만 자격중지일자가 없는 1명 사례는 제외하고 산출함.
4) 자산형성지원의 자격상태가 '자격상실'이지만 자격중지일자가 없는 1명 사례는 제외하고 산출함.

4) 공적 지원 수혜가 자립에 미치는 영향³⁴⁾

다음으로 공적 지원 수혜가 시설퇴소청년의 자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정도를 분석하고자 '취업 노력', '건강 및 심리·정서', '참여 및 미래인식'으로 자립 정도를 구분하여 공적 지원 수혜가 시설퇴소청년의 자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취업 노력 정도는 NEET 경험 여부, 소득 없이 쉬 경험 여부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건강 및 심리·정서 정도를 확인하고자 삶의 만족도, 우울, 고립, 자해 시도 여부,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 변수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시설퇴소청년의 참여 및 미래인식 정도는 참여 효능감, 정부나 개인의 생계복지 책임 정도,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바라는 미래실현 정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활용 변수는 다음 <표 IV-7>과 같다.

34)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자료와 결합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급여 정보 데이터 2,1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단, 공적 지원 수혜 중 자립지원정착금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데이터와 결합된 1,17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표 IV-7. 시설퇴소청년 자립 분석 변인

구분	변수명	변숫값	비고
취업 노력	NEET 경험 여부	1=있다 / 0=없다	- 변수 리코딩
	소득 없이 선 경험 여부	1=있다 / 0=없다	- 변수 리코딩
건강 및 심리·정서	삶의 만족도	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5=보통 ~ 10=매우 만족한다	
	우울	1=전혀 없다 / 2=며칠 동안 3=일주일 이상 / 4=거의 매일	- 9개 문항 - 평균값
	고립	1=전혀 그렇지 않다 / 2=드물게 그렇다 / 3=가끔 그렇다 4=항상 그렇다	- 4개 문항 - 평균값
	자해 시도 여부	1=있다 / 0=없다	- 변수 리코딩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	1=매우 나쁘다 / 2=나쁘다 3=보통이다 / 4=좋다 / 5=매우 좋다	
참여 및 미래 인식	참여 효능감	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 3=보통이다 4=그렇다 / 5=매우 그렇다	- 3개 문항 - 평균값
	정부나 개인의 생계복지 책임 정도	0=정부가 생계·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 5=보통 ~ 10=본인 스스로 생계·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0=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5=보통 ~ 10=매우 신뢰한다	
	바라는 미래실현 정도	1=전혀 실현할 수 없다 2=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 3=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한편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와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추출된 공공데이터(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지원제도를 추출하여 시설퇴소청년이 이용한 공적 지원 제도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만 지원 수혜 비율이 너무 낮은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타당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했다. 분석에 활용한 구체적인 공적 지원제도는 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② 자산형성지원 지도 여부(디딤씨앗통장), ③ 자산형성 여부(자산형성지원사업,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청년저축계좌, 청년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④ 자립지원금 및 자립정착금 수급 여부(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자립지원정착금)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각 공적 지원 제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³⁵⁾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와 시설퇴소청년의 자립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취업 노력 영역에 있어서 NEET 경험이 있는 시설퇴소청년이 경험이 없는 청년보다 생계 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IV-8). 다음으로 <표 IV-8>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와 건강 및 심리·정서 정도와의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자해 시도 경험이 없는 청년의 40.4%가 주거급여를 수급받는데 반해, 자해 시도 경험이 있는 시설퇴소청년의 51.2%가 주거급여 수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해 시도 경험이 있는 시설퇴소청년이 경험이 없는 청년보다 주거급여 수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받는 시설퇴소청년의 우울, 고립 정도가 높고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받는 시설퇴소청년은 건강 및 심리·정서 정도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받는 시설퇴소청년의 참여 및 미래인식 정도는 긍정적인임을 확인하였다(표 IV-8).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받는 시설퇴소청년의 참여 효능감,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바라는 미래실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받은 시설퇴소청년은 건강 및 심리·정서 정도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적 지원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시설퇴소청년이 지원을 받지 않은 청년에 비해 긍정적 참여 및 미래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35)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는 데이터 추출 시점의 수급, 비수급을 구분하여 분석함. 즉 해당 시점 자격종지는 비수급으로 분석하였으며, 자격상태가 '자격취득'인 아닌 사례는 모두 비수급으로 간주하여 분석함.

표 IV-8.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에 따른 취업 노력

(단위: 명(%))

구분		생계급여 수급 여부			의료급여 수급 여부		
		비수급	수급	χ^2	비수급	수급	χ^2
전체		1322 (60.9)	847 (39.1)	-	1273 (58.7)	896 (41.3)	-
NEET 경험 여부	없다	1156 (63.8)	657 (36.2)	36.697***	1111 (61.3)	702 (38.7)	30.539***
	있다	166 (46.6)	190 (53.4)		162 (45.5)	194 (54.5)	
소득 없이 선 경험 여부	없다	1089 (60.7)	704 (39.3)	0.198	1052 (58.7)	741 (41.3)	0.001
	있다	233 (62.0)	143 (38.0)		221 (58.8)	155 (41.2)	

구분		주거급여 수급 여부		
		비수급	수급	χ^2
전체		1271 (58.6)	898 (41.4)	-
NEET 경험 여부	없다	1122 (61.9)	691 (38.1)	49.221***
	있다	149 (41.9)	207 (58.1)	
소득 없이 선 경험 여부	없다	1055 (58.8)	738 (41.2)	0.249
	있다	216 (57.4)	160 (42.6)	

* $p < .05$, ** $p < .01$, *** $p < .001$

표 IV-9.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에 따른 건강 및 심리·정서

(단위: 명(%), 점)

구분	생계급여 수급 여부			의료급여 수급 여부		
	비수급	수급	χ^2	비수급	수급	χ^2
전체	1322 (60.9)	847 (39.1)	-	1273 (58.7)	896 (41.3)	-
자해 시도 여부	없다	1208 (61.5)	2.712	1162 (59.2)	802 (40.8)	1.928
	있다	114 (55.6)		91 (44.4)	111 (54.1)	

구분	주거급여 수급 여부		
	비수급	수급	χ^2
전체	1271 (58.6)	898 (41.4)	-
자해 시도 여부	없다	1171 (59.6)	8.995**
	있다	100 (48.8)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삶의 만족도	생계급여	비수급	1,322	4.92	-1.114
		수급	847	5.04	
	의료급여	비수급	1,273	4.93	-0.781
		수급	896	5.01	
주거급여	비수급	1,271	5.01	0.936	
	수급	898	4.90		
우울	생계급여	비수급	1,322	1.69	-0.369
		수급	847	1.70	
	의료급여	비수급	1,273	1.68	-0.705
		수급	896	1.70	
주거급여	비수급	1,271	1.67	-1.922	
	수급	898	1.73		
고립	생계급여	비수급	1,322	1.85	-0.961
		수급	847	1.89	
	의료급여	비수급	1,273	1.84	-1.501
		수급	896	1.90	
주거급여	비수급	1,271	1.83	-2.339*	
	수급	898	1.92		
신체 건강에	생계급여	비수급	1,322	3.08	-2.116*
		수급	847	3.17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t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	의료급여	비수급	1,273	3.08	0.840	-2.118*
		수급	896	3.16	0.878	
	주거급여	비수급	1,271	3.10	0.834	-0.738
		수급	898	3.13	0.888	

* ρ .05, ** ρ .01, *** ρ .001

표 IV-10. 기초생활보장제도 여부에 따른 참여 및 미래인식

(단위: 점)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참여 효능감	생계급여	비수급	1,322	2.55	1.039	-2.941**
		수급	847	2.69	1.067	
	의료급여	비수급	1,273	2.56	1.031	-2.405*
		수급	896	2.67	1.078	
	주거급여	비수급	1,271	2.56	1.039	-2.146*
		수급	898	2.66	1.067	
정부나 개인의 생계복지 책임 정도	생계급여	비수급	1,322	4.49	2.609	2.718**
		수급	847	4.18	2.497	
	의료급여	비수급	1,273	4.50	2.598	2.812**
		수급	896	4.18	2.518	
	주거급여	비수급	1,271	4.50	2.596	2.909**
		수급	898	4.18	2.520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생계급여	비수급	1,322	4.26	2.098	-2.834**
		수급	847	4.53	2.107	
	의료급여	비수급	1,273	4.29	2.092	-1.978*
		수급	896	4.47	2.119	
	주거급여	비수급	1,271	4.30	2.075	-1.734
		수급	898	4.46	2.144	
바라는 미래 실현 정도	생계급여	비수급	1,322	1.97	0.514	-2.624**
		수급	847	2.03	0.516	
	의료급여	비수급	1,273	1.97	0.512	-2.368*
		수급	896	2.03	0.518	
	주거급여	비수급	1,271	1.98	0.513	-1.690
		수급	898	2.02	0.518	

* 주: 1) 각 변수의 점수 범위는 참여효능감1-5점, 정부나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0-10점, 바라는 미래실현 정도1-3점임.
2) * ρ .05, ** ρ .01, *** ρ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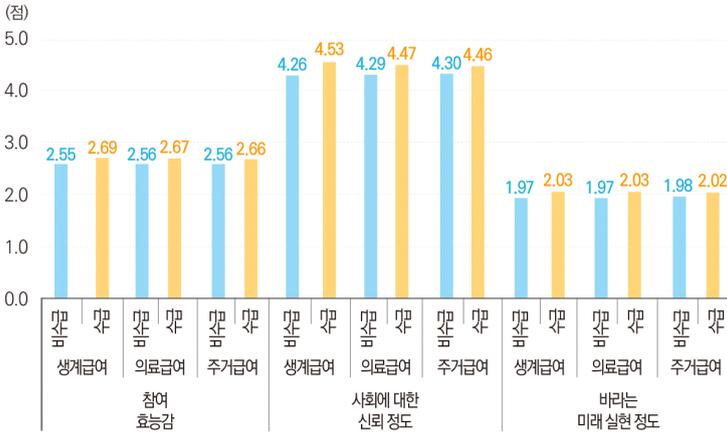


그림 IV-4. 기초생활보장제도 여부에 따른 참여 및 미래인식

(2) 디딤씨앗통장 지원 여부³⁶⁾

디딤씨앗통장 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시설퇴소청년의 취업 노력, 건강 및 심리·정서, 참여 및 미래인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가 다음 <표 IV-11>~<표 IV-13>에 제시되어 있다. 취업 노력과 관련된 자립 정도를 분석한 결과, 소득 없이 된 경험이 없는 시설퇴소청년의 57.8%가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받고 있지만 소득 없이 된 경험이 있는 청년의 43.1%가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받는 시설퇴소청년이 지원을 받지 않는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우울, 고립 정도는 낮고 자신의 신체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2>. 더욱이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퇴소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으며, 생계복지 책임 정도가 정부보다는 개인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36)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의 디딤씨앗통장 지원 여부는 데이터 추출 시점의 지원, 비 지원을 구분하여 분석. 즉 해당 시점 자격중지는 비 지원으로 분석하였으며, 자격상태가 '자격취득'인 아닌 사례는 모두 비 지원으로 간주하여 분석함.

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매칭 지원금을 적립하는 사업이다(아동권리보장원, 2024.10.2.37). 더욱이 디딤씨앗통장을 통한 적립금은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아동권리보장원, 2024.10.2.). 따라서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축적된 적립금은 시설퇴소청년이 사회로 자립하는 과정에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취업 노력, 건강 및 심리·정서, 참여 및 미래인식 등의 자립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IV-11. 디딤씨앗통장 지원 여부에 따른 취업 노력

(단위: 명(%))

구분		디딤씨앗통장 지원 여부		
		비 지원	지원	χ^2
전체		970(44.7)	1,199(55.3)	-
NEET 경험 여부	없다	809(44.6)	1,004(55.4)	0.044
	있다	161(45.2)	195(54.8)	
소득 없이 씀 경험 여부	없다	756(42.2)	1,037(57.8)	27.357***
	있다	214(56.9)	162(43.1)	

* $p < .05$, ** $p < .01$, *** $p < .001$

37)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사업 소개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5&cntntslid=1142>에서 2024년 10월 2일 검색.

표 IV-12. 디딤씨앗통장 지원 여부에 따른 건강 및 심리·정서

(단위: 명(%), 점)

구분	디딤씨앗통장 지원 여부		
	비 지원	지원	χ^2
전체	970(44.7)	1,199(55.3)	-
자해 시도 여부	없다	1,104(56.2)	7.315**
	있다	95(46.3)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삶의 만족도	비 지원	970	4.71	2.498	-4.271***
	지원	1,199	5.17	2.426	
우울	비 지원	970	1.80	0.757	6.445***
	지원	1,199	1.60	0.655	
고립	비 지원	970	1.97	0.928	5.182***
	지원	1,199	1.77	0.852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	비 지원	970	2.98	0.851	-6.547***
	지원	1,199	3.22	0.846	

* 주: 1) 각 변수의 점수 범위는 삶의 만족도 0~10점, 우울 1~4점, 고립 1~4점,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 1~5점임.
2) * α .05, ** α .01, *** α .001



그림 IV-5. 디딤씨앗통장 지원 여부에 따른 건강 및 심리·정서

표 IV-13. 디딤씨앗통장 지원 여부에 따른 참여 및 미래인식

(단위: 점)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참여 효능감	비 지원	970	2.61	1.035	0.343
	지원	1,199	2.60	1.065	
정부나 개인의 생계복지 책임 정도	비 지원	970	4.22	2.570	-2.432*
	지원	1,199	4.49	2.564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비 지원	970	4.13	2.153	-4.730***
	지원	1,199	4.56	2.046	
바라는 미래 실현 정도	비 지원	970	2.00	0.538	0.282
	지원	1,199	1.99	0.497	

* 주: 1) 각 변수의 점수 범위는 참여효능감 1~5점, 정부나 개인의 생계복지 책임 정도,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0~10, 바라는 미래 실현 정도 1~3점임
 2) * α .05, ** α .01, *** α .001

(3) 자산형성 여부³⁸⁾³⁹⁾

가명처리 결합 자료에서 가용이 가능한 자산형성과 관련된 다양한 국가지원제도 중 한 개 이상의 지원을 받는 경우를 자산을 형성하였다고 보았을 때, 참여 및 미래인식의 참여 효능감에 대하여 자산형성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공적 지원 제도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시설퇴소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참여 효능감이 높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IV-16). 이러한 결과는 공적 지원 제도를 통해 자산을 형성한 시설퇴소청년은 사회활동 참여 행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산의 형성을 지원한다는 건 시설퇴소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사회적 자립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 투자 개념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Sherraden, 1991).⁴⁰⁾ 따라서 이상의 결과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참여 효능감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설퇴소청년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38) 자산형성 여부는 '자산형성지원 자격취득', '내일키움통장 적립 여부', '청년희망키움통장 적립 여부', '차상위자산형성 지원 자격취득', '청년저축계좌 적립 여부', '청년자산형성지원 자격취득',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 여부'의 7개 공적 지원 수혜 중 한 개 이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자산형성 O',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자산형성 X'로 간주함.
- 39) 자산형성지원 자격 취득 37명(1.7%), 내일키움통장 적립 4명(0.2%), 청년희망키움통장 적립 12명(0.5%),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자격 취득 7명(0.3%), 청년저축계좌 적립 3명(0.1%), 청년자산형성지원 자격 취득 63명(2.8%),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 50명(2.3%).
- 40) Sherraden, M.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 E. Sharp.

표 IV-14. 자산형성 여부에 따른 취업 노력

(단위: 망(%))

구분		자산형성 여부		
		자산형성 X	자산형성 O	χ^2
전체		2,061(95.0)	108(5.0)	-
NEET 경험 여부	없다	1,718(94.8)	95(5.2)	1.587
	있다	343(96.3)	13(3.7)	
소득 없이 선 경험 여부	없다	1,694(94.5)	99(5.5)	6.427*
	있다	367(97.6)	9(2.4)	

* $p < .05$, ** $p < .01$, *** $p < .001$

표 IV-15. 자산형성 여부에 따른 건강 및 심리-정서

(단위: 명(%), 점)

구분		자산형성 여부		
		자산형성 X	자산형성 O	χ^2
전체		2,061(95.0)	108(5.0)	-
자해 시도 여부	없다	1,865(95.0)	99(5.0)	0.166
	있다	196(95.6)	9(4.4)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삶의 만족도	자산형성 X	2,061	4.98	2.478	1.165
	자산형성 O	108	4.69	2.269	
우울	자산형성 X	2,061	1.69	0.715	0.101
	자산형성 O	108	1.68	0.599	
고립	자산형성 X	2,061	1.86	0.891	-0.502
	자산형성 O	108	1.91	0.904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	자산형성 X	2,061	3.12	0.860	1.331
	자산형성 O	108	3.01	0.779	

* 주: 1) 각 변수의 점수 범위는 삶의 만족도 0~10점, 우울 1~4점, 고립 1~4점,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 1~5점임.
2) * $p < .05$, ** $p < .01$, *** $p < .001$

표 IV-16. 자산형성 여부에 따른 참여 및 미래인식

(단위: 점)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참여 효능감	자산형성 X	2,061	2.59	1.052	-2.685**
	자산형성 O	108	2.87	1.011	
정부나 개인의 생계 복지 책임 정도	자산형성 X	2,061	4.36	2.576	-0.362
	자산형성 O	108	4.45	2.443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자산형성 X	2,061	4.36	2.116	-0.493
	자산형성 O	108	4.46	1.882	
바라는 미래 실현 정도	자산형성 X	2,061	1.99	0.516	-1.455
	자산형성 O	108	2.06	0.498	

* 주: 1) 각 변수의 점수 범위는 참여효능감 1~5점, 정부나 개인의 생계복지 책임 정도,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0~10, 바라는 미래 실현 정도 1~3점임
 2) * $p < .05$, ** $p < .01$, *** $p < .001$

(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여부⁴¹⁾

〈표 IV-17〉에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여부에 따른 취업 노력 정도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소득 없이 실패 경험이 없는 시설퇴소청년이 경험에 있는 청년과 비교하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받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 없이 실패 경험이 없는 청년들 중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원받은 경우는 70.8% 이었다. 다음으로 건강 및 심리·정서 영역에 대해서는 자해 시도 경험이 없는 시설퇴소청년이 자해 시도 경험이 있는 청년에 비해 자립수당을 받은 비율이 69.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원받은 시설퇴소청년이 지원받지 않은 청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 고립 정도가 낮으며 자신의 신체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8). 이와 유사하게 참여 및 미래인식에 대해서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원받은 시설퇴소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과 비교하여 참여 효능감,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바라는 미래실현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원받은 청년이 생계복지에 본인 스스로가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9).

4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여부는 데이터 추출 시점의 지원, 비 지원을 구분하여 분석함. 즉 해당 시점 자격증지는 비수급으로 분석하였으며, 자격상태가 '자격취득'이 아닌 사례는 모두 비 지원으로 간주하여 분석함.

결과적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여부와 시설퇴소청년의 자립 정도 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원받은 시설퇴소청년과 지원받지 않은 청년을 비교했을 때, 자립수당을 받은 청년의 취업에 대한 노력, 건강 및 심리·정서, 참여 및 미래인식 정도가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시설퇴소청년의 자립에 있어 긍정적 요소로 다방면으로 작용함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표 IV-17.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여부에 따른 취업 노력

(단위: 명(%))

구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여부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여부			
	비 지원	지원	χ^2	비 지원	지원	χ^2	
전체	705 (32.5)	1,464 (67.5)	-	100 (8.5)	1,074 (91.5)	-	
NEET 경험 여부	없다	592 (32.7)	1,221 (67.3)	0.113	79 (8.2)	890 (91.8)	0.950
	있다	113 (31.7)	243 (68.3)		21 (10.2)	184 (89.8)	
소득 없이 진 경험 여부	없다	524 (29.2)	1,269 (70.8)	50.681***	82 (8.2)	916 (91.8)	0.776
	있다	181 (48.1)	195 (51.9)		18 (10.2)	158 (89.8)	

* $p < .05$, ** $p < .01$, *** $p < .001$

표 IV-18.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여부에 따른 건강 및 심리·정서

(단위: 명(%), 점)

구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여부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여부			
	비 지원	지원	χ^2	비 지원	지원	χ^2	
전체	705 (32.5)	1,464 (67.5)	-	100 (8.5)	1,074 (91.5)	-	
자해 시도 여부	없다	598 (30.4)	1,366 (69.6)	40.015 ***	90 (8.2)	1,005 (91.8)	1.863
	있다	107 (52.2)	98 (47.8)		10 (12.7)	69 (87.3)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삶의 만족도	보호종료아동	비 지원	705	4.43	2.493	-6.978***
		지립수당	1,464	5.22	2.415	
	정착금	비 지원	100	5.18	2.576	-0.062
		지원	1,074	5.20	2.359	
우울	보호종료아동	비 지원	705	1.91	0.806	9.600***
		지립수당	1,464	1.58	0.631	
	정착금	비 지원	100	1.72	0.719	1.690
		지원	1,074	1.59	0.617	
고립	보호종료아동	비 지원	705	2.11	0.943	8.665***
		지립수당	1,464	1.75	0.841	
	정착금	비 지원	100	1.93	0.902	1.862
		지원	1,074	1.76	0.836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	보호종료아동	비 지원	705	2.94	0.856	-6.776***
		지립수당	1,464	3.20	0.844	
	정착금	비 지원	100	3.06	0.962	-1.477
		지원	1,074	3.19	0.823	

* 주: 1) 각 변수의 점수 범위는 삶의 만족도 0~10점, 우울 1~4점, 고립 1~4점,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 1~5점임.
2) * α .05, ** α .01, *** α .001

표 IV-1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여부에 따른 참여 및 미래인식

(단위: 점)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참여 효능감	보호종료아동	비 지원	705	2.51	-2.893**
	자립수당	지원	1,464	2.65	
	자립지원	비 지원	100	2.62	0.465
	정착금	지원	1,074	2.57	
정부나 개인의 생계복지 책임 정도	보호종료아동	비 지원	705	4.12	-3.074**
	자립수당	지원	1,464	4.49	
	자립지원	비 지원	100	4.40	-0.180
	정착금	지원	1,074	4.45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보호종료아동	비 지원	705	3.97	-5.929***
	자립수당	지원	1,464	4.55	
	자립지원	비 지원	100	4.40	-0.487
	정착금	지원	1,074	4.50	
바라는 미래실현 정도	보호종료아동	비 지원	705	1.96	-1.967*
	자립수당	지원	1,464	2.01	
	자립지원	비 지원	100	2.09	1.750
	정착금	지원	1,074	1.99	

* 주: 1) 각 변수의 점수 범위는 참여효능감 1~5점, 정부나 개인의 생계복지 책임 정도,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0~10, 바라는 미래 실현 정도 1~3점임
2) * α .05, ** α .01, *** α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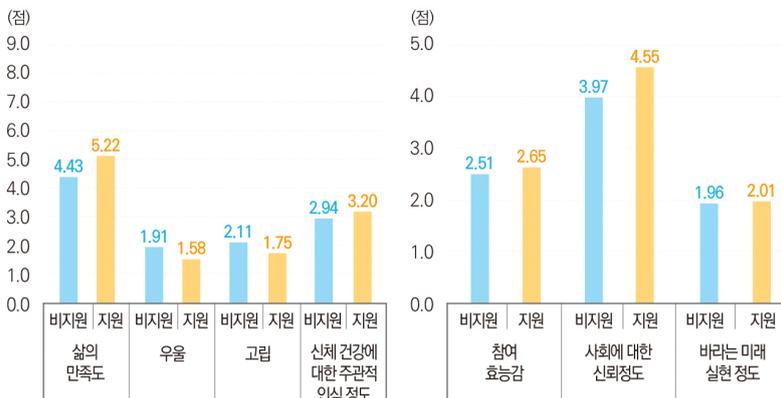


그림 IV-6.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여부에 따른 건강 및 심리·정서/참여 및 미래인식

5) 자립기술평가 점수⁴²⁾가 자립 정도에 미치는 영향⁴³⁾

다음으로 자립기술평가 점수에 따른 시설퇴소청년의 자립 정도를 분석하였다. 시설퇴소청년의 ‘자립’ 정도는 앞선 공적 지원 수혜 여부가 자립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동일한 변수를 활용하였다(표 IV-7). 자립기술은 6가지 영역으로 평가된다. 아동돈관리, 사회기술, 일상생활, 자기보호, 장래취업, 지역사회 영역에 대해 평가하고 개별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먼저 자립기술평가 영역별 시설퇴소청년의 자립 정도를 분석하였다.

〈표 IV-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자기보호 점수가 높아질수록 NEET를 경험할 가능성이 1.040배 높아지며, 아동사회기술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해를 시도할 가능성이 0.942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프로그램’에 제시된 자기보호기술은 자신을 깔끔하고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방법, 어른이 되는 과정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⁴⁴⁾

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 및 진학 준비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나, 해당 결과만으로 자신을 돌보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지낼 수 있는 기술을 배우거나 교육을 받는 등 직업 훈련에 종사하지 않는 NEET 경험 여부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아동사회기술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기술, 감정 다루기 등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적 기술에서는 나의 감정을 알고 표현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나의 감정을 탐색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이 자해 시도 등 극단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42) 동일 연도에 자립기술평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동일 연도의 복수 평가 점수를 평균 처리하여 분석함. 단, 평가 점수가 0점인 경우는 결측 처리함.

43)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자료와 결합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데이터 1,17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44)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3). 2023 자립지원 표준화프로그램.

표 IV-20. 자립기술평가 영역별 평가 점수가 자립에 미치는 영향(취업, 자해)

구분	자립기술평가 영역	B	SE	Wald	Exp(B)	95% CI	
						LLCI	ULCI
NEET 경험 여부	아동돈관리	-0.010	0.012	0.765	0.990	0.967	1.013
	아동사회기술	-0.022	0.014	2.413	0.979	0.952	1.006
	아동일상생활	-0.010	0.016	0.409	0.990	0.961	1.021
	아동자기보호	0.039***	0.015	6.642	1.040	1.009	1.072
	아동장래취업	-0.009	0.011	0.668	0.991	0.969	1.013
	아동지역사회	0.012	0.013	0.791	1.012	0.986	1.038
소득 없이 권 경험 여부	아동돈관리	0.007	0.013	0.276	1.007	0.982	1.032
	아동사회기술	-0.022	0.015	2.140	0.978	0.950	1.007
	아동일상생활	-0.002	0.017	0.009	0.998	0.966	1.031
	아동자기보호	0.016	0.016	0.967	1.016	0.984	1.049
	아동장래취업	-0.006	0.012	0.256	0.994	0.971	1.018
	아동지역사회	0.000	0.014	0.000	1.000	0.973	1.028
자해 시도 여부	아동돈관리	-0.031	0.017	3.274	0.969	0.937	1.003
	아동사회기술	-0.059**	0.020	8.647	0.942	0.906	0.980
	아동일상생활	0.044	0.023	3.649	1.045	0.999	1.094
	아동자기보호	0.028	0.023	1.440	1.028	0.983	1.075
	아동장래취업	0.009	0.017	0.304	1.009	0.977	1.043
	아동지역사회	0.012	0.019	0.363	1.012	0.974	1.051

* ρ .05, ** ρ .01, *** ρ .001

한편, 아동사회기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우울과 고립 정도는 낮아지며, 자신의 신체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및 미래인식 정도에 대해 아동사회기술 점수가 높을수록 생계복지에 대해 정부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바라는 미래실현 정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표 IV-21). 또한 아동장래취업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참여 효능감은 높아지는 반면 신체건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장래취업기술과 관련하여 '자립지원프로그램'에서는 진로탐색기술과 직업생활기술 자립프로그램이 명시되어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자신의 진학 및 직업을 탐색하고 직장생활기술을 습득하는 등 장래취업기술은 미래를 계획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공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

서 이러한 결과는 시설퇴소청년의 장래취업기술에 대한 역량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사회 참여 행동에 대한 효능감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IV-21. 자립기술평가 영역별 평가 점수가 자립에 미치는 영향(심리·정서, 참여)

구분	자립기술 평가 영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i>t</i>	공산성통계량	
		<i>B</i>	표준오차	β		공차	VIF
삶의 만족도	아동돈관리	-0.009	0.011	-0.039	-0.843	0.395	2.529
	아동사회기술	0.037	0.013	0.137	2.891**	0.379	2.641
	아동일상생활	-0.004	0.014	-0.012	-0.247	0.348	2.877
	아동자기보호	-0.001	0.014	-0.003	-0.060	0.325	3.078
	아동장래취업	0.024	0.010	0.107	2.285*	0.388	2.578
	아동지역사회	-0.018	0.012	-0.072	-1.516	0.383	2.614
우울	아동돈관리	0.001	0.003	0.020	0.428	0.395	2.529
	아동사회기술	-0.011	0.003	-0.161	-3.375***	0.379	2.641
	아동일상생활	0.003	0.004	0.036	0.721	0.348	2.877
	아동자기보호	0.003	0.004	0.043	0.832	0.325	3.078
	아동장래취업	-0.004	0.003	-0.066	-1.395	0.388	2.578
	아동지역사회	0.005	0.003	0.070	1.485	0.383	2.614
고립	아동돈관리	-0.004	0.004	-0.046	-0.998	0.395	2.529
	아동사회기술	-0.025	0.004	-0.258	-5.484***	0.379	2.641
	아동일상생활	0.008	0.005	0.080	1.637	0.348	2.877
	아동자기보호	0.006	0.005	0.056	1.110	0.325	3.078
	아동장래취업	-0.001	0.004	-0.015	-0.316	0.388	2.578
	아동지역사회	0.005	0.004	0.058	1.237	0.383	2.614
신체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	아동돈관리	0.004	0.004	0.051	1.094	0.395	2.529
	아동사회기술	0.022	0.004	0.235	4.970***	0.379	2.641
	아동일상생활	0.005	0.005	0.054	1.091	0.348	2.877
	아동자기보호	-0.009	0.005	-0.096	-1.878	0.325	3.078
	아동장래취업	-0.009	0.004	-0.110	-2.355*	0.388	2.578
	아동지역사회	-0.004	0.004	-0.048	-1.013	0.383	2.614
참여 효능감	아동돈관리	0.007	0.005	0.064	1.391	0.395	2.529
	아동사회기술	-0.005	0.006	-0.038	-0.815	0.379	2.641
	아동일상생활	0.006	0.006	0.048	0.977	0.348	2.877
	아동자기보호	0.003	0.006	0.025	0.487	0.325	3.078

구분	자립기술 평가 영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공산성통계량	
		B	표준오차	β		공차	VIF
	아동장래취업	0.013	0.005	0.131	2.831**	0.388	2.578
	아동지역사회	0.003	0.005	0.025	0.533	0.383	2.614
정부나 개인의 생계 복지 책임 정도	아동돈관리	0.011	0.012	0.043	0.929	0.395	2.529
	아동사회기술	0.030	0.014	0.103	2.161*	0.379	2.641
	아동일상생활	-0.020	0.015	-0.066	-1.331	0.348	2.877
	아동자기보호	-0.010	0.015	-0.036	-0.689	0.325	3.078
	아동장래취업	-0.001	0.011	-0.003	-0.072	0.388	2.578
	아동지역사회	-0.003	0.013	-0.012	-0.255	0.383	2.614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아동돈관리	0.009	0.009	0.047	1.010	0.395	2.529
	아동사회기술	0.019	0.011	0.082	1.714	0.379	2.641
	아동일상생활	-0.008	0.012	-0.031	-0.613	0.348	2.877
	아동자기보호	0.002	0.012	0.010	0.199	0.325	3.078
	아동장래취업	0.012	0.009	0.063	1.342	0.388	2.578
	아동지역사회	-0.018	0.010	-0.084	-1.778	0.383	2.614
바라는 미래 실현 정도	아동돈관리	0.002	0.002	0.032	0.696	0.395	2.529
	아동사회기술	0.009	0.003	0.158	3.339***	0.379	2.641
	아동일상생활	-0.003	0.003	-0.048	-0.975	0.348	2.877
	아동자기보호	-0.003	0.003	-0.055	-1.076	0.325	3.078
	아동장래취업	0.004	0.002	0.081	1.729	0.388	2.578
	아동지역사회	0.000	0.002	0.001	0.017	0.383	2.614

* $p < .05$, ** $p < .01$, *** $p < .001$

다만 장래취업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 건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아동장래취업 평가 점수를 분포 비율에 따라 5개 범주로 구분하고 각 점수 범주별 취업 형태를 살펴보았다(〈표 IV-22〉, 〈표 IV-23〉 참조). 그 결과, 아동장래취업 평가 점수가 높은 범주에 속한 청년들의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비율과 평가 점수가 낮은 범주에 속한 청년들의 비율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90점 이상 100점의 매우 높은 장래취업 평가 점수를 받은 청년들에게서도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율이 15~19%로 높게 확인되었다. 주당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장래취업 평가 점수가 높더라도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10% 이상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장래취업 점수가 높더라도 취업한 일자리의 질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불안정한 고용 형태, 많은 주당 노동시간 등이 신체적 건강 등에 일정 부분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IV-22. 아동장래취업평가 점수 범주 분포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비율
29점 이상~60점 미만	77	6.7
60점 이상~70점 미만	222	19.2
70점 이상~80점 미만	454	39.3
80점 이상~90점 미만	279	24.1
90점 이상~100점	124	10.7

표 IV-23. 아동장래취업평가 점수 범주별 취업 형태

(단위: 명(%))

구분		29점 이상 ~6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 ~100점
고용 형태	상용근로자	37(69.8)	90(54.9)	197(61.6)	108(56.3)	53(42.7)
	임시근로자	6(11.3)	49(29.9)	80(25.0)	48(25.0)	19(15.3)
	일용근로자	8(15.1)	21(12.8)	35(10.9)	22(11.5)	8(6.5)
	자영업자	2(3.8)	3(1.8)	8(2.5)	13(6.8)	4(3.2)
	무급가족종사자	-	1(0.6)	-	1(0.5)	-
고용보험 가입 여부	가입	36(67.9)	91(55.5)	202(63.1)	112(58.3)	49(58.3)
	미가입	5(9.4)	25(15.2)	42(13.1)	35(18.2)	13(15.5)
	모르겠다	12(22.6)	48(29.3)	76(23.8)	45(23.4)	22(26.2)
건강보험 가입 여부	가입	36(67.9)	88(53.7)	199(62.2)	109(56.8)	48(57.1)
	미가입	5(9.4)	29(17.7)	47(14.7)	36(18.8)	15(17.9)
	모르겠다	12(22.6)	47(28.7)	74(23.1)	47(24.5)	21(25.0)
국민연금 가입 여부	가입	38(71.7)	89(54.3)	198(61.9)	110(57.3)	44(52.4)
	미가입	4(7.5)	26(15.9)	47(14.7)	36(18.8)	16(19.0)
	모르겠다	11(20.8)	49(29.9)	75(23.4)	46(24.0)	24(28.6)
산재보험 가입 여부	가입	30(56.6)	85(51.8)	185(57.8)	103(53.6)	45(53.6)
	미가입	6(11.3)	28(17.1)	45(14.1)	36(18.8)	14(16.7)
	모르겠다	17(32.1)	51(31.1)	90(28.1)	53(27.6)	25(29.8)

구분		29점 이상 ~6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 ~100점
주당 노동시간	36시간 미만	27(50.9)	82(50.0)	138(43.3)	98(51.0)	42(50.0)
	36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20(37.7)	72(43.9)	145(45.5)	73(38.0)	32(38.1)
	50시간 초과	6(11.3)	10(6.1)	36(11.3)	21(10.9)	10(11.9)

다음으로 자립기술평가 집계 점수가 시설퇴소청년의 자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자립기술평가 점수는 시설퇴소청년의 NEET 경험 여부, 소득 없이 쉰 경험 여부, 자해 시도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IV-24).

표 IV-24. 자립기술평가 집계 점수가 자립에 미치는 영향(취업, 자해)

구분	B	SE	Wald	Exp(B)	95% CI	
					LLCI	ULCI
NEET 경험 여부	-0.003	0.010	0.087	0.997	0.978	1.016
소득 없이 쉰 경험 여부	-0.007	0.010	0.500	0.993	0.973	1.013
자해 시도 여부	-0.004	0.015	0.091	0.996	0.967	1.025

* $p < .05$, ** $p < .01$, *** $p < .001$

반면에 자립기술평가 집계 점수는 시설퇴소청년의 삶의 만족도, 우울, 고립,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 참여 효능감,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바라는 미래실현 정도와 유의한 수준에서 관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립기술평가 집계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참여 효능감,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바라는 미래실현 정도가 높아지며,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우울과 고립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립기술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퇴소청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립함을 보증하는 결과이며, 자립기술평가 집계 점수에 따라 시설퇴소청년의 자립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표 IV-25. 자립기술평가 집계 점수가 자립에 미치는 영향(심리·정서, 참여)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β	
삶의 만족도	0.035	0.009	0.115	3.938***
우울	-0.005	0.002	-0.058	-1.963*
고립	-0.012	0.003	-0.115	-3.916***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	0.009	0.003	0.084	2.866**
참여 효능감	0.029	0.004	0.222	7.740***
정부나 개인의 생계복지 책임 정도	0.008	0.009	0.025	0.835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0.021	0.008	0.083	2.812**
바라는 미래실현 정도	0.010	0.002	0.159	5.467***

* $p < .05$, ** $p < .01$, *** $p < .001$

3. 소결⁴⁵⁾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와 공공데이터 간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공적 지원 수급 여부의 정합성, 지원의 자격취득 및 재취득 비율, 공적 지원 수혜가 시설퇴소청년의 자립에 미치는 영향, 자립기술평가와 자립 간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설퇴소청년이 인지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와 공공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실제 수급 여부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시설퇴소청년의 공적 지원 수급 여부의 인지도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대해 시설퇴소청년이 인지한 수급 여부와 공공데이터 간 약 86~90%의 정합성을 보였다. 반면,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13.1%,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15.6%의 시설퇴소청년들이 자신의 수급 여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의 10.5%가 자신의 수급 여부를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퇴소청년의 공적 지원 수급 여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우선 유사한 공적 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들이 자신이 수혜

45) 본 절은 전현정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받고 있는 지원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수급-탈수급을 반복하며 현실적의 자신의 수급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공적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고 시기적절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설퇴소청년이 자신의 지원 수급 현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국가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신이 지원받고 있는 공적 지원들이 무엇인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접근이 용이한 공공데이터로의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다양한 국가지원제도에 대해 지원 자격을 취득한 후 탈수급하고 다시 지원자격을 취득한 비율을 살펴본 결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취득 비율이 약 50% 이상으로 다른 공적 지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취득 경험이 있는 시설퇴소청년 중 절반 이상의 청년이 해당 지원을 탈수급한 후 자격을 재취득한 것을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4.10.2.).⁴⁶⁾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자격이 상실되었다 다시 재취득하였다는 건 다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회귀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 비율이 50% 이상에 달하는 만큼 탈수급 후 재취득한 시설퇴소청년에 대한 추적 조사 및 파악과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공적 지원 수혜가 시설퇴소청년의 자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 받은 시설퇴소청년은 대체로 건강 및 심리·정서 정도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적 지원을 수혜 받은 시설퇴소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긍정적인 참여 및 미래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지원받는 청년이 지원을 받지 않은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우울, 고립 정도는 낮고 자신의 신체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퇴소청년이 상대적으로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으며, 생계복지 책임 정도가 정부보다는 개인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축적한 적립금은 시설퇴소청년이 사회

4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에서 2024년 10월 2일 검색.

진출에 필요한 초기 자산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취업 노력 등의 자립과정에 기저로 작용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더욱이 디딤씨앗통장 사업과 같은 국가 차원의 자립지원제도는 시설퇴소청년의 건강 및 심리 정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생계복지에 개인이 느끼는 책임 정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자산형성 여부에 따른 자립 정도를 분석한 결과, 공적 지원을 통해 자산을 형성한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유의하게 참여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산형성을 위한 공적 지원을 수혜 받은 시설퇴소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행동 정도가 높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참여 효능감을 제고 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설퇴소청년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여부와 시설퇴소청년의 자립 정도 간 관계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원받은 시설퇴소청년과 지원받지 않은 청년과 비교했을 때, 자립수당을 받은 청년의 취업에 대한 노력, 건강 및 심리·정서, 참여 및 미래인식 정도가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설퇴소청년의 자립과정 속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다방면으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양한 공적 지원 수혜는 시설퇴소청년의 취업 노력, 건강 및 심리·정서, 참여 및 미래인식 등 다각도의 자립 정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긍정적 영향을 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공적 지원을 받는 것이 자립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기저로 작용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설퇴소청년의 자립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서는 시설퇴소청년의 자립과정에 적절한 공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자립기술평가 점수와 시설퇴소청년의 자립 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사회기술과 아동장래취업 점수가 시설퇴소청년의 건강 및 심리·정서와 참여 및 미래인식 측면의 자립 정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자립기술평가 영역별 점수와 시설퇴소청년의 자립 정도와의 관련성 정도가 상이하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자립기술평가 영역별 자립준비 정도가 시설퇴소청년의 실제적 자립 정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자립기술평가 집계 점수가 자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립기술평가 집계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참여 효능감,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바라는 미래실현 정도가 높아지며,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립기술평가 집계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고립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립기술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퇴소청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립함을 방증한다. 이러한 자립기술평가 집계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퇴소청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립한다는 결과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립기술평가 집계 점수가 낮은 시설퇴소청년은 자립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자립기술평가 집계 점수가 낮은 집단에 대한 추가적 자립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자립기술평가 집계 점수를 바탕으로 한 대상별 차별화된 자립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제5장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자립과정 분석 : 1~3차년도 종단분석

- 1. 조사참여자 특성 및 연구방법
- 2. 시설 거주 경험이 성인기 이행에 미친 영향 분석
- 3. 자립지원수당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 4.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종단적 생활안정성 집단에 따른 자립수준 및 심리·정서수준 비교
- 5. 자립연차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 및 지원효과 분석
- 6. 소결

1. 조사참여자 특성 및 연구방법⁴⁸⁾

1) 조사참여자 특성

본 장에서는 본원의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1차 년도(2022), 2차 년도(2023), 3차 년도(2024)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시설 거주 경험이 성인기 이행에 미친 영향, 자립지원수당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성이 자립수준 및 심리·정서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의 주제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설퇴소청년의 자립과정에 효과적인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는 만 19~34세 중 아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김지연 외, 2022), 1차 년도 조사에서 2,457명, 2차 년도 조사에서 2,498명, 3차 년도 조사에서 2,6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종단분석을 위해 활용된 조사 대상은 1~3차 년도 실태조사에 모두 참여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총 1,034명으로, 남성 청년이 45.6%, 여성 청년이 54.4%였다. 퇴소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 77.3%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청소년복지시설(20.5%), 소년보호시설(2.2%)의 순이었다. 학력은 대학 3차 년도 조사 시점 기준으로 대학 휴학 및 졸업 이상이 55.6%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 27.2%, 대학 재학 중인 청년이 17.2%였다.

자립지원을 받은 기간은 3년 미만인 경우가 79.0%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3년 이상인 경우가 21.0%였다. 주관적으로 경제수준을 낮은 수준(하)으로 인식한 경우가 60.8%로

47) 본 장은 2024년 9월 9일 본 연구에서 개최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종단분석 세미나'에서 발표된 원고의 일부를 요약·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48) 본 절은 김승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중간 수준(중) 34.1%, 높은 수준 5.0%의 순이었다. 거주지역의 규모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51.3%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45.9%), 읍면지역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 조사참여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명)	비율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성별	남자	471	45.6	자립지원 기간	3년 미만	813	79.0
	여자	563	54.4		3년 이상	216	21.0
퇴소시설	아동복지시설	799	77.3	학력	고졸 이하	281	27.2
	청소년복지시설	212	20.5		대학 재학	178	17.2
	소년보호시설	23	2.2		대학 휴학, 졸업 이상	575	55.6
주관적 경제수준	상	52	5.0	지역규모	대도시	475	45.9
	중	353	34.1		중소도시	530	51.3
	하	629	60.8		읍면지역	29	2.8

2) 분석방법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주제별 연구대상과 주요 분석변수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V-2. 종단분석 주제별 주요 분석변수 및 분석방법

	주제	주요 분석변수	분석방법
1	시설 거주 경험이 성인기 이행에 미친 영향 분석	다중시설 이용 경험 및 시설 이용기간, 건강 및 심리·정서(주관적 건강, 우울,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사회적 고립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시설퇴소청년 1,034명 대상 · 자립준비청년의 건강 및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의 변화 정도에 개인차가 존재함을 가정하고, 개인의 변화 궤적에 따른 하위집단을 탐색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적용
2	자립지원수당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자립지원수당, 취업상태, 채무, 주관적 자립수준, 주거 불안정 수준, 결식 경험 여부, 우울, 자해 경험, 건강보험 미납 경험, 삶의 만족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3차 조사에 참여한 1,158명¹⁾ 대상 · 자립지원수당 수급 청년과 미수급 청년 간에 존재하는 선택편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인과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이중강건 추정 방법(Doubly Robust Method) 적용
3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종단적 생활안정성 집단에 따른 자립수준 및 심리·정서수준 비교	생활안정성(취업 및 근로 유형, 채무), 자립수준 및 심리·정서(자립수준, 삶의 만족도, 우울, 고립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시설퇴소청년 1,034명 대상²⁾ · 생활안정성 집단별 자립수준 및 심리·정서 변화 분석 및 각 연도별 생활안정성 집단 간 자립수준 및 심리·정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 적용
4	자립연차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 및 자원효과 분석	고용 및 경제(주된 일자리, 직장 내 산업안전 경험, 가구 소득수준), 건강 및 심리·정서(삶의 만족도), 자립역량(자립수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시설퇴소청년 1,034명 중 1차 조사에 자립지원수당을 받기 시작했으며 3차 조사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144명 대상 · 고용 및 경제, 건강 및 심리·정서, 자립역량 영역별 변화 추이 분석

* 주: '자립지원수당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1차 시점의 자립지원수당이 1차에서 3차 시점에서의 학력, 취업, 채무 등의 변화와 3차 시점의 자립준비청년 생활에 미치는 인과 효과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1, 3차 조사에 참여한 1,15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시설 거주 경험이 성인기 이행에 미친 영향 분석⁴⁹⁾

이 연구는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책소외계층인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시설퇴소 후 성인기로 진입한 이후의 삶의 양상을 분석하고, 자립수준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퇴소 이후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성인기의 발달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보호대상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아동·청소년들이 아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보호시설 등과 같은 사회 안전망 속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어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들은 시설퇴소 후 자립과정에서 시설 경험에 따른 구직의 어려움, 심리·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인식, 지원이나 정보 격차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수안, 2023⁵⁰⁾).

하지만, 시설 거주 경험이 퇴소 이후 사회로 복귀한 시설퇴소청년들의 자립수준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즉,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어려움이 무엇이며, 시설 거주기간 동안 성인기로의 이행을 준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시설퇴소 이후 자립준비청년들의 성공적인 성인기 발달과업 이행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수준, 심리·정서적 측면을 포함한 전반적인 웰빙, 사회적 관계 형성 측면에서 자립수준의 변화 과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성장과 변화 과정에서 시설 거주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퇴소 시설퇴소청년들의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위한 자립수준의 다면적 특성에 주목하여 건강 및 심리·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구분하고, 청년들의 시설 거주 경험이 이러한 집단 구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49) 본 절은 김나영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집필하였음.

50) 고수안(2023). 자립준비청년의 시설퇴소 후 자립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질적연구 : -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시설 거주 경험과 건강 및 심리·정서 변화 양상과의 관계 분석

시설퇴소청년의 건강상태, 우울, 삶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건강 및 심리·정서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을 이용하여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비선형모형(2차 함수)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3차 년도 자료의 특성을 반영할 때 주관적 건강, 우울, 삶의 만족도 각 모형에서 선형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각 모형에서 우울과 삶의 만족도의 기울기 분산을 제외한 모든 초기치(I)와 기울기(S)의 분산이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건강상태 및 심리·정서적 변화 양상에는 개인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건강상태 변화 양상 탐색

① 건강상태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도출

선형모형을 적용하여 건강상태의 변화 양상에 따른 최적의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2개부터 5개까지 변화시켜 가며 분석한 결과는 <표 V-3>와 같다. 첫 번째 기준으로 정보지수를 나타내는 AIC, BIC, SA-BIC(Sample-Size Adjusted BIC)는 잠재프로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두 번째 기준으로,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의 경우 잠재프로파일이 3개 이상인 모형에서 0.8 이상의 값을 가져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Muthén & Muthén 2007; Clark 2010).⁵¹⁾⁵²⁾ 세 번째 기준으로 모형의 간명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LMR-LRT와 BLRT 검증을 실시한 결과, LMR-LRT는 잠재프로파일이 4개인 모형에서 3개인 모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 BLRT의 경우 모든 잠재프로파일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넷째, 잠재프로파일별 비율을 비교한 결과, 잠재프로파일이 5개인 모형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각 분류율이 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Berlin, Williams, & Parra, 2014; Muthén, 2004)⁵³⁾⁵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51) Muthén, L.K., & B.O. Muthén.(2007). "What Is a Good Value of Entropy". Retrieved from <http://www.statmodel.com/discussion/messages/13/2562.html?1237580237>.

52) Clark, S.L. (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A.

53) Muthén, B.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Growth Mixture Modeling and Related Techniques for Longitudinal Data. In D. Kaplan (E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pp. 345-368). Newbury Park, CA: Sage.

54) Berlin, K. S., Williams, N. A., & Parra, G. R. (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모형적합도와 분류율,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퇴소청년의 건강상태 변화 양상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개수가 3개인 모형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V-3. 잠재프로파일의 모형적합도(주관적 건강상태)

분류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2개	3개	4개	5개
정보지수	AIC	6912.823	6624.728	5588.968	5571.754
	BIC	6967.177	6693.905	5672.969	5670.578
	SABIC	6932.239	6649.439	5618.974	5607.056
분류의 질	Entropy	.718	.993	.914	.998
모형 비교 검증	LMR-LRT(p)	.012	.002	.180	<.001
	BLRT(p)	<.001	<.001	<.001	<.001
잠재 프로파일 분류율 (%)	CLASS1	88.0	55.9	19.1	55.9
	CLASS2	12.0	25.0	6.9	.4
	CLASS3		19.1	55.9	19.1
	CLASS4			18.1	19.1
	CLASS5				6.5

최종적으로 도출된 3개의 잠재프로파일을 기반으로 각 잠재프로파일별 초기치와 기울기의 계수와 표준오차를 살펴보면 <표 V-4>와 같다.

표 V-4. 시설퇴소청년의 주관적 건강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별 특징

잠재프로파일명	비율(명, %)	함수	계수	표준오차
평균수준 유지집단	578(55.9)	초기치(I)	3.028***	.030
		기울기(S)	-0.014	.015
보통수준 증가집단	258(25.0)	초기치(I)	3.661***	.058
		기울기(S)	0.300***	.029
낮은 수준 감소집단	198(19.1)	초기치(I)	2.439***	.056
		기울기(S)	-0.268***	.028

*** $p < .001$

(part 1):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174-187.

첫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절반 이상의 청년(55.9%)이 소속되어 가장 비율이 높은 집단으로 건강상태의 초기치가 3.028로 전체 평균수준과 거의 동등했으며, 매년 거의 변화가 없어 '평균수준 유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두 번째로 많은 청년(25.0%)이 소속된 집단으로 초기치는 3.661로 보통(3점) 이상 수준이었으며,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보통수준 증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초기치가 2.439로 가장 낮았으며,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낮은 수준 감소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전체의 19.1%(198명)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잠재프로파일별 자립준비청년의 건강상태 변화 양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V-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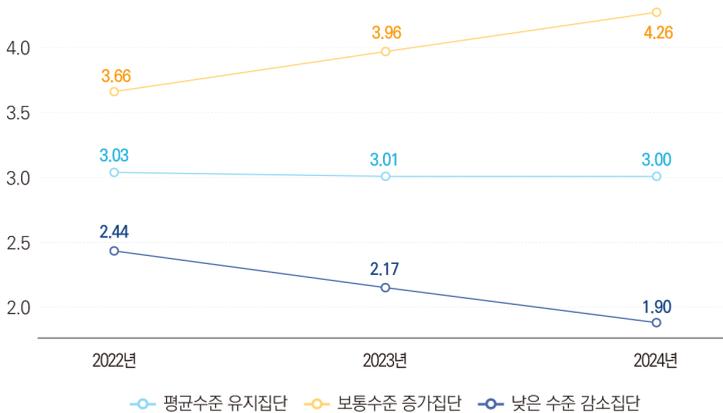


그림 V-1. 잠재프로파일별 시설퇴소청년의 건강상태 변화

② 시설 거주 경험과 건강상태 변화 유형과의 관계 분석

다중시설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시설 거주 경험이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 양상에 따른 유형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V-5>와 같다. 가장 많은 비율의 청년이 소속된 '평균수준 유지집단'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할 때, 다중시설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일수록 낮은 수준 감소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1.771배 높았으며, 보통수준 증가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 감소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2.392배 더 컸다. 한편, 시설 거주기간이 길수록 평균수준 유지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 감소집단에

소속될 승산과 보통수준 증가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 감소집단에 소속될 승산은 더 낮았다.

그 외에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자일수록, 경제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스스로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더 낮았다. 구체적으로 여자일수록, 경제수준이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할수록 평균수준 유지집단에 비해 보통수준 증가집단에 소속될 승산은 .653배 더 낮게 나타났다. 반면 여자일수록,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경제수준이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할수록 보통수준 증가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 감소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더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표 V-5.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준거집단 비교집단	평균수준 유지집단						보통수준 증가집단		
	보통수준 증가집단			낮은 수준 감소집단			낮은 수준 감소집단		
변수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다중시설 경험 여부	-.300	.212	.741	.572**	.193	1.771	.872***	.247	2.392
시설 거주기간	.098	.073	1.103	-.214*	.086	.807	-.312**	.098	.732
여자	-.427**	.159	.653	.077	.180	1.081	.504*	.210	1.656
대학 재학 이상	.045	.187	1.046	.043	.199	1.044	-.002	.235	.998
수도권	-.448**	.171	.639	.325+	.179	1.384	.773***	.215	2.166
대도시	.386	.495	1.471	.260	.588	1.297	-.126	.696	.882
중소도시	.255	.491	1.290	.161	.586	1.175	-.093	.693	.911
자립지원 기간	-.174	.198	.841	-.161	.217	.851	.013	.261	1.013
이주배경 여부	.405	.601	1.500	.864+	.517	2.374	.459	.655	1.582
경제 상	.741*	.323	2.098	.585	.510	1.795	-.156	.506	.856
수준 하	-.462**	.165	.630	1.061***	.224	2.890	1.523***	.248	4.586

* $p < .05$, ** $p < .01$, *** $p < .001$

(2)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우울 변화 양상 탐색

① 우울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도출

선형모형을 적용하여 청년의 우울 변화 양상에 따른 최적의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2개부터 5개까지 변화시켜 가며 분석한 결과는 <표 V-6>과 같다. 첫 번째 기준으로 정보지수를 나타내는 AIC, BIC, SA-BIC는 잠재프로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두 번째 기준으로,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8 이상의 값을 가져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기준으로 모형의 간명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LMR-LRT와 BLRT 검증을 실시한 결과, LMR-LRT는 잠재프로파일이 4개와 5개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BLRT의 경우 모든 잠재프로파일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넷째, 잠재프로파일별 비율을 비교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각 잠재프로파일 비율이 5%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모형적합도와 분류율,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퇴소청년의 우울 변화 양상에 대한 잠재프로파일의 개수가 3개인 모형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V-6. 잠재프로파일의 모형적합도(우울)

분류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2개	3개	4개	5개
정보지수	AIC	5006.982	4862.713	4728.298	4649.378
	BIC	5061.335	4931.890	4812.298	4748.202
	SABIC	5026.397	4887.424	4758.304	4684.680
분류의 질	Entropy	.910	.908	.914	.883
모형 비교 검증	LMR-LRT(p)	<.001	.010	.233	.330
	BLRT(p)	<.001	<.001	<.001	<.001
잠재 프로파일 분류율 (%)	CLASS1	87.7	6.6	6.5	13.6
	CLASS2	12.3	82.4	5.6	2.0
	CLASS3		11.0	7.2	7.7
	CLASS4			80.8	5.5
	CLASS5				71.1

최종적으로 도출된 3개의 잠재프로파일을 기반으로 각 잠재프로파일별 초기치와 기울기의 계수와 표준오차를 살펴보면 <표 V-7>과 같다.

표 V-7. 시설외소청년의 우울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별 특징

잠재프로파일명	비율(명, %)	함수	계수	표준오차
높은 수준 급감집단	68(6.6)	초기치(I)	2.132***	.082
		기울기(S)	-0.554***	.071
평균수준 유지집단	852(82.4)	초기치(I)	0.468***	.018
		기울기(S)	-0.015	.010
보통수준 급증집단	114(11.0)	초기치(I)	1.480***	.127
		기울기(S)	0.355***	.064

* $p < .05$, ** $p < .01$, *** $p < .001$

첫 번째 집단은 우울의 초기치가 2.132 정도로 우울 수준의 최댓값인 3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3차 년도에는 보통수준 미만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 '높은 수준 급감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전체의 6.6%(68명)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전체의 82.4%(852명)가 소속되어 세 집단 중 비율이 가장 높았고, 우울 초기치가 .468 정도로 전체 평균 정도의 우울 수준을 거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집단을 '평균수준 유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전체의 11.0%(114명)가 소속되어 있고, 초기치가 1.480 정도였으며 매년 우울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차 년도에는 가장 높은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집단을 '보통수준 급증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잠재프로파일별 우울 변화 양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V-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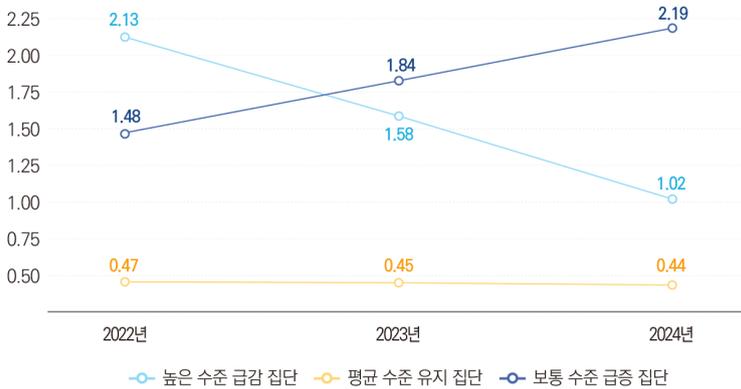


그림 V-2. 잠재프로파일별 시설퇴소청년의 우울 변화

② 시설 거주 경험과 우울 변화 유형과의 관계 분석

다중시설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을 포함한 시설 거주 경험이 우울의 변화 양상에 따른 유형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V-8>과 같다. 시설 거주 경험과 관련하여, 다중시설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일수록 평균수준 유지집단과 비교할 때, 보통수준 급증집단에 속할 승산이 1.859배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우울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특징을 보이는 높은 수준 급감집단과 보통 수준 급증집단과의 비교에서는 다중시설 경험이나 시설 거주기간과 같은 시설 거주 경험이 집단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설 거주기간이 길수록 평균수준 유지집단에 비해 보통수준 급증집단에 속할 승산이 .673배 더 낮았다.

그 외에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자일수록 평균수준 유지집단에 비해 보통수준 급증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더 높았다. 또한, 낮은 경제수준의 청년일수록 평균수준 유지집단 대비 전반적인 우울 수준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 높은 수준 급감집단과 보통수준 급증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커졌다.

표 V-8. 우울 변화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준거집단 비교집단	평균수준 유지집단						높은 수준 급감집단			
	높은 수준 급감집단			보통수준 급증집단			보통수준 급증집단			
변수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다중시설 경험 여부	.262	.363	1.300	.620*	.269	1.859	.358	.427	1.430	
시설 거주기간	-.206	.145	.814	-.397**	.128	.673	-.191	.187	.826	
여자	.468	.316	1.626	.534*	.255	1.706	.048	.388	1.049	
대학 재학 이상	-.283	.349	.753	-.241	.274	.786	.042	.422	1.043	
수도권	.363	.310	1.438	.459+	.253	1.583	.096	.382	1.101	
대도시	-.575	.895	.563	.511	1.351	1.667	1.086	1.589	2.964	
중소도시	-.190	.885	.827	.856	1.341	2.354	1.046	1.572	2.848	
자립지원 기간	.195	.343	1.215	-.407	.361	.666	-.602	.487	.548	
이주배경 여부	.881	.720	2.413	.227	.746	1.255	-.654	.945	.520	
경제 수준	상	-1.010	1.825	.364	1.413*	.810	4.109	2.423	2.048	11.284
	하	1.036**	.380	2.818	2.324***	.557	10.214	1.288*	.695	3.625

* $p < .05$, ** $p < .01$, *** $p < .001$

(3)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 발달 궤적 탐색

① 삶의 만족도의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도출

선형모형을 적용하여 삶의 만족도의 변화 양상에 따른 최적의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2개부터 5개까지 변화시켜 가며 분석한 결과는 <표 V-9>와 같다. 첫 번째 기준으로 정보지수 중 AIC와 SA-BIC는 잠재프로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BIC는 4개인 모형까지 감소하다가 5개인 모형에서 다시 증가하였다. 두 번째 기준으로,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의 경우 1에 가까울수록 적합한 분류임을 의미하는데, 잠재프로파일이 3개 이상인 모형에서 .7 이상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기준으로 모형의 간명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LMR-LRT와 BLRT 검증을 실시한 결과, LMR-LRT는 잠재프로파일이 5개인 모형을 제외하고 모든

모형에서 이전 모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단, BLRT의 경우 모든 잠재프로파일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넷째, 잠재프로파일별 비율을 비교한 결과, 잠재프로파일이 4개와 5개인 모형에서 분류율이 5% 미만인 잠재프로파일이 존재하였다. 이상의 모형적합도와 분류율,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퇴소청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에 대한 잠재프로파일의 개수가 3개인 모형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V-9. 잠재프로파일의 모형적합도(삶의 만족도)

분류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2개	3개	4개	5개
정보지수	AIC	13054.623	13026.890	13006.010	13004.779
	BIC	13108.976	13096.067	13090.010	13103.603
	SABIC	13108.976	13051.601	13036.016	13040.081
분류의 질	Entropy	.558	.711	.749	.723
모형 비교 검증	LMR-LRT(p)	<.001	.028	.006	.23
	BLRT(p)	<.001	<.001	<.001	<.001
잠재 프로파일 분류율 (%)	class 1	20.8	19.3	1.4	5.2
	class 2	79.2	18.8	61.2	1.4
	class 3		61.9	19.1	51.6
	class 4			18.3	18.6
	class 5				23.2

최종적으로 도출된 3개의 잠재프로파일을 기반으로 각 잠재프로파일별 초기치와 기울기의 계수와 표준오차를 살펴보면 <표 V-10>과 같다.

표 V-10. 시설퇴소청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별 특징

잠재프로파일명	비율(명, %)	함수	계수	표준오차
낮은 수준 급증집단	200(19.3)	초기치(I)	1.709***	.158
		기울기(S)	1.384***	.138
높은 수준 감소집단	194(18.8)	초기치(I)	7.941***	.207
		기울기(S)	-0.501**	.157
평균수준 유지집단	640(61.9)	초기치(I)	5.061***	.106
		기울기(S)	0.009	.051

* $p < .05$, ** $p < .01$, *** $p < .001$

첫 번째 집단은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1.709 정도로 10점 척도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낮은 수준 급증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전체의 19.3%(200명)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전체의 18.8%(194명)가 소속되어 있고,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7.941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높은 수준 감소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전체의 61.9%(640명)가 소속되어 세 집단 중 비율이 가장 높았고, 삶의 만족도의 초기치가 5.061로 전체 평균수준을 매년 거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집단을 '평균수준 유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잠재프로파일별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V-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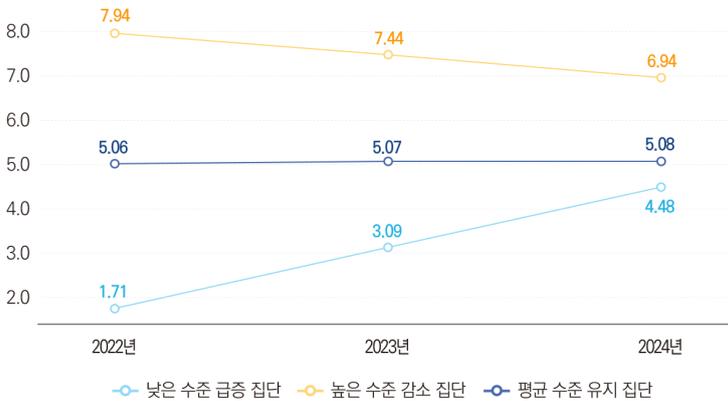


그림 V-3. 잠재프로파일별 시설퇴소청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② 시설 거주 경험과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과의 관계 분석

다중시설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을 포함한 시설 거주 경험이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 구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V-11>과 같다. 우선, 다중시설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일수록 '낮은 수준 급증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 감소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492배 낮게 나타났다. 한편, 시설 거주기간 변수의 경우 유의수준 .05에서는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양의 계수를 지니는 것을 보아 시설 거주기간이 길수록 낮은 수준 급증집단에 비해 '평균수준 유지집단'이나 '높은 수준 감소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더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그 외에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자일수록,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경제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낮은 수준 급증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 감소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더 낮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자일수록, 경제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높은 수준 감소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 정도가 전반적으로 더 낮은 특징을 보이는 '평균수준 유지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높은 경제수준이라고 인식하는 청년일수록 '높은 수준 감소집단'에 비해 '평균수준 유지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더 낮았다.

표 V-11.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준거집단	낮은 수준 급증집단						높은 수준 감소집단		
비교집단	평균수준 유지집단			높은 수준 감소집단			평균수준 유지집단		
변수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다중시설 경험 여부	-.300	.251	.741	.709*	.353	.492	.409	.342	1.505
시설 거주기간	.182+	.105	1.200	.233+	.125	1.262	.051	.108	.950
여자	-.228	.226	.796	-.856**	.276	.425	.628*	.243	1.875
대학 재학 이상	.290	.248	1.336	.262	.300	1.299	.028	.275	1.028
수도권	-.323	.225	.724	-.787**	.288	.455	.463+	.262	1.589
대도시	1.092+	.607	2.981	1.119+	.711	3.061	-.027	.713	.974
중소도시	.455	.590	1.576	.228	.695	1.256	.227	.709	1.255
자립지원 기간	.038	.258	1.039	-.356	.333	.701	.394	.307	1.483
이주배경 여부	.530	.682	.588	.587	.729	1.799	-1.118	.827	.327
경제 수준 상	.838	1.258	2.311	2.089+	1.191	8.079	-1.252**	.462	.286
수준 하	-1.066***	.280	.344	-1.681***	.315	.186	.615*	.252	1.849

* $p < .05$, ** $p < .01$, *** $p < .001$

2)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시설 거주 경험과 사회적 관계와의 관계 분석

시설퇴소청년의 사회적 고립감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을 이용하여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비선형모형(2차 함수)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선형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초기치와 기울기의 분산이 모두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고립감 변화 양상에는 개인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 사회적 고립의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도출

선형모형을 적용하여 청년의 사회적 고립의 변화 양상에 따른 최적의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2개부터 5개까지 변화시켜 가며 분석한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모형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첫 번째 기준으로 정보지수를 나타내는 AIC, BIC,

SABIC는 잠재프로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잠재프로파일의 개수가 3개인 모형까지 AIC, BIC, SABIC가 급격하게 감소하다 잠재프로파일 4개 모형부터는 감소폭이 완만해지는 구간(elbow point)이 나타났다. 또한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8 이상의 값을 가져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의 간명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LMR-LRT와 BLR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모든 잠재프로파일 수에서 이전 모형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잠재프로파일별 비율을 비교한 결과, 잠재프로파일 5개인 모형을 제외하고 각 잠재프로파일 비율이 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모형적합도와 분류율,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퇴소청년의 사회적 고립감 변화 양상에 대한 잠재프로파일의 개수가 4개인 모형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V-12. 잠재프로파일의 모형적합도(사회적 고립)

분류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2개	3개	4개	5개
정보지수	AIC	6555.587	6283.191	5927.978	5901.873
	BIC	6609.940	6352.368	6011.978	6000.697
	SABIC	6575.003	6307.902	5957.984	5937.174
분류의 질	Entropy	.919	.961	.971	.960
모형 비교 검증	LMR-LRT(p)	<.001	<.001	<.001	.026
	BLRT(p)	<.001	<.001	<.001	<.001
잠재 프로파일 분류율 (%)	CLASS1	75.7	18.6	62.5	3.5
	CLASS2	24.3	62.5	8.7	8.7
	CLASS3		19.0	10.3	6.8
	CLASS4			18.6	62.5
	CLASS5				18.6

최종적으로 도출된 4개의 잠재프로파일을 기반으로 각 잠재프로파일별 초기치와 기울기의 계수와 표준오차를 살펴보면 <표 V-13>와 같다.

표 V-13. 시설퇴소청년의 사회적 고립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별 특징

잠재프로파일명	비율(명, %)	함수	계수	표준오차
낮은 수준 감소집단	646(62.5)	초기치(I)	1.324***	.023
		기울기(S)	-.123***	.012
중간수준 증가집단	90(8.7)	초기치(I)	2.223***	.108
		기울기(S)	.392***	.057
높은 수준 증가집단	106(10.3)	초기치(I)	2.927***	.114
		기울기(S)	.455***	.054
평균수준 유지집단	192(18.6)	초기치(I)	2.008***	.065
		기울기(S)	.084**	.032

* $p < .05$, ** $p < .01$, *** $p < .001$

첫 번째는 전체의 62.5%가 소속되어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사회적 고립의 초기치가 1.324 정도로 전체 평균인 1.69~1.77보다는 약간 낮으며, 기울기도 음수로 매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낮은 수준 감소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초기치가 2.223으로 4점 척도의 중간에 가까운 수준이었으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중간수준 증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전체의 8.7%(90명)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전체의 10.3%(106명)가 소속되어 있고, 사회적 고립의 초기치가 2.927로 가장 높았으며, 매년 약간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에 해당 집단을 '높은 수준 증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집단은 초기치가 2.008로 전체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기울기는 0.1 미만으로 매년 변화폭이 크지 않은 양상을 보여 '평균수준 유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해당 집단은 전체의 18.6%(192명)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잠재프로파일별 사회적 고립의 변화 양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V-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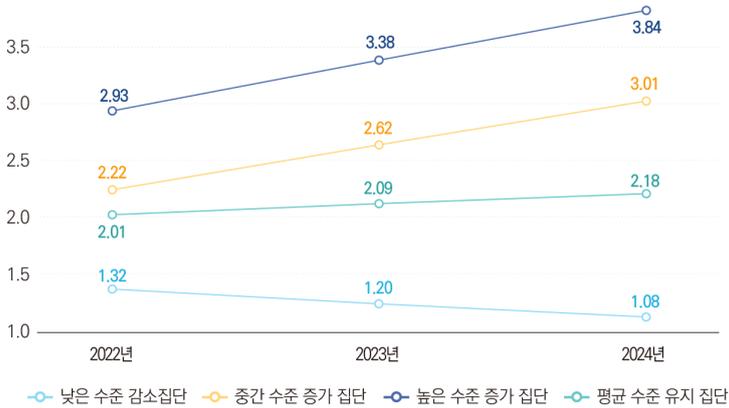


그림 V-4. 잠재프로파일별 시설퇴소청년의 사회적 고립 변화

② 시설 거주 경험과 사회적 고립감 변화 유형과의 관계 분석

시설퇴소청년의 시설 거주 경험이 사회적 고립감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V-14~표 V-15>와 같다. 우선, 가장 많은 비율의 청년이 소속된 ‘낮은 수준 감소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비교하였을 때, 다중시설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일수록 ‘높은 수준 증가집단’과 ‘평균수준 유지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각각 2.708배와 1.496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다중시설 경험이 있는 청년일수록 ‘높은 수준 증가집단’에 비해 ‘평균수준 유지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553배 더 낮게 나타났다. 반면, 시설 거주기간의 경우 ‘낮은 수준 감소집단’과 ‘높은 수준 증가집단’과의 분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시설 거주기간이 길수록 ‘낮은 수준 감소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 증가집단’에 속할 승산이 .731배 더 낮았다.

그 외에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자일수록 ‘낮은 수준 감소집단’에 비해 ‘중간수준 증가집단’ 또는 ‘평균수준 유지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일수록 ‘낮은 수준 감소집단’에 비해 ‘평균수준 유지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자립지원기간의 경우 자립지원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일수록 ‘낮은 수준 감소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 증가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459배 더 낮았으며, ‘높은 수준 증가집단’ 대비 ‘평균수준 유지집단’에 소속될 승산은 2.420배 더 높았다. 다음으로,

이주배경을 지닌 청년일수록 ‘낮은 수준 감소집단’과 비교할 때 ‘중간 수준 증가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3.024배 더 높았으며, ‘중간수준 증가집단’에 비해 ‘평균수준 유지집단’에 소속될 승산은 .059배 더 낮았다. 마지막으로 경제수준 변수를 살펴보면, 스스로의 경제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청년일수록 ‘낮은 수준 감소집단’ 대비 나머지 세 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각각 9.766배, 5.659배, 1.918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중간수준 증가집단’ 대비 ‘평균수준 유지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339배 더 낮았으며, ‘높은 수준 증가집단’에 비해 ‘평균수준 유지집단’에 소속될 승산은 .196배 더 낮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표 V-14. 사회적 고립감 변화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준거집단 비교집단	낮은 수준 감소집단								
	높은 수준 증가집단			중간수준 증가집단			평균수준 유지집단		
변수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다중시설 경험 여부	.996***	.265	2.708	.360	.281	1.433	.403*	.204	1.496
시설 거주기간	-.313*	.127	.731	-.138	.117	0.871	-.110	.079	.896
여자	.235	.247	1.264	.615*	.252	1.849	.512**	.184	1.669
대학 재학 이상	.111	.295	1.117	.049	.271	1.050	-.092	.197	.912
수도권	.332	.260	1.393	.362	.246	1.436	.392*	.182	1.480
대도시	.064	.893	1.067	-.274	.806	.761	-.785	.514	.456
중소도시	.384	.887	1.468	-.049	.803	.952	-.438	.508	.646
자립지원 기간	-.779*	.374	.459	-.129	.285	.879	.105	.205	1.111
이주배경 여부	-1.334	1.556	.263	1.106*	.498	3.024	-1.717	1.329	.180
경제 수준 상	-.440	1.589	.644	.239	.824	1.270	.179	.413	1.197
수준 하	2.279***	.412	9.766	1.733***	.334	5.659	.651**	.190	1.918

* α .05, ** α .01, *** α .001

표 V-15. 사회적 고립감 변화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계속)

준거집단	중간수준 증가집단						높은 수준 증가집단			
	높은 수준 증가집단			평균수준 유지집단			평균수준 유지집단			
변수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다중시설 경험 여부	0.637+	.361	1.890	.043	0.314	1.044	-.593*	.292	.553	
시설 거주기간	-.175	.169	.839	.028	.131	1.028	.203	.136	1.225	
여자	-.380	.337	.684	-.102	.291	.903	.278	.276	1.320	
대학 재학 이상	.062	.384	1.064	-.141	.309	.868	-.203	.320	.816	
수도권	-.030	.339	.970	.030	.281	1.030	.060	.286	1.062	
대도시	.338	1.166	1.402	-.512	.830	.600	-.850	.913	.427	
중소도시	.433	1.160	1.541	-.388	.826	.678	-.821	.903	.440	
자립지원 기간	-.650	.467	.522	.234	.324	1.263	.884*	.402	2.420	
이주배경 여부	-2.440	1.622	.087	-2.823*	1.333	.059	-.383	1.937	.682	
경제 수준	상	-.679	1.929	.507	-.059	.900	.942	.620	1.623	1.858
	하	.546	.532	1.726	-1.082**	.370	.339	-1.628***	.434	.196

* $p < .05$, ** $p < .01$, *** $p < .001$

3) 결론

이 연구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위한 자립수준의 종단적 변화를 건강 및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시설 거주 경험이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인식한 데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 심리·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의 발달 양상에 따른 잠재 유형을 분류하고, 시설 거주 경험을 포함한 개인적 특성 요인이 이러한 잠재유형 구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정책적·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관적 건강, 우울, 삶의 만족도, 사회적 고립의 변화 양상을 유형화한 결과,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평균수준 유지집단’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낮은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거나, 보통 이상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집단들이 도출되었고, 이는 자립준비청년들 간 건강 및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격차는 개별 자립준비청년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청년 지원정책이 모든 청년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기보다 개별 자립수준과 발전 경로에 맞춘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건강 및 심리·정서적 변화 측면에서 다중시설 거주 경험을 가진 청년들은 건강 및 심리·정서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시설퇴소 후 적응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과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건강 및 심리·정서 유지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장기간의 시설 생활이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시설 거주기간은 기관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남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기관 특성에 따른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관계 형성과 관련해서는 다중시설 거주 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양한 시설 경험이 오히려 사회적 연결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시설 내에서의 관계 형성에 있어 안정적인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반면,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자립지원기간이 짧을수록 사회적 관계 유지 및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 지역적 환경과 지원기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장기적 자립지원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시설 거주 경험이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중시설 거주 경험은 청년의 전반적인 건강 및 심리·정서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자립지원 정책 설계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의 자립과정에서 개별적 자립수준을 면밀히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자립준비청년들의 다양한 자립과정과 그에 따른 지원 요구를 반영한 세분화된 지원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자립지원수당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⁵⁵⁾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은 가족이나 시설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자립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자립 초기 단계에서 주거, 교육, 고용, 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 일반청년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에 비해 더 열악한 실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이들의 자립 기반 형성에 큰 격차를 초래하게 되는 등 퇴소한 시설의 유형에 따라 겪는 어려움이 다르고, 지원받는 내용과 범위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립지원수당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과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자립지원수당 수급 여부가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단기 변화 및 생활 측면에서 확인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55) 본 절은 김진실(고려대학교 통계학과 박사과정)이 집필하였음.

1) 자립지원수당 수급에 대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특성 분석

본 분석에 앞서 자립지원수당 수급에 대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로짓 모형(logit model)을 사용하여 자립지원수당 수급을 설명하는 경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모형은 자립지원수당의 수급 여부를 예측하는 다양한 독립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청년이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확률을 산출하였다. <표 V-16>의 경향점수 모형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자립기간이 증가할수록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배우자가 있는 청년은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직업이 있는 청년은 정책 수혜 확률이 낮았으며, 고졸 이하 학력을 보유한 청년이 (전문)대학 재학 이상 학력의 청년보다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비수도권 거주 청년에 비해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V-16. 자립지원수당 수급에 대한 경향점수 추정 결과

변수명	Estimate	SE	z value	p-value
(상수)	6.752	1.465	4.610	<0.001***
자립기간 ¹⁾	-0.273	0.049	-5.564	<0.001***
부모 동거 여부 ⁴⁾	-0.104	0.440	-0.235	0.814
배우자 여부 ⁴⁾	-1.292	0.505	-2.559	0.011*
자녀 여부 ⁴⁾	0.769	0.815	0.943	0.346
취업 여부 ⁵⁾	-0.541	0.243	-2.230	0.026*
채무 유무 ⁵⁾	-0.182	0.220	-0.829	0.407
시설 생활 총기간 ²⁾	0.141	0.079	1.777	0.076
성별 남 ⁶⁾	-0.041	0.221	-0.186	0.852
학력 고졸 이하 ⁶⁾	-0.761	0.222	-3.426	<0.001***
지역 수도권 ⁶⁾	0.226	0.227	0.996	0.319
퇴소시설(아동) ⁷⁾	3.907	0.584	6.691	<0.001***
퇴소시설(청소년) ⁷⁾	0.410	0.574	0.715	0.474
경제수준 ³⁾	-0.306	0.188	-1.626	0.104
Model χ^2			$\chi^2=442.038^{***}$	d.f=13
Statistics of Confusion Matrix			Accuracy : 0.8782	

* $p < .05$, ** $p < .01$, *** $p < .001$

* 주: 1) 자립기간: 응답자의 연령에서 17을 뺀 값임.

2) 시설생활 총 기간: 로그 변환한 변수를 분석에 사용함.

3) 경제 수준: 1=상, 2=중, 3=하.

4) 부모 동거 여부, 배우자 여부, 자녀 여부: 3차 조사 시점 해당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1, 없으면 0.

5) 취업 여부, 채무 유무: 취업 상태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 채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6) 성별 남, 학력 고졸 이하, 지역 수도권: 남성 청년 1, 여성 청년 0 / 3차 조사 시점 고졸 이하 1, 대학교 재학 이상 0 / 거주 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1, 비수도권인 경우 0.

7) 퇴소시설(아동), 퇴소시설(청소년): 청년이 아동시설 또는 청소년시설에서 퇴소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2)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전후 자립지원수당 수급 여부에 따른 특성 비교

경향점수를 추정된 후 자립지원수당 수급 여부에 따른 경향점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자립지원수당을 수급 받은 청년들과 수급 받지 않은 청년들 간의 경향점수 분포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립지원수당 수급 여부에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편향을 보정하여 자립지원수당의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향점수 분포의 양 끝에 존재하는 극단적인 값(outliers)은 전체 모형 추정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하위 15%의 가중치를 갖는 케이스는 삭제하였다. 그 결과, 최종 분석 대상은 1,122명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추정된 경향점수는 역확률 가중치(IPW: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로 모형에 반영하였다.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가중치 적용 전후의 공변량 균형을 평가하였다. <표 V-17>은 가중치 적용 전후의 각 변수별 평균과 표준화된 평균 차이를 보여준다. 가중치 적용 전에는 일부 변수에서 자립지원수당 수급 여부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자립지원수당 미수급 청년은 수급 청년에 비해 남성 비율과 고졸 이하 비율이 높았으며, 수도권 거주 비율과 경제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역확률 가중치를 적용한 후에는 다수 변수에서 표준화된 평균 차이가 0.1 이하로 감소하여, 자립지원수당 수급 여부에 따른 공변량의 불균형이 크게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변수에서 0.2에 가까운 꽤 큰 표준화된 평균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결과변수 회귀모형의 모형 통제 효과로 영향력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

표 V-17. 가중치 적용 전후 자립지원수당 수급 여부에 따른 특성 비교

변수명	가중치 적용 전			가중치 적용 후		
	자립지원수당 수급 여부		표준화된 평균 차이	자립지원수당 수급 여부		표준화된 평균 차이
	미수급	수급		미수급	수급	
자립기간	7.634	6.966	-0.268	8.247	7.115	-0.413
성별_남	0.503	0.458	-0.090	0.513	0.466	0.109
학력_고졸 이하	0.503	0.232	-0.584	0.435	0.290	-0.169
지역_수도권	0.607	0.363	-0.501	0.520	0.414	-0.173
경제수준	2.639	2.539	-0.171	2.588	2.552	0.116
부모 동거 여부	0.071	0.042	-0.128	0.047	0.043	-0.021
배우자 여부	0.109	0.033	-0.299	0.112	0.040	-0.002
자녀 여부	0.038	0.012	-0.170	0.054	0.013	0.011
취업 여부	0.760	0.674	-0.190	0.752	0.677	0.183
채무 여부	0.678	0.488	-0.392	0.605	0.515	0.031

변수명	가중치 적용 전			가중치 적용 후		
	자립지원수당 수급 여부		표준화된	자립지원수당 수급 여부		표준화된
	미수급	수급	평균 차이	미수급	수급	평균 차이
시설 생활 총기간	3.379	4.324	0.733	3.820	4.181	0.128
퇴소시설(아동)	0.148	0.891	2.226	0.403	0.766	0.146
퇴소시설(청소년)	0.732	0.104	-1.647	0.540	0.224	-0.121
장애청년	0.082	0.064	-0.069	0.093	0.066	0.078
이주배경청년	0.027	0.020	-0.046	0.022	0.024	0.096
가족돌봄청년	0.033	0.023	-0.057	0.019	0.023	-0.004
불안정고용청년	0.333	0.223	-0.249	0.314	0.225	-0.214
열악한 근로 환경 청년	0.093	0.061	-0.121	0.072	0.064	-0.089
구직단념청년(NEET)	0.219	0.251	0.077	0.190	0.264	0.234
장기·비자발적실업청년	0.311	0.136	-0.429	0.262	0.144	-0.183
생계급여 수급 청년	0.137	0.340	0.490	0.150	0.319	0.025
의료급여 수급 청년	0.126	0.280	0.391	0.124	0.271	-0.262
주거급여 수급 청년	0.169	0.296	0.303	0.146	0.289	-0.075
신용불량청년	0.131	0.036	-0.347	0.093	0.061	-0.071

3) 자립지원수당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평균 처치 효과는 이중강건추정량⁵⁶⁾⁵⁷⁾으로 계산되었다. 결과 모형에는 자립지원수당 수급 여부(처치변수)가 투입되었고, 통제변수는 stepwise를 실시하여 BIC가 적절하도록 선택되었다. 이중강건추정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평가하기 위해 1000번의 부트스트랩을 하여 표준오차와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이때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인과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자립지원수당 수급 여부는 단기 변화 결과변수(15개)에 대한 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태변수와 관련된 모형 중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모형이 있었다. 식비가 없어서 결식하는 횟수는 자립지원수당을 수급함으로써 0.410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식 경험 여부에서도, 자립지원수당 수급으로 인해 결식 여부가 0.125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점수 총합에서는 자립지원수당 수급으로 인해 1.612점가량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56) 이중강건추정(Doubly Robust Estimation)은 인과 추론에서 중요한 방법론 중 하나로, 평균 처치 효과(ATE)를 추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 방법은 두 가지 모델, 즉 처치 모형(예: 회귀 모형)과 결과 모형(예: 예측 모형)을 결합하여 더 강건한 추정을 제공한다(Funk et al., 2011).

57) Funk, M. J., Westreich, D., Wiesen, C., Stürmer, T., Brookhart, M. A., & Davidian, M. (2011). Doubly robust estimation of causal effect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73(7), 761-767.

표 V-18. 자립지원수당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추정된 효과 ²⁴⁾	표준오차 ²⁵⁾	신뢰구간(하한) ²⁶⁾	신뢰구간(상한) ²⁶⁾	
결과 변수 (단기 변화)	학력 상승 ¹⁾	-0.073	0.056	-0.183	0.037
	학업 중단 ²⁾	0.003	0.027	-0.050	0.056
	취업 ³⁾	0.043	0.040	-0.035	0.122
	실업 ⁴⁾	-0.031	0.036	-0.100	0.039
	채무 청산 ⁵⁾	-0.009	0.031	-0.070	0.052
	채무 발생 ⁶⁾	0.007	0.041	-0.074	0.088
	채무총액 감소 ⁷⁾	-0.020	0.032	-0.083	0.043
	채무총액 증가 ⁸⁾	-0.020	0.032	-0.083	0.043
	주관적 자립수준(고교) ⁹⁾	0.027	0.048	-0.068	0.122
	주관적 자립수준(저자) ¹⁰⁾	-0.001	0.040	-0.080	0.079
	주관적 자립수준(하락) ¹¹⁾	-0.016	0.034	-0.083	0.052
	주관적 자립수준(상승) ¹²⁾	-0.038	0.047	-0.130	0.055
	우울 개선 ¹³⁾	-0.033	0.047	-0.125	0.060
	우울 발생 ¹⁴⁾	0.014	0.030	-0.046	0.073
	우울 유지 ¹⁵⁾	-0.034	0.036	-0.103	0.036
결과 변수 (상태)	채무총액 ¹⁶⁾	14.495	291.288	-556.430	585.420
	주거불안정 수준 ¹⁷⁾	0.020	0.151	-0.276	0.315
	결식 경험 ¹⁸⁾	-0.410	0.182	-0.767	-0.053
	결식 경험 여부 ¹⁹⁾	-0.125	0.059	-0.241	-0.009
	우울 수준 ²⁰⁾	-1.612	0.751	-3.084	-0.141
	자해 경험 ²¹⁾	-0.010	0.026	-0.061	0.041
	건강보험 미납 ²²⁾	0.019	0.029	-0.037	0.075
	삶에 대한 만족도 ²³⁾	0.341	0.264	-0.176	0.858

* 주: 1) 학력 상승: '22년 고교 미졸업이고 '24년 고교 졸업 이상, '22년 대학 미진학하였고 '24년 대학 재학 이상, '22년 대학 미졸업이었고 '24년 대학 졸업 이상.
 2) 학업 중단: '22년 재학 중(고교, 대학, 대학원)이고 24년 중퇴.
 3) 취업: '22년 취업 아니고 '24년 취업.
 4) 실업: '22년 취업이고 '22년 취업 아님.
 5) 채무 청산: '22년 채무 있고 '24년 채무 없음.
 6) 채무 발생: '22년 채무 없고 '24년 채무 있음.
 7) 채무총액 감소: '22년 채무금액보다 '24년 채무금액이 적음.
 8) 채무총액 증가: '22년 채무금액보다 '24년 채무금액이 큼.
 9) 주관적자립 수준(고교): 주관적 자립수준의 평균 변화 1 미만이고 평균 3.4 이상 유지.
 10) 주관적 자립수준(저자): 주관적 자립수준의 평균 변화 1 미만이고 평균 2.6 이하 유지.
 11) 주관적 자립수준(고교): 주관적 자립수준의 평균 상승분이 1 초과.
 12) 주관적 자립수준(저자): 주관적 자립수준의 평균 하락분이 1 초과.
 13) 우울 개선: '22년에 우울이었고 '24년에 우울 아님.
 14) 우울 발생: '22년에 우울 아니었고 '24년에 우울.
 15) 우울 유지: '22년과 '24년 모두 우울.
 16) 채무 총액: '24년의 채무 총액. 분석에는 로그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0값 처리를 위해 모든 값에 1을 더하였음.
 17) 주거불안정 수준: '24년 주거불안 문항(8개)에 답변한 개수

- 18) 결식 경험: 최근 1년간 식비가 부족하여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1=없음, 2=1년에 3회 이하, 3=2-3개월에 1회 정도, 4=1개월에 1-2회 정도, 5=1개월에 3~4회 이상).
- 19) 결식경험 여부: 결식 경험 있음.
- 20) 우울 수준: '24년 우울 관한 9개 문항의 응답 총점.
- 21) 자해 경험: '24년 조사 최근 1년간 한 번이라도 자해를 한 적 있음.
- 22) 건강보험 미납: '24년 조사 건강보험을 미납한 경험이 있음.
- 23) 삶에 대한 만족도: '24년 조사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10점 만점).
- 24) 추정된 효과: 자립지원수당 수령으로 인한 효과를 Doubly Robust Estimator로 추정함.
- 25) 표준오차: 자립지원수당 효과 추정량의 변동성을 의미하며, 부트스트랩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됨.
- 26) 신뢰구간(하한/상한): 자립지원수당 효과 추정량의 95% 신뢰구간의 하한/상한이며 부트스트랩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됨.

4) 결론

이 연구는 자립지원수당이 청년들의 자립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자립지원수당이 단기적인 변화 지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일부 상태변수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자립지원수당을 수급한 자립준비청년은 식비 부족으로 인한 결식 경험이 감소하고, 우울증 점수가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립지원수당이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정신 건강에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 지원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하는 시기에, 정책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는 더욱 요구된다. 이 연구는 자립지원수당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과추론을 실시한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결과는 자립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 실증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자립지원수당의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분석을 통해 자립지원수당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단기변화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3년이라는 기간이 짧아서일 수도 있지만, 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자원에 비해 자립지원수당이 충분치 못하였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자립지원수당 수령의 경향점수 추정과 정책의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모든 공변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나 충분하지 못해 결과 해석에 있어 일부 제한점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소년보호시설 출신 청년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표본 수가 적어 신뢰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소규모 집단에 대한 연구는 보다 세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의 조건 자체에서 오는 한계점이다. 우선 구조적으로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대상과 그렇지 못한 대상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다는 데에서 오는 한계점이다. 이는 반대로, 정책이 도입되고 있는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처럼 정책의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불균형이 심각하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반대의 기대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아직까지 3차의 조사가 이루어진 데 불과하여 분석할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3년간의 변화라고는 하지만 실제 응답자들의 응답주기를 살펴보면 만 2년에 불과한 기간이므로 이 조사가 장기적으로 이어져 양질의 데이터로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립지원수당이 청년들의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종단적 생활안정성 집단에 따른 자립수준 및 심리·정서수준 비교⁵⁸⁾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진입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일반청년과 비교했을 때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로부터의 경제적·심리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회 진입이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설퇴소 후 자립준비청년의 초기 사회 진입 및 적응 상황을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시설을 퇴소한 후 자립준비청년이 고용 및 경제적 측면에서 안정성을 띠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안정성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과 심리·정서적 건강이 어떠한지를 비교함으로써 취약 집단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종단적 생활안정성

본 절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의 생활안정성을 고용 안정과 경제적 안정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시점별로 고용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안정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는 3년간의 안정성 변화에 따라 생활안정성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58) 본 절은 손윤희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집필하였음.

(1) 고용 안정: 취업 및 근로 유형

먼저, 고용 안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취업 여부, 취업한 경우 근로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미취업청년, 2) 불안정고용청년, 3) 기타 근로청년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표 V-19>와 같이 지난 일주일 기준으로 취업 여부 문항과 첫 번째 일자리의 근로 형태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취업 여부 변수를 활용하여 모든 연도에서 '일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경우에 '미취업 청년'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취업청년에 한하여 지난 일주일 기준 첫 번째 일자리 기준으로 임시근로자이거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 '불안정고용 청년'으로 구분하였고, 그 외 형태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타 근로 청년'으로 구분하였다.

표 V-19. 고용 안정 변수 설명

조사 시점	취업 여부 (일주일 기준)		근로 형태 (일주일 기준, 첫 번째 일자리)
	1=일하지 않음 2=일함	미취업 청 년/ 취업 청년 으로 분류	
1차	Q24	1=일하지 않음 2=일함	Q25-3 1=상용근로자 2=임시근로자 3=일용근로자 4=자영업자 5=무급가족종 사자
2차	Q13	1=일함 2=(일자리는 있었지만) 휴가 및 일시 휴직 상태	Q15-1
3차	Q9	3=일하지 않음	Q12

* 주: 3차년도 다중취약청년 분석 중 '일자리 특성' 취업 유형을 참고하여 분류함. 또한 각 연도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근로 형태에 대하여 응답한 경우가 있었음. 이 경우 '취업 여부' 문항을 기준으로 판단함.

이에 따라 조사 시점별로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20>과 같다. 시점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미취업 청년과 불안정 고용 청년의 비율이 각각 31% 정도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으나, 이후 시점에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미취업 청년의 비율은 2023년, 2024년에 각각 약 29% 정도로 나타났으나, 불안정 고용 청년의 비율은 그 이후에 약 24% 정도 수준으로 감소하여, 기타 근로 형태로 고용 안정성을 갖춘 청년의 비율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20. 연도별 취업 및 근로 형태에 따른 빈도 분석 결과

조사시점	취업 및 근로 형태	빈도 수	비율(%)
'22년 (1차)	미취업 청년	324	31.3
	불안정 고용 청년 (일용임시근로자)	325	31.4
	기타 근로 청년	385	37.2
	총계	1,034	100.0
'23년 (2차)	미취업 청년	299	28.9
	불안정 고용 청년 (일용임시근로자)	247	23.9
	기타 근로 청년	488	47.2
	총계	1,034	100.0
'24년 (3차)	미취업 청년	302	29.2
	불안정 고용 청년 (일용임시근로자)	246	23.8
	기타 근로 청년	486	47.0
	총계	1,034	100.0

다음으로는 <표 V-21>와 같이 지난 3년간 취업 및 근로 형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따라 1) 고용 안정 유형, 2) 고용 불안정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3년간 모두 '기타 근로 청년'이거나 첫 해에는 미취업 또는 불안정 청년이었으나 2023년부터 2년 동안 '기타 근로 청년'인 경우에 '고용 안정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로는 지난 3년 동안 미취업 청년이거나 불안정 고용 청년인 경우, 과거 1개 연도 또는 2개 연도 기타 근로 형태로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미취업 또는 불안정 고용 청년인 경우, 또는 첫 해와 2024년에는 기타 형태에 근로하나 중간에 미취업 또는 불안정 고용 형태로 근무한 경우, 또는 지난 2년간 미취업 또는 불안정 고용 상태였으나 최근 한 해에 기타 형태로 근로한 경우에 '고용 불안정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집단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용 안정 유형'에는 약 31.5%의 청년이 속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에서도 3년 기간 내내 기타 형태로 근로한 청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용 불안정 유형'에는 약 68.5%의 청년이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 불안정 유형' 내에서 세부 유형별로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3년 내내 미취업 상태인 청년(99명), 3년 내내 불안정 고용 청년(58명)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확인하였다.

표 V-21. 취업 및 근로 형태 변화에 따른 빈도 분석 결과

유형	세부유형(시점별)	빈도 수	비율(%)
고용 안정 유형 (31.5%)	기타 근로-기타 근로-기타 근로	202	19.5
	미취업-기타 근로-기타 근로	65	6.3
	불안정-기타 근로-기타 근로	59	5.7
	소계	326	31.5
고용 불안정 유형 (68.5%)	미취업-미취업-미취업	99	9.6
	미취업-미취업-불안정	27	2.6
	미취업-불안정-미취업	24	2.3
	미취업-불안정-불안정	25	2.4
	불안정-미취업-미취업	39	3.8
	불안정-미취업-불안정	28	2.7
	불안정-불안정-미취업	36	3.5
	불안정-불안정-불안정	58	5.6
	기타 근로-미취업-미취업	19	1.8
	기타 근로-미취업-불안정	12	1.2
	기타 근로-불안정-미취업	15	1.5
	기타 근로-불안정-불안정	25	2.4
	불안정-기타 근로-미취업	16	1.5
	불안정-기타 근로-불안정	30	2.9
	미취업-기타 근로-미취업	21	2.0
	미취업-기타 근로-불안정	8	0.8
	기타 근로-기타 근로-미취업	33	3.2
	기타 근로-기타 근로-불안정	31	3.0
	기타 근로-미취업-기타 근로	17	1.6
	기타 근로-불안정-기타 근로	31	3.0
	미취업-미취업-기타 근로	35	3.4
	미취업-불안정-기타 근로	20	1.9
불안정-미취업-기타 근로	23	2.2	
불안정-불안정-기타 근로	36	3.5	
	소계	708	68.5
	전체	1,034	100.0

(2) 경제적 안정: 채무

경제적 안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채무가 있는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연도 별로 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표 V-22>와 같다. 분석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가 있는 청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22년에는 채무가 있는 청년의 비율이 35%였으나 2023년에는 41.3%, 2024년에는 50.9%까지로 증가하였다.

표 V-22. 연도별 채무 유무에 따른 빈도 분석 결과

조사시점	채무 유무	빈도 수	비율(%)
'22년 (1차)	없음	672	65.0
	있음	362	35.0
	총계	1,034	100.0
'23년 (2차)	없음	607	58.7
	있음	427	41.3
	총계	1,034	100.0
'24년 (3차)	없음	508	49.1
	있음	526	50.9
	총계	1,034	100.0

다음으로는 <표 V-23>과 같이 지난 3년간 채무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따라 1) 채무 안정 유형, 2) 채무 불안정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채무가 없었던 경우(490명)나 1차 연도에 채무가 있었으나 상환하여 현재는 채무가 없는 경우(18명)를 '채무 안정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해당 유형에는 약 49.1%의 청년이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채무 불안정 유형'(50.9%)으로 분류하였고, 그중에서 3년 내내 채무가 있는 청년(333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23. 채무 유무 변화에 따른 빈도 분석 결과

유형	세부유형(시점별)	빈도 수	비율(%)
채무 안정 유형 (49.1%)	채무 없음	490	47.4
	채무 상환(채무: 있음-없음-없음)	18	1.7
	소계	508	49.1
채무 불안정 유형 (50.9%)	'22~'24년 채무(채무: 있음-있음-있음)	333	32.2
	'23~'24년 채무(채무: 없음-있음-있음)	94	9.1
	'22, '24년 채무(채무: 있음-없음-있음)	11	1.1
	24년 채무(채무: 없음-없음-있음)	88	8.5
	소계	526	50.9
전체		1,034	100.0

2) 생활안정성 집단에 따른 자립수준 비교

생활안정성 집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표 V-24>, [그림 5]와 같다. 자립준비청년의 전반적인 자립수준은 3점 정도로 대체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립준비청년의 고용 안정성에 따라 자립수준의 변화 양상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고용 안정 유형에 속한 청년은 초기의 자립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시간이 흐른 뒤에 자립수준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고용 불안정 유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립수준을 보였으며 시간이 흐르면서도 자립수준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고용이 안정한지 여부에 따라 '22년, '24년 모두 자립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안정성의 경우 역시, 자립수준의 변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채무 안정 유형에 속한 청년의 경우에는 채무가 있는 청년보다 초기의 자립수준은 낮은 모습을 보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립수준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채무가 있어 불안정 유형에 속한 청년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립수준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나 모든 시점에서 채무 안정 유형의 청년보다 자립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집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각 시점에서 두 집단 간 자립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24. 생활안정성 집단에 따른 자립수준 차이 분석

구분	집단	사례 수 (명)	22년 평균	집단 간 차이 ('22년)	'24년 평균	집단 간 차이 ('24년)
	전체	1,034	3.009	-	3.010	-
고용 안정성	고용 안정 유형	326	3.154	.212***	3.198	.275***
	고용 불안정 유형	708	2.942		2.923	
경제적 안정성	채무 안정 유형	508	2.975	-.067	2.997	-.025
	채무 불안정 유형	526	3.042		3.022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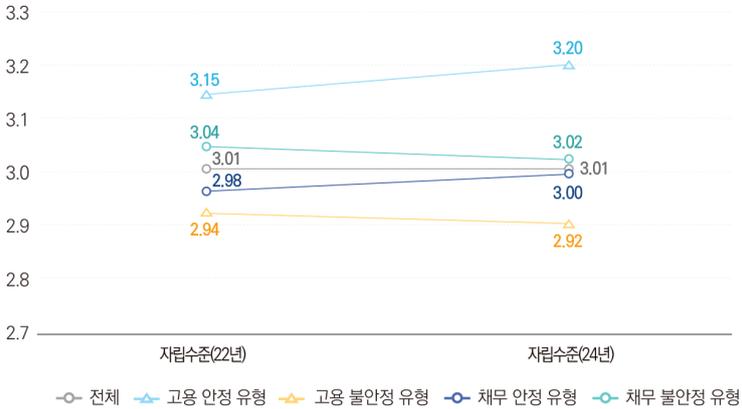


그림 V-5. 자립수준 변화 양상

3) 생활안정성 집단에 따른 심리·정서수준 비교

(1) 삶의 만족도

집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면 <표 V-25>, [그림 V-6]과 같다. 먼저,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지난 3년간 0.082 점으로 근소한 수준으로 변화하였으나, 주목할 점은 삶의 만족도 수준이 중간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 및 경제적 안정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더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 안정성의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이 안정적인 유형의 경우에는 초기의 삶의 만족도도 5점 이상으로 나타났고, 고용이 불안정한 집단에 비하여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4.8점 정도의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2년에는 고용 안정성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23년, '24년에는 두 집단 간 삶의 만족도 수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안정성에 따라서는 집단 간 삶의 만족도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 안정형에 속한 청년의 2022년 삶의 만족도는 5.2점 정도로 나타나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채무 불안정 유형에 속한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부침을 보이며 4.6점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안정성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두 집단 간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5. 생활안정성 집단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구분	집단	사례 수(명)	'22년 평균	집단 간 차이 ('22년)	'23년 평균	집단 간 차이 ('23년)	'24년 평균	집단 간 차이 ('24년)
	전체	1,034	4.898	-	4.955	-	4.981	-
고용 안정성	고용 안정 유형	326	5.018	.175	5.215	.380*	5.230	.364*
	고용 불안정 유형	708	4.843		4.835		4.866	
경제적 안정성	채무 안정 유형	508	5.179	.552***	5.262	.604***	5.333	.692***
	채무 불안정 유형	526	4.627		4.658		4.64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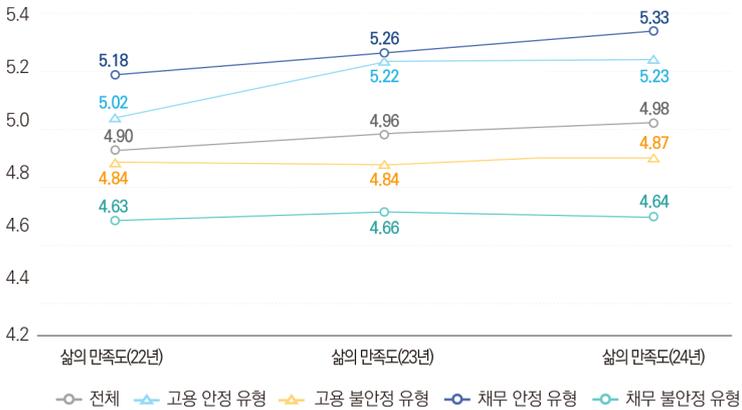


그림 V-6.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

(2) 우울감

집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우울감 변화를 살펴보면 <표 V-26>, [그림 V-7]과 같다. 먼저,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자립준비청년의 우울감은 .564~.614점 정도의 수준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빈도(0: 전혀 없음, 1: 며칠 동안)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근소한 수준이나 우울감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감을 느끼는 빈도는 생활안정성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고용 안정 유형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울감 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 불안정 유형 청년의 우울감 점수는 부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시점에서 고용 안정성 유형 간 우울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안정성에 따라서는 초기에 안정 유형과 불안정 유형 간의 차이(.230)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채무 안정 유형의 경우에는 우울감 점수가 .58에서 부침을 보이며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채무 불안정 유형의 경우에도 우울감 점수가 대체로 감소함에 따라 '24년에는 두 집단 간 차이가 .195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모든 시점에서 두 집단 간 우울감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V-26. 생활안정성 집단에 따른 우울감 차이 분석

구분	집단	사례 수(명)	'22년 평균	집단 간 차이 ('22년)	'23년 평균	집단 간 차이 ('23년)	24년 평균	집단 간 차이 ('24년)
	전체	1,034	.700	-	.696	-	.676	-
고용 안정성	고용 안정 유형	326	.614	-.126**	.594	-.149**	.564	-.164**
	고용 불안정 유형	708	.740		.743		.727	
경제적 안정성	채무 안정 유형	508	.583	-.230***	.591	-.206***	.577	-.195***
	채무 불안정 유형	526	.813		.798		.771	

* α .05, ** α .01, *** α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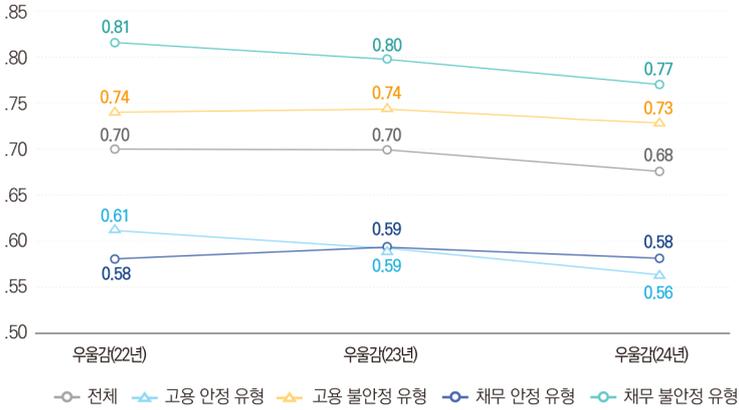


그림 V-7. 우울감 변화 양상

(3) 고립감

집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고립감 변화를 살펴보면 <표 V-27>, [그림 V-8]와 같다. 먼저,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자립준비청년의 고립감은 부침을 보이며 1.8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 안정성에 따른 고립감을 비교하면, 초기에 고용 안정 유형의 청년이 고용 불안정 유형의 청년보다 고립감을 낮게 느끼며, 3년간 변화 패턴은 고용 안정, 불안정 유형의 변화 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3년간 고용 안정 유형과 불안정 유형 간의 불안감 차이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안정성에 따라서는 변화 양상이 근소한 수준이나 차이를 보였다. 채무 안정 유형의 경우에는 초기의 고립감이 1.6점 정도였고, 2차 년도에는 고립감이 1.8점 정도까지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소폭 감소하여 1.7점 정도였다. 변화 양상이 증가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변화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변화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불안정 유형의 초기 고립감은 1.8점 정도로 나타나 채무 안정 유형보다 고립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2차 년도에 고립감이 높아진 후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년간 경제적 안정성 집단에 따른 불안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V-27. 생활안정성 집단에 따른 고립감 차이 분석

구분	집단	사례 수(명)	'22년 평균	집단 간 차이 ('22년)	'23년 평균	집단 간 차이 ('23년)	'24년 평균	집단 간 차이 ('24년)
	전체	1,034	1.703	-	1.873	-	1.815	-
고용 안정성	고용 안정 유형	326	1.602	-.147*	1.772	-.147*	1.706	-.160**
	고용 불안정 유형	708	1.749		1.919		1.866	
경제적 안정성	채무 안정 유형	508	1.598	-.207***	1.792	-.159**	1.693	-.241***
	채무 불안정 유형	526	1.805		1.951		1.93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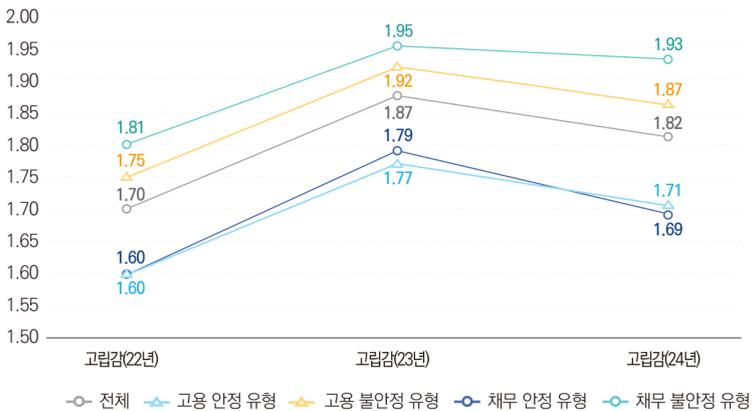


그림 V-8. 고립감 변화 양상

4) 결론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성을 고용 및 경제적 안정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용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점별로 취업 및 근로 형태에 따라 1) 미취업 청년, 2) 고용 불안정 청년(일용/임시근로자), 3) 기타 근로 청년(그 외 형태로 근로)으로 구분하여 3년간 고용 안정성 유형을 구분한 결과, 3년 내내 또는 최근 2년간 기타 형태로 근무한 '고용 안정 유형'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31.5%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설퇴

소 자립준비청년의 60% 이상이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점별로 채무 유무를 확인하고 3년간 채무 상태 변화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 결과, 3년 내내 채무가 없거나 초기에 채무가 있었으나 상환하여 현재는 채무가 없는 '채무 안정 유형'은 49% 정도로 나타나 채무 안정 및 불안정 유형의 비율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무 불안정 유형'의 경우 초기에 채무가 있었던 청년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초기에 채무가 발생했던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성에 따라 자립수준 및 심리·정서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V-28>과 같다. 생활안정성 안정 유형의 자립수준은 높아지나 불안정 유형의 자립수준은 감소함으로써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생활안정성 안정 유형의 삶의 만족도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나, 불안정 유형의 삶의 만족도는 부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은 생활안정성 정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가 낮아지나, 고용 및 채무 불안정 유형의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고립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고립감은 불안정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28. 생활안정성에 따른 자립수준 및 심리·정서수준 결과 비교

구분	생활안정성 집단	자립수준		심리·정서					
				삶의 만족도		우울감		고립감	
전체		유지		+		-		+	
고용 안정성	고용 안정 유형	+	안정	+	안정	-	안정	+	안정
	고용 불안정 유형	-		유지		유지		불안정	
경제적 안정성	채무 안정 유형	+	불안정	+	불안정	유지	불안정	+	불안정
	채무 불안정 유형	-		유지		-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고용과 경제적 측면의 생활안정성이 불안정한 경우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시간이 흐를수록 고립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과 심리·정서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성을 분석 자료의 가용한 범위 내에서 살펴보고자 고용과 경제적 관련 변수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성은 다양한 측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생활안정성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다각도의 자료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성, 자립수준 및 심리·정서 정도는 퇴소시설, 성별, 학력 등 배경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자립준비청년의 특성에 따라 생활안정성 집단별 자립수준 및 심리·정서수준을 비교하는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자립연차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 및 지원효과 분석⁵⁹⁾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는 3개년(2022~2024)에 걸쳐 조사되어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실태 변화와 자립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조사가 시작된 시기에 자립지원을 받기 시작한 집단만을 선별하여, 해당 코호트(cohort)의 자립지원을 받는 연차⁶⁰⁾에 따른 자립과정과 지원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립지원 연차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과 생활 실태의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분석 대상 및 분석 영역

1차 년도(2022년)부터 3차 년도(2024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1,034명 중 1차 년도 조사 시점에 자립지원수당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3차 년도 조사에서 ‘현재 자립수당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14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즉 본 분석을 통해 자립수당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자립준비청년의 고용, 경제, 건강 및 심리·정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자립지원수당을 받은 시점과 2년이 지난 시점 간의 자립역량 수준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았다.

조사가 시작된 2022년(1차) 자립지원수당을 받기 시작했으며, 2024년(3차)에도 자립지원수당은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은 총 144명으로, 남성 청년이 40.3%, 여성 청년이 59.7%였다. 이 중 대부분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93.8%)을 퇴소하였다. 학력은 대학 휴

59) 본 절은 전현정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60) 본 분석은 1차 년도 조사에 자립지원수당을 받기 시작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조사 시점은 자립지원을 받은 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본 분석에서는 ‘자립연차’라 간주함. 즉, 1차 년도(2022년)는 자립 1년차, 2차 년도(2023년)는 자립 2년차, 3차 년도(2024년)는 자립 3년차로 간주하여 분석함.

학 및 졸업 이상이 4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 재학(36.1%), 고졸 이하(22.2%) 순이었다.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 수준은 낮은 수준(하)인 경우가 56.9%로 가장 많았고, 중간 수준(중) 35.4%, 높은 수준(상) 7.6%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지역 규모는 중소도시가 5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도시(41.0%), 읍면지역(4.2%) 순이었다. 한편 분석 대상의 97.9%인 대다수의 청년들이 자립지원을 받은 기간이 3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V-29).

표 V-29. 분석 대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58	40.3	자립지원 기간	3년 미만	141	97.9
	여자	86	59.7		3년 이상	3	2.1
퇴소시설	아동복지시설	135	93.8	학력	고졸 이하	32	22.2
	청소년복지시설	8	5.6		대학 재학	52	36.1
	소년보호시설	1	0.7		대학 휴학, 졸업 이상	60	41.7
주관적 경제수준	상	11	7.6	지역규모	대도시	59	41.0
	중	51	35.4		중소도시	79	54.9
	하	82	56.9		읍면지역	6	4.2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절에서는 자립연차에 따른 자립과정과 지원효과를 살펴보고자 자립준비청년의 고용, 경제, 건강 및 심리·정서, 자립수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고용 및 경제 영역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주된 일자리 유형, 주관적 가구 소득수준을 살펴보았으며, 건강 및 심리·정서 영역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자립역량 영역에서는 자립수당으로 주로 지출하는 항목은 무엇이며, 본인이 인지하는 자립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자립연차에 따라 어떠한 변화 경향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V-30. 분석 영역

구분	내용
고용 및 경제	
근로 경험	지난 일주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지난 주 주된 일자리 유형
소득	주관적 가구 소득수준
건강 및 심리·정서	
심리·정서	삶의 만족도
자립역량*	
자립지원	자립수당 주 지출 항목
자립역량	본인이 인지하는 자립수준

* 주: 자립역량은 1차와 3차 시점에만 조사되었으므로 1차, 3차 시점 간 변화를 분석함.

2) 자립연차에 따른 자립과정 및 지원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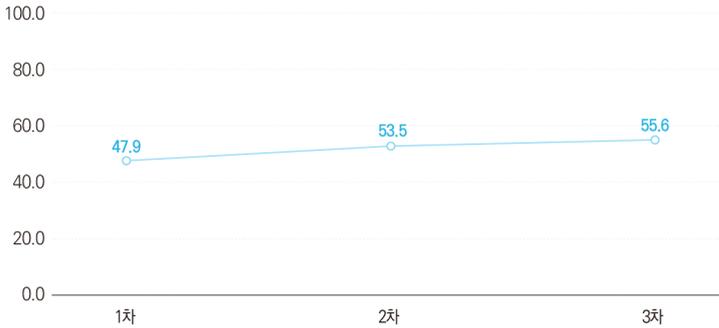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연차에 따른 자립과정 및 지원효과를 고용, 경제, 건강 및 심리·정서, 자립역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를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고용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청년의 비율⁶¹⁾은 3개년 동안 약 47~55%로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의 절반 정도가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연차가 늘어날수록 일하는 청년의 비율이 1차에는 47.9%, 2차 53.5%, 3차 55.6%로 자립연차에 따라 조금씩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상승폭이 매우 낮긴 하지만 그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61) 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므로 평생의 일 경험 비율과는 상이할 수 있음.

(단위: %)



* 주: 자립연차(조사 시점)별 전체 응답자의 '일하였다' 비율을 의미함.

그림 V-9.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그렇다면 자립연차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주된 일자리 유형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1~3차 시기 동안 가장 많이 종사한 일자리는 서비스직(1차 29.3%, 2차 34.2%, 3차 25.6%)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전문가 및 관련직(1차 17.3%, 2차 19.0%, 3차 23.2%), 사무직(1차 14.7%, 2차 16.5%, 3차 15.9%) 순이었다. 자립연차에 따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눈에 띄는 점은 전문가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청년의 비율은 점차 상승하고, 서비스직에 종사한 청년의 비율은 감소했다는 점이다. 특히 3차 시기의 전문가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청년(23.2%)과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청년(25.6%)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대다수가 서비스직, 전문가 및 관련직,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나,⁶²⁾ 시간이 흐르며 주된 일자리 유형의 패턴이 변화함을 의미한다.

62) 서비스직, 전문가 및 관련직, 사무직 종사 비율: 1차 61.3%, 2차 69.7%, 3차 64.7%.



* 주: 1) 1차 년도(주된 일자리)와 2, 3차 년도(가장 많이 일한 일자리) 문항이 상이하니, 자립연차별 주된 일자리 유형별 비율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2) 자립연차(조사 시점)별 결측을 제외한 유효 사례 수 대비 비율을 의미함.

그림 V-10. 지난 일주일 주된 일자리 유형

(2) 경제

자립준비청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대해 최하(1점)부터 최상(10점)까지의 점수로 응답했을 때, 1~3차 시기 동안 약 60%의 청년이 4점 이하의 소득수준을 보인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높은 수준을 의미하는 8점이라 응답한 청년은 1차 0.7%, 2차 1.4%, 3차 0.7%에 불과했으며, 9점과 최상을 의미하는 10점을 응답한 청년은 한 명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립준비청년은 가구 소득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립연차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다만 가구 소득수준이 최하(1점)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1차에는 22.9%였지만 2차 15.3%, 3차 14.6%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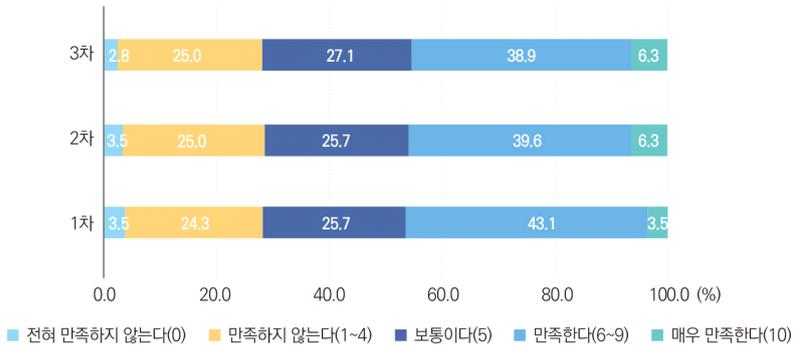


* 주: 1) 그래프에 제시된 수치는 각 자립연차(조사 시점)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구 소득수준에 대해 1(최하)부터 10(최상)까지의 점수별 응답 비율을 의미함.
 2) 자립연차별 가구 소득수준 평균값은 1차: 3.80, 2차: 3.75, 3차: 3.84임.

그림 V-11. 주관적 가구 소득수준

(3) 건강 및 심리·정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 및 심리·정서 측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1~3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자립연차별 삶의 만족도 평균은 1차 5.50, 2차 5.46, 3차 5.58로 중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점수 구간별로 살펴보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와 1~4점, 보통이다(5점)라고 응답한 비율은 1~3차의 자립연차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6~9점의 삶에 대해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만족하는 청년의 비율이 1차 시기 43.1%에서 2차 39.6%, 3차 38.9%로 다소 감소했지만, 매우 만족한다(10점)고 응답한 자립준비청년의 비율은 1차 3.5%에서 2, 3차 6.3%로 2.8%p 증가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소폭이긴 하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은 자립지원을 받는 자립준비청년은 비교적 자신의 삶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일부 청년의 경우는 자립연차가 변화하며 점차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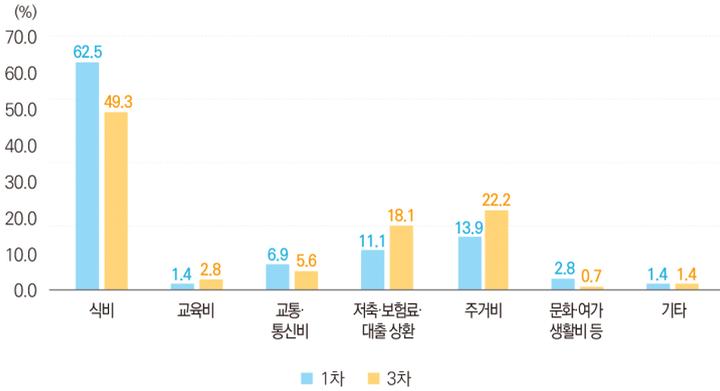


* 주: 1) 그래프에 제시된 수치는 각 자립연차(조사 시점)별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10(매우 만족한다)까지의 점수 구간별 응답 비율을 의미함.
 2) 1차 년도는 삶의 영역 중 '전반적인 나의 인생'에 대한 만족도, 2, 3차 년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값임.
 3) 자립연차별 삶의 만족도 평균값은 1차: 5.50, 2차: 5.46, 3차: 5.58임.

그림 V-12. 삶의 만족도

(4) 자립역량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수당의 대부분을 식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시기에는 식비로 자립수당을 지출한다는 청년이 전체 분석 대상의 62.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1차와 3차 시기에서 모두 식비 다음으로 많이 지출하는 항목은 주거비(1차 13.9%, 3차 22.2%)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저축, 보험료, 대출 상환(1차 11.1%, 3차 18.1%), 교통·통신비(1차 6.9%, 3차 5.6%) 순이었다. 특징적인 점은 1차와 3차 시기의 응답률을 비교해보면 1차 시기에는 자립수당의 절반 이상을 식비로 지출했지만, 3차 시기에는 식비로 지출하는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대신 주거비 혹은 저축, 보험료, 대출 상환에 자립수당을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자립수당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자립수당을 식비와 같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자립연차가 지날수록 점차 자립수당을 저축, 대출 상환, 주거비 등의 자산을 형성하고 투자하는 등의 장기적 관점의 수단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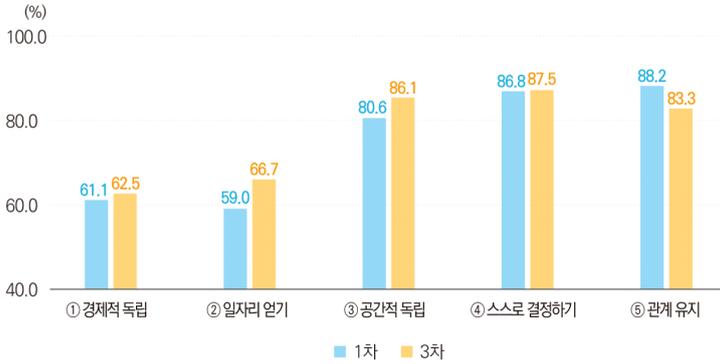


* 주: 1차 년도(1~3순위 응답)와 3차 년도(주로 지출한 항목)의 문항 기준이 상이하므로, 1차 년도의 1순위 응답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그림 V-13. 자립수당으로 주로 지출하는 항목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자립수준⁶³⁾에 대해 1차에는 2.967, 3차에는 3.001로 나타나 대체로 자립수준을 성취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3차 시기에서 모두 다른 항목에 비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와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얻기에 대해 성취했다(성취했다+완전히 성취했다)고 인지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비율이 약 59~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공간적 독립, 내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기,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기에 대해서는 1, 3차 시기 모두 80% 이상의 대다수 자립준비청년들이 성취했다고 인지하였다. 1차와 3차 시기의 자립수준을 비교해보면 모든 항목에서 성취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차 시기보다 3차 시기에 높아졌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기에 대해서는 성취했다고 인지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비율이 88.2%에서 83.3%로 감소하였다.

63) 4점 척도: 1=전혀 성취하지 못했다, 2=성취하지 못했다, 3=성취했다, 4=완전히 성취했다.



* 주: 1) ① 경제적 독립: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② 일자리 얻기: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얻기
 ③ 공간적 독립: 부모님 집(시설)에서 나와 따로 생활하기
 ④ 스스로 결정하기: 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기
 ⑤ 관계 유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기
 2) 그래프의 수치는 자립연차(조사 시점)별 각 자립수준 항목의 '성취했다+완전히 성취했다'의 비율임.
 3) 자립수준 평균은 1차: 2.967, 3차: 3.001임.

그림 V-14. 본인이 인지하는 자립수준

3) 결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연차에 따른 자립과정과 지원효과를 살펴보고자,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가 시작된 2022년 자립지원수당을 받기 시작했으며 3차 조사가 이루어진 2024년까지 자립수당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 및 자립역량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측면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은 전체 분석 대상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립연차가 변화할수록 일하는 청년의 비율이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주된 일자리 유형은 자립연차에 따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문가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청년의 비율은 점차 상승하고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청년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의 절반 정도는 일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서비스직, 전문가 및 관련직, 사무직에 종사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자

리 패턴이 변화하였다. 한편, 직장 내에서 산업안전과 관련한 경험 정도를 살펴본 결과, 근로 중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받은 경험의 비율도 자립연차가 변화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험한 근로환경에 노출한 경험이나 일하는 동안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친 경험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 교육과 산업재해보험 급여 지급과 같은 산업안전에 관한 행정적 지원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안전한 근로환경이 제공되고 있는 않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고용 측면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주된 일자리 유형이 변화함을 인지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해 주된 일자리 유형에 대한 취업을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질(job quality)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하는 일자리 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자립준비청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대해 높은 수준(8점)이라 응답한 청년이 1~3차 시기 모두 전체 분석 대상의 약 1%에 불과했으며, 9점과 10점(최상)이라 응답한 자립준비청년은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은 자신의 가구 소득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립연차에 따라서도 크게 변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셋째, 자립연차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자립연차 별 삶의 만족도 평균은 중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립지원을 받는 자립준비청년은 대체로 자신의 삶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일부 청년의 경우에는 점차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넷째,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수당을 주로 지출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1차 시기에는 자립수당의 절반 이상을 식비로 지출했지만 3차 시기에는 식비로 지출하는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대신 주거비 혹은 저축, 보험료, 대출 상환에 자립수당을 지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자립수당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식비와 같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립수당을 지출했지만, 자립연차가 증가할수록 점차 저축, 대출 상환, 주거비 등의 자산을 형성하고 투자하는 등의 장기적 관점의 수단으로 자립수당을 지출하

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자립준비청년은 대체로 자립수준을 성취했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간적 독립, 내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기,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기에 대해서는 1, 3차 시기 모두 80% 이상의 청년들이 성취했다고 인지하였으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얻기에 대해서는 약 59~66%의 청년만이 성취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립지원을 받는 자립준비청년은 대체로 자립을 성취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간적 독립,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기, 사람과의 관계 유지하기에 대해 성취했다고 인지하는 청년이 많음을 의미한다. 다만 경제적 독립, 일자리 얻기 등 고용과 경제 영역의 자립에서 비교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은 항목별로 상이하며, 각 항목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 개인의 개별 영역의 자립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고용과 경제 영역의 지원이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6. 소결⁶⁴⁾

본 연구에서는 3개년간 수집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 데이터에 대한 중단분석을 통해 시설 거주 경험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미치는 영향,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지원수당이 시설퇴소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성이 자립수준 및 심리·정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확인, 탐색함으로써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 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자립과정에 효과적인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퇴소청년들의 주관적 건강, 우울, 삶의 만족도, 사회적 고립 등의 변화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의 청년들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평균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중시설에 거주한 청년들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은 수준이었다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우울은 보통 수준에서 급격히 높아지는 집단에, 고립감은 높은 수준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높아지는 집단에

64) 본 절은 김승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시설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는 낮은 수준이었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낮아지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우울은 보통 수준에서 급격하게 높아지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설퇴소청년들 간에도 개별 청년의 삶의 궤적에 따라 심리·정서적 상태, 사회적 관계, 경제적 자립수준 등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거주 경험뿐만 아니라, 즉 시설퇴소청년이라는 유형으로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기보다 각 개별 청년들의 상황에 따라 개인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다중거주 시설 경험은 아동·청소년기 동안의 불안정한 거주 경험을 의미하는데, 이는 잦은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유사하게 긴 시설 거주기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주 경험을 의미하고 있어 안정적인 심리·정서 상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기 동안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시설 거주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중거주 시설 경험을 가진 청년들은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자립지원 기간이 짧을수록 사회적 관계유지 및 발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결과는 사회적 관계가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한 관계 기반의 자립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장기적 자립지원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나아가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또는 자립준비청년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기반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자립지원수당은 시설퇴소청년의 단기적 변화 지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식비 부족으로 인한 결식 경험 및 우울증상의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수당의 효과를 확인하기에 3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식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설퇴소청년들에게서 취약한 심리·정서적 건강을 안정화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자립지원수당은 시설퇴소청년의 삶에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셋째, 시설퇴소청년 중 고용 안정 유형에 속한 청년의 비율은 31.5% 정도였으며, 3년 내내 채무가 없거나 상환하여 현재는 채무가 없는 채무 안정 유형이 49% 정도였다. 고용

및 채무 상태를 통해 본 생활안정성에 따라 자립 및 심리·정서수준을 비교한 결과, 안정 유형 청년들의 자립수준과 삶의 만족도는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불안정 유형 청년들의 자립수준과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우울감은 생활안정성과 관계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지만, 불안정 유형 청년들의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였다. 안정 유형 청년들의 고립감은 초기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불안정 유형의 청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립감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설퇴소청년의 생활안정성이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함을 보여주며, 시설퇴소청년들이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취업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채무를 줄이거나 상환하기 위한 방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자립연차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 및 지원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립연차가 증가할수록 일하는 청년의 비율이 상승하고, 전문가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청년의 비율은 상승하는 반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청년의 비율을 감소하는 등 일자리 패턴이 변화하였다. 또한 시설퇴소청년들은 초기에 자립수당의 절반 이상을 식비로 지출한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식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감소하고 주거비 혹은 저축, 보험료, 대출 상환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립수당이 기본적인 생활 영위 수단에서 자산형성 및 투자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차가 누적됨에 따라 일자리 변화와 소득 변화로 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생활안정성을 영위하기 위한 방향으로 시설퇴소청년들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대체로 자립수준을 성취하였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경제적 독립, 일자리 얻기 등 고용과 경제 영역에서의 자립은 여전히 다른 영역에 비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으로 고용과 경제 영역에서의 지원 방안 마련이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제6장 정책제언

- 1. 정책의 기본방향
- 2. 영역별 추진과제

본 연구에서는 3개년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아동·청소년기 동안의 다양한 위기 경험, 다양한 영역에서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성인기로의 이행은 청년이 당면하는 보편적인 발달과업이지만,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은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 및 아동·청소년기부터 반복적으로 노출된 상황적 위기 등으로 인해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환경적인 대처 기제가 매우 취약함을 볼 수 있었다.

1차 년도에는 시설퇴소청년 표본을 구축하여 교육과 일 경험, 채무, 사회관계, 부정적 생애사건, 심리·정서 등의 영역에서 일반청년과의 격차 및 취약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① 아동·청소년기부터 안정적 생활환경 제공 및 지원격차 해소, ② 대학 등록금 등 학비 지원 강화, ③ 취업 준비 프로그램의 보완, 현장전문가들의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등 취업준비 지원의 실효성 강화, ④ 경제적 지원에서의 편차 최소화, 경제교육의 실효성 제고,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확대 및 실효성 제고 등 경제적 지원의 강화, ⑤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심리·정서 안정 지원책 마련,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위한 아웃리치 확대 및 사업내용 보완 등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지원, ⑥ 지역 및 퇴소시설별 편차 최소화, 주거지원 정보 제공의 강화, 안정된 거주지원 서비스의 확대 등 주거지원에서의 격차 해소, ⑦ 의료급여 수급 및 건강보험 지원 강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장애청년 발굴 및 등록절차에 대한 홍보 강화 등 건강지원 서비스의 확대 및 강화, ⑧ 체계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표준화 등을 제안하였다.

2차 년도에는 교육·훈련, 고용, 경제, 주거, 건강 및 심리·정서, 참여 및 사회·미래인식

65) 본 장은 김승경 선임연구위원과 백해정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영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반청년과의 격차 및 취약성을 확인하고, 시설퇴소청년 대상 면접조사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생활 실태, 주요 생애사건과 위기 경험,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자립과 미래에 대한 전망, 청년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의 정책조정 및 총괄 기능 강화,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참여 강화 등 청년정책으로서의 시설퇴소 자립지원 정책 수립, ②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외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격심의제도 도입, 무의탁 소년원 퇴소청년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강화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의 자격기준 개선, ③ 개인의 필요에 따른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개인 맞춤형 자립지원, ④ 지역 기반 지원체계 구축 및 그에 따른 지역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시설퇴소청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적 위기에의 반복적, 누적적인 노출과 대처기제의 취약성은 이들을 성인기 이후의 삶에서도 만성적인 취약계층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개년에 걸친 시설퇴소청년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정책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궤적과 불안정한 이행과정에 대한 진단을 통해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및 사회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정과제인 [약속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를 실현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책제안의 근거가 되는 3차년도 조사 결과 및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3차년도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시설퇴소청년들의 생활영역별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1~3차년도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시설퇴소청년들의 생활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설퇴소청년들의 성별, 지역규모, 퇴소시설 등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특성을 보다 다면적으로 이해하고 시설퇴소청년의 심리·정서 상태 및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시사점
3차년도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주당 근로시간 증가, 상용 근로자의 비율 증가, 일용 및 임시근로자에 비해 상용근로자의 높은 경제적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자립 및 생활을 위한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필요 • 취업포기나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조사 결과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퇴소청년의 약 3%는 1년 이상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냈다고 응답 • 주당 근로시간이 적정(36시간 이상~50시간 미만)한 경우 36시간 미만 또는 5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음 • 대학 재학 중인 청년의 경우 기초생활 급여 수급률이 2배 이상 높음. • 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및 채무액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 범죄 피해 및 생활비로 인한 채무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학자금, 주거비, 가족의 빚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생활했던 기관 수가 많은 경우 우울 및 고립감이 높음 • 비적정 주거시설 거주 청년이 4%가량 존재함. 주거취약 상태 유지 사유 분석 필요 • 경제수준이 낮은 청년들의 고립감, 은둔경향이 유의미하게 높음. • 자해 경험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진료비 부담으로 정신건강 문제 상담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약 10% 수준 • 의사의 처방 없이 약물 사용 경험 증가 추세 • 신체·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중 진료를 받지 않거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청년이 1/3을 상회. 의료비 수급 여부와 관계 없이 병원비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음 • 지난 1년간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못한 청년이 50% 이상.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도, 자신이 바라는 미래실현 정도가 높음. 다만 기초생활수급 청년들이 비수급 청년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 미래실현 가능 정도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퇴소청년들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필요 • 학업 유지 중인 청년의 경우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취업이 어려우므로 학업 유지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학자금,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및 가족채무 예방 교육 및 대응 방안 마련 • 불안정한 주거 상태, 잦은 주거 이전이 개인의 심리·정서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 • 상담전문가를 통한 양질의 상담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 • 안전한 약물 사용에 대한 교육 필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에도 수급권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료급여의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공적 지원 수급 여부 및 지원 내역에 대한 정보 안내 방법 필요 • 프로그램 제공, 활동 배우처 제공, 지역 기반 소집단 여가문화 활동 등 시설퇴소청년들의 여가문화 활동 지원책 마련 필요 • 기초생활수급제도 수급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쳐 현재 및 미래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나 희망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취약 청년에 대한 공적 지원의 영향력 확인 • 자립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책 확대 필요 • 개인의 상황을 반영한 지원 제공으로의 제도 개선 필요 • 진정한 자립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

	조사 결과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성취도와 삶의 만족도 간 밀접한 관련. 자립수당이 시설퇴소청년의 자족 증가, 부채 감소, 개인 시간 확보 및 사회적 교류 증가, 우울 감소, 행복도 및 삶의 만족도 증가와 관련 • 건강 문제, 가사 및 돌봄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당면했을 때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음 	<p>실 있는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필요(사례관리 대상자 적정 수 산출, 직무여건 개선 등)</p>

본 연구의 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간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서도 시설퇴소청년들이 수혜 가능한 각종 지원이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지원에서 누락되거나 신청 여부 미인지로 인해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공적 지원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 지원 수급의 정합성, 지원의 자격취득 및 재취득 비율, 공적 지원 수혜가 자립에 미치는 영향, 자립기술평가와 자립 간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총괄보고서에서 분석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다중적 취약성을 포함한 가명정보 결합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조사 결과	시사점
가명정보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인지-수급 여부 간 정합성은 약 86-90% 수준 • 기초생활급여의 탈수급-재취득 비율은 50% 이상으로 타 공적 지원에 비해 높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청년의 경우 건강 및 심리-정서 상태가 취약할 가능성이 높으나, 비수급 청년에 비해 긍정적인 미래 인식을 보임. 특히 디딤씨앗통장 이용 청년의 경우 건강 및 심리-정서, 사회에 대한 신뢰, 생계복지에 대한 개인의 책임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음 • 자립수당 수혜 청년은 개인의 취업에 대한 노력, 건강 및 심리-정서, 참여 및 미래인식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음 • 아동양육시설에서 실시한 자립기술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참여 효능감, 사회에 대한 신뢰, 바라는 미래 현 정도 등이 높아지고, 고립 및 우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지원의 수급 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해 수급 현황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행정데이터 간 연계 필요 • 수급-탈수급-재수급을 반복하는 청년에 대한 면밀한 특성 파악 필요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인의 삶에 안정감을 제공하여 희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디딤씨앗통장과 같은 자산형성제도는 특히 생계복지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공적 지원의 영향력 확인 가능 • 공적 지원 수혜가 개인의 발달 및 생활 영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및 긍정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자립기술에

	조사 결과	시사점
	정도가 낮아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 자립기술 평가를 통해 개인에게 필요한 자립 기술교육을 제공할 필요
(총괄보고서) 자립준비청년 의 다중적 취 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청년의 다중취약성 확인 결과 자립지원 수혜기간 및 자립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영향 확인 • 다중취약청년의 취약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변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취약유형이 아닌 취약 청년 개인의 복합적 욕구에 초점을 맞춘 개인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필요 • 다중취약청년 지원을 위해 경제적 수당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 다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문적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결합된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효과적 • 다중취약청년의 맞춤형 지원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필요. 이를 위해서는 전담인력 양성이 병행되어 전담인력의 양성과 안정적인 인력 배치 선행 필요

또한 3개년간 수행된 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을 살펴 보기 위해 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단분석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시설 거주 경험이 성인기 이행에 미친 영향, 자립지원수당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성이 자립수준 및 심리·정서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의 주제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조사 결과	시사점
1~3차 년도 중단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퇴소청년들의 주관적 건강, 우울, 사회적 고립 등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집단이 도출됨. 그러나 다중시설 거주 청년들의 경우 건강 및 심리·정서 수준이 더 낮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 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건강 및 심리·정서 유지 수준이 높아짐 • 다중시설 거주 경험 청년, 수도권 거주, 자립지원 기간이 짧은 청년들은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큼 • 자립지원수당은 시설퇴소청년의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퇴소청년들의 건강 및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별 청년의 자립수준과 발달 경로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는 장기적 프로그램 마련 및 거주 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연계 및 관계 기반의 장기적 자립지원 방안

	조사 결과	시사점
	<p>적인 변화지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식비 부족으로 인한 결식 경험, 우울은 유의미하게 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안정 유형(안정 고용, 채무 없음) 청년들은 자립수준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불안정 유형의 청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립수준과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고, 고립감과 우울감이 높아짐 자립연차가 증가할수록 일하는 청년의 비율이 상승하고, 전문가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청년의 비율은 상승하는 반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청년의 비율은 감소하는 등 일자리 패턴이 변화함 자립 초기에는 자립수당의 절반 이상을 식비로 지출한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식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감소하고 주거비 혹은 저축, 보험료, 대출 상환을 위한 지출 증가 	<p>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지원수당의 효과를 확인하기에 3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으나, 자립지원수당이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및 정신건강에 기여함을 시사 생활안정성(안정 고용, 채무 없음)이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함을 시사. 안정적 취업 상태 유지 및 채무 감소를 위한 지원 필요 자립연차가 높아짐에 따라 자립수당이 기본적인 생활 영위 수단에서 자산형성 및 투자 등의 용도로 변화

1. 정책의 기본방향

성인으로서의 이행기는 성인으로서의 책임이나 사회에의 정착에 대한 고민보다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경험을 통한 삶의 방향 탐색을 통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안 가정해체, 가정폭력, 학대 등의 이유로 국가의 대리보호를 받아온 자립준비청년들은 자신을 보호해주던 지지체계인 시설로부터 퇴소하여 오롯이 혼자서 힘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회에서 ‘자립’해내야 하는 과업에 당면하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사업 주관부처 및 전달체계의 분절, 퇴소시설별 지원 격차 발생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시설퇴소청년들이 퇴소시설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개인이 가진 삶의 궤적에 따라 서로 다른 취약성을 중첩하여 가지고 있으므로 퇴소시설에 따른 지원정책보다는 전체 청년정책 내에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개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1차 년도에 제시한 ‘모든 청년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비전하에 ‘청년정책으로서의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정책의 수립’을 위해

① 시설퇴소청년의 특성에 따른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개인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② 아동-청소년-성인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연속성 있는 지원정책 수립, ③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대상(집중사례관리 대상)의 성인기로의 이행 지원 강화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영역별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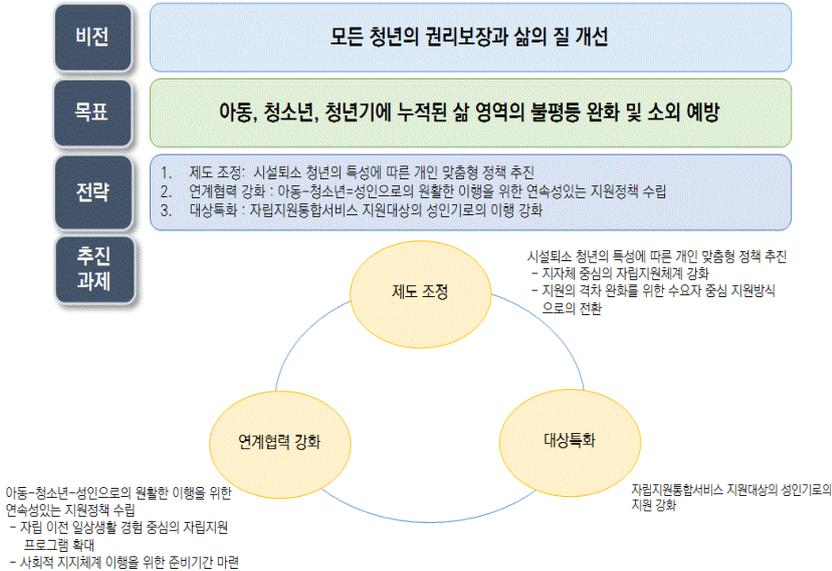


그림 VI-1. 시설퇴소청년 정책 추진과제

1) 시설퇴소청년의 특성에 따른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개인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1) 지자체 중심의 자립지원체계 강화

본 연구에서는 3개년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퇴소청년들의 자립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일반청년과의 격차, 시설퇴소청년의 다중적 취약성, 시설퇴소청년의 자립과정 등을 다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설퇴소 유형에 따른 차이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생활 영역 전반에서 공통적인 취약성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취약성은 개인의 삶의 궤적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정책의 분절로 인해 퇴소시설 유형에 따른 전혀 다른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자립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18세가 되기 전 보호종료된 사람도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 시행(24.2.9.)⁶⁶⁾됨에 따라 18세 이전에 다양한 이유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들까지 자립지원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아직 제도 개선 초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상자의 발굴이나 선정기준 등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가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통고처분을 받고 중도퇴소한 청년이 양육시설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자립지원청년 대상으로 인정되어 자립지원을 받게 된 사례⁶⁷⁾가 발견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사례: 아동복지시설에서 통고처분으로 중도퇴소한 청년의 자립지원〉

-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한 보호소년이 통고(양육시설 가출·흡연, 절도 등)로 10호 처분을 받고 입원 중 '보호아동 종료'로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 처리됨
 - ※ 과거 아동양육시설에서 통고로 4호 처분을 받고 타 시설 위탁 중 흡연, 절도 등으로 통고되어 7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
- 양육시설 및 지자체(구청) 관계자에게 지속하여 협조를 구한 결과, '자립준비청년'으로 전환 후 소년원 출원과 동시에 자립정착금 1천만원, 월 40만원 자립수당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 출원 후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안정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으며 취업활동을 하던 중, 최근 정부 주거지원으로 전세 2,700만원(관리비 약 10만원)에서 독립하여 생활 중

그러나 현재와 같이 시설 간 연계·협력 및 정보시스템 연계가 미흡하고 대상자 발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격기준에 부합하고 자립지원이 필요하지만 발굴되지 않은 채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양육시설에서 15세 이후에 중도퇴소 후 일정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다가 퇴소한 청년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보호아동 자립지원 대상과 여성가족부의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 모두에 중복 해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상의 누락 및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지자체)이 정보망을 기반으로 자립지원 대상에 대한 보호이력을 관리하고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여부 결정,

66) 「아동복지법」 제38조의 「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15세 이후 보호종료자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을 사유로 종료된 경우 지원함. 원가정 복귀 사유는 원칙적 지원 대상은 아니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지원내용은 ①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하고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18세부터 5년간 지원하며, ② 지원내용은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자립지원상담기관의 지원, 의료비 지원사업에 모두 적용됨. 지원 시점은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라도 각종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앞둔 시기인 18세 이후부터 지원하되,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는 18세 이전에도 지원 가능토록 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2.8).

67)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2024.10.10.~11) 결과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등 자립지원 대상을 발굴·지원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통합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내 아동보호팀과 청소년안전망팀에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시설, 대상 지원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보호이력을 관리하고 지원 대상 발굴이 가능한 정보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망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지역 내 자립이 필요한 청년의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시설로부터 퇴소한 청년들의 발굴 및 지원과정에 중복·누락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심의기구에 다양한 보호시설 및 자립지원기관 담당자들을 위촉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방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2) 지원의 격차 완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 지원방식에서의 전환

정책 추진체계의 분절로 인해 퇴소시설에 따라 발생하는 지원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퇴소시설별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퇴소시설별로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이들을 ‘자립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동일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취약성, 위기도, 자립준비도, 욕구 등과 같은 다중적이고 가변적인 취약성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내의 보호아동-가정 밖 청소년-보호소년 정책 외 성인기 이행 및 자립을 지원하는 취약청년 정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법률에 근거한 자립지원 업무를 단일 집행체제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⁶⁸⁾

2) 아동-청소년-성인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연속성 있는 지원정책 수립

(1) 자립 이전 일상생활 경험 중심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확대

본 연구의 결과 자립기술평가 집계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참여 효능감,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바라는 미래실현 정도, 건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우울이나 고립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립기술교육을 통해 자립기술을 높이는 것이 자립에 도움이

68) 김승경, 백해정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내용을 일부 수정함.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자립기술은 시설퇴소 이후 단시간 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기 동안 위생관리, 정리정돈, 요리, 예절, 건강관리, 대중교통 이용, 대인관계 기술 등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경험을 통해 축적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보호 중인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정과는 다른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야 하는 일상적인 경험 및 기술 습득 기회가 부재하여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시작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22년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통해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 구축을 표방하면서 ① 자립준비를 내실화하기 위해 양육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가정 등에도 자립지원 인력을 충원하고, ② 아동의 연령, 향후 진로 등 아동 상황을 반영하여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자립캠프 등 자립선배와의 만남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관계부처 합동, 2022.11.17.)하여 보호가 종료되기 전부터 자립을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자립 이전부터 아동들을 위한 표준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외 일부 청소년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에서 자체 구성한 프로그램에 따라 자립준비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이 미비한 상황이다.

자립기술은 모든 시설퇴소청년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일상적인 생활 내에서 경험을 통해 습득되고 축적되어야 하지만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여전히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 향후 진로 등과 같은 개인 특성을 반영하거나 가정 내에서의 경험과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⁶⁹⁾ 이에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복지시설에서는 각 발달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경험이 개인의 삶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발달단계별 일상생활 경험 중심의 표준화된 자립지원 매뉴얼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유관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자립에 필요한 경험과 활동을 시설 거주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동시에 퇴소 이전에 필요한 자립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도를 점검하는 각 단계별 자립기술 및 자립역량 평가체계를 고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69)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2024.10.10.-11) 결과

(2) 사회적 지지체계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 마련

보호체계 내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부모의 보호력 부재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빈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설 이외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아동·청소년들은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자립지원기관의 지원이 종료될 때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된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기관으로의 연계를 꺼리고 보호 및 지원이 종료된 기관의 담당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호 및 지원이 종료된 기관에서는 해당 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고,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새롭게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른 시설퇴소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⁷⁰⁾ 이에 아동·청소년들이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지원기관으로 연계되는 시점과 시설 퇴소청년들이 자립지원기관의 보호가 종료되어 청년정책의 체계로 편입되는 시점에 기존의 지지체계에서 다른 지지체계로의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준비기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2년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통해 아동의 자립준비를 내실화하기 위해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에 양육상황 점검 시(연 4회) 자립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하여 자립준비를 지원(관계부처 합동, 2022.11.17.)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자체가 자립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설 퇴소 과정에서 시설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연계해 줄 뿐 지지체계 전환을 위한 관계기반의 지원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RSG프로그램은 13세부터 아동구호단체들이 해당 아동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립에 필요한 일상생활 경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립준비 이전까지 자립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보호체계 내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달단계에 따른 자립기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과 더불어 위탁보호 아동과 관계를 구축하는 연령을 명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보호체계 내 담당자와 자립지원 담당자가 동시에 사회적 지지체계의 역할을 하는 준비단계를 돕으로써 시설퇴소 시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단절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완충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70)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2024.10.10.-11) 결과

〈해외사례: 캐나다 온타리오주 RSG(Ready, Set, Go)프로그램〉

- 아동이 13세에 이르렀을 때부터 해당 아동과 관계를 형성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위탁보호 아동과 관계구축 연령 명시)
- 15세가 되면 개인 재정관리, 은행계좌 개설, 식료품 쇼핑, 이력서 작성, 복지서비스 및 기타 지원을 받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금융 문해력 및 취업 준비 지원
- 16세가 되면 아동보호 담당자는 해당 아동이 출생증명서/사회보장번호 등 필요 문서를 갖추고 있는지, 18세 생일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방법 등과 같은 라이프 스킬을 익힐 수 있었는지, 은행계좌 및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관련 지원 정보를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여 실제로 위탁보호시스템을 떠날 모든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 개인의 준비 상태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충분히 준비되고 지원을 받는 상태로 완전한 성인으로 삶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 출처: 김승경, 백해정(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일부 발췌.

3)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대상(집중사례관리 대상)의 성인기로의 이행 지원 강화

아동복지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대상으로 분류되는 집중사례관리대상은 일반적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가진 서비스 대상자를 말한다. 시설퇴소청년 중 집중사례관리대상 유형에 속하는 유형으로는 고립·은둔 청년, 자해·자살시도 청년, 경제선지능 청년 등이 있는데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올해 전국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하여 대상자를 발굴 및 밀착 사례관리를 시작하였으며, 자해·자살시도 청년 역시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장에서 다양한 기관 연계를 통해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집중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취약성이 성인기 이후의 삶에 고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장래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시설퇴소청년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의 연장선에서 개인의 요구에 따른 통합적인 집중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취약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유형별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전제될 필요가 있으나, 아동보호시설의 전체 보호아동의 18.3%(서울신문, 2024.5.17.) 정도로 추정⁷¹⁾되는 경제선지능 청년은 삶의 전 영역에서

71) 복지부가 아동복지협회와 지자체 협조 하에 양육시설과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내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아동생활시설 특수육구아동 보호 현황 조사'에 따르면 아동생활시설에서 지내는 아동 중

개인별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책대상자(박광욱, 이기연, 이복실, 안예지, 2022)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나 지원서비스 미비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1차년도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계선지능 청년은 개인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상이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생애에 걸쳐 생애주기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상이므로 생애주기별 지원이 누락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전제하고 이에 따라 유형 특화된 집중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지역의 청년센터 내 집중사례관리대상 청년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지원·연계에 주력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② 사회복지관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도록 경계선지능 지원 목적사업을 편입하는 방안, ③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유사정책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일반적인 자립지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 혹은 자립지원관 등에서 지원하고 경계선지능인이 보이는 특수한 요구에 대한 지원은 경계선지능 전담지원기관(또는 사회복지관 등)에서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이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특수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VI-1. 경계선지능 청년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안)

구분	주요 내용
(1안) 청년센터 기능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224개소(2024년 10월 기준) 설치 - 취업 및 창업 지원, 주거안정 지원, 문화 및 사회 참여 지원, 복지 및 자산형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청년기 필요한 주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 확보 - 집중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에게는 심리적 이용 접근성 강점 - 경계선지능 청년 등 정책소외 및 위기 청년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지원 및 연계 등에 주력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인력 배치 - 집중적인 사례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복지기관(사회복지관 등)과 협업체계 구축 필요
(2안) 사회복지관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483개소(2024년 기준) 설치 - 사회복지기관으로 전문적인 사례관리 수행 가능

41.9%(4,986명)가 ADHD, 경계선 지능, 지적 장애 등을 판정받았음. 이 중 ADHD(장애, 경계선 지능 포함)를 진단받은 아동은 전체 아동의 23.9%(2839명)에 달해 가장 많았고,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은 전체 아동의 18.3%(2173명),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은 11.3%(1,341명)을 차지함(서울신문, 2024.5.17.).

구분	주요 내용
목적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복지대상이 아닌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 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례관리 수행 가능 - 생애주기별 사례관리와 필요한 교육문화, 자립생활, 가족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2항 각 호에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명시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경계선지능인 대상 사례관리를 기관의 고유 목적 사업으로 포함
(3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유사정책 대상자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8개소(중앙1, 광역17, 2024년 기준) 설치 -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 수행 -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광역별로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 제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근거, 경계선지능인(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확대 - 경계선지능인의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전 반드시 인력 및 예산지원, 서비스 연계에 대한 권한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함

* 출처: 박광욱 외 (2022).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232. 일부 수정

2. 영역별 추진과제

1) 고용·근로 영역

(1) 취업지업 서비스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연구결과〉

- 근로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심리·정서 차이
 - 경제적 소득: 상용근로자 > 임시·일용근로자
 - 우울·고립감: 상용근로자 < 임시·일용근로자
- 최근 2년 이상 불안정 고용(미취업자, 일용·임시근로자): 68.5%
- 근로시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 36시간 이상~50시간 미만 근로 > 36시간 미만 또는 50시간 이상 근로

시설퇴소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맞춤형 취업지업 서비스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는 임시나 일용근로자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높았고 우울감과 고립의 정도는 낮았는데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청년들의 근로의욕 향상 및 경제적 자립, 심리·정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고용 안정성을 살펴본 결과 최근 2년 이상 미취업, 일용·임시근로자를 경험함으로써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해당하는 비율은 60%를 훨씬 웃돌아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위한 대책 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를 시사한다. 또한 시설퇴소청년들의 근로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로는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50시간 미만(적정)인 경우가 36시간 미만 또는 5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일일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야기할 수 있고 지나치게 긴 근로시간은 건강 악화 및 일·생활 균형을 깨뜨림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적정 시간의 근로로 건강한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과도 맥을 같이한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대상 취업지원 중에는 수일~6개월 이내의 단기 일 경험이 아닌, 6개월 이상의 고용을 장려하는 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정도이다. 이에 더하여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의 경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 간 협업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나 타 시설퇴소청년들은 그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은 일부 사회적 기업의 우선 취업 기회를 제공받고 있으나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은 소년보호협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의 현장 경험이 일자리 지원의 대부분으로 일자리 지원제도가 매우 열악한 편이다.

①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앞서 연구결과에서도 보고되었듯이 시설퇴소청년들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개개인마다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복합적인 층위를 이루고 있는 집단이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도록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알선은 유용한 서비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는 청소년복지시설을 비롯하여 시설을 퇴소하는 청년들에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지역 내 고용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직업상담원이 정기적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이나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자립지원시설을 방문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상담을 하고 직업 연계를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경상남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설 내 직업상담을 전담하는 직원을 상주시켜 이들의 직업훈련 및 채용, 직장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직업상담사의 배치는 보다 전문적인 직업상담과 관련 프로그램 제공으로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⁷²⁾

〈사례: 경상남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⁷³⁾〉

-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취업지원 전담인력(직업상담사)을 배치하여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 취업 진로 캠프 등 취업역량프로그램 확대
- 도내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마련

또한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제한경쟁 등의 방법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사회형평적 채용에서도 아동양육 시설퇴소청년에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등으로까지 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경계선지능이나 심리·정서 문제 등으로 취업과 직장생활에 곤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는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의 특성으로 인해 취업 자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을 해도 이후 직장 내에서 이들에 대한 이해 부족, 사회적 편견 등으로 시설퇴소청년과 기존 인력 간에 갈등을 겪거나 시설퇴소청년의 직장 적응이 어려운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었다.⁷⁴⁾ 따라서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사회적 기업의 우선 취업 기회를 좀 더 확충하는 동시에 시설퇴소청년의 취업 전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예방·중재·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②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6개월 이상의 장기고용 지원제도 중 하나인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은 인력난을 겪고

72)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2024.10.10.~11) 결과

73) 경상남도청년 정보플랫폼 홈페이지.

https://youth.gyeongnam.go.kr/youth/board.es?mid=a10501020000&bid=0006&act=view&list_no=2868&tag=&nPage=10&cg_code=에서 2024년 10월 14일 검색.

74)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2024.10.10.~11) 결과

있는 일자리의 취업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들은 고강도-저임금 노동으로 청년들의 지원이 없거나 취업하더라도 근속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근로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자체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이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지원 대상 기업 등 인력난을 겪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신청을 독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

근무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등 현재 미시행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속히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일시적 세제 혜택 등의 지원제도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고용주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권익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행정절차 지원, 근로감독 강화 등이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백혜정 외, 2023).

시설퇴소청년 중에는 근로권익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대응책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로의 내실 있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들이 부적절한 근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시설퇴소청년들과 지원기관 종사자들을 위해서는 필요시 근로권익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의 노력 역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설퇴소청년들의 근로실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설퇴소청년들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근로실태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시설퇴소청년들의 근로는 자립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이들의 근로 상황과 관련 요인들에 대한 보다 세세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 및 근로기초훈련 마련 및 제공

① 개인 맞춤형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 마련 및 제공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지역 기반 진로탐색-직업

훈련-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및 제공이 필요하다. 최근 일이나 구직활동 없이 ‘ 그냥 쉬는 ’ 15~29세 청년이 40만 명선이라고 보도되었고 이는 전체 청년 인구의 약 4.9%에 해당하는 비율이다(연합뉴스, 2024.6.23.). 이와 일맥상통하게 본 연구 조사 결과에서도 시설퇴소청년의 약 3% 정도는 일 년 이상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NEET의 가능성을 보였다. NEET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취업포기나 고립·은둔 가능성 역시 증가하므로 이들에 대한 조기발굴 및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근로의욕 및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과 위주의 단기적인 지원책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개인 맞춤형 사례관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설퇴소 청년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5주(40시간)~25주(200시간) 내외의 맞춤형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 기간 동안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현장 종사자들은 일부 시설퇴소청년들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⁷⁵⁾ 이에 중도탈락자들을 대상으로 참여 저해 요인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근로기초훈련 마련 및 제공

또한 현재 근로를 하지 않는 시설퇴소청년 중에는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고취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직장 예절이나 대인관계기술, 근무태도 등 기초훈련이 필요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⁷⁶⁾ 따라서 이러한 근로기초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청소년복지시설 및 한국소년보호협회 등에서 취업이 어려운 시설(퇴소)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자활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 자활작업장 아(雅)카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에서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등을 마련하여 기초직업능력 배양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경계선지능, 심리·정서적 문제 등으로 근로능력 및 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시설퇴소청년들의 기초근로능력 및 의욕 향상을 위해 지역 기반 자활작업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법 마련 및 운영비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5)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2024.10.10.~11) 결과

76)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2024.10.10.~11) 결과

〈사례: 인천시 청소년 자활작업장 아(雅)카페〉

-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인천시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운영
- 목표
 - 취업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근로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역량 강화
 - 훈련비 지급을 통해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초환경 조성에 기여
 - 자격증 취득지원을 통해 취업 조건을 형성하고 사회진입 가능성 확대
- 참여 대상
 - 만 15세~24세 청소년 유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 또는 이용 청소년 등 자립에 환경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연 30명 이내)
- 주요 내용
 - 매장 운영실무 및 고객응대 실습, 주 3~4회 단계별 근로훈련 진행, 훈련비 지급, 연계 카페에서 3주 인턴십 제공, 심화과정(전문교육기관에서의 바리스타 훈련)으로 연계 등

* 출처: 인천시청소년자립지원관 (2024). 청소년 자활작업 안내자료.

한편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훈련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양육시설퇴소청년들은 현행 훈련비 지원비용 외에도 2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훈련기간 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다. 하지만 여가부나 법무부 산하 시설퇴소청년들은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원 대상 확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③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일 경험 제공

〈연구결과〉

- 지난 일주일 동안의 주된 일자리
 - 2022년: 서비스업 30.6%+판매업 11.3%+단순노무 16.9%=58.8%
 - 2023년: 서비스업 31.9%+판매업 9.5%+단순노무 14.5%=55.9%
 - 2024년: 서비스업 29.8%+판매업 9.7%+단순노무 11.8%=51.3%
- 최근 2년 이상 불안정 고용(미취업자, 일용·임시근로자): 68.5%

시설퇴소청년들의 직업 선택과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기부터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쌓는 동시에 체계적인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⁷⁷⁾ 그러나 이른 시기에 진로 탐색이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77)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2024.10.10.~11) 결과

청년기에서라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설퇴소청년들의 일 경험은 편의점 근무나 카페 서빙, 배달, 택배 상하차 등 고용이 불안정한 서비스·판매업이나 단순노무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수록 무인상점이나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서비스업에서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는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즉 시설퇴소청년들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의 규모가 점차 감소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퇴소청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시설퇴소청년들은 우선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단기적인 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을 탐색한 후 보다 안정적인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I-2. 단계별 맞춤형 고용·근로지원서비스(안)

이상과 같이 고용·근로 영역에서의 제언을 종합하여 개인 맞춤형 고용·근로지원서비스의 단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VI-2]와 같다. 다만 단계별 근로 지원에서 한 단계에서 그다음 단계를 거치지 않고 건너뛰는 경우나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우, 두 단계 이상이 서로 겹치는 경우, 한 단계에 오래 머무는 경우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개인별 맞춤으로 지원내용이나 기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경제영역

(1) 관계기반의 금융모델 보급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채무 발생 사유는 학자금, 주거비, 생활비, 가족으로 인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학자금, 주거비, 가족의 빚으로 인한 채무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채무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금융채무불이행자 청년 중 개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국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 채무를 조정해주는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과반이 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 본인이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는 응답률은 40.7%로 1차 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채무가 있는 청년들의 평균 채무액은 1655.94만원으로 1차 년도에 비해 467만원가량 증가
 - 학자금(171.14만원)과 전·월세 및 관리비 등의 주거비(843.02만원), 창업자금(43.72만원), 가족의 빚을 넘겨받거나 가족이 내 명의로 진 빚(128.73만원)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 ('23) 16.2% → ('24) 13.2%
 - 금융채무불이행 청년 중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 경험률: 36.4%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 경제·금융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종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제공하는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경우 금융기관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인 것에 비해 시설퇴소청년들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시설퇴소청년 개인의 상황에 따라 1:1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부채 해결이나 자산관리 등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즉,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자와 청년 간의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진단을 통해 부채 해결 및 자산형성 목표를 결합한 ‘관계기반 금융모델’ 보급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2) 시설퇴소청년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 모색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은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면서 디딤씨앗통장 만기 금액을 주거비나 교육비에 활용하는 등 삶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외 타 시설퇴소청년들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퇴소 시 자립기반이 되는 경제적 자산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 결과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을 형성했던 청년들은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나 개인의 책임감을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디딤씨앗통장 이용자의 경우 비이용자에 비해

- 삶의 만족도↑, 우울 및 사회적 고립↓
- 신체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사회에 대한 신뢰↑, 생계복지에 대한 개인의 책임↑

이와 같이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시설퇴소청년의 자립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디딤씨앗통장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모와 단절된 채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경우 자산형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자산형성은 취약청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산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만기 시 노력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경험 자체로도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자산형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한 취약청년들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하는 데 제한이 있고, 납입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커서 가입을 하더라도 만기에 이르지 못한 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기존 자산형성사업에 비해 단기의 소액 자산형성사업을 통해 자산형성 경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소득, 지출, 채무 등의 특성에 맞춘 부채관리, 자산형성, 자산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기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관계기반 금융모델의 일환으로 제공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 목적: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자립 정착 지원
- 지원 대상: ①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②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③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자 중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청소년쉼터(일시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청소년쉼터(일시 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지원내용: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 20만원) 적립 지원(기본 2년, 최대 6년(2회 연장 시))
- 모집 규모: 가정 밖 청소년 70명(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긴 사람 우선 선발)

*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07844671&bslidx=464&menuId=1536&bcldx=520>에서
 2024년 10월 17일 검색.

3) 주거 영역

(1) 청년의 삶의 형태와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지원 방안 모색

정부는 취약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적극적인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렇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주거 공급보다는 청년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거모델과 주거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 결과 LH 등의 지원을 받아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비를 마련한 비율은 수도권(57.5%)이 비수도권(55.8%)에 비해 높고, 대도시(58.1%)나 중소도시(55.9%)가 읍면지역(34.6%)에 비해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

- LH 등의 지원을 통한 주거비 마련 비율
 - 수도권 57.5% > 비수도권 55.8%
 - 대도시 58.1% > 중소도시 55.9% > 읍면지역 34.6%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읍면지역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국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수요조사를 토대로 비수도권이나 읍면지역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하는 시설퇴소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주택 및 공유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종사자들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물량이 많긴 하지만 인프라가 적거나 유흥가와 같이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 임대주택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주택의 저렴한 주거비를 포기한 채 대출을 받아서라도 환경이 나은 주거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⁷⁸⁾ 그 결과로 취약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채무가 높아지거나, 동일한 비용으로 주거지역을 개선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채무의 문제는 단순히 주거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 취약, 나아가 그로 인한 심리·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별로 주거지원을 요하는 청년들의 대중교통 및 인프라 등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학업이나 취업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 사회에 정착해야 하는 시설퇴소청년의 삶의 형태를 고려한 임대주택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관계기반의 주거지원통합서비스 확충

시설퇴소 이후 자립을 하여 살아가고 있는 청년 10명 중 1명 이상이 2개월 이상 월세 연체, 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 이사 또는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등 주거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10명 중 1명은 집주인과 수리,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며, 소수이긴 하지만 주택압류나 재개발,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거나 재계약 요구를 거절당하는 등의 경험을 한 청년들도 100명 중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최근 1년간 주거빈곤 경험

- 2개월 이상 월세 연체 12.2%, 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 13.6%, 이사 또는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12.4%
- 주택압류, 재개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등으로 집에서 쫓겨나거나 쫓겨날 위기에 처함 2.1%
- 집주인과 수리,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음 10.7%
- 보증금이나 월세 5% 인상 요구, 재계약 요구 거절당함 4.3%

78)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2024.10.10.-11) 결과

일반 성인들도 주거빈곤 상황뿐만 아니라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 상황에 놓이는 경험을 하지만, 갓 사회에 나와 보호자 없이 혼자 자립해야 하는 시설퇴소청년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빈곤 및 다양한 갈등이나 분쟁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면서 관계기반의 서비스가 결합되는 방식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들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청소년쉼터 퇴소청년들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기간이 만료되거나 앞서 언급한 기관 이외의 타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기존 퇴소시설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퇴소시설과 관계없이 시설퇴소청년의 필요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원과 복지서비스가 결합되는 관계기반의 사례관리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거 지원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지원주택 물량을 확보하고 주거지원 인력을 확충하여 전담기관에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4) 심리·정서 영역

(1)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지원 확대

우울증상을 가진 시설퇴소청년은 최근 3년간 4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타인과 고립되어 6개월 이상 생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도 4명 중 1명 수준이었다. 최근 1년간 자해 경험 및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지만 상담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약 10명 중 1명 수준이었다. 이에 자립지원기관 등에서는 지역 내 정신과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하거나 외부의 후원을 받아 공모사업으로 병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기자가 많아 위기에 처한 청년들이 긴급하게 이용하기 어렵고 24세 이상의 청년은 연령 제한으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후원을 받아 병원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비용과 기간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 의뢰 시 가족 동의 문제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결과〉

- 우울증상 있음 24.1%
- (신규 패널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 없이 6개월 이상 생활한 경험: 현재 하고 있음(5.3%), 과거 경험 있음(19.2%)
 - 다른 사람과 관계 없이 6개월 이상 생활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은둔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51.9%), 5년 이상(13.0%)
- 최근 1년간 자해 경험: 9.0%
-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나 상담받지 못한 경험률: 11.0%
- 최근 1년간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약물 사용 경험률: 14.9%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부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으로 확대하여 나이 및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총 8회기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에게는 본인부담률을 0%로 규정하여 비용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시설 외 청소년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은 이러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서비스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자해, 자살 시도 및 행동과 같은 문제를 가진 고위험 청년들은 숙련자의 지속적인 상담과 관찰이 필요하여 8회기의 서비스만으로는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리·정서적으로 위기 상태에 놓인 시설퇴소청년들의 경우 개인의 위기도와 취약성에 따라 상담기간을 연장 가능토록 하여 안정적인 심리·정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행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0%로 경감한 제도를 시설퇴소청년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도: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 서비스 비용: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1에서 2024년 10월 21일 검색.

(2) 자조모임 및 멘토링을 통한 사회 지지망 구축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 중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드물게 그렇다~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청년은 전체의 32.1%였고, 항상 고립되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8.8%에 불과하지만 최근 3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집단의 청년들에게서 고립감을 3년 이상 느꼈다는 응답자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지지체계가 빈약한 시설퇴소청년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제한하다가 고립감이 깊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고립감으로 인해 우울 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보다 심화되기도 한다. 이들이 고립에서 나아가 은둔에 이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관계 문제이기도 하다. 주류집단과의 일상적인 교류에서 편견에 부딪혔던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과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과의 만남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퇴소청년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기도 한다.

〈연구결과〉

- 타인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낌: 32.1%
- 항상 타인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낌: ('22)6.4%→('23)7.6%→('24)8.8%
- 경제수준에 따른 고립감(항상 그렇다)의 차이: 하(12.1%)>중(3.7%), 상(3.8%)
-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된 감정을 느낀 기간: 6개월 미만 37.6%, 3년 이상 25.7%, 6개월 이상 1년 미만 16.5% 등의 순
-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6개월 이상 생활한 경험(은둔 경험) 여부: 현재 그렇다 5.3%, 과거에 경험이 있다 19.2%
- 경제수준에 따른 현재 은둔 상태 차이: 하(6.5%)>중(4.0%)>상(1.4%)

시설퇴소청년들이 개인적인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받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시설퇴소청년들이 당사자성을 지닌 또래나 자립에 성공한 선배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지역별 자조모임 조직을 지원·활성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고립이나 은둔 상태에 있는 시설퇴소청년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초기에는 시설퇴소청년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시설퇴소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독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멘토링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여 삶의 모델이 되어

출 지역의 '좋은 어른'과의 만남을 지원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조모임이나 멘토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설퇴소청년 당사자와 멘토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멘토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자립선배, 기업퇴직자, 지역 사회 봉사자, 자립지원기관 종사자 등이 시설퇴소청년들의 특징 및 상황을 이해하고 '좋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멘토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멘토링 기간이나 횟수, 연락주기, 활동 범위 등을 담은 활동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퇴소청년이 소정의 교육 및 훈련을 받은 후 자립을 시작하는 후배와 연계하여 자립서비스 연결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지원 선후배 간 관계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퇴소청년 당사자가 자립지원 준(準)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승경, 백혜정, 2023).

(3) 자해와 자살 예방을 위한 연계기관 간 핫라인 설치

자해와 자살 충동 등을 호소하는 청년들은 주로 심야시간에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담이 가장 필요한 심야시간에는 상담기관이 운영을 하지 않아 자해 및 자살 충동을 느끼는 대부분의 시설퇴소청년들은 평소 자신과 라포가 형성된 지원기관의 사례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지원기관 사례관리자들의 시간 외 업무 및 자해·자살 사건 등과 관련한 책임이 가중⁷⁹⁾되는 실정이다. 자해 및 자살 행동은 응급상황이므로 이를 위해 사례관리자가 24시간 대기하며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기 설치된 위기상담 대응기관과 핫라인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1차적인 대응을 수행한 후 이후 자립지원기관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수행하거나 상담기관으로 연계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79)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2024.10.10.-11) 결과

〈제도: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 지원 서비스〉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¹⁾
 - 자살예방 통합 상담전화 109, SNS 상담창구로서 365일, 24시간 운영
 - 마들랜 어플리케이션(APP),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속 가능
- 현행 정신건강상담전화 체계도²⁾



* 출처:

- 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 홈페이지. <https://www.129.go.kr/etc/madlan>에서 2024년 10월 14일 검색.
-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40100>에서 2024년 10월 14일 검색.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와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을 운영 중이며,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하여 시·군·구별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과 지지, 정신건강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의 경우 발신 시 휴대전화 이용자 기준 가까운 기초 및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며, 야간 및 공휴일의 경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각 자립지원기관은 1차 위기대응기관인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자해 및 자살위험군 청년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위기 시 해당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도록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해 및 자살위험군에 속하는 청년의 발굴 및 사회적 지지 방안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립지원기관 간 관련 인력들 간의 업무협조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상호부조 사업 모형 개발

시설퇴소청년 중 신체·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 (12.6%) 중 질병 치료를 위해 진료를 받지 않거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년이 3분의 1을 상회하였으며 이들 응답자는 의료비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비가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

- 신체·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여부: 어려움 있음 12.6%
-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자 중) 질병 치료 경험: 병원 진료 없이 막만 복용 9.9%,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음 27.8%
-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응답자 중)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병원비가 없어서 57.1%, 귀찮아서 32.5%, 시간이 없어서 27.8%
- 시설퇴소청년이 인지한 의료급여 수급 여부와 행정데이터상 수급 여부 간 정합성 분석 결과, 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 10.5%

아동보호시설 퇴소청년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에 한해 보호종료 후 5년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경감토록 하였다. 대상이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에 국한되어 있어 타 시설퇴소청년들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어 2차년도 연구에서 대상의범위를 유사한 상황에 처한 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으로 포괄·확대하되 개인의 취약성과 위기도를 반영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백혜정 외, 2023: 230).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시설퇴소청년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시설퇴소청년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안전망을 조성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의료상호부조 사업'을 고안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청년연대은행에서 추진 중인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의료상호부조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기존의 보험제도에 가입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일반 보험료보다 적은 비용을 매달 적립하여 스스로 조성한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시설퇴소청년이 조합을 결성하여 의료상호부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조모임과 유사한 형태로 조합원 상호 간 연대활동을 통한 관계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군구 단위의 시설퇴소청년 자조모임에서 조합을 결성하여 상호부조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설퇴소청년들 스스로가 서로에게 안전망과 지지체계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청년연대은행 '토닥'의 의료상호부조 사업〉

-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의료상호부조 사업
- 월 1,000원으로 (연1회 한) 살해+질병+상조 30만원 지원
- 의료급여가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거나, 생활고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천원의 행복 소개

(연 1회 한) **상해+질병+상조 30만원**
월 1,000원으로 생활안전망 조성



든든한
생활 안전망

+

협동
상호부조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조합원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스스로 조성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자차적인 생활 안전망을 만들자!

- ◆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충실
- ◆ 상호간의 연대활동 · 관계 확장 도모
- ◆ 지역조합의 활동력 강화 사업
- ◆ 전국적으로 규모화된 상호부조사업

스스로를 돕는 공동체를 넘어 다른 이들과 나누는 공동체

천원의 행복 운영 원리



300명 X 월 1,000원

300명의 우리 주민들이 1,000원의 부조를 통해 매월 1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상호부조금 지급 원칙

천원의 행복 가입 후 30일 후부터 효력 발생

계약기간 내 발생한 질병 · 상해 중 한 부분만 보장

가망증은 보장되지 않지만, 가망증으로 인한 합병증은 보장

본인부담 병원비 30만원 한도 내 지급(당해년도 내)
(의료급여 수급자: 5만원이상 / 의료급여 비수급자: 10만원이상)

보장 예외사항 - 약관 7조
(외모 개선 목적 의료비, 치아, 한약재 등)

스스로를 돕는 공동체를 넘어 다른 이들과 나누는 공동체

* 출처: 청년연대은행 홈페이지.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의료상호부조 사업.
<https://todakbank.org/74>에서 2024년 10월 14일 검색.

5) 여가·문화 영역

(1) 여가·문화 생활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연계

〈연구결과〉

-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
 - 여가보다 일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응답률 : 시설퇴소청년(42.5%) > 일반청년(24%)
 - 희망하는 여유시간 활용방법:
 - : 추가적인 경제활동 - 시설퇴소청년(11.9%) > 일반청년(7.1%)
 - : 개인휴식 - 시설퇴소청년(12.6%) > 일반청년 (3.5%)
- 자립(지원)수당으로 인한 여가·문화 생활의 개선 정도
 - 공부·독서·취미생활 등의 개인 시간 증가(18.6%)
 - 사회적 교류 증가(14.4%)
- 지난 1년간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을 하지 못한 이유:
 - 경제적 부담 때문에: 32~37% ※ 일반청년의 경우 16~18%(정세정 외, 2022)
 -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10~13% ※ 일반청년의 경우: 5~9%(정세정 외, 2022)
- 여가·문화 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행복도·삶의 만족도 증가

여가·문화 생활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은 시설퇴소청년들 중 상당수가 주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여가·문화 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시행 중인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지원)수당, 자산형성지원 등의 제도들은 시설퇴소청년들에게 삶의 여유와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 지원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들이 퇴소시설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범위, 액수 등에서 편차를 보임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이에 퇴소시설이 아닌 개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여가·문화 활동은 일상생활의 활력소로 시설퇴소청년들의 정신건강 및 삶의 만족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들의 여가·문화 활동 진작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시설퇴소청년들의 여가·문화 생활 진작을 위해서는 활동 바꾸어 제공, 지역 기반 소집단 여가·문화 활동 지원 등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현장전문가들은⁸⁰⁾ 시설퇴소청년들이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시설퇴소청년 외 포래와의 어울림을 어려워하거나 스스로 여가·문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보는 경험의

80)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2024.10.10.~11) 결과

부족으로 선뜻 활동에 나서기가 쉽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기존의 잘 짜인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탐색에서부터 실천, 동아리나 소규모 모임 결성 및 가입, 혼자 즐기기 등 전반에 걸친 자조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많은 각 지자체 내 청(소)년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소)년기관과의 연계 활동 시 단계별로 시설·퇴소 청년 간의 소규모 모임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설 경험이 없는 청년과의 모임으로 점차 사회적 관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는 시설·퇴소청년들이 시설 경험이 없는 청년과의 모임에서 이질감이나 위축감 등을 느끼기 쉽다는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단계적 경험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6) 자립생활 지원 영역

(1) 공적 지원 대상의 확대 및 지자체 자립지원 대상 심의제도의 개선

〈연구결과〉

- 자립(지원)수당으로 인한 생활의 긍정적 변화
 - 저축 증가 및 부채 감소(26.2%)
 - 공부·독서·취미생활 등의 개인 시간 증가(18.6%)
 - 사회적 교류 증가(14.4%): 경제적 수준이 어려운 집단에서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음
- 자립(지원)수당 수령은 개인의 심리·정서 및 경제적 안정, 자립성취도에 긍정적 효과
 - 우울: 수령 중 > 과거에 수령 > 수령한 적 없음
 - 행복도·삶의 만족도: 수령 중 > 과거에 수령/수령한 적 없음
 - 결식 경험: 수령자 < 비수령자
 - 자립성취도에 대한 인식: 수령자 > 비수령자
- 다양한 공적 지원제도와 사회·정서 간의 관계
 - 우울·고립 정도: 디딤씨앗통장 수혜자 < 비수혜자
 - 삶의 만족도: 디딤씨앗통장 수혜자 > 비수혜자
 - 사회 참여 효능감: 자산형성지원제도 수혜자 > 비수혜자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통계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립(지원)수당 지급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적 지원제도들은 시설·퇴소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포함한 삶의 질과 행복도, 삶의 만족도 향상을 가져오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즉 시설·퇴소 자립준

비청년의 자립에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에 적절한 공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지 퇴소시설 유형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공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일례로 시설퇴소유형별 경제적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자립(지원)수당의 경우 아동시설 퇴소청년의 21.6%만이 수령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청소년시설의 경우는 63.2%,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경우는 71.5%가 수령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퇴소시설 유형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 지원이 필요한 시설퇴소청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최근에는 기존의 18세 이후에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이들만을 자립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한정하던 것을 15세~18세 이전 조기퇴소자들까지로 확대하였다.⁸¹⁾ 그러나 뒤늦게 발굴되어 시설 입소 경험이 없거나 보호이력이 짧은 청년, 「아동복지법」상 복지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생활한 청년 등은 여전히 자립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특히 법무부 산하의 청소년자립생활관 퇴소청년들은 우범 또는 범법을 이유로 자립지원이 필요함에도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소년보호이력이 있는 이들도 필요하다면 자립지원을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립지원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자립지원 대상의 청년들을 복지부, 여가부, 법무부 산하의 자립지원시설 및 기관종사자들이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청(소)년, 또는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시설의 보호이력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에서 자립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아동(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부분적으로나마 필요한 자립지원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그림 VI-3].

8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2.8.).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아동복지법 개정(2.9.시행)으로 18세가 되기 전 다른 법률상 시설 입소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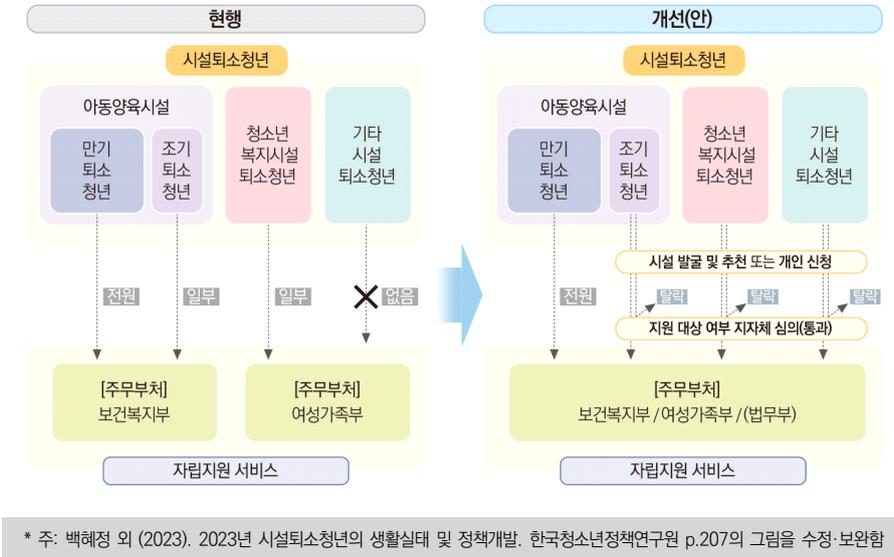


그림 VI-3. 시설퇴소청년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절차 개선(안)

(2) 자립수준 향상을 위한 자립수준 평가 및 단계적 자립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연구결과〉

- 자립성취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증가
- 자립기술평가 총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고립감 감소, 참여 효능감·미래 및 신체건강 등에 대한 인식 등이 긍정적

자립성취도에 대한 인식이나 자립기술평가 점수는 자립과 삶의 질 사이에는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자립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시설퇴소청년은 자립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시설퇴소청년 대상 자립지원은 자립수당 등 경제적 지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립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자립성취도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자립기술평가 총점이 낮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립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즉, 자립기술평가 집계 점수를

바탕으로 한 대상별 차별화된 자립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자립기술평가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으나 자립지원 대상의 확대를 고려한다면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도 이러한 평가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지표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평가 지표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3) 시설퇴소청년의 지원제도 정보접근성 강화

실태조사 및 현장종사자 FGI 결과 시설퇴소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제도나 서비스에 대한 기본정보나 지원 자격, 지원 절차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시설퇴소청년이 인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와 행정데이터상 수급 여부 간 정합성을 분석한 결과 실제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비수급자라고 인지하여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결과〉

- 시설퇴소청년이 인지한 의료급여 수급 여부와 행정데이터상 수급 여부 간 정합성 분석 결과
 - 생계급여 수급자이지만 생계급여를 비수급하고 있다고 인지한 경우 4.7%
 - 의료급여 수급자이지만 의료급여를 비수급하고 있다고 인지한 경우 8.7%
 - 주거급여 수급자이지만 주거급여를 비수급하고 있다고 인지한 경우 10.8%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공공이나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각종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다양화되고 있으나, 지원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개인의 정보수집 및 자료 활용 능력에 따라 지원혜택을 얻는 정도에 편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현재 부처별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 부처별 정보제공 사이트 간 연계를 통해 정보접근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퇴소청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메뉴를 구성하고 정책 용어가 아닌 쉬운 용어를 활용하여 서비스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포털 사이트에 신청 기능을 탑재하여 서비스 내용 확인-신청-결과 확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윈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서비스 영역 설정 시 해당 영역 서비스에 대한 알림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제도: 정부의 서비스 정보 제공 사이트〉

- 복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검색 및 신청 서비스(보건복지부)
- 자립정보ON: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후원사업 등 소개(보건복지부)
- 자립해냄: 취업지원제도, 청소년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쉼터 입소 가능 여부, 자립준비 수준 진단, 전문가 상담 연결 등(여성가족부)
- 청년포탈: 청년정책 정보 제공,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 소개, 지자체 청년정책 플랫폼 연계 등(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로’의 경우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검색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인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은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가입 시 중앙부처의 복지사업 및 서울시의 일부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1.22.). 복지멤버십은 온라인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입해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시설퇴소청년들의 경우 자신이 서비스 수혜 대상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퇴소 시 복지멤버십에 당연 가입토록 하고 개인이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을 거부하는 방식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2.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추진과제(안)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기회 보장(관계부처 합동)		추진 기간	주무부처
1. 기본 방향	1. 1.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개인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1.1.1. 지자체 중심의 자립지원체계 강화	중장기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지자체
		1.1.2. 지원격차 완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 지원방식으로서의 전환	단기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1.2. 성인으로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연속성 있는 지원정책 수립	1.2.1. 자립 이전 일상생활 경험 중심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확대	단기 관계부처
		1.2.2. 사회적 지지체계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 마련	단기 관계부처
	1.3.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대상의 성인기로의 이행 지원 강화	단기 복지부	
2. 영역별	2.1. 고용·근로 영역	2.1.1.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단기 고용부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기회 보장(관계부처 합동)		추진 기간	주무부처	
정책 과제	2.2. 경제영역	2.1.2.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 및 근로기초훈련 마련 및 제공	단기	고용부
		2.2.1. 관계기반의 금융모델 보급	단기	금융위 지자체
	2.3. 주거영역	2.2.2. 시설퇴소청년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 모색	단기	금융위 지자체 관계부처
		2.3.1. 청년의 삶의 형태와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지원 방안 모색	단기	국토부
	2.4. 심리·정서 영역	2.3.2. 관계기반의 주거지원통합서비스 확충	중장기	국토부 관계부처
		2.4.1.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지원 확대	단기	복지부 관계부처
		2.4.2. 자조모임 및 멘토링을 통한 사회 지지망 구축	단기	관계부처 지자체
		2.4.3. 자해와 자살 예방을 위한 연계기관 간 핫라인 설치	단기	복지부 여가부
	2.5. 여가·문화 영역	2.4.4.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상호부조 사업 모형 개발	단기	복지부 지자체
		2.5.1. 여가·문화 생활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연계	단기	문체부 관계부처
	2.6. 자립생활 지원 영역	2.6.1. 공적 지원 대상의 확대 및 지자체 자립지원 대상 심의제도의 개선	중장기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지자체
		2.6.2. 자립수준 향상을 위한 자립 수준 평가 및 단계적 자립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단기	관계부처
2.6.3. 시설퇴소청년의 지원제도 정보접근성 강화		단기	국무조정실	

○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2024).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 서울특별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 고수안(2023). **자립준비청년의 시설퇴소 후 자립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질적연구 : -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관계부처 합동 (2022.11.17.).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한 동행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 (2023).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시민권과 참여-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승경, 백혜정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서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 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2022).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김성아, 정소연, 이우태, 이상정, 박광옥 (2022). **청년종합연구 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광옥, 이기연, 이복실, 안예지 (2022).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혜정, 김지연, 김승경, 김이배, 노혜진, 김성아, 박광옥 (2023). **청년종합연구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혜정, 김지연, 김승경, 노혜진 (2023).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법무연수원 (2024). **2023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보건복지부 (2024).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1.22.). **“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안내, 80종에서 83종으로 확대 - - 서울 거주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6종의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시작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2.8.).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아동복지법 개정(2.9.시행)으로 18세가 되기 전 다른 법률상 시설 입소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2023 자립지원 표준화프로그램**.

아동권리보장원 (2024). **2024 자립정보북** 같이 쓰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지원본부 자립지원부.

여성가족부 (2024).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II)**.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여성가족부 (2024). 내부자료.

인천시청소년자립지원관 (2024). **청소년 자활작업 안내자료**(내부자료).

임희진, 황여정, 유성렬 (202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I: 후기청소년**.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세정, 김문길, 김태완, 김동진, 김성아, 이원진, 이혜정, 임덕영, 함선유, 류진아, 홍성운 (202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 류진아, 강예은, 김성아, 함선유, 김동진, 임덕영, 신영구, 김문길, 이혜정, 김기태, 김태완, 이원진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4). 내부자료.

한국소년보호협회 (2024). **2023년 협회 월간현황 통계**(내부자료, 법무부 제출).

한국소년보호협회 (2024). **보호사업팀 장학사업 결과보고서**(내부자료).

■ 인터넷 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 (2024.1.24.). **보호소년 · 위탁소년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에서 2024년 4월 26

일 검색.

경기도청 홈페이지 (2024.1.31.).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07844671&bsIdx=464&menuId=1536&bcIdx=520>에서 2024년 10월 21일 검색.

경상남도청년 정보플랫폼 홈페이지 (2024.1.17.). https://youth.gyeongnam.go.kr/youth/board.es?mid=a10501020000&bid=0006&act=view&list_no=2868&tag=&nPage=10&cg_code=에서 2024년 10월 14일 검색.

교육부 홈페이지 (2024.2.26.). 2024 파란사다리 사업 참여대학 모집 공고.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61&boardSeq=9817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502&opType=N>에서 2024년 5월 2일 검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21.12.30.). '2024학년도부터 대학 모집인원 10% 이상 사회적배려 대상자 선발'.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7486>에서 2024년 5월 2일 검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24.2.7.).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월 50만원 지원 받는다.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672>에서 2024년 4월 26일/9월 30일 검색.

더나은 미래 홈페이지 (2023.10.10.). 여가부, 가정밖청소년 지원 강화... 자립수당 최장 5년 지급. <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81048>에서 2024년 9월 30일 검색.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 홈페이지. <https://www.129.go.kr/etc/madlan>에서 2024년 10월 14일 검색.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4.2.7.).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211&tag=&nPage=1에서 2024년 4월 29일 검색.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4.6.2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에서 2024년 10월 2일 검색.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4.5.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 결과 공고.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200&bid=0003&act=view&list_no=1481293에서 2024년 5월 7일 검색.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3.6.21.).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40100> 에서 2024년 10월 14일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1에서 2024년 10월 21일 검색.

서울신문 (2024.5.17.). **아동보호시설 아동 10명 중 4명 '특수욕구아동'...ADHD 23.9%로 최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welfare/2024/05/17/20240517500132>에서 2024년 10월 21일 검색.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사업 소개.**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5&cntntsId=1142>에서 2024년 10월 2일 검색.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2024.2.8.). **2022년 자립준비청년 현황.**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469&bbsId=1127&nttSn=6529&catGori=all&tabName=all>에서 2024년 4월 25일 검색.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아동자립지원.**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4&cntntsId=1083>에서 2024년 9월 27일 검색.

연합뉴스 (2024.6.23.). **"그냥 쉬는" 청년 40만, 또 증가 전환...역대 두번째로 많아.**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2035700002>에서 2024년 9월 23일 검색.

온통청년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에서 2024년 5월 2일 검색.

청년연대은행 홈페이지 (2024.6.14.).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의료상호부조 사업.** <https://todakbank.org/74>에서 2024년 10월 14일 검색.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s://www.lh.or.kr/main/>에서 2024년 5월 3일 검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https://www.ssis.or.kr/index.do>에서 2024년 9월 6일 검색.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https://www.kjpa.or.kr/>에서 2024년 5월 8일 검색.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청소년자립생활관.** <https://www.kjpa-e.or.kr/53>에서 2024년 4월 26일 검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https://www.nypi.re.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30018&menu_nix=g1XP6VLx에서 2024년 9월 2일 검색.

■ 국외문헌

- Berlin, K. S., Williams, N. A., & Parra, G. R. (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part 1):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174-187.
- Clark, S.L. (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A.
- Funk, M. J., Westreich, D., Wiesen, C., Stürmer, T., Brookhart, M. A., & Davidian, M. (2011). Doubly robust estimation of causal effect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73*(7), 761-767
- Muthén, B.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Growth Mixture Modeling and Related Techniques for Longitudinal Data. In D. Kaplan (E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 Muthen, L.K., & B.O. Muthen.(2007). "What Is a Good Value of Entropy". Retrieved from <http://www.statmodel.com/discussion/messages/13/2562.html?1237580237>.
- Sherraden, M.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 E. Sharp.

■ 법령 ·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폭력방지법)」 [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일부개정]

「소년법」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아동복지법」 [법률 제20101호, 2024.1.23.,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20290호, 2024. 2. 13., 일부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611호, 2023.4.7., 일부개정]

「청년기본법」 [법률 제19253호, 2023.3.21., 일부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9761호, 2023.10.24., 일부개정]

○ — 부 록

부 록

■ 조사지

2024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요구와 일반 청년 대비 생활 영역의 격차를 분석하여 사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하신 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설문 내용은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이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과 아동·청소년기에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에서 다년간 생활한 후 퇴소하여 자립지원을 받거나 받고 있는 만 19세 이상 청년을 의미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의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연구 문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승경 선임연구위원 044-415-2130

■ 조사 문의 : ㈜한국리서치 여론 1본부 박종경 수석 080-430-1000

조사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SQL. [조사 참여 동의]

-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1. 동의
- 2. 비동의

SQ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관련 의견 수렴, 공적 서비스 수혜 내역 확인 및 답례품 제공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역,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 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동의
- 2. 비동의

[모작: 둘 중 하나라도 비동의 시, 확인창 : 동의하지 않을 시, 조사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으신가요?]

[모작: 둘 중 하나라도 비동의 시, 스크린 아워]

// I. 일반 사항 //

문1. 귀하의 이름이 **IDB (본인 이름)**이/가 맞으십니까?

1. 맞다 → **문1-2**
2. 아니다
3. 개명하여 현재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로직: 기존1 & 기존2 패널만 본 문항 노출]

[로직: 1번 선택 시, 문1-1에 기존 데이터 승계]

문1-1. 귀하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1. ()

문1-2 귀하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IDB (본인 생년월일)**이/가 맞으십니까?

1. 맞다 → **문2**
2. 아니다

[로직: DB (생년유무)=1 패널만 본 문항 노출]

[로직: 1번 선택 시, 문1-2-1에 기존 데이터 승계]

문1-2-1. 귀하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언제인가요?

1. ()년 [로직: 1990 to 2008]
2. ()월 [로직: 1 to 12]
3. ()일 [로직: 1 to 31]

[로직: 드롭다운방식으로 선택]

문2. 귀하의 성별이 **IDB (성별)**이/가 맞으십니까?

1. 맞다 → **문3**
2. 아니다

[로직: 기존1 & 기존2 패널만 본 문항 노출]

[로직: 1번 선택 시, 문2-1에 기존 데이터 승계]

문2-1.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1. 남자
2. 여자

문3.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IDB (시도) (시군구)**이/가 맞으신가요?

1. 맞다 → **문4**
2. 아니다

[로직: 기존1 & 기존2 패널만 본 문항 노출]

[로직: 1번 선택 시, 문3-1에 기존 데이터 승계]

문3-1.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1. 시·도: ()
2. 시·군·구: ()

[로직: 드롭다운방식으로 선택]

문4. 현재 귀하의 주거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 직장, 학업 등을 이유로 주중에만 따로 살거나, 잠깐 따로 사는 경우는 "함께 살고 있다"로 응답해 주세요.
※ 반려동물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1. 혼자 살고 있다 → 문6
2. 함께 살고 있다

문4-1. 현재 귀하의 주거지에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중복 선택 가능) **[복수]**

※ 직장, 학업 등을 이유로 주중에만 따로 살거나, 잠깐 따로 사는 경우는 "함께 살고 있다"로 응답해 주세요.
※ 반려동물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1. 부모(새아버지, 새어머니 포함) //선택 시 활성화// ()명 [로직: 1 to 2]
2. 형제 //선택 시 활성화// ()명 [로직: 1 to 5]
3. 친인척, 조부모 //선택 시 활성화// ()명 [로직: 1 to 10]
4. 배우자 (※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사실혼 포함) //선택 시 활성화// ()명 [로직: 1명으로 자동 코딩]
5. 자녀 //선택 시 활성화// ()명 [로직: 1 to 5]
6.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등 //선택 시 활성화// ()명 [로직: 1 to 10]
7. 기타() //선택 시 활성화// ()명 [로직: 1 to 10]

문4-2. 현재 귀하의 주거지에 함께 사는 사람은 총 몇 명인가요?

1. ()명

[로직: 문항 노출 없이 문4-1 응답 명 수의 총 합을 자동 코딩]

문4-3.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고 있나요?

※ 휴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돈을 버는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1. 맞벌이
2. 외벌이(본인)
3. 외벌이(배우자)
4. 둘 다 벌이가 없다

[로직: 문4-1=4(배우자가 있다)를 응답한 경우, 문항 노출 없이 자동 코딩]

[로직: 문9=1 or 2 & 문20에서 5 응답 있으면 문4-3=1로 코딩]

[로직: 문9=3 & 문20에서 5 응답 있으면 문4-3=3으로 코딩]

[로직: 문9=1 or 2 & 문20에서 5 응답 없으면 문4-3=2로 코딩]

[로직: 문9=3 & 문20에서 5 응답 없으면 문4-3=4로 코딩]

문5. 귀하와 함께 사는 사람 중에 **신체적·정신적 문제, 노령**으로 계속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함께 사는 사람: [제시: 문4-1]

1. 있다
2. 없다 → 문6

문5-1. 함께 사는 사람 중에 **신체적·정신적 문제,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중복 선택 가능) [selectshow: 문4-1] [복수]

1. 부모(새아버지, 새어머니 포함)
2. 형제
3. 친인척, 조부모
4. 배우자 (※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사실혼 포함)
5. 자녀
6.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등
7. 기타([제시: 문4-1 기타 응답])

문5-2. 귀하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주로 돌보고 있나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 [제시: 문5-1]

1. 내가 주로 돌본다
2. 나는 필요할 때 도와주고 주로 다른 사람이 돌본다
3. 나는 거의 돌보지 않는다

문6. 귀하는 이주배경정년에 해당하나요?

※ 이주배경 : 다문화가정(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경우)
북한이탈가정(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중도입국(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도중에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

1. 예
2. 아니오
3. 잘 모르겠다

[로직: 기준1 & 신규 패널만 본 문항 노출]

[로직: 기준2 패널은 문6에 기준 데이터(DB (이주배경)) 승계]

문7. 귀하는 지난 조사에서 최종 학력이 **[DB (학력)]** 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조사와 비교하여 현재 최종 학력에 변화가 있으신가요?

※ 학력 변화 : 재학 중이었다가 중퇴/휴학/졸업 등으로 변경된 경우
상위학교로 새로 입학한 경우(고졸 → 전문대/4년제, 대졸 → 대학원 등)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등

1. 있다
2. 없다 (지난 조사의 응답과 같음) → 문8

[로직: 기존1 & 기존2 패널만 본 문항 노출]

문7-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커스텀]**

※ 평생교육원 또는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위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율 유예 중인(졸업을 늦추는) 경우는 재학 중으로 응답해 주세요.
※ 검정고시 취득은 졸업으로 인정합니다.

학교급	재학	휴학	중퇴	수료/졸업
	1	2	3	4
1. 중학교 이하	1	1	1	1
2. 고등학교(미인가 대안학교 포함)	2	3	3	4
3. 전문대학(2-3년제)	5	6	6	7
4. 대학교(4-6년제)	8	9	9	10
5. 대학원(석사 이상)	11	12	12	13

[로직: DB (학력)이 1인 경우 문7-1 있는 그대로 노출]

[로직: DB (학력)이 2~3인 경우 문7-1 '중학교 이하' 미노출]

[로직: DB (학력)이 4~13인 경우 문7-1 '중학교 이하' 및 '고등학교(미인가 대안학교 포함)' 미노출]

문8. 귀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현재 받고 있나요?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 문9

[로직: 문8=4 선택 시, 복수 응답 불가]

문8-1.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포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이나 시설로부터 매달 평균적으로 받는 현금이나 물품의 금액을 응답해주세요.

1. 한달 평균 약 ()만원 **[로직: 0 to 1,000]**

[로직: 해당 문항 응답자는 본 문항으로 문21의 "4. 이진소득" 응답을 대체함]

//II. 고용//

문9. 귀하는 **지난 일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나요?

- ※ 일당 및 시간당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일을 한 경우도 **'일하였다'**에 응답해 주세요.
- ※ 직업이나 직종이 있지만 지난주에 일하지 않은 경우는 **'휴가 및 일시 휴직'**에 응답해 주세요.
- ※ 돈을 받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하였다'**에 응답해 주세요.

1. 일하였다
2. (일자리는 있었지만) 휴가 및 일시 휴직 상태였다
3. 일하지 않았다 → **문14**

문10. 귀하는 **지난 일주일간** 모두 몇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나요?

- ※ 투잡, 쓰리잡 등 여러 가지 일을 한 경우, 근무했던 일자리 개수를 모두 더해주세요.
- ※ 휴가 및 일시 휴직상태인 일자라도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예시) 지난주에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중단하고, 편의점 일을 새로 시작한 경우 : 2개
예시) 월수급 - 식당, 화목토 - 편의점에서 일을 한 경우 : 2개

1. 1개
2. 2개 이상 **//선택 시 활성화//** 총 ()개 [로직: 2 to 5]

문11. 귀하가 **지난 일주일간** 가장 많은 시간 일한 일자리부터 순서대로 응답해 주세요. (최대 3개)

- ※ 직장명은 **정식 명칭**을 작성해 주세요.
예시) 식당(X) → 하남돼지집 문정점(O)
예시) 자동차 회사(X) → 현대자동차 블루렌즈 대방점(O)
- ※ 내가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예시) 마스크 공장에서 제품 검사
예시) 카센터에서 자동차 수리 보조
- ※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장(일터)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 경우라도 2개 이상의 일을 했다면 응답해 주세요.

직장명	그 직장에서 내가 주로 하는 일
1. 첫 번째 일자리 ()	()
2. 두 번째 일자리 ()	()
3. 세 번째 일자리 ()	()

[로직: 문10에서 응답한 일자리 개수 만큼 제시 (최대 3개)]

[카테고리(문12~문13): 다음은 **지난 일주일간** 일했던 귀하의 첫 번째 일자리 관련 질문입니다.]

문12. [제시: **문11 첫번째일자리명**]에서 귀하의 고용형태는 무엇인가요?

1. 상용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기간 1년 이상)
2. 임시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3. 일용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 또는 일단위로 고용되어 임금(시급) 또는 일당제(시간제) 급여를 받는 사람)
4. 자영업자(창업, 개업, 프리랜서 등) → **문14**
5. 무급가족종사자(자영업자의 가족, 친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1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문14**

문12-1. [제시: 문11 첫번째일자리명]에서 귀하의 근로시간 형태는 무엇인가요?

1. 전일제
2. 시간제

문12-2. [제시: 문11 첫번째일자리명]에 고용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

1. 예
2. 아니오

문12-3. 귀하는 [제시: 문11 첫번째일자리명]에서 **주휴수당**을 받나요?

※ **주휴수당** :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 시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

1. 받았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지만 받지 못했다
3. 대상자가 아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4. 잘 모르겠다

문13. 귀하는 일주일 동안 평균 몇 시간 정도 일하나요? (**주업 및 부업 모두 포함**)

※ **일한 시간**

예시1) 하루 8시간, 1주일에 5일 일하면 $8 \times 5 = 40$ 시간

예시2) 일주일 중 2일만 일하고, 하루는 3시간, 하루는 5시간 일하면 $3 + 5 = 8$ 시간

1. 일주일 동안 평균 일하는 시간 : 약 ()시간 [로직: 1 to 99]

[로직: 응답 후 문14로 이동]

[카테고리(문14~문14-3): 지금부터는 **지난 1년 동안**을 기준으로 한 일자리 질문입니다.]

문14. 지난 일주일을 제외하고, **지난 1년 동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을 한 적이 있나요?

※ 직장(일자리)을 가져 본 경험은 계약직, 인턴, 일용직, 아르바이트, 창업 등도 모두 포함해 주세요.

※ **지난 1년 동안**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예"로 응답해 주세요.

1. 예
2. 아니오 → 문15 or 문17

[로직: 문9=3 & 문14=2 응답한 경우 문15로 이동]

[로직: 문9=1 or 2 & 문14=2 응답한 경우 문17로 이동]

[로직: 문12=4 or 5 & 문14=2 응답한 경우 문17로 이동]

문14-1. **지난 1년 동안** 주로 어떤 형태로 일을 했나요? 여러 형태라면 가장 오랫동안 일한 형태를 응답해 주세요.

1. 정규직 근로자(1개 직장에서 종일 근로)
2. 기간제 근로자(고용기간을 정하고 1개월 이상 근로)
3. 시간제 근로자(오전, 오후 등 파트타임으로 근로)
4. 비전형 근로자(일거리가 있을 때 며칠 또는 몇 주일씩 근로)
5. 초단기 근로자(일거리가 있을 때 몇 시간씩 근로)
6. 기타(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

문14-2. 지난 1년 동안 이직 경험이 있나요?

1. 없다
2. 있다 //선택 시 활성화// 총 ()번 [로직: 1 to 20]

문14-3. 지난 1년 동안 동시에 2개 이상의 일자리(직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1. 없다
2. 있다 //선택 시 활성화// 동시에 일한 일자리 수: 총 ()개 [로직: 2 to 10]

[로직: 문9=3 응답한 경우 문15로 이동]

[로직: 문9=1 or 2 응답한 경우 문17로 이동]

문15. 귀하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직장(일자리)를 가져 본 적이 있나요?

※ 직장(일자리)를 가져 본 경험은 계약직, 인턴, 일용직, 아르바이트, 창업 등도 모두 포함해 주세요.
※ 15세 이후,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예(가져보았다)"로 응답해 주세요.

1. 예, 직장(일자리)를 가져보았다
2. 아니오, 직장(일자리)를 가져보지 않았다 → 문16

[로직: 문14=1 or DB (직장경험)=1인 경우 문15=1로 자동 코딩]

문15-1. 가장 최근에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는 언제인가요?

1. ()년 [로직: 2010 to 2024]
2. ()월 [로직: 1 to 12]

[로직: 드롭다운방식으로 선택]

[로직: 2024년은 7월까지 응답 가능]

문15-2. 가장 최근에 일자리를 그만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학업을 계속하려고
2. 전공과 맞지 않아서
3. 적성에 맞지 않아서
4. 기술(기능)이 부족해서
5. 직장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6. 보수·승진 등에 불만이 많아서
7. 근무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
8. 직장(직무)에 미래가 없어서
9. 창업(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10. 폐업을 해서
11. 해고
12. 계약기간이 끝나서
13. 건강상의 이유로
14. 육아 및 가사 때문에
15. 기타 ()

문16. 귀하는 **지난 한 달간** 직장(일자리)을 **구해 본 적이** 있나요?

※ 창업 준비를 한 경우도 **예**로 응답해 주세요.

1. 예 → 문17
2. 아니오

문16-1. 다음 중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일할 의욕이 없어서 등)
3. 일을 하면 수급비(생계급여)가 끊겨서
4. 육아, 돌봄, 가사 활동을 해야 해서
5. 질병, 장애 등으로 몸이 아파서
6.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7. 진학 준비 중이어서(입시학원에 다녀서 등)
8. 취업을 위해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녀서
9. 군 입대 대기 중이어서
10.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11.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12.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13. 당분간 쉬고 싶어서
14. 기타 ()

문17. 귀하는 지금까지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척도]Stepbystep**

※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위험한 근로환경' : 기계 등의 진동·소음·연기·먼지가 심한 환경, 실내/실외 관계없이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환경, 화학제품·폐기물·실험물질 등을 흡입·접촉·취급하는 환경 등

문항	없다	있다	모르겠다
	1	2	3
1. 일하는 동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나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2.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적 있다			
3. 일하는 동안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친 적이 있다			
4. 산업재해보험 급여(병역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보상금 등)를 받은 적이 있다			

[로직: 문9=1, 2 or 문14=1 or 문15=1 or DB (직장경험)=1인 경우만 본 문항 노출, 최상위 로직]
 [로직: DB (산업안전1~4)=각 1인 경우 문17 각 항목 있는 그대로 노출]
 [로직: DB (산업안전1~4)=각 2인 경우 문17 각 항목 2로 자동 코딩]
 [로직: 모두 자동 코딩인 경우는 본 문항 미노출(DB (산업안전1~4)=모두 2)]

문18. 귀하는 지난 조사에서 "15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진학 준비나 취업 준비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총 **IDB (년2) (개월2) or (일2)** 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조사 이후인 **2022년 8월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1주일을 넘긴 적이** 있나요?

- 1. 있다 → 문18-3 or 문19
- 2. 없다 → 문19

[로직: 기존1 패널인 경우만 본 문항 노출]
 [로직: DB에서 (년2) (개월2) 과 (일2) 중에 값이 있는 쪽을 보여주면 됨]
 [로직: 문16=1 & 문18=1인 경우 문19로 이동]
 [로직: 문16=2 & 문18=1인 경우 문18-3으로 이동]
 [로직: 문16=미응답 & 문18=1인 경우 문19로 이동]

문18-1. 귀하는 지난 조사에서 "15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진학 준비나 취업 준비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총 **IDB (년2) (개월2) or (일2)** 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조사 이후인 **2023년 8월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1주일을 넘긴 적이** 있나요?

- 1. 있다 → 문18-4 or 문19
- 2. 없다 → 문19

[로직: 기존2 패널인 경우만 본 문항 노출]
 [로직: DB에서 (년2) (개월2) 과 (일2) 중에 값이 있는 쪽을 보여주면 됨]
 [로직: 문16=1 & 문18-1=1인 경우 문19로 이동]
 [로직: 문16=2 & 문18-1=1인 경우 문18-4로 이동]
 [로직: 문16=미응답 & 문18-1=1인 경우 문19로 이동]

문18-2. 귀하는 15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진학 준비나 취업 준비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1주일을 넘긴 적이** 있나요?

- 1. 있다 → 문18-5 or 문19
- 2. 없다 → 문19

[로직: 신규 패널만 본 문항 노출]
 [로직: 문16=1 & 문18-2=1인 경우 문19로 이동]
 [로직: 문16=2 & 문18-2=1인 경우 문18-5로 이동]
 [로직: 문16=미응답 & 문18-2=1인 경우 문19로 이동]

문18-3. 2022년 8월부터 지금까지 귀하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진학 준비나 취업 준비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선택(V)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 [로직: 선택시 활성화]
1. 1개월 미만	()일[로직: 7 to 31]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개월 동안[로직: 1 to 11]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1년 ()개월[로직: 0 to 10]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2개월)

[로직: 기존1 패널인 경우만 본 문항 노출]

문18-4. 2023년 8월부터 지금까지 귀하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진학 준비나 취업 준비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선택(V)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 [로직: 선택시 활성화]
1. 1개월 미만	()일[로직: 7 to 31]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개월 동안[로직: 1 to 10]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로직: 기존2 폐널인 경우만 본 문항 노출]

문18-5. 지금까지 귀하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진학 준비나 취업 준비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선택(V)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 [로직: 선택시 활성화]
1. 1개월 미만	()일[로직: 7 to 31]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개월 동안[로직: 1 to 11]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1년 ()개월[로직: 0 to 11]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년[로직: 2 to 20] ()개월[로직: 0 to 11]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로직: 신규 폐널인 경우만 본 문항 노출]

문19. 귀하는 최근 1년간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III. 경제//

문20.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중복 선택 가능) [복수]

함께 사는 사람: [제시: 문4-1]
[로직: 문4-1의 1~4보기만 노출, 5~7 노출 안함]

1. 본인 [로직: 문9=1 or 2번 선택, 3이면 비선택으로 자동 코딩, 보기 노출 안함]
2. 부모(새아버지, 새어머니 포함) [로직: 문4-1=1인 경우 제시]
3. 형제 [로직: 문4-1=2인 경우 제시]
4. 친인척, 조부모 [로직: 문4-1=3인 경우 제시]
5. 배우자 [로직: 문4-1=4인 경우 제시]
6. 이 중에 없음 [중복선택불가]

[로직: 문4-1 응답자만 본 문항 노출]

[로직: 문4-1 응답자 중 문4-1의 보기 5 or 6 or 7만 응답한 사람은 본 문항 노출하지 않음]

[로직: "1. 본인" & "6. 이 중에 없음" 모두 선택된 경우, "1. 본인"만 데이터에 반영]

문21. 귀하의(또는 귀하 부부의) **한달 평균 소득**은 얼마인가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각 항목에 응답해 주세요.

※ 퇴직금, (민간)보험금 받은 것,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들어온 기타 소득은 제외해 주세요.
 ※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 한달 평균 소득(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적어 주세요.
 ※ 소득이 없는 항목은 '0만원'으로 응답해 주세요.

구분	항목	한달 평균 소득
1. 근로 및 사업소득	근로자: 직장을 다니면서 벌어들인 소득 (세전 기준) 자영업자: 벌어들인 소득 중 손소득(총매출에서 사업비용을 뺀 금액)만 입력	약 ()만원 [로직: 0 to 1000]
2. 재산소득	재산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에서 대출이자, 관리비 등을 뺀 금액	약 ()만원 [로직: 0 to 1000]
3. 이전소득①	함께 살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매달 평균적으로 받는 현금이나 물품	약 ()만원 [로직: 0 to 1000]
4. 이전소득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이나 시설로부터 매달 평균적으로 받는 현금이나 물품	약 ()만원 [로직: 0 to 1000]
5. 총 소득 [자동합계]	근로 및 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①+이전소득②	약 ()만원 [로직: 0 to 4000]

[로직: 문8-1 응답자는 4. 이전소득② 수정 불가능]

[로직: 보기 전체를 0으로 응답한 경우 아래 확인창 노출]

[확인창: 귀하 또는 귀하 부부의 한달 평균 소득이 0만원이 맞으십니까?]

문22. 귀하(동거 가족 포함)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한달에 얼마 정도 지출**하나요?

※ 지출이 없는 항목은 "0만원"으로 입력해 주세요.
 ※ 할부 구매한 물품의 경우 월 할부금을 포함해 주세요. 예) 2023년 12월에 24만원 짜리 가전제품을 12개월 할부(월 2만원)로 구매한 경우 월 생활비에 2만원 포함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 지출 비용은 제외합니다.

구분	항목	한달 평균 금액
1. 식비	· 주식, 부식, 외식비, 간식비 포함. · 지원관, 생활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출이 있으면 기재	약 ()만원 [로직: 0 to 999]
2. 주거비 (월세)	보증금을 제외하고 월세로 지출한 금액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계약한 월세액'을 기입 · 연세를 내는 경우 연세를 12개월로 나누어 기입 · 일세를 내는 경우 일세 30일의 한계값을 기입 ·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0만원'으로 기입	약 ()만원 [로직: 0 to 999]
3. 주거관리비	· 전기료, 가스비, 상하수도 요금, 일반관리비, 주택수선비, 이사비, 복비 등 · 지원관, 생활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출이 있으면 기재	약 ()만원 [로직: 0 to 999]
4. 교육비	학비, 학원비, 기타교육비 등	약 ()만원 [로직: 0 to 999]
5. 통신비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인터넷 TV/유선방송 등	약 ()만원 [로직: 0 to 999]
6. 교통비	차량유지비(연료비, 수리비 등)나 대중교통비 등(자동차 구입비 제외)	약 ()만원 [로직: 0 to 999]
7. 오락·문화비	운동, 공연관람, 여행비, 취미활동비 등	약 ()만원 [로직: 0 to 999]
8. 비동거 가족 지원비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자녀, 친척 등에게 지출한 현금(용돈, 생활비 등) 및 물품	약 ()만원 [로직: 0 to 999]
9. 기타 생활비	생활용품·전자기기·가구·집화·의류·신발 구입비, 각종 세금, 기부금 등 ※ 재산 증식을 위한 지출(예: 저축)과 보험료,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예: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은 제외	약 ()만원 [로직: 0 to 999]
10 총 생활비 [자동합계]	해당 기간 지출한 한달 평균 생활비	약 ()만원

[로직: 자동합계=0인 경우 아래 확인창 노출]

[확인창: 귀하의 동거 가족을 포함한 한달 평균 생활비 지출이 0만원이 맞으십니까?]

문22-1. 귀하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자녀, 친척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1. 예

2. 아니오

[로직: 문22의 "8. 비동거 가족 지원비"가 1 이상인 경우만 본 문항 노출]

문23. 아래는 귀하께서 지난 조사에 응답해주신 채무 현황입니다. 지난 조사 대비 현재 **채무(및, 대출금 등)**에 변화가 있나요?

[표 제시: DB (채무현황1~8)]
[문23-2의 표에서 지난 응답값만 보여주는 형식]

1. 변화가 있다 → 문23-2

2. 변화가 없다 → 문23-3

[로직: DB (채무)=2 응답자만 본 문항 노출]

[로직: 문23=2인 경우, 기존 데이터 문23-2에 승계]

문23-1. 귀하는 현재 본인이 갚아야 할 **채무(빚, 대출금 등)**가 있나요?

1. 있다
2. 없다 → **문24**

문23-2. 채무(빚, 대출금 등)가 발생한 이유와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가요?

※ 갚아야 할 금액이 없는 항목에는 **"0만원"**으로 입력해 주세요.

채무(빚, 대출 등)가 발생한 이유	현재 갚아야 할 액수
1. 학자금(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등록금, 또는 사교육 등) 마련	약 ()만원 [로작: 0 to 99999] [로작: 자란 응답 (만원) 노출]
2. 주거비(잔월세, 관리비 등) 마련 ※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	약 ()만원 [로작: 0 to 99999] [로작: 자란 응답 (만원) 노출]
3. 생활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마련 ※ 햇살론 유스 대출 등	약 ()만원 [로작: 0 to 99999] [로작: 자란 응답 (만원) 노출]
4. 창업 자금 마련	약 ()만원 [로작: 0 to 99999] [로작: 자란 응답 (만원) 노출]
5. 가족의 빚을 넘겨받거나 가족이 내 이름(명의)으로 진 빚	약 ()만원 [로작: 0 to 99999] [로작: 자란 응답 (만원) 노출]
6. 보이스 피싱, 명의 도용, 소액 결제 등 범죄 피해	약 ()만원 [로작: 0 to 99999] [로작: 자란 응답 (만원) 노출]
7. 위 6가지 외 나머지 채무(빚, 대출금 등) ※ 주식, 채권, 가상자산(가상화폐 등) 투자를 목적으로 한 빚 포함	약 ()만원 [로작: 0 to 99999] [로작: 자란 응답 (만원) 노출]
8. 채무(빚, 대출금 등) 합계 [자동합계]	약 ()만원 [로작: 1 to 999999] [로작: 자란 응답 (만원) 노출]

[로작: 문23-1 응답자만 작년 응답값 노출]

[로작: 자동합계=0인 경우 아래 경고창 노출]

[경고창: 귀하는 현재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채무 금액을 응답해주세요.]

문23-3. 돈을 빌린 곳은 모두 몇 군데인가요?

돈을 빌린 곳	명수 또는 개수
1. 지인(친구, 선후배, 부모, 친척 등)	()명 [로작: 0 to 10]
2.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각종 장학재단, 주택공사, 은행, 카드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 등)	()개 [로작: 0 to 10]
3. 사금융(대부업체, 전당포, 사채, 소액결제 등)	()개 [로작: 0 to 10]
4. 총 개수 [자동합계]	()명/개 [로작: 1 to 30]

[로작: 드롭다운방식으로 선택]

[로작: 자동합계=0인 경우 아래 경고창 노출]

[경고창: 귀하는 현재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돈을 빌린 곳을 응답해주세요.]

문23-4.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 해당하나요?

1. 예
2. 아니요 → **문24**

문23-4-1. 귀하는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나요?

※ 신용회복 지원제도 :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빚, 대출금 등) 독촉에 시달리거나 신용불량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

1.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다
2. 과거에는 이용한 적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다
3. 현재 이용하고 있다

[로직: DB (신용회복)=1인 경우, 보기2 미노출]

[로직: DB (신용회복)=2~3인 경우, 보기1 미노출]

문24. 귀하가 매달 저축, 보험, 연금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저축(적금, 연금, 청약 등), 보험(실비, 자동차, 화재 등)의 월 합산액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포함
 ※ 사업장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저축(보험, 연금)을 하지 않는 경우 '0만원'으로 입력해 주세요.

1. 약 ()만원 [로직: 0 to 999]

문25. 귀하의 가구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현재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합계 소득을 기준으로 선택해 주세요. [단일척도]

최하	←	—	—	—	—	—	—	→	최상
1	2	3	4	5	6	7	8	9	10

문26.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척도][stepbystep]

항목	전혀 없었다	한 번 있었다	두 번 있었다	세 번 이상 있었다
	1	2	3	4
1. 돈이 없어서 휴대폰 요금을 내지 못했다				
2. 돈이 없어서 친구를 못 만나거나 외출하지 못했다				

//IV. 주거//

문27. 다음 중 귀하가 **생활한 경험이 있는 기관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복수]**

1. 양육시설(보육원)/그룹홈(공동생활가정)
2. 청소년쉼터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4. 청소년자립지원관
5. 소년원
6. 청소년자립생활관

문27-1. 생활했던 기관 유형별로 각각 **몇 군데에서 생활했는지** 응답해주세요. **[selectshow:문27]**

※ '쉼터A → 쉼터B → 쉼터A'로 이동한 경우, 3곳이 아닌 2곳으로 응답합니다.

생활했던 기관 유형	기관 수
1. 양육시설(보육원)/그룹홈(공동생활가정)	()곳 [로직: 1 to 5]
2. 청소년쉼터	()곳 [로직: 1 to 20]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곳 [로직: 1 to 5]
4. 청소년자립지원관	()곳 [로직: 1 to 5]
5. 소년원	()곳 [로직: 1 to 5]
6. 청소년자립생활관	()곳 [로직: 1 to 5]

[로직: 드롭다운방식으로 선택]

문27-2. 기관 유형별로 **생활했던 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selectshow:문27]**

생활했던 기관 유형	총 기간	
	년	개월
1. 양육시설(보육원)/그룹홈(공동생활가정)	()년 [로직: 0 to 30]	()개월 [로직: 0 to 11]
2. 청소년쉼터	()년 [로직: 0 to 30]	()개월 [로직: 0 to 11]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년 [로직: 0 to 30]	()개월 [로직: 0 to 11]
4. 청소년자립지원관	()년 [로직: 0 to 30]	()개월 [로직: 0 to 11]
5. 소년원	()년 [로직: 0 to 30]	()개월 [로직: 0 to 11]
6. 청소년자립생활관	()년 [로직: 0 to 30]	()개월 [로직: 0 to 11]

[로직: 드롭다운방식으로 선택]

[로직: 0년 0개월인 경우 아래 경고창 노출] [경고창: 거주한 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 응답해주세요.]

문27-3. 가장 최근까지 생활했던 기관을 선택해주세요. [selectshow:문27]

1. 양육시설(보육원)/그룹홈(공동생활가정)
2. 청소년쉼터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4. 청소년자립지원관
5. 소년원
6. 청소년자립생활관

[토직: 문27에서 보기 하나만 선택 시, 문항 노출 없이 자동 코딩]

문28.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는 무엇인가요?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가족의 명의(이름)로 되어 있으면 '자기'로 응답해 주세요. 무상거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1. 자기(본인이나 가족의 소유) → 문29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
4.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달방 포함)
5. 연세
6. 일세
7. 무상거주 → 문29

문28-1.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비(보증금, 월세, 관리비)는 어떻게 마련했나요? 가장 주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1. LH 등의 지원(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2. 자립청착금
3.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CDA)
4. 자립수당/자립지원수당
5. 주거급여
6. 자립지원관/자립생활관에서 지원
7. 금융기관에서 대출
8. 부모/가족/친척에게 빌려서
9. 민간단체에서 지원
10. 저축 또는 근로소득
11. 기타()

문29.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빌라, 다세대, 상가주택 등

1. 주택 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 문30
2.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3. 고시원
4. 비거주용 임시구조물(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5. 기숙사, 향토학사 → 문30
6. 기타() → 문30

문29-1. 그 곳에서 얼마나 살았나요?

※ 거주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0년 1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1. 총 ()년 [로직: 0 to 30]
2. ()개월 [로직: 0 to 11]

[로직: 드롭다운방식으로 선택]

[로직: 0년 0개월인 경우 아래 경고창 노출] [경고창: 거주한 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 응답해주세요.]

문30. 귀하는 최근 1년간 다음의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최도]

항목	한 번도 없었다	거의 없었다	몇 번 있었다	자주 있었다
	1	2	3	4
1. 경제적 어려움으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				
2.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운 여름에 냉방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				

문31. 귀하는 현재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아래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최도][stepbystep]

항목	있다	없다
	1	2
1. 2개월 이상 월세 연체(미납)		
2. 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미납)		
3.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연체(미납)		
4. 이사 또는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5. 가구원 중 이동, 장애인 등이 있어서 집을 구하기 어려움		
6. 주택 임류, 재개발, 임대차 계약 종료 해지 등으로 집에서 쫓겨나가거나 쫓겨날 위기에 처함		
7. 집주인과 수리,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음		
8. 보증금이나 월세를 5% 이상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거나, 재계약 요구를 거절당함		

[로직: 4개씩 끊어서 제시]

문32. 귀하는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다음의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나요? [최도][stepbystep]

항목	있다	없다
	1	2
1. 주거지원제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취약 주거지 개선 등)		
2. 청년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3. 주택금융(청년비타민 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등)		
4. 주택마련지원(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혼희망타운, 공공자가주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문32-1.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별로 필요가 없어서
2. 내 조건에 맞지 않아서
3. 내용을 잘 몰라서(정보가 없어서)
4. 기타()

[로직: 문32 항목 모두 '2. 아니요'를 응답한 경우만 응답]

//V. 건강 및 심리정서//

문33. 귀하는 **최근 2년간**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은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문34. 귀하는 **최근 1년간**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구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문35. 귀하는 **최근 1년간** 식비가 부족하여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나요?

1. 전혀 없었다
2. 1년에 3회 이하
3. 2~3개월에 1회 정도
4. 1개월에 1~2회 정도
5. 1개월에 3~4회 이상

문36.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척도][stepbystep]**

문항	전혀 없다	매일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2	3	4
1.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2.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3.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4.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5. 식욕이 줄었다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6.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7. 일상적인 일(예: TV 보기 등)에 집중하기 어렵다				
8.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다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기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9.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로직: 4개, 5개로 끊어서 제시]

문36-1. 그런 경험 때문에 일상생활(학업, 일,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이 있나요?

1. 전혀 어렵지 않다
2. 조금 어렵다
3. 많이 어렵다
4. 매우 많이 어렵다

[로직: 문36 항목 모두 보기 1번(전혀 없다) 응답자는 본 문항 스킵]

문37. 귀하는 다음과 같은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나요? [척도][stepbystep]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2	3	4
1.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문37-1.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라는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었나요?

1. 6개월 미만
2. 6개월 이상~1년 미만
3. 1년 이상~2년 미만
4. 2년 이상~3년 미만
5. 3년 이상

[로직: 문37의 4번 항목=2, 3, 4 응답자만 본 문항 제시]

문38. 귀하는 살아오면서 현재까지 6개월 이상 특별한 이유(학업, 업무, 장애 및 건강문제, 출산, 육아 등) 없이 방
이나 집에서 주로 머물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거의 맺지 않은 채 생활한 경험이 있나요?

※ 특별한 이유(학업, 업무, 건강, 출산 등 특정한 목적 또는 사유)로 인해 방 또는 집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없다 → 문39
2. 과거에는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 문39
3. 현재 하고 있다

[로직: 신규 폐널만 해당 문항 노출, 그 외는 문39로 이동]

문38-1. 그 상태가 지속된 기간은 총 얼마인가요?

1. 6개월 이상~1년 미만
2. 1년 이상~3년 미만
3. 3년 이상~5년 미만
4. 5년 이상~7년 미만
5. 7년 이상

문38-2. 그 상태가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2.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3.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4. 돈이 없어서
5. 게임, 인터넷에 몰입해서
6. 기타()

문39. 귀하는 **최근 1년간** 한 번이라도 자해를 한 적이 있나요?

※ 신체에 고의로 해를 가하는 행동을 했다면 **“있다”**에 응답해 주세요.

1. 있다
2. 없다

문40. 귀하는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진료)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 **문41**
3. 전문가의 상담(진료)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 → **문41**

문40-1. 전문가의 상담(진료)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정보 부족)
2. 주변에 상담(진료)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3. 혼자 가기 어려워서
4. 상담(진료) 비용이 부담돼서
5. 상담 받을 시간이 없어서
6. 정신의료기관(정신과, 상담기관) 등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
7. 주위의 시선이나 반대 때문에
8. 기타 ()

문41. 귀하는 **최근 1년간** 행동이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등)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 **문42**

문41-1. **최근 1년간** 약물 사용 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또는 더 활동적이 되거나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의사의 처방 없이(처방에 따르지 않고)**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문42. 귀하는 지난 조사에서 장애 여부에 **[DB (장애여부)]**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조사와 비교하여 현재 장애 여부에 변화가 있으신가요?

1. 있다
2. 없다 (지난 조사와 같음) → **문43**

[로직: 기존1 & 기존2 페널만 본 문항 노출]

[로직: 문42=2 응답자는 문42-1에 기존 데이터 승계]

문42-1. 귀하는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1.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 → **문43**
 2. 장애가 있으나 장애인 등록을 하지는 않았다
 3.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 → **문43**
- [로직: DB (장애여부)=1인 경우 보기 1번 미노출]**
[로직: DB (장애여부)=2인 경우 보기 2번 미노출]
[로직: DB (장애여부)=3인 경우 보기 3번 미노출]

문42-2.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는데 탈락해서
2.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싶지 않아서
3. 장애인 등록 절차를 잘 몰라서
4. 장애인 등록을 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서
5. 기타()

문43. 귀하는 현재 **신체나 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 **문44**

문43-1. **최근 1년간**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1. 병원 진료 후 치료 받고 있다(혹은 받았음) → **문43-2**
2. 병원 진료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르고 있다
3.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문43-1-1.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

1. 병원비가 없어서(경제적 문제)
2. 시간이 없어서
3. 병원이 멀어서
4. 많이 아프지 않아서
5. 건강보험이 없어서(보험료 체납 등)
6. 병원에 가기가 두려워서
7. 몸이 불편해서(이동 문제)
8. 귀찮아서
9. 어디로 가야할 지 몰라서(정보 부족)
10.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11. 기타()

문43-2. 지난 1년간 의료비로 대략 얼마나 썼나요?

1. 약 ()만원 **[로직: 0 to 9999]**

문44. 귀하는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미납 또는 연체(밀림)를 한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 **문45**

문44-1.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주된** 이유를 선택해 주세요.

1. 돈이 없어서
2. 건강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보험료 내는 방법을 몰라서 등)
3.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4. 귀찮아서
5. 기타()

문45.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1. 매우 나쁘다
2. 나쁘다
3. 보통이다
4. 좋다
5. 매우 좋다

//VI. 여가, 문화//

문46. 다음의 활동에 대한 귀하의 **지난 1년간의 경험**을 응답해주세요. **[척도||stepbystep]**

문 항	지난 1년간 했다	지난 1년간 안(못)했다
	1	2
1.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		
2.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3. 2~3일 정도의 여행		
4.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문46-1.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을 안(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2. 시간이 부족해서
3.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4. 공간, 지리적 문제로
5. 관련 경험, 지식, 정보가 부족해서
6. 할 필요가 없어서

[로직: 문46의 1번 항목=2인 응답자만 제시]

문46-2.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을 안(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2. 시간이 부족해서
3.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4. 공간, 지리적 문제로
5. 관련 경험, 지식, 정보가 부족해서
6. 할 필요가 없어서

[로직: 문46의 2번 항목=2인 응답자만 제시]

문46-3. **2~3일 정도의 여행**을 안(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2. 시간이 부족해서
3.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4. 공간, 지리적 문제로
5. 관련 경험, 지식, 정보가 부족해서
6. 할 필요가 없어서

[로직: 문46의 3번 항목=2인 응답자만 제시]

문46-4.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을 안(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2. 시간이 부족해서
3.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4. 공간, 지리적 문제로
5. 관련 경험, 지식, 정보가 부족해서
6. 할 필요가 없어서

[로직: 문46의 4번 항목=2인 응답자만 제시]

문47. 귀하는 현재 **일(학업)과 여가생활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단일척도]**

*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 하루 시간을 직장일(학업)과 여가생활에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일(학업)과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 일(학업)과 여가생활로부터의 스트레스 등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학업)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 -----		일(학업)과 여기간 균형을 이루고 있다		----- →		여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0

문48. 앞으로 지금보다 귀하에게 더 많은 여유시간이 생긴다면 그 시간을 주로 어떻게 쓰고 싶나요?

1.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할 것이다(파트타임, 투잡 등)
2. 자기계발에 투자할 것이다(어학, 전문분야 공부 등)
3.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할 것이다(봉사활동 등)
4. 건강을 관리할 것이다(운동 등)
5. 여가활동을 할 것이다(취미활동이나 여행 등)
6. 휴식을 취할 것이다(영상시청, 게임 등)
7. 가족들과 더 어울릴 것이다(대화, 놀기 등)
8. 친구 지인들과 더 어울릴 것이다(대화, 놀기 등)
9. 기타(_____)

//Ⅶ. 가치관 및 미래 인식//

문49. 귀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단일척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	-	보통	-	-	-	-	-	→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50. 귀하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했나요? **[단일척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	-	-	보통	-	-	-	-	-	→	매우 행복했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51. 귀하는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1. 전혀 실현할 수 없다
2.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
3.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문52. 귀하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척도][stepbystep]**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2	3	4
1. 결혼				
2. 자녀출신과 양육				

//Ⅷ. 자립역량//

문53. 귀하는 지난 조사에서 총 **IDB (년1) (개월1)** 동안 자립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조사 이후인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자립지원을 받은 기간은 모두 어느 정도인가요?

※ **자립지원**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포함) 등에서 나온 후, 생활했던 시설이나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관, 자립생활관 등에서 자립을 위해 받은 **모든 지원 (주거, 상담, 자립수당, 물품, 진료, 사후관리 등)**
※ 지원 받은 적이 없다면 **0년 0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지원 받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0년 1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 두 기관 이상에서 각기 다른 기간 동안 지원을 받았다면 모든 기간을 더해서 응답해 주세요.
예를 들어, 보육원 퇴소 후 3개월 지원을 받고, 이후 자립지원관에서 3개월을 받았다면 "총 6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1. 총 ()년 [로직: 0 to 1]

2. ()개월 [로직: 0 to 11]

[로직: 드롭다운방식으로 선택]

[로직: DB (자립기간)=1인 경우 본 문항 노출]

[로직: 1년 선택 시, 개월은 10개월까지만 응답 가능]

문53-1. 귀하는 지난 조사에서 총 **IDB (년1) (개월1)** 동안 자립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조사 이후인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자립지원을 받은 기간은 모두 어느 정도인가요?

※ **자립지원**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포함) 등에서 나온 후, 생활했던 시설이나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관, 자립생활관 등에서 자립을 위해 받은 **모든 지원 (주거, 상담, 자립수당, 물품, 진료, 사후관리 등)**
※ 지원 받은 적이 없다면 **0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지원 받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 두 기관 이상에서 각기 다른 기간 동안 지원을 받았다면 모든 기간을 더해서 응답해 주세요.
예를 들어, 보육원 퇴소 후 3개월 지원을 받고, 이후 자립지원관에서 3개월을 받았다면 "총 6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1. 총 ()개월 [로직: 0 to 10]

[로직: 드롭다운방식으로 선택]

[로직: DB (자립기간)=2인 경우 본 문항 노출]

문53-2. 귀하가 **시설퇴소 이후**, 자립지원을 받은 기간은 모두 어느 정도인가요?

※ **자립지원**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포함) 등에서 나온 후, 생활했던 시설이나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관, 자립생활관 등에서 자립을 위해 받은 **모든 지원 (주거, 상담, 자립수당, 물품, 진료, 사후관리 등)**
※ 지원 받은 적이 없다면 **0년 0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지원 받은 기간이 6개월인 경우 **0년 6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지원 받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0년 1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 두 기관 이상에서 각기 다른 기간 동안 지원을 받았다면 모든 기간을 더해서 응답해 주세요.
예를 들어, 그룹홈에서 퇴소 후 2년 지원을 받고 이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지원을 받았다면 "총 2년 6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1. 총 ()년 [로직: 0 to 30]

2. ()개월 [로직: 0 to 11]

[로직: 드롭다운방식으로 선택]

[로직: DB (자립기간)=3 or 신규 폐닐반 본 문항 노출]

문54. 귀하는 **자립수당(또는 자립지원수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도 받고 있나요?

※ **자립수당(자립지원수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정착과 자립지원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1. 현재 받고 있다
2. 과거에는 받았으나 현재는 받지 않는다
3.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 문55

[로직: DB (자립수당)=1인 경우 보기3 미노출]

문54-1. 귀하가 자립수당(또는 자립지원수당)을 받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2019년 이전부터 수당을 받았던 경우, "2019년부터"로 응답해 주세요.

1. ()년부터 **[로직: 2019 to 2024]**
2. ()년까지 받았다 **[로직: 2019 to 2024]**

[로직: 드롭다운방식으로 선택]

[로직: 문54=1인 경우 문54-1의 "2. ()년까지"는 2024로 자동 코딩]

문54-2. 자립수당(자립지원수당)을 받은 기간 동안 **생활의 변화**가 있었나요?

1. 큰 변화가 없다
2. 저축이 늘거나, 부채(빚)가 줄었다
3. 근로시간(아르바이트)이 줄었다
4. 개인시간(공부, 독서, 취미생활 등)이 늘었다
5. 친구 등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늘었다
6. 기타()

문54-3. 자립수당(자립지원수당)은 주로 어떤 항목에 지출하였나요?

1. 식비(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
2. 교육비(등록금, 학원비, 교재구입비 등)
3. 교통통신비(차비,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등)
4. 저축, 보험료, 대출 상환
5. 의료비(진료비, 수술비, 약값 등)
6. 주거비(월세, 관리비, 냉난방비, 수도세 등)
7. 문화여가 생활비(도서 구입, 공연 관람, 의류 구입 등)
8. 기타()

문55.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했나요?

1) 감정적-심리적 문제	2) 건강 문제	3) 가사 및 돌봄 문제
4) 급전적 문제	5) 긴급 혹은 재해 상황	6) 진로-미래 계획 문제

1. 가족
2. 친척
3. 연인
4. 친구
5. 직장동료
6. 이웃
7. 공공기관(주민센터, 구청 등)
8. 민간기관(시설팀, 센터, 전담기관, 단체, 종사자 등)
9.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해결함
10. 도움을 청할 사람은 있으나 혼자 해결함
11. 해당 문제를 겪은 적 없음

[로직: 위의 6개 박스가 하나씩 차례대로 제시되면서 총 6번 질문 무피]

문56. 현재 귀하의 자립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척도||stepbystep]**

문 형	달성(성취)한 정도			
	전혀 성취하지 못했다	성취하지 못했다	성취했다	완전히 성취했다
	1	2	3	4
1.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2.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얻기				
3. 부모님 집(시설)에서 나와 따로 생활하기				
4. 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기				
5.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기				

//카테고리(단독): 추가문항//

추가문항. 본 연구에서는 지금 참여해주신 설문조사 이외에도 **인터뷰 조사(대면 및 전화 등)**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사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정책 개발을 위해 여러분의 생활에 대해 묻고자 하며, 연구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안내 드릴 예정이며,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사례비**를 드릴 예정입니다. 인터뷰 조사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정신하게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그간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취약계층 청년 중에서도 정책적으로 소외되어온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년간의 협동연구로 추진되어온 연구의 일부로, 주관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3개년간 추진한 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생활실태조사이다.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가명정보 데이터 활용, 종단데이터 분석, 2차 자료 분석, 현장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청년들의 퇴소 이후 3개년간의 생활변화를 확인하고, 시설거주 경험이 성인기 이행에 미친 영향, 시설퇴소청년의 생활안정성이 자립수준 및 심리정서 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퇴소시설에 따라 제공되는 공공 및 민간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공적지원제도가 시설퇴소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증명함으로써 공적지원 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모든 청년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비전 하에 1) 시설퇴소청년의 특성에 따른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개인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 2) 아동-청소년-성인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연속성있는 지원정책 수립, 3)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대상(집중사례관리 대상)의 성인기로의 이행 지원 강화 등 세 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영역별 추진과제로는 1) 고용-근로영역에서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 및 근로기초훈련 마련을, 2) 경제영역에서는 관계기반의 금융

모델 보급 및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제도 모색, 3) 주거영역에서는 청년의 삶의 형태와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지원방안 모색, 관계기반이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확충을 제안하였다. 4) 심리정서영역에서는 전국민마음 투자지원사업 지원 확대, 그리고 자해와 자살 예방을 위한 연계기관 간 핫라인 설치 등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고, 5) 여가문화영역에서는 여가 문화생활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연계를, 6)자립생활 지원 영역에서는 공적지원 대상의 확대 및 지자체 자립지원대상 심의제도 개선, 단계적 자립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A b s t r a c t

ABSTRACT

This three-year cooperative study aimed to identify politically marginalized young adults among vulnerable youth who have been excluded from society and develop measures to support them. It involves a survey of the living conditions of young adults who have exited welfare facilitie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over three years.

Using surveys of young adults who have exited out-of-home care facilities, youth shelters, and youth detention centers, along with pseudonymized data, longitudinal data analysis, secondary data analysis, and consultations with field experts, 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the lives of young adults, who had been living in welfare facilities over the three years, following their departure. Moreover, it examined how living in such facilities impacted their transition to adulthood, as well as how the livelihood stability of young adults who leave welfare facilities influences their independence and psycho-emotional well-being.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public and private support programs provided by each type of facility after departure, and demonstrated the positive impact of various public support systems on the lives of these young adults, thereby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public support programs.

Based on these findings, under the vision of “guaranteeing the

right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all young adults,” this study proposed three tasks: 1) implementing integrated and phased support policies customized to the characteristics of young adults who have exited welfare facilities; 2) establishing continuous support policies to ensure a smooth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to adulthood; and 3) enhancing support for transition to adulthood for those requiring integrated independence support services (intensive case management).

The study proposed a series of tasks for each domain: 1) in the employment and labor domain, expanding employment support services,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to increase quality jobs, and developing programs to increase work motivation and provide essential job training; 2) in the economic domain, providing relationship-based financial models and exploring various asset-building support systems; 3) in the housing domain, exploring rental housing support plans that consider the living styles and conditions of young adults and expanding integrated housing support services based on relationships; 4) in the psycho-emotional domain, expanding the National Mind Investment Support Program and establishing hotlines among related institutions to prevent self-harm and suicide; 5) in the leisure and culture domain, providing and connecting programs that promote leisure and cultural life; and 6) in the independent life support domain, expanding the scope of public support recipients, improving screening systems for eligibility of local government support, and developing and activating phased independence training programs.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4-기본0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김일우·김윤희
- 연구보고24-기본02 청소년의 생생형 AI 이용실태 및 리터러시 증진방안 연구 / 이창호·모상현·배상률·이세영
- 연구보고24-기본0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Erasmus+ 모형 구축방안 연구 / 이윤주·김형주·오해섭·박대승
- 연구보고24-기본04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이수정
- 연구보고24-기본05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황세영·김정숙·최정원·이은주·손윤희
- 연구보고24-기본06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이지연·김영지·박지수·한윤선·박선영
- 연구보고24-기본07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강경균·최홍일·허창수
- 연구보고24-일반01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유성렬
- 연구보고24-일반01-01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
- 연구보고24-일반05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기현·최인재·한지형
- 연구보고24-일반05-01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기현·오병돈
- 연구보고24-일반06 2024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장윤선
- 연구보고24-일반06-01 2024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1 청년종합연구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 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김성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2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01) 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5-01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 /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3) 최용환·김영한·권오영·박윤수·오문준·이경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6-0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4) : 사이버도박 / 임지연·황진구·성윤숙·조제성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4-수시0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개선방안 / 김정숙·조남익
- 연구보고24-수시02 일경험으로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중심으로
/ 이윤주·황세영·하형석·서고운·최홍일·이용해
- 연구보고24-수시03 청소년기 인문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강경균·최홍일
- 연구보고24-수시0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 연구보고24-연적금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김희진·김경준·박지수·조혜영
- 연구보고24-연적금01-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박지수
- 연구보고24-연적금02 미래지향 정책연구 수행사업 /
김대웅·이진아·이유정·김정숙·권오영·변주영·조은혜·이윤주

수 탁 과 제

<일반>

- 연구보고24-수탁01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장근영·김기현·문호영·이용해·최홍일·구분호·이자경·서지형
- 연구보고24-수탁02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의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
김형주·정세정·박미선·김동훈·김지민

연구보고24-수탁03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대안교육기관 현황조사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1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교원, 학생 및 학부모 실태조사 / 최인재·유설희·김소연·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2	2024 대안교육기관 운영 사례집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
연구보고24-수탁04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이지연·하형석·박지수
연구보고24-수탁05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김영지·김지연·이정민·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플랫폼 운영지원 및 성과평가 / 임지연
연구보고24-수탁07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4-수탁08	2024년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동성·박윤수·장혜윤·임채홍·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09	2024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10	2024년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이행점검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장혜윤·김보경·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1	2024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2	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이용해·김경준
연구보고24-수탁13	광역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진흥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 황세영·유민상·남화성
연구보고24-수탁1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기초연구 / 조연수·하형석·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01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6	보호관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분석 및 지도감독 방안 / 박지수·이지연
연구보고24-수탁17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김일우
연구보고24-수탁18	학교안팎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연구 / 유민상·이경상·황세영·최인재·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19	취약청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1인가구 청년 및 경계선 지능 청년을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신동훈·변민수·박미선·한지형
연구보고24-수탁20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장여욱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4-학폭01 2024 학부모용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 연구보고24-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김승혜·최희영·차민희·송채원
- 연구보고24-학폭03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전원지·문은솔
- 연구보고24-학폭04 2023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박선영·김예지
- 연구보고24-학폭05 2024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박선영
- 연구보고24-학폭06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모상현·최지윤
- 연구보고24-학폭07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1~2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 연구보고24-학폭08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 연구보고24-학폭09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 연구보고24-학폭10 2024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문은솔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4-대안01 학업중단 숙려제 공동운영기준 / 황세영
- 연구보고24-대안02 청소년부모·한부모 지원매뉴얼 / 황세영·이진아·김시경·김미혜
- 연구보고24-대안0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실태조사 구축방안 / 김영지·임지연·유성렬·김강호·이종숙·정유경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연구보고24-위센터01 2024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지연·김영지·백혜정·김승경·이정민·전현정·최홍일·양하나·김주영·문세진·나예인·이유진

자료 집

〈세미나〉

- 세미나24-01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 증진방안 세미나 (24.5.24.)

〈워크숍〉

- 워크숍24-01 소년사건의 이해: 경찰 사랑의 교실, 법원 수감명령 이해하기 (24.8.29.)
- 워크숍24-02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4.8.7.)

〈포럼〉

- 포럼24-01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 방안 (24.3.18.)
- 포럼24-02 청소년-가족 시설간 정책 연계 협업 관련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포럼 (24.4.29.)
- 포럼24-03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지원 정책의 현안과 발전방안 (24.7.18.)
- 포럼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24.8.19.)
- 포럼24-05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24.12.10.)

〈콜로키움〉

- 콜로키움24-01 가명정보 활용절차의 이해 - 청년종합연구 I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24.4.24.)

〈기타자료집〉

- 자료24-01 2024년 저경력 전문상담교사 연수
- 자료24-02 위(Wee) 센터 실장 역량강화 연수 자료집
- 자료24-03 가정형 위(Wee)센터 컨설팅
- 자료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 자료24-05 지역사회 환경교육 협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
- 자료24-06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1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4-07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2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4-08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3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4-09 위(Wee) 이슈브리프
- 자료24-10 (초등학교) 위기사안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
- 자료24-11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자료24-12 가정형 위(Wee)센터 매뉴얼
- 자료24-13 제13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자료24-14 위(Wee) 뉴스레터
- 자료24-15 제1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4-16 2024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 자료24-17 제11회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료24-18 2024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자료24-19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차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1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2호(통권 제11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3호(통권 제11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제115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51호 어울림 프로그램 현안 진단을 위한 탐색적 연구

152호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153호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 가족실태와 지원방안

〈NYPI Bluenote 통계〉

77호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조사

7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

79호 소년보호재판 준비메모(2013~2018) 데이터 구축 및 주요 결과

80호 청소년활동 실태

81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82호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83호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84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6차년도 패널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협동연구총서 24-44-02

연구보고24-일반02-01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인 쇄 2024년 12월 24일

발 행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지식정보관)

ISBN 979-11-5654-432-6

ISBN 979-11-5654-430-2 (세트)

협동연구총서 24-44-02

연구보고24-일반02-01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32-6
ISBN 979-11-5654-430-2 (세트)